

연구보고 98-8

國民法意識調查研究(V)

# 漁村社會의 法意識

- 財產權 · 生存權 · 環境權의 調和 -

1998. 12.

研究者：全在慶(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 發 刊 辭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관계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그것과 같습니다. 실정법 정비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합니다. 법사회학적 방법론에서는 해석법학과 달리 법을 반듯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일탈할 수도 있는 사실로 보고 '왜 준법자들이 탈법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탈법 이후의 규범체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탐구합니다.

객관적 행위관 대체적으로 주관적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법사회학적 고찰에서는 외관상의 법적 행태 뿐만 아니라 그 저변을 형성하는 내심의 법적 감정 내지 의식에까지 주목합니다. 법의식 조사·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법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초법학은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마찬가지로 뒷전에 밀리기 쉽습니다. 관습조사와 같은 영역들은 아직도 일제 식민기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기초 없이 응용 없다"는 기치 아래 꾸준히 기초법학 연구에 천착하였습니다. 법의식조사 및 관습법 조사 이외에도 고법전 국역 및 근대법사등의 연구에 적지 아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의 변화와 정부의 긴축재정 시책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학문 분야의 사업들이 축소되는 국면을 맞았습니다.

본원의 기초법학 연구들이 다시 활성화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보고서를 펴냅니다. 해양문화권과 농경문화권이 충돌하고 기업이익과 생존권이 각축하는 가운데 어촌사회의 주역인 어민들이 어장과 갯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실정법은 어

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때로 탈법을 감행하는가에 관한 탐색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조사에 협력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8년 12월 30일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徐承完

## 調 査 陣

### 共同調査 및 研究協力

이 종 길 (韓國法制研究院 招請研究員)  
송 영 선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員)  
진 위 향 (生命會議 有司)  
강 동 회 (生命會議 有司)  
안 은 숙 (生命會議 有司)  
맹 지 연 (環境運動聯合 幹事)

### 諮問 및 現地調査支援

김 완 식 (多物島里 前里長)  
박 빙 옥 (多物島里 漁村契員)  
김 동 윤 (黑山水産業協同組合 代議員)  
이 재 경 (紅島里 漁村契員)  
김 환 용 (群山綠色住民連帶 代表)  
최 구 서 (扶安界火會館 代表)  
최 구 식 (薪斗里 里長)  
노 재 경 (舊助羅里 前里長)  
강 평 삼 (統營水産業協同組合 指導課員)  
홍 사 승 (松山面事務所 産業係員)

### 資料整理 및 編輯

구 경 미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員)  
장 민 기 (韓國法制研究院 編修員)  
윤 선 아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助員)



# 目 次

## 第1章 序 論

第1節 調查背景 .....	20
1. 公有水面 政策의 未備 .....	20
2. 갯벌의 이중성 .....	21
3. 公有財産의 悲劇 .....	22
4. 現存世代의 過慾 .....	23
第2節 假 說 .....	23
第3節 調查方法論 .....	28
1. 先行 調查研究 .....	29
2. 調查項目 .....	30
3. 調查地域 및 調查期間 .....	31
4. 調查·研究方法 .....	31
5. 調查資料 .....	34

## 第2章 社會經濟的 背景

第1節 悔恨의 섬 : 시화호지구(송산) .....	37
1. 마산포 .....	37
2. 형 도 .....	39
3. 독지리 .....	42
第2節 얼굴 없는 開發 : 새만금지구(부안) .....	43
1. 창북리 .....	43
2. 계화도 .....	45
第3節 制度의 死角地帶 : 태안반도(신두리) .....	46
1. 海洋生態系의 寶庫 .....	47
2. 名義信託의 濫用 .....	48

第4節 土着民의 마을 : 고흥반도(외나로도) .....	49
1. 마을연혁 .....	50
2. 生産關係 .....	51
3. 自治 및 儀禮 .....	51
第5節 開放의 實驗場 : 흑산도 .....	53
1. 多物島 .....	53
2. 水 里 .....	55
3. 紅 島 .....	56
第6節 生存競爭의 바다 : 남해어장(통영·거제) .....	58
1. 통영항 .....	58
2. 구조라리 .....	59

### 第3章 漁民의 法意識

第1節 權利意識 .....	65
1. 生存意識 .....	65
2. 所有意識·信託意識 .....	69
3. 利用意識 .....	74
4. 去來意識 .....	76
第2節 義務意識 .....	78
1. 두 레 : 공동채취 .....	78
2. 秩序維持 .....	79
3. 共同納 : 入戶 .....	80
第3節 脫法意識 .....	81
1. 不法漁撈 .....	81
2. 境界侵犯 .....	81
3. 環境汚染 .....	82
第4節 被害意識 .....	83
1. 法執行 不信 .....	83
2. 强者의 利益 : 조업구역·지선 .....	84
3. 移住民排斥 .....	85



第5節 漁民의 法實踐 .....	86
1. 權利의 主張 .....	86
2. 義務의 履行 .....	93

## 第4章 事實과 規範의 接點

第1節 살아 있는 法 .....	99
1. 法의 人間像 회복 .....	99
2. 葛藤解消의 順序 .....	99
3. 持續可能開發의 實踐 .....	100
4. 世代單位補償 .....	100
第2節 價值觀의 轉換 .....	101
1. 經濟的 利益의 超越 .....	101
2. 갯벌 公概念 .....	101
3. 歷史的 過誤의 是正 .....	102
4. 入漁權의 再生 .....	102
第3節 制度의 限界克服 .....	103
1. 立法의 補完 .....	103
2. 特別埋立의 制御 .....	104
3. 行政的 代案 .....	105
4. 公有水面法制의 整備 .....	107
5. 漁業權 管理의 柔軟性 .....	108



## 〈調查資料〉

### 第1章 對談資料：法意識1998

#### 第1節 흑산 다물도

대담98다물도01 面 협의회 .....	111
대담98다물도02 행사계약 .....	112
대담98다물도03 입어금지가처분·상속논쟁 .....	113
대담98다물도04 독점비판 .....	113
대담98다물도05 섬 분쟁경과(1) .....	114
대담98다물도06 미역채취권 .....	114
대담98다물도07 간데대섬(中竹島) .....	115
대담98다물도08 복합소유권 .....	115
대담98다물도09 해 너 .....	115
대담98다물도10 섬 분쟁경과(2) .....	116
대담98다물도11 어촌계 .....	116
대담98다물도12 섬 분쟁경과(3) .....	117
대담98다물도13 입 촌 .....	118
대담98다물도14 은호·반호·입호 .....	119
대담98다물도15 짓·배샅 .....	119
대담98다물도16 뚝 터버리기 .....	120
대담98다물도17 김·가사리·툇 .....	120
대담98다물도18 잠수샅·미역채취 방법 .....	121
대담98다물도19 갯닦기 .....	122
대담98다물도20 노동배당 .....	122
대담98다물도21 두 레 .....	123
대담98다물도22 언 어 .....	123
대담98다물도23 뱃노래 .....	124
대담98다물도24 조 업 .....	124
대담98다물도25 거 래 .....	126
대담98다물도26 어 구 .....	126
대담98다물도27 삶의 질 .....	127
대담98다물도28 불법어로(고대구리) .....	127

## 第2節 흑산 수리

대담98수리01 조사경위 .....	129
대담98수리02 선원관리·어업허가 .....	130
대담98수리03 대상례 .....	130
대담98수리04 상례실천 .....	130
대담98수리05 지선·어장경계 .....	131
대담98수리06 4洞경쟁 .....	131
대담98수리07 간테대섬(中竹島)(1) .....	132
대담98수리08 경계갈등 .....	133
대담98수리09 분쟁관련기록(1) .....	133
대담98수리10 분쟁결과 .....	134
대담98수리11 간테대섬(中竹島)(2) .....	135
대담98수리12 채취권 양도비리 .....	135
대담98수리13 분쟁관련 기록(2) .....	136
대담98수리14 분쟁전망 .....	137

## 第3節 흑산 홍도

대담98홍도01 공동채취·경계구분 .....	137
대담98홍도02 뚝 관리 .....	138
대담98홍도03 농아버리기 .....	139
대담98홍도04 채취시기 .....	140
대담98홍도05 금 장 .....	140
대담98홍도06 계 .....	140
대담98홍도07 제 재 .....	141
대담98홍도08 호들기 .....	141
대담98홍도09 생산량 .....	141
대담98홍도10 생산물 .....	142
대담98홍도11 관광업 .....	142
대담98홍도12 전복채취 .....	142
대담98홍도13 독 상 .....	142
대담98홍도14 해 녀 .....	143
대담98홍도15 난 상 .....	144
대담98홍도16 해삼·소라 .....	145

대담98홍도17	입찰	145
대담98홍도18	소득	145
대담98홍도19	숯	146
대담98홍도20	갯바위·공동재산	147
대담98홍도21	재산관리	147
대담98홍도22	관광업	148
대담98홍도23	물관리	149
대담98홍도24	언어	150
대담98홍도25	질서유지	150
대담98홍도26	혼인	150
대담98홍도27	풍란	151
대담98홍도28	제주해녀	151
대담98홍도29	뜸	152
대담98홍도30	성풍속	152

#### 第4節 고흥 외나로도

대담98외나로01	무단영업	153
대담98외나로02	무례·무시	154
대담98외나로03	이방인	154
대담98외나로04	입호	155
대담98외나로05	민원불만·고발기피	156
대담98외나로06	공직사칭	156
대담98외나로07	해변향유권(1)	157
대담98외나로08	어황	157
대담98외나로09	뉴시 오염	159
대담98외나로10	적조	159
대담98외나로11	장어·통발이	160
대담98외나로12	거래방법(구전도리)	160
대담98외나로13	장어잡이·활어선	161
대담98외나로14	어황	161
대담98외나로15	연안어업·근해어업	162
대담98외나로16	통발허가·어장침탈	162
대담98외나로17	어장갈등	163

대담98외나로18 불법어로 .....	163
대담98외나로19 문어잡이 · 관행권 .....	164
대담98외나로20 관료주의 .....	164
대담98외나로21 조업갈등 .....	165
대담98외나로22 조업한계 .....	165
대담98외나로23 낚시거부 .....	166
대담98외나로24 해변 향유권(2) .....	167
대담98외나로25 갯따기 .....	167
대담98외나로26 생업대책 .....	168
대담98외나로27 그린벨트 · 불법소각 .....	169
대담98외나로28 풍어굿 · 인력부족 .....	169
대담98외나로29 어선 복덕방 .....	170
대담98외나로30 당 제 .....	170
대담98외나로31 선거법 유감 .....	171

#### 第5節 통영항

대담98통영01 조업구역 경계 .....	172
대담98통영02 조업구역 통합 .....	173
대담98통영03 경계표시 오류 .....	173
대담98통영04 막연한 단속기준 .....	174
대담98통영05 선박안전조업규칙 .....	174
대담98통영06 조업구역 분쟁 .....	175
대담98통영07 기타 통발 .....	175
대담98통영08 어구 · 어법 .....	176
대담98통영09 불법어로(1) 단속 · 생산자증명제 .....	178
대담98통영10 불법어로(2) .....	178
대담98통영11 의견수렴 .....	179
대담98통영12 총어획량제 .....	179
대담98통영13 그물코 크기 .....	179
대담98통영14 어구규제 완화 .....	180
대담98통영15 선원임금 .....	180
대담98통영16 임금고합제 .....	181
대담98통영17 짓가림제 .....	181

대담98통영18 선급금제 .....	181
대담98통영19 금어기간 모순 .....	182
대담98통영20 직능조합 .....	182

#### 第6節 거제 구조라리

대담98구조라01 내력·연혁 .....	184
대담98구조라02 식민지 상황 .....	184
대담98구조라03 후리배 .....	185
대담98구조라04 멸치잡이 .....	185
대담98구조라05 식민지생활상 .....	186
대담98구조라06 멸치선단 .....	186
대담98구조라07 해방 후 생활상 .....	187
대담98구조라08 풍 습 .....	187

#### 第7節 시화호 형도

대담98형도01 생활상 .....	189
대담98형도02 보상현황 .....	190
대담98형도03 생활여건 .....	190
대담98형도04 매립지 분양·관행보상 소송 .....	191
대담98형도05 입어권소멸·주민숙원·방조제허물기·농토조성 .....	191
대담98형도06 관행권보상·이주단지분양 .....	193
대담98형도07 불법어로 시비(1)·보상후회 .....	193
대담98형도08 분양불만·어로희망 .....	194
대담98형도09 포기조건부 이주·불법어로 시비(2) .....	194
대담98형도10 언론유감 .....	195
대담98형도11 갯바닥 소유의식 .....	196
대담98형도12 무상이전·우선권 .....	197
대담98형도13 이주단지 .....	197
대담98형도14 관행보상 .....	198
대담98형도15 불법의식·이주곤란·생업한계 .....	198

#### 第8節 태안 신두리

대담98신두01 모래언덕 소유관계 .....	201
--------------------------	-----

대담98신두02	총유재산매매 · 마을연혁	201
대담98신두03	개발관(1)	202
대담98신두04	총유변화	203
대담98신두05	군사보호지역	203
대담98신두06	생산현황	203
대담98신두07	어촌계	204
대담98신두08	소유의식	204
대담98신두09	배타적 지배	205
대담98신두10	개인생산	205
대담98신두11	해수욕장	206
대담98신두12	개발관(2)	206
대담98신두13	마을조직 · 생업구성	207
대담98신두14	재산권 특정 · 장벌	208
대담98신두15	공유수면 특정	209
대담98신두16	독 살(1)	210
대담98신두17	외지인소유 · 개발낙후	210
대담98신두18	생활고	212
대담98신두19	분쟁해결 · 생활수준	212
대담98신두20	고유지명 · 매립연혁 · 독살(2)	213
대담98신두21	언 어	214
대담98신두22	수질오염	214
대담98신두23	토지관리인	215
대담98신두24	억울 · 토지환수	215
대담98신두25	생활여건	216
대담98신두26	매립지 방치	217
대담98신두27	마을현황	218

## 第9節 부안 창북리

대담98창북01	이주단지	218
대담98창북02	염해 · 피해의식	219
대담98창북03	전래 재산권 · 보상투기	219
대담98창북04	맨손어업허가증 모순	220
대담98창북05	생산물	220



대담98창북06	보상후회	220
대담98창북07	생업비법 · 소득실태	221
대담98창북08	보상수준	221
대담98창북09	재산의식	222
대담98창북10	호패증	222
대담98창북11	주민조직	222
대담98창북12	운동목표	223
대담98창북13	개발논리	223
대담98창북14	새만금 프로젝트(1)	224
대담98창북15	부채자보상 · 환경오염	225
대담98창북16	어촌계 · 지선관리	225
대담98창북17	개방어장	226
대담98창북18	소유의식	227

#### 第10節 부안 계화도

대담98계화01	간척사: 무보상간척 · 관행권확인	227
대담98계화02	보상행정난맥	228
대담98계화03	추가보상 신고	230
대담98계화04	신고현황 · 선외보상	230
대담98계화05	간접보상	231
대담98계화06	보상내력 · 어촌계 관할	232
대담98계화07	미래세대 보상	233
대담98계화08	빨방 · 갯벌형성	233
대담98계화09	갯벌변화	234
대담98계화10	정주의식 · 생계대책 · 보상후회	234
대담98계화11	소형어선 허가 제한 · 농경지분양희망	235
대담98계화12	생활양식의 변화	236
대담98계화13	소유의식 · 이주민정착	237
대담98계화14	경계갈등 · 보상후 입어권	237
대담98계화15	보상의 한계	238
대담98계화16	새만금 프로젝트(2):	238
대담98계화17	어업권 허가모순	239
대담98계화18	간척지 분양 · 생계막연	239

대담98계화19 양식보상불만 .....	240
대담98계화20 생산물 .....	240
대담98계화21 거주이전·정주조건 .....	240
대담98계화22 황금밭·간척피해·근시안 .....	241
대담98계화23 경계(지선) 갈등 .....	241
대담98계화24 경계조정 .....	241

## 第2章 紛爭資料：法意識1998

第1節 시화호 독지리 분쟁자료 .....	243
1. 탄원서 .....	243
2. 독지리 어업권 피해보상 관계관 회의록 .....	248
3. 합의각서 .....	249
4. 회의록 .....	251
5. 독지2리 어민 임시 총회록 .....	256
第2節 附款附漁業權紛爭 .....	260
第3節 漁業權에 관한 立法意見 .....	264
1. 조업구역조정 : 멸치잡이를 중심으로 .....	264
1) 제도의 변천 .....	264
2) 현황 및 과제 .....	267
3) 개선방향 .....	269
2. 금어 기간의 조정 : 꽃게를 중심으로 .....	270
1) 현 황 .....	270
2) 문제점 .....	271
3) 개선의견 .....	271
4) 기대효과 .....	272
3. 그물코의 조정 : 꽃게를 중심으로 .....	272
1) 현 황 .....	272
2) 개선안 .....	274
4. 선원임금채권보장법안에 관한 의견 .....	274
1) 현황 및 문제점 .....	274
2) 개선의견 .....	275

## 第1章 序論

갯마을과 갯벌 그리고 섬으로 표상되는 어촌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곳들은 대체적으로 - 오지나 낙도 또는 분쟁지역이었던 탓으로 -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깃들어 있다기보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갈등과 분쟁이 누비고 좌절과 불만 또는 무기력감이 팽배해 있었다. 과거보다 생활여건과 수준들이 분명히 향상되었음에도 왜 이러한 갈등과 좌절이 어촌사회를 주름잡는가?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어촌사회의 개방 내지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갈등현상의 이면에는 -누구나 막연히 인식하고 있듯이- 개방과 개발이라는 문화적·경제적 원인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개발정책과 구체적 형평성이 결여된 법제도와 일관성 없는 개발행정은 정치력 부재의 소산이다. 법이 없어서 분쟁이 심화된 것이 아니다. 어촌사회의 개발과 보상을 둘러싼 법률들은 오히려 많다. 수산업법·어선법·어항법·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농어촌정비법·농촌근대화촉진법<sup>1)</sup>·토지수용법·공공용지및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 등은 오히려 어민들의 불신을 받았다. 진정한 규범의 부재를 틈탄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 · 우선 보상이라도 받고 보자”는 어민들의 조급주의는 사회적 모순을 반영한다. 이러한 부재와 모순은, 특별하게 잘못된 사람도 분명한 책임자도 없는 가운데, 생계대책이 막연한 어민들을 자본주의식 경쟁의 한 가운데로 내몰았다. 특히 갯벌매립을 둘러싼 갈등은 어촌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제도적 모순들의 집약판이다. 어촌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정책과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책과 행정은 ‘법의 집행’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에 주목하게 된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법전의 일부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을 둘러싼 행태들에 주목하여야 한다.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어민들의 생각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민들

1) 1970년 1월 12일 공포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항법(법률 제5077호) 부칙(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의 生存權, 기업들의 開發利益, 국민 일반의 環境權 그리고 미래세대들의 期待權 등이 포괄적으로 탐색되어야 한다. 실정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가치관들이 대립항쟁하고 있는가를 살펴 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한국의 어촌사회는 '살아있는 법'의 현장이다. 그럼에도 종래 입법자들은 현장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의 주인공들이 외면당해 왔다. 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갈등현장에서 법의 주인공[漁民]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 第1節 調查背景

전통적 생활의 사례들은 오늘날 그 생활로 회기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오늘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양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되고, 성찰의 자료가 된다.<sup>2)</sup> 한편 정향성의 변동을 나타내는 수많은 양상들 중에서, 상품경제의 진전과 지역개발의 영향에 따른 변동상을 나타내주는 현대의 사례들은 자연과 문화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로 작용한다.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어촌사회는 자연자원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생태학적 변화를 둘러싼 의식의 변화와 정향성(orientation)을 탐구함에 있어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중적 지위를 지닌 갯벌의 매립과 정책의 미비는 공유재산의 비극을 초래하고 세대간 형평을 파괴하는 등 법질서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오지의 바닷가나 낙도에도 문화개방 또는 개발열풍이 밀려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원형에 가까운 어촌사회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첨예한 바닷가와 섬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 公有水面 政策의 未備

1961년의 공유수면관리법은 바다, 하천, 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水面 또는 水流와 濱地로서<sup>3)</sup> 國有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규정짓고

2) 조경만, "갯벌 생태계에 대한 지역사람들의 사고 유형들", 한국역사민속학회 제62회 월례발표회 발표요지(1998년 11월 7일 : 국립민속박물관), 2쪽

3)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항). '濱地'는 수산업법상 '바닷가'에 해당한다. 즉 '바닷

(제2조제1항)4), 바다 내지 갯벌의 점용 및 사용(제4조)에 주안점을 두었다. 1962년의 공유수면매립법은 바다 내지 갯벌의 매립 또는 간척(제2조제2호)에 중점을 두었다. 1977년의 환경보전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이라는 개념을 몰랐다. 1977년의 해양오염방지법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방지가 아니라 선박유류로 인한 바다오염의 방지가 핵심이었다. 1987년의 해양개발기본법은 바다가 개발(제6조 내지 제9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대상(제10조)임을 선언하였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관념은 1991년의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4호 : 해양생태계보호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그러나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은 법규상의 보전에 그쳤을 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정책상 분명한 원칙이 결여된 가운데 바다와 땅의 접경에 위치한 공유수면들은 매립자들의 소유(公有水面의 私有土地化)로 귀결되었다.

## 2. 갯벌의 이중성

갯벌은 두 얼굴의 자연자원이다. 갯벌이 '바다'라면 처분이 불가하고 따라서 처분을 예정한 매립도 불가하다. 다른 한편 갯벌은 이를 '땅'(土地)으로 보더라도 육지의 일반토지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땅으로서의 갯벌은 (1)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한 천연생산지이고 (2) 서식 자원의 이동성이 현저하며 (3) 경계표시 내지 '공시'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의 소유형태는 '總有'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총유의 주체는 역내의 어민들이다. 적어도 근대식 토지제도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그렇다. 갯벌 내지 자연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자연관<sup>5)</sup>에 의한다면 갯벌

---

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제9호).

- 4) 土地가 붕괴유실하여 바다로된 때에는 소유권은 소멸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하여私人이 소유하는 토지가 해물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자연적 상태에서 지배가능성을 갖고 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인의 소유권은 역시 상실되지 않는다: 日本 鹿兒島地判 昭和 1951.3.31 判時 第816호 12쪽
- 5) 자연·자원의 公共性에 관하여서는, 전재경·박오순·한은미 외,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환경부 : 1996. 8.), 69쪽 이하, 참조. 또한 地下水의 공개념에 관하여서는, 전재경, "지하수의 수질보전과 공개념", '지하수법 개

은 '국민총유'가 되어야 한다. 역내 어민들은 제한된 소유권 즉 그 수익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갯벌은 바다의 일부로서 그리고 특수한 땅으로서 '이중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서구법제를 계수한 한국의 입법자들과 법집행자들은 갯벌의 이중성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갯벌의 (바다로서의) 공공성을 (땅으로서의) 사유성으로 상쇄시켰다.<sup>6)</sup> 바다의 불가침성을 땅의 처분성으로 돌파하였다.

### 3. 公有財産의 悲劇

남의 물건을 맡아 있던 사람이 그대로 달아나면 횡령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자원의 남용은 횡령이다. 현세대는 지구상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파괴자이다. 현세대는 미래 세대와 자연자원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재산을 보관할 뿐이다. 따라서 현세대가 이를 임의로 사용·처분하면 공유관계의 침해 내지 신탁관계의 파괴로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 공동소유자나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법률문화는 개인재산의 횡령과 이데올로기 범죄에 대하여서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공공재산의 횡령·배임 세대간 협력의무에 대하여서는 무심하다. 자연자원은 공공재산이다. 갯벌은 자연자원이다. 갯벌은 경제적·심미적·생태적 공익성이 현저한 공공재산이다.<sup>7)</sup> 갯벌 생

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 (社)그린훼밀리운동연합(1996.3), 14쪽 이하, 참조

- 6) 사회통념상 '바다'는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분불가'이지만 토지는 오래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처분권'이 인정된다. 입법자들은 갯벌을 처음부터 '바다'로 선언함으로써 '처분불가'의 자원으로 인식시켰다. 만약 갯벌이 처음부터 '토지'로 선언되었다면 그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처분' 제약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탈은 위장된 입법이고 법적인정성을 파괴하는 처사이다.
- 7) 19세기 후반 美國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을 통하여 발전된 '公共信託'理論은 환경자원의 공공성과 정부의 후견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자연자원중 어떠한 것은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하므로 그 소유자는 국민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신탁자원은 국민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 신탁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신탁에 종속하는 사유재산권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정부도 전체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재산 위에 형성된 신탁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 정부가 신탁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전적으로 개인의 손에 넘기는 그 신탁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공공신탁 이론은 갯벌 '공개념'과 상통한다.

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정부나 개인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주민 모두가 갯벌의 매립과 처분을 찬성하더라도 매립을 一般意志의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사적 이익에 주목하는 갯벌의 매립은, 루소의 표현에 따른다면, '전체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며 미래세대의 재산을 침해하는 횡령이다.

#### 4. 現存世代의 過慾

현존하는 국민들이나 일정 권역내의 어민들이 갯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갯벌 매립의 댓가로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이익이 먼 장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까? 장담하기 어렵다. 후손들은 선조들의 보상합의를 원망하고 갯벌의 원상회복을 바랄지도 모른다. 현재세대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공신탁 이론도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곤란하다. 살피건대, 현재세대가 사용하는 자원은 현재 세대만의 재산이 아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여 이를 전부 소비할 수 없다. 아무런 노력 없이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할 자격이 없다. 현재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은 미래의 세대들도 이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현재세대가 지구의 '마지막 주인'이 아니라면 현재대는 자원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현재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것이다. 자원의 계승보전은 현재대의 자유가 아니라 의무이다. 공유재산에는 일정한 지분이 존재하듯이 환경자원에도 현재세대가 사용가능한 한도가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불법이다.

## 第2節 假說

공동체관 내지 共同體精神에는 법률관 내지 法的精神이 포함된다. 법률관 내지 법의 정신은 무형의 규범문화에 포함된다. 규범문화는 문화의 산물이다. 한국의 규범문화는 다른 문화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규범과 도덕규범 그리고 법규범이 혼동·분화·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두레곳의 제의에 나타나는 禁忌라든가 대동회의에 나타나는 共同納과 같은 규범현상들은 종교규범이 법규범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韓國史에 나

타난 한국의 규범문화는 여러 가지 변용을 거치면서 발전되거나 때로 왜곡되어 왔다. 물론 문화는 전파되고 학습되기 때문에 외래문화가 토착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規範文化는 서구 文化(특히 게르만문화)와 文明(특히 기독교문명)의 法律規範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 한국인의 正體性은 규범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 현대 한국의 법체계는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게르만 법문화의 영향이 현저하다. 이에 비하여 海洋文化圈에 속하는 어촌사회는 외래 계수법제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의식구조와 관행들이 적지 아니 남아 있을 것이다. 어촌사회에 잔존하는 전통적 요소들은 한국 법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법의식 조사에 임하면서 몇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 1. 西歐 法文明과 韓國 法文化는 다르다.

법은 문명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法系는 한민족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로마법과 게르만법 그리고 앵글로 색슨법을 계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은 문화적 요소도 존재한다. 외래 법문명을 선호하는 위정자들은 전통 사회의 법문화를 서구의 법문명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하지만 전통 법문화는 오히려 현대 법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보고이다. 예컨대, 한국인은 거래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법에 맡기기를 싫어한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 모멸감을 느낀다. 두레 습속에서 보듯이 공동체주의에 친숙하다. 할머니·할아버지 법(祖宗之法)을 존중한다. 鄉約이나 洞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치정신이 강하다. 안방과 사랑채의 공간구성이 시사하는 바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가 확립되었다. 班村이나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여성들이 각자의 경제적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일찍부터 女權이 확립되었다. 양밥이나 뽕이에서 드러나듯이 전통 공동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뛰어났다. 외관상으로는 서구사회의 법문명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이면에는 서구의 법문명과 다른 토착적 법문화가 존재한다.

### 2. 漁村社會에서는 때때로 實定法이 배척된다.

어촌사회는 삶과 죽음의 교차가 심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



원생활 규범에 토대를 둔 실정법과 때로 마찰을 빚는다. 그렇다고 하여 어촌사회의 규범이 商法과 같은 거래법에 접근하지는 않는다. 상법이 해양생활권의 거래문화를 받아들였다면 어촌사회의 규범은 대부분 生産關係를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수산업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은 해양문화나 생산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고 농경문화 내지 산업문화를 배경으로 농민 내지 기업가 중심적 人間像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생래적으로 어촌사회의 의식 및 행태와 어울릴 수 없었다. 또한 예컨대, 사회통념상 '갯벌'은 '바다'에 속한다.<sup>8)</sup> "바다는 사회통념상 해수의 표면이 최고조에 달한 때의 수위선을 가지고 육지로부터 구별된다. 그리고 바다는 고래부터 자연상태 그대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어 온 바 이른바 '公共用物'이고 국가의 직접의 공법적 지배관계에 따르고 특정인에 의한 배타적 지배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대로의 상태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sup>9)</sup> 대부분의 갯벌은 領海 基線으로부터 육지측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內水'로 구분되기도 한다(1977년의 영해및접속수역법 제3조). 결과적으로 바닷가 내지 갯벌은 현행 실정법들이 포섭할 수 없는 이질적인 생활관계들을 안고 있다.

### 3. 現行法制는 海洋生態系 保全에 불충분하다.

갯벌은 만조시에는 바다이지만 간조시에는 토지가 드러난다는 이중성 때문에 토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갯벌도 내수나 영해 그리고 대륙붕과 마찬가지로 '국토'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sup>10)</sup> 그러나 1993년에 전문개정된 현행 국토이용관리

8) '바다'는 1987년의 해양개발기본법상 '해양'에 해당한다.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 의 內水·領海·大陸棚과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할 바깥의 해역을 말한다(해양개발기본법 제2조제1호).

9) 日本 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1961.12.16 民集 第40권제7호 第1236쪽. 한편 美國 오리곤州 最高법원은 "바닷가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함은 오랜 慣習에서 파생한 公衆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State ex rel. Thornton v. Hay, 254 Or.584, 462 P.2d 671(1969)

10) 公有水面埋立地の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제1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조치)의 擬制도 같은 맥락이다.

법은 '해양생태계'라는 관념을 모르던 시대에 입안되었기 때문에<sup>11)</sup> "해안·생태계·...수산자원의 보호·육성"(제6조제5호)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제13조의3)을 규정하면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상의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을 간과하고 '녹지보전지역'만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섭시켰다. 결국 갯벌은 1997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되기 전까지는<sup>12)</sup>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보호(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지정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 4. 漁民들의 權利義務 意識은 農民들과 같지 않다.

해초생산에서 볼 수 있는 공동생산·공동분배 방식은 농경사회의 두레와 같다. 이처럼 노동과 같은 영역에서는 농민의식과 어민의식이 서로 접근한다. 그러나 자연관에 있어서 어민은 농민과 다르다. 평야나 임야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해양은 어민들에게 도전적 성향과 한시적 미래관을 심어준다. 때로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미지의 바다는 끝없는 동경과 희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포와 죽음의 폭풍우를 동반하기도 한다. 소유의식에 있어서도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바닷가나 갯벌의 경계는 자주 변한다. 해양의 동식물과 같은 자연자원도 유동성이 심하다. 자연지리적인 여건상 바닷가에서는 구분소유 내지 개인소유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어민들의 생활양식은 농민들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었다. 예컨대, 海女들의 의식은 농경사회 부녀들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sup>13)</sup> 또한 땅이 귀한 바닷가의 어민들은 갯벌이나 모래사장을 '빨땅'이니, '장벌'이니, 부르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 갯벌의 '벌' 자체가 이미 넓은 들판을 의미하지 않는가? 어민들은 품팔이에도 익숙하지

11) 1972년의 國土利用管理法은 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에 '해안보전지구'를 포함시켰지만(제9조제1항제4호) 이는 海岸을 災害로부터 방호·보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2) 1997년의 自然環境保全法(제18조)은 '녹지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상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예컨대, 습지 내지 갯벌)이라도 이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13) 海女들의 생활양식과 의식에 관하여서는, 金榮墩 교수가 한라일보에 1990년 9월 19일부터 수년간 매주 연재한 기획기사 '海女', 참조

못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가 막히면 알거지가 된다”고<sup>14)</sup> 믿는다.

### 5. 갯벌의 葛藤은 補償만으로 解決될 수 없다.

입법자들이 실수로 빚어낸 제도의 흠결을 정부가 남용하면서부터 갯벌(干潟地)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입법자들은 갯벌에 바다 물이 드나든다고 하여 이를 ‘바다’(수면)로 분류하였다. 바다[海洋]는 사회통념상 私人的 소유가 될 수 없어 역내의 어민들은 갯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다. 국가는 반사적으로 갯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어민들은 갯벌에 대하여 관습상의 사용·수익권만을 향유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싼 값에 토지를 얻고자 하는 기업자들은 갯벌을 ‘바다’가 아닌 ‘땅’으로 보았다. 토지에 관한 전통 법감정(王土思想)과 외래 법제도(근대식 登記制度)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sup>15)</sup> 정부 당국자들은 기업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여 법률상 바다인 갯벌은 ‘땅’이 되었다. 그러나 법적안정성의 이념에 따른다면, 갯벌은 - 그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 땅으로 취급될 수 없었다. 바다인 갯벌을 ‘땅’으로 처분하라고 최초로 신청한 기업자와 이를 허가한 당국자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용기있는 사람이었다.<sup>16)</sup> 이후 갯벌 내지 습지는 주인 없는 수면(이른바 ‘공유수면’)으로

14) 전북 부안 계화도 출신 최국서(58세)·이화자(54세) 부부의 증언(1998·8·25)이다.

15) 현행 토지정책은 ‘公有地의 悲劇’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산지의 경우, (산림법상) 보전임지전용(제18조)·국유림대부(제75조)·분수림매각(제80조) 제도 등이 남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공원시설을 허용함으로써(제16조) 산지개발을 촉진시켰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제30조)이 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용(제34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침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천구역·소하천구역은 점용허가를 통하여 개발이 촉진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제6조제2호)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심산유곡에 골프장등 체육시설의 건설을 허용한다.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도 공원시설을 허용한다(제5조·제6조).

16) 인류 역사상 가장 뻔뻔스러운 (또는 용기 있는) 최초의 사람은,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인 없는 (神의) 토지에 금을 긋고 “여기는 내 소유의 땅”이라고 선언한 사람이다.

취급되어 매립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깃발을 찢 값으로 매립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이익(매립자잉여)을 챙겼다.

### 第3節 調査方法論

어촌사회의 법의식 조사·연구를 기획하면서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종래 여러 조사에서 그러하였듯이 객관식 설문조사를 이용한 총조사를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주관식 탐문 내지 참여관찰의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를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객관식 총조사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행태의 이면이나 의식의 심층을 살필 수 없다. 으레 30분 남짓한 시간내에 조사자의 의도가 질게 깔린, 모범답안이 뻔히 예측되는, 객관식 설문지로 사회적 역학관계를 밝혀내기란 지난한 일이다. 다른 한편 주관식 탐문과 참여관찰은 의식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법문화 내지 법률생활양식을 심층조사·분석함에 있어서는 조사표본의 중립성보다 객관식 설문으로 짚어낼 수 없는 의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探聞式 내지 參與觀察의 方法을 채택하였다. 그 대신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보자를 선정하는데 몇가지 사항에 유념하였다. 관할 행정청이나 기관 또는 지역단체들의 조언을 들어 마을의 역사나 생산관계 내지 인간관계에 밝다는 제보자들을 찾았다.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반대측 마을이나 집단 또는 당사자를 찾았다. 조사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西海岸과 南海岸의 오지와 낙도 그리고 갈등현장을 찾았다. 동해안은 1997년도 관습조사<sup>17)</sup> 당시 일부 법의식을 탐문하였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구체적인 조사에 있어서는 법을 “반듯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보지 아니하고 “때로 일탈이 가능한” 사실로서 이해하는 法社會學的 方法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특정한 의식과 행태에 이르게 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法史學的

17) 전재경·이종길, 관행·관습법조사연구(6)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한국법제연구원 : 1997년), 참조

方法을 원용하였다. 조사항목은 법의식 일반과 권역별 특수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지역개관에서는 일부 慣習調査도 병행하였다.

### 1. 先行 調査研究

어촌사회의 규범에 대하여서는 인류학적·민속학적 조사가 많다.<sup>18)</sup> 함평만 개발에 대한 조경만(1998)의 연구가 그렇다. 시화호 주변 어민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을 짚어낸 한경구·박순영·주종택·홍성흡(1998)의 인류학적 연구는 갯벌의 매립과 보상을 '사기꾼 없는 사기'로 묘사한다. 서해와 남해 도서 지역의 사회적 관행과 조직들에 대한 연구 중 도서생태계에 대한 문화적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는 영토 혹은 자원의 제한성에 대한 적응상에 집중해 왔다.

예컨대, 어촌공동체의 생산양식상 특수한 '總有' 개념을 사용하여 해조류 채취 및 양식관련 사회적 관행을 설명해 온 박광순의 연구(1981)나, 마찬가지로 이 관행의 공동체적 성격을 논한 최재율(1991), 조경만(1991a, 1992) 등의 연구는 제한된 해조류 채취 및 양식 구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전유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문화적 적응 장치를 말해주는 것들이다.

또한 김세건(1993)은 완도군 청산도 진산리의 연구에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기존의 양식업 등에 결부된 사회적 관행의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김세건의 연구는 결국 과거에는 제한된 도서생태계 내에서 인구집단들에 대해 자원전유의 공동체적 통제를 가하는 관행들이 발전하였으나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자원전유에 있어 사회적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정근식·김준(1993)은 소안도의 사례연구에서 양식어업의 경우 공동어장의 공동체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개별가구의 생산이라는 어촌의 경제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마을 운영이 국가의 행정적 체계와 공동어장을 기반으로 한 어업공동체적 질서에 따르는 2원적 운영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어촌사회의 생태학적 적응

18) 法律文化的 觀點에서 행해진 선행조사 문헌목록에 관하여서는, 전재경·정금식·배승희, '慣習法調査研究(I): 예비조사편' (한국법제연구원 : 1991년), 358~359쪽, 참조

장치로서 작동하는 공동체적 질서가 현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체계인 私的經營 및 국가에서 마을에까지 수직적으로 연계된 일반적 행정체계와 착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이다.

## 2. 調査項目

### 1) 法意識 一般

법의식은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權利意識과 義務意識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脫法意識이나 被害意識도 법의식의 일부이다. 해양성 법문화의 특징을 짚어내기 위하여 전체 조사대상 지역에서 몇가지 항목을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문화개방과 경쟁의 가속화로 공동체의식이 이완되었을 것으로 보고 공동체의식을 살폈고 권리의식을 위주로 물었다. 갯벌에 대한 소유의식과 어업권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출된 공통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 공동체의식
- 소유권의식 : 總有關係를 중심으로
- 漁業權의식 : 어업권의 근거 및 범위를 중심으로
- 入漁權의식 : 관행상 맨손어업등
- 어업분쟁의 배경
- 분쟁해결방식
- 피해의식
- 脫法の 동기 · 正當化事由
- 明認方法
- 法俗 일반

### 2) 圈域別 特殊性

추상적인 법의식의 배경을 이루는 구체적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갈등과 분쟁에 이르게 된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서해안의 경우 입어권 보상문제 내지 생계대책과 관련된 갈등을 살폈고 남해안의 경우 조업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살폈다. 권역별 중점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연안어업자와 근해어업자 사이의 갈등 및 마찰
- 업종별 어업종사자들 사이의 긴장관계
- 수산업법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 환경오염 피해보상문제
-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의 매립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피해의식 및 법감정

### 3. 調査地域 및 調査期間

- 제1차 : 전남 신안 흑산도(다물도·수리·홍도) (1998년 7월 25일~29일)
- 제2차 : 전남 고흥 나로도(외나로도) (1998년 8월 3일~5일)
- 제3차 : 경남 통영항·거제도(구조라) (1998년 8월 8일~9일)
- 제4차 : 경기 화성 시화호지구(마산포·형도·독지리) (1998년 8월 15일~16일)
- 제5차 : 충남 태안 신두리 (1998년 8월 22일~23일)
- 제6차 : 전북 부안 새만금지구(창북·계화도) (1998년 8월 25일~26일)

### 4. 調査·研究方法

#### 1) 法史學的 接近

바닷가 내지 갯벌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들 자연 자원의 所有權 내지 利用權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사유가 아닌 빈지(바닷가)나 매립전의 갯벌을 국유로 보고 있지만 빈지나 갯벌이 언제부터 어떠한 실정법에 의하여 국유임이 선언되었는가 그리고 국가 소유권의 법적 단절이 없었는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설사 바닷가나 갯벌이 명목상 국유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는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동해남부의 채암비나<sup>19)</sup> 미역바위 사례들<sup>20)</sup> 그리고 서해안의 갯벌 생산관계들에서

19) 전재경·이종길 : 121~129

20) 전재경·이종길 : 115~117

관찰되는 바에 따르면 갯바위나 갯벌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실정법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확고부동하지 아니하였다. 소유권 내지 이용권에 관한 어민들의 의식을 탐색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자원에 관한 소유권·이용권 등에 관한 史的 考察이 필수적이다.

특히 갯벌에 대하여서는 단일한 소유권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前近代社會에서는, 토지·산림·원야·하천 등에 대한 각각의 「物」의 성질·효용에 따라, 또 각각의 주체에 따라, 한정된 다른 내용의 권리가 성립되었으며(예컨대, 경지에 대해서는, 甲은 경작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地代 지급의무를 지니며, 乙은 경작자로부터 地代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그리고 이들의 권리는 말하자면 병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소유」로 불리고 있다(예컨대, 지대징수권자는 上級所有權 'Obereigentum' 혹은 直接所有權 'dominium directum'을 지니고, 지대를 지불하는 경작권자는 下級所有權 'Untereigentum' 혹은 利用的 所有權 'dominium utile'을 가진다는 등).<sup>21)</sup> 따라서, 하나의 物 위에 중첩하여 몇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것은 현대의 「私的 所有權」 제도 하에 있어서는 하나의 物件上에서는 전포괄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단 하나의 「소유권」 밖에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특색적이다.

한편, 지대·산림·원야 등에 대해서는 處分の 自由는 제한 내지 부정되고 있었다. 動産(곡물·가축·농구·가재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내용은 부동산에 있어서 보다는 포괄적이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의 한정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민은 자신의 경지에서 수확한 곡물이라도, 자유로이 제분할 수가 없고, 또한 곡물이나 직물 등 갖가지 물건의 매매에 대해서는, 賣主·買主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 제한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현대법의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소유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닌 소유권에 대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제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 자체가 이미 전포괄적인 근대적 사소유권의 사고방식을 전제하는 것으로, 全包括的인 私所有權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사회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사법과 공법을 구별한다는 사고방식은 성립할 여지가 없었으며, 경

21)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岩波新書 A43 : 1967·1990), 64頁



지·산림·하천 등에 대한 소유와 마찬가지로, 그들 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이 본래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sup>22)</sup>

## 2) 法社會學的 接近

近代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질은 그 존재나 내용이 관념적·이론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관습에 기초한 바닷가나 갯바위 또는 갯벌을 둘러싼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서는 근대법적 관념이 그대로 통용되기 어려우며 실정법상의 추상적 선언과 관계 없이 실제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sup>23)</sup> 소유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래적인 의식의 사회적 배경 내지 기반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관념성이 두드러지지 아니하였다. 中世에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소유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권리자가 물건에 대해 현실에 어떠한 지배행위를 하고 있는가(혹은, 하고 있었는가?)와 관련지어 결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축이라든가 곡물 등 주변의 動産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動産에 대한 소유는 소유자가 동산을 현실에서 지배하고 있는 한(즉,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소유자가 현실지배를 잃은 경우에는 한정된 조건하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밖에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sup>24)</sup>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내용은 현실에서 행해져 왔던 사실상의 지배의 내용을 근거로 하며, 따라서 또한 그 침해를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청구도 현실에서 행해 왔던 지배의 사실을 근거로 하며(예컨대, 단순한 차주에 의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제3자가 買主로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기에는 그가 예전부터 그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22) 川島武宜 : 65

23) 韓國의 社會構成體 論爭에 관하여서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 한국사회는 근대 시민사회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중세 封建性과 現代性이 공존한다. 採取經濟로 표상되는 어촌사회는 이러한 양면성이 특히 현저한 곳이다. 이 글에서는, 어패류와 해초류의 生産·利用·勞動關係에 관한 한, 한국의 어촌사회가 前近代社會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24) 川島武宜 : 67

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 사실로부터 분리되어 권리를 주장하여도 법률상 승인되지 않는 것이다. 소유제도의 이러한 특질을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觀念性」과 대비하여, 소유권의 「現實性」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25)</sup>

近代法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존재는 소유권의 내용인 物의 支配行爲라는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승인된다. 그래서 적어도 소유권의 존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항상 일체의 지배행위를 포함하는 전포괄적·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법에 있어서는 所有權이라는 법률상의 「존재할 만한 상황」과 「존재하는 상황」(사실상의 지배행위)은 완전하게 분리되고 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배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권리자는 관념적·논리적으로 판단되는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의 지배행위를 보호하는 - 예컨대, 제3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물건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한다 - 것이 가능(그것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다)하며, 여기에서는 「當爲」와 「存在」의 분리(二律背反)라는 원리가 고도로 관철되고 있다.<sup>26)</sup> 즉 近代法の 所有權은 중세법적 관념과 다르다. 그러나 한국 어촌사회의 소유권은 중세법적 관념에 더 가깝다.

## 5. 調查資料

### 1) 漁民團體 임직원 면담

- 강 연 기 (구조라漁村契長 : 거제)
- 강 영 수 (계화法人漁村契 參事 : 새만금지구)
- 곽 봉 남 (機船權現網水産業協同組合 專務)
- 김 광 수 (近海통발水産業協同組合 指導係長)
- 박 기 성 (흑산水産業協同組合 理事)
- 정 경 균 (機船權現網水産業協同組合 課長)
- 최 규 은 (고포리漁村契長 : 시화호지구)

25) 川島武直 : 68

26) 川島武直 : 69~70

2) 주민단체 대표·활동가 면담

- 박 경 준 (독지3리 里長 : 경기 화성군 송산면)
- 박 판 길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 이 두 희 (마산포 작목반장 : 경기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
- 이 현 민 (부안군농민회 사무국장)
- 최 국 서 (계화회관 대표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 황 현 호 (다물도리 里長 : 전남 신안군 흑산면)

3) 제보자 면담

- 강 상 임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김 동 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 김 명 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 김 병 국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3리)
- 김 소 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 김 영 보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 김 영 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 김 정 록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김 정 옥 (전남 신안군 흑산면 수리)
- 김 종 기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 노 성 현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노 재 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박 경 미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박 동 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 박 병 옥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 이 석 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흥도리)
- 임 인 용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장 남 조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 장 순 애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 장 희 래 (경남 통영시 정량동 1405)
- 정 화 자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 최 규 식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홍 순 재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 홍 철 순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4) 관련 시사자료 및 문헌 조사

- 황갑수, "매립·간척사업으로 인한 위판수수료감소 손해청구" 수산업법  
독자상담 pp. 160~165, 우리바다(1996. 9) 수협중앙회
- 황갑수, "공동어장에서의 관행어업자의 지위(1)" 우리바다(1996. 10)  
pp. 164~169
- 구복어촌계(전북 김제수협), "새만금지구" 갯마을 통신 pp. 54~59,  
우리바다(1996. 10) 수협중앙회
- 황갑수, "공동어장에서의 관행어업자의 지위(2)" 수산업법독자상담 pp.  
160~165, 우리바다(1996. 11) 수협중앙회
- 정의철, "자원관리형어업 : 그물코 크기조정과 자원관리" pp. 96~99,  
우리바다(1998. 3) 수협중앙회
- 정의철, "자원관리형어업 : 혼획·투기실태와 그 대책" pp. 95~97, 우  
리바다 (1998. 4) 수협중앙회
- 정순우·안승준 해제, 古文書集成 三十五 : 거제 구조라리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 1998·5)
- 정의철, "유엔이 권고하는 자원관리형 어업, 어떻게 실천할까" pp. 96~  
99, 우리바다 (1998. 5) 수협중앙회
- 이광남, "위기에 처한 수산업, 그 제도약 방안들" 우리바다논단 pp.  
108~111, 우리바다 (1998. 6) 수협중앙회
- 한경구·박순영·주종택·홍성흡,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문화인류학자들의 현장보고 (솔출판사 : 1998·6)

## 第2章 社會經濟的 背景

특정지역의 의식이나 문화는 상당 부분이 그 곳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번에 조사한 곳들은 자연지리적으로는 낙도와 오지 그리고 분쟁지역에 해당하고 사회구성체상으로는 專業漁村과 半農漁村 그리고 觀光漁村에 해당한다. 이들 어촌사회는 수산정책이나 문화정책의 핵심에서 오랫동안 밀려나 있었다. 분쟁지역들에서는 입법과 행정 사이의 그리고 의식과 규범 사이의 괴리가 현저하고 낙도나 오지에서는 경제적 소득의 증가에 비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규범이 동요하고 있다. 또한 삶의 꿈을 안고 매진하는 젊은이들보다 변모하는 자연환경에 당혹스러워하고 뒤바뀐 생활여건에 좌절하는 熟年들이 더 많다.

### 第1節 悔恨의 섬 : 시화호지구(송산)

#### 1. 마산포

<도움말>

최규은 (남: 51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 147번지  
전화 : 0339 57 1875  
참고사항 : 고포리漁村契長  
이두희 (남: 42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 65번지  
전화 : 0339 57 1874  
참고사항 : 5년간 객지생활 / 마산포 작목반장

시화호 남쪽의 남양만에서 생산되는 굴[남양굴]은 잘고 맛있어서 예로부터 진상용으로 알려졌다. 송산면 고포리 일대는 북쪽이 시화호이고 남쪽이 남양만이다. 마산포로 알려져 있다. 남양만의 교통요지인 마산포는 텔레비전 드라마 "먼동"의 배경지로 세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현재 포구는 흔적만 남아 있고 시화호 내수면이 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다. 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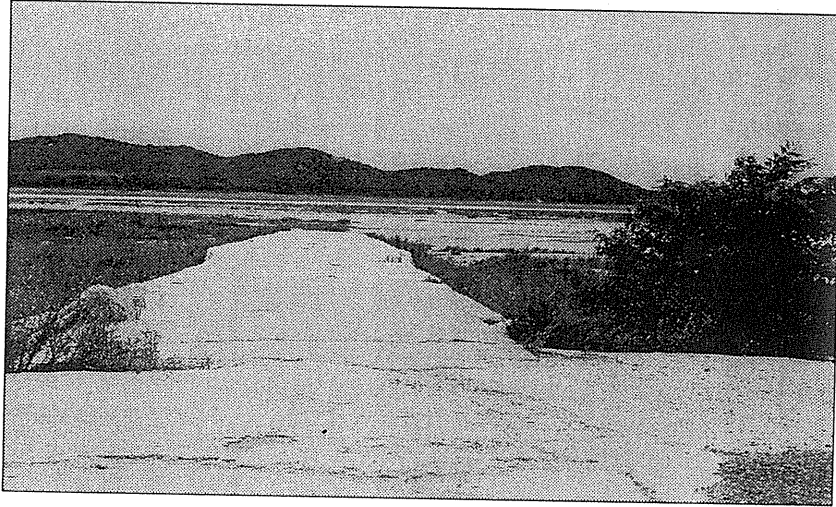
리는 간척사업 당시 인구 1천명 정도이었으나 지금은 140가구에 400명 정도가 산다. 3가구를 빼고는 모두 어민이다. 인구에 비하여 전답이 적었다.<sup>27)</sup>

간척 당시 40호 정도는 땅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어업에만 종사하였다. 선창 가까이 위치한 20여호는 어선어업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가구들은 조개채취를 생업으로 삼았었다. 매립전 1987년 이전에는 부부가 조개채취만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남자가 낙지를 잡으면 1천만원의 소득을 추가하였다. 조개류로서는 맛, 가무락(까만 모시조개), 반지락, 소라 등이 잡혔다. 양식업이 어촌계 사업의 주종을 이루었다. 투석식 석화양식장에서 굴을 땀고 사이 사이에 종패(반지락 새끼)를 사다고 뿌렸다. 어촌계에서는 공동생산·공동채취 방식을 취하였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종래 콩, 수수, 팥, 보리 등을 재배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3할 정도는 딸기를 재배하였다. 그후 반정도의 세대들이 참외재배에 참여하였다. 시화호 간척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산포 주민들은 가구당 1천만원씩의 보상을 받았다. 1980년 경에는 포도재배가 확산되어 소득이 증진되었다. 포도단지는 1990년에 최대분포를 이루었다. 현재에는 밭 면적의 9할 정도(약16만평)가 포도단지이다. 송산포도의 본산지이다. 1996년에 염해사건이 발생하여 포도재배 가구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빨먼지가 많이 일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눈에 들어가는 등의 염해를 입고 있다. 바다풀씨도 날아와 피해를 준다.

27) 마산포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에 관한 상세는, 한경구·박순영·주종택·홍성흡,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인류학자들의 현장보고 (술출판사: 1998), 86~88쪽, 참조. 시화호 매립 사업이전의 사회경제에 대하여서는, 같은 책: 89~107쪽, 참조

▼ 마산포 방파제



## 2. 형도

<도움말>

박 경 준 (남: 50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산200번지  
전화 : 0339 57 2147  
참고사항 : 형도 마을이장  
김 영 보 (남: 65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산200번지  
전화 : 0339 57 0358  
참고사항 : 황해도 용진에서 이주

시화호 가운데 마산포 쪽으로 위치한 형도(독지3리)에 대한 조사자의 인상은 각별하다. 형도는 육로로 갈 수 있지만 접근하기가 몹시 어렵다. 마산포에서 송산면 소재지로 다시 나와 자동차 바퀴가 헛도는,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는, 험로를 따라 어렵사리 형도 입구에 당도하였다.<sup>28)</sup> 시화호 방조제 공사후 육지와 연결된 끈고 길게 뻗은 좁은 길 앞에 섰을

28) 형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상세는, 한경구·박순영·주중택·홍성흠 : 47~51. 참조

때 군데 군데 산을 파헤친 조그만 섬이 한 눈에 들어와서일까 아니면 다른 섬들과 달리 보여서일까, 언뜻 '고도'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 입구에 당도하여 카메라로 마을 전경을 찍으려 하자 원두막 같은 정자에 모여 있던 부녀들이 "왜 사진을 찍느냐"며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다. 이장 집을 찾아 올라가는 길은 가파랐고 시화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반농반어 마을의 풍요로움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비좁아<sup>29)</sup> 밭조차 없는 섬, 관광도 불가능한 섬, 고기잡고 조개캐는 일 말고는 먹고살 길이 막막한 섬, 젊은이가 없는 섬...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느낌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장집에 당도하였다. 몇 사람의 노인과 부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문을 여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한 동안 이 이방인(조사자)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람인가 아니면 유리한 사람인가를 심문하였다.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들은 참 할 말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였다. 그러면서도 異邦人에게 물 한잔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대답을 마칠 무렵, "무엇이 이 섬을 유배지 아닌 유배지로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이 섬과 주민들에게 다시 어떤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였다.

형도 주민들은 이주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고기잡이를 위하여서는 이제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야한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방조제 공사 당시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화호의 오염으로 인하여 현재 내수면 어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고기를 잡아 팔다가 KBS TV에 보도되어 주민들은 언론에도 불만이 많고 이방인들의 출입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당시 기자들은 "시화호의 새를 찍는다"며 불법어로 장면을 촬영하였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대건설측에서 형도의 마을 산을 파서 방조제 선착장을 건설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자 농업진흥공사와 군수 이름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켜주고 20여 마지기의 농토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세월이 지나자 후임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당국에서는 대안으로 어선어업(유자망)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바

29) 행정구역상 독지3리로 명명되는 형도는 마을 가구들이 대부분 하나의 지번(산 200번지 : 外地人所有)을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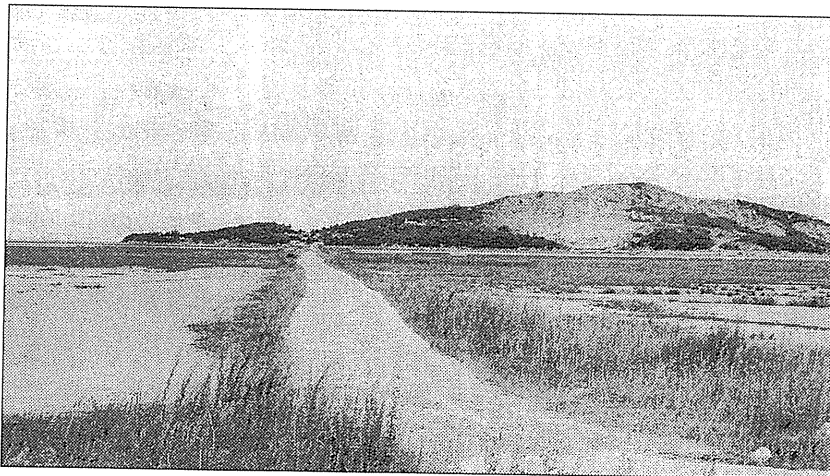


다로 진출할 수 없는 시화호 안의 섬에서 유자망 어선을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도 주민들은 “시화호 물은 정부에서 오염시킨거나 다를 바 없다. 시화호에서 잡은 새우는 일본의 식품기준을 통과하였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한다.

특히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형도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사업자측은 보상과 이주 중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은 “보상은 보상이고 이주는 이주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사업자측이 내건 이주조건은 이주토지(75평) 1등급은 8천6백만원, 2등급은 5천만원 그리고 3등급은 3천만원을 내야한다. 이에 대하여 형도주민들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땅 장사하는 곳인가?”라며 “감정가 아닌 조성가로 토지를 분양하여야 한다”고 반박한다.

10여년 전에 받은 보상금은 -갯벌 면적이 넓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많았지만 - 그간 이주대책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생업수단도 없는 탓으로 그간 생계비로 보상금을 다 썼고, 지금은 관행권(慣習上 入漁權)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벽차다”고 주장한다. “인근에 농경지를 만들어 주고 당장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정부의 매립지 보상정책은 적어도 형도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 형도 입구



### 3. 독지리

<도움말>

김 지 의 (남: 60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리 167-2  
전화 : 0339 57 1656  
참고사항 : 商高卒 / 12년간 객지생활(38歲때 歸漁)  
漁村契長 역임 / 農協理事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 마을은 땅이 없는 영세민들이 많이 산다. 이 마을에서는 매립지 보상을 둘러싸고 자연촌락끼리 다툼이 생기고 조합원(正契員)과 준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sup>30)</sup> 생겨 결국 살인까지 부르는 비극이 빚어졌다.

독지리의 행정구역은 독지1리와 2리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어장도 '비둘기바위'를 기준으로 1리와 2리가 구분되어 있었다. 지선의 우측은 1리 관할이었고 좌측은 2리 관할이었다. 1리는 210ha의 1종 공동어장(현재는 '마을어업'이다)을 보유하고 2리는 208ha의 1종 공동어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촌계는 1리와 2리를 통합하여 1개로 설립·운영되었다. 독지3리는 별도의 어촌계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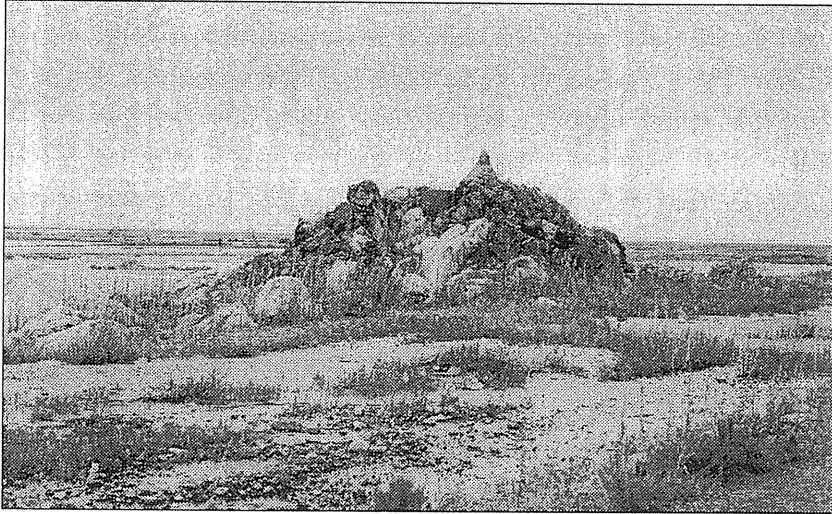
살인사건이 빚어졌던 1989년 당시 독지리 어촌계는 72명의 조합원(正契員)과 40명의 준조합원(準契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화호 간척의 일환으로 1종어장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원(正契員)의 과반수(39명)이 살고 있었던 1리는 이 어장이 자기들 마을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수산업법에서 조합원 위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2리에는 조합원(正契員)이 6명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준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민증을 발급받았고 생산과 어로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보상 이전까지만 해도 입을 틀러싼 분쟁이 없었다. 준계원도 아니면서 실제 채취권을 행사하였던 사람들도 27명(독지3리 : 형도 포함)이나 되었다. 그러나 1종 공동어장 전체가 1리로 넘어가면 2리는 굴 양식장(10ha)에 대하여서만 보상을 받아야

30) 漁村契 조합원과 준조합원 사이의 괴리와 갈등의 해소에 관한 모색으로서는, 調査資料 제2장제1절의4. 마을회의록, 참조

하기 때문에 1리와 2리 주민들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독지리 해변



## 第2節 얼굴 없는 開發 : 새만금지구(부안)

### 1. 창북리

<도움말>

김 병 국 (남: 46세)  
주소 :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3리 474-3  
전화 : 0683 82 1960  
참고사항 : 10년간 서울생활후 歸漁  
새만금맨손어업보상대책위원장(1993.8-94.12) 역임

계화면 소재지인 이 마을은 섬진강 다목적댐 건설 때 임실 주변에서 이주해 온 외지인들이 대거 정착한 이주단지로 평야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협소한 지역에 여러 개의 행정동들이 밀집되어 있다. 토착민들은 이들 이주민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였다. 의식의 차

이가 많은 이들 사이에서는,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도 갈등이 뿌리깊다. 토착민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매립보상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댐 수몰 때 이미 한번 보상받았다는 것이 반대근거이다. 토착민들은 이주민들에게 물도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제1차 매립전에는 해안에서 대략 2km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주로 갯벌에 드나들었다.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의 주민들까지 갯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다. 갯벌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이 해체된 시기는 제2차 매립 때이다. 이 때부터 사람들은 막보기로 돌아서게 되었다. 주민들이 갯벌에 대한 애정을 버렸다는 것은 광활한 갯벌의 주인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갯벌의 매립이 공익을 위한다지만 주인공이 떠난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아니하였다. 인근의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독(방조제)을 헐어버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쯤되면 새만금의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의문스럽다.

▼ 새만금 지구



## 2. 계화도

<도움말>

최국서(남: 58세) · 이화자(여: 54세)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46  
 전화 : 0683 84 3075 / 011 676 0075  
 참고사항 : 계화도 출생 / 맨손어업 종사(지선외)  
 부안군 향토음식지정업소 계화회관 경영

계화도는 연혁적인 이름일 뿐이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의 간척사업으로<sup>31)</sup> 이제 육지가 된 계화도에는 양지·계상·계중·계하·계1리·계2리·계3리·계4리·장금 등 9개의 마을이 있다. 이 마을들은 공동으로 계화법인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다. 계화도에는 약530세대 2,5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섬진강 수몰 이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토착민들은 250세대 정도이다.<sup>32)</sup> 계화도 서쪽은 아직 바다이지만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 종료되면 계화도는 육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화도는 계화리로, 어민은 농민으로 그리고 섬 문화는 육지 문화로 바뀔 것이다. 계화도에서 벌써 사라진 생산양식중에는 이른바 '개맥이'가 있다. 1960년대초 간척사업전까지 계화도·돈지·창북·동진 등지의 어부들은 갯벌 골에 그물을 쳐 조기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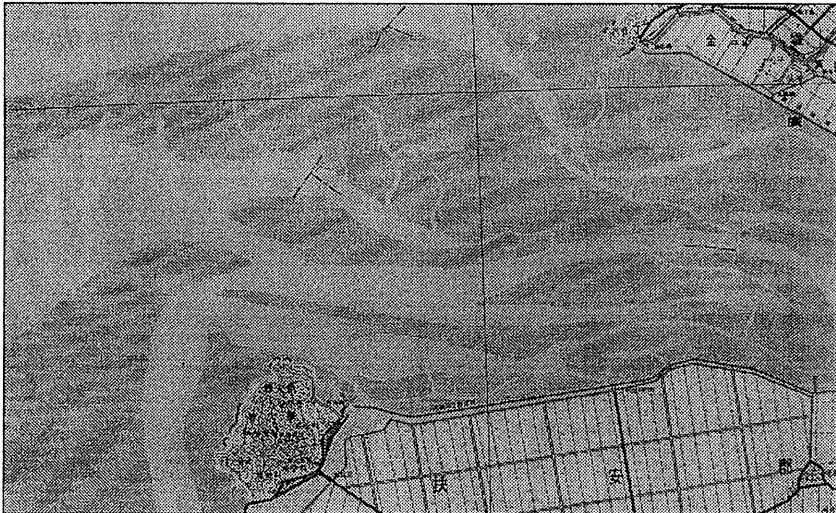
기한내에 관행어업(이른바 '맨손어업': 慣習上 入漁權)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부안군내 어민들은 현재 2차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한 때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1994년 9월 12일에는 대규모의 보상추구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

31) [계화간척약사] 1963년~1968년 : 계화방조제(1호 방조제 9,254m·2호 방조제 3,556m) 완공 : 간척지 3,896ha 조성 → 1974년~1976년 2,741ha 개답조성(1977년부터 영농개시) → 1978년 청호저수지 완공(447ha 농업용수 공급)

32) 계화면 자료(면정보고·1998.8)에 의하면, 인근 면의 마을들이 계화면에 편입되어, 계화도를 포함하여 계화면(49.02km<sup>2</sup> : 농경지 3,286ha·조류지 280ha)에는 5개의 법정리에 2,316호(農家 1,026호·漁家 796호) 7,701명(연평균 4.2% 감소추세)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 文化財로서는 간제선생 유적지(계화리 양지 : 지방기념물 제23호)와 쌍조석간 당상(궁안리 대별 : 지방민속자료 제7호)이 있다.

은 지금 한을 품고 물러나 있다. 집요한 방해공작을 받은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흑색선전이 나돌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지도자들은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토로한다. 현재에는 생산자협회가 조직되어 불안속에 본부를 두고 보상문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종래 주민대책위원회와 달리 법을 개정하여 관행어업을 보상받고자 한다.

▼ 계화도



### 第3節 制度의 死角地帶 : 태안반도(신두리)

<도움말>

최 규 식 (남: 59세)  
주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73번지  
전화 : 0455 672 5413  
참고사항 : 마을이장 / 砂丘內 準農林地 관리인

### 1. 海洋生態系의 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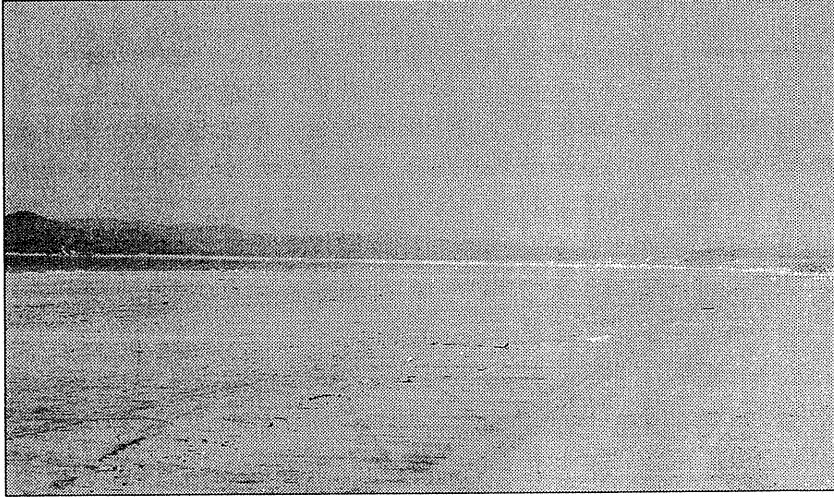
태안반도 서북단에 위치한 신두리(태안군 원북면 소재) 바닷가 일대는 한국 최대의 모래언덕(砂丘)이 자리잡고 있다. 약200정보(60만평내외)에 달하는 이 사구는 자연지리적 내지 해양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사구 아래 4km에 달하는 백사장은 만리포보다 광활하다.

그러나 신두리 사구의 생태계는 조만간 파괴될 전망이다. 현재 사구의 대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내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적 재산가치가 높아졌다.<sup>33)</sup> 준농림지역내에는 '운동휴양지구'(山263-1林)도 자리잡고 있어 (株)한솔등의 사업자들이 콘도미니엄등의 위락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株)백제등의 사업자들이 사구내 땅을 평당 14,000원에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다.<sup>34)</sup>

신두리 사구가 자연생태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신의 단계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근대토지제도의 맹점과 선조들의 단견이 도사리고 있었다. 신두리 사구는 원래 마을[洞有]재산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몇번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구는 개인재산으로 바뀌었다. 산이건 바다건 간에 마을재산은 전통적으로 '총유'로 유지되어 왔지만 서구 근대법상 부동산등기제도는 소유권의 주체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총유'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마을재산들을 마을유지들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지도하였다.

33) 國土利用計劃圖面 만리포059·068·069 : 충남고시 제1995-91호(1995·5·13), 참조

34) 시민단체 生命會議 땅지기팀의 신두리 현지조사(1998·8·18) 보고, 참조



## 2. 名義信託의 濫用

신두리 사구의 등기명의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였다. 천혜의 자연생태계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전체가 매각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유화할 수 없다. 하물며 명의 수탁자에 불과한 등기명의자들이 이를 처분하여 외지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김은 더 더욱 불가하다. 물론 사구의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등기명의자들이 매각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意的 대가는 대저울 7개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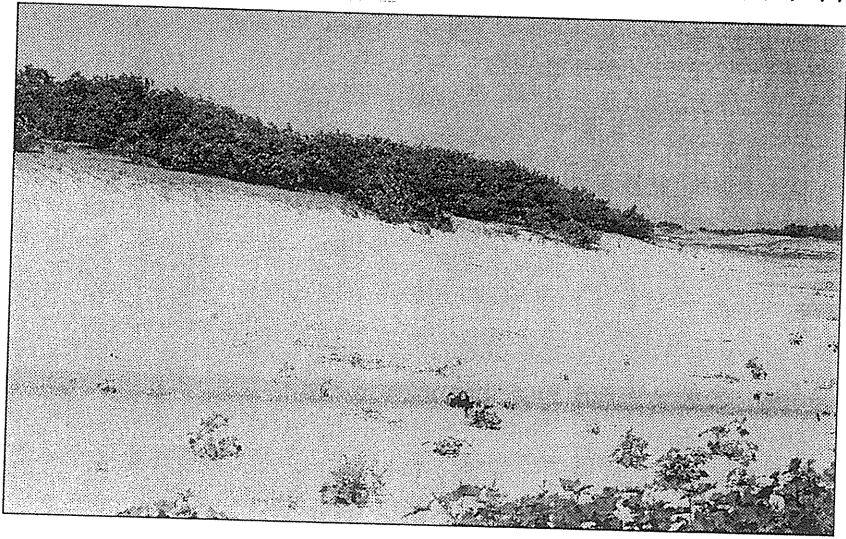
신두리의 선조들은 반별로 대저울 하나씩을 받고 그들의 재산을 개인 소유로 넘겼다. 그 후예들은 본래 그들의 소유였던 땅을 관리해주고 약간의 관리비를 받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사태는 무지와 사기가 연출한 역사의 비극이다. 사구와 백사장 경계에 위치한 바닷가의 땅들도 지적정리 때에는 누락되어 있었지만 - 이 땅은 실제 포락되어 있어 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 1990년경에 이르러 측량을 거쳐 모두 개인명의로 등기되

35) 대담98신두23, 참조



었다. 사구는 매각후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방사업소에서 군데군데 아카시아를 심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가끔씩 소나무를 심었다. 사막에 가까운 모래언덕에 약간의 나무를 심어 이를 농림지 내지 준농림지로 전환시켜준 저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는 불법청산이 필요하다.

▼ 신두리 사구



#### 第4節 土着民의 마을 : 고흥반도(외나로도)

해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하다. 제보자들의 할아버지대 이전에 심어진 나무들이다. 김氏와 노氏들이 외나로도에 입향한 역사는 4백년쯤 되었다. 그 이전에는 馬氏들이 거주하였다고 구전되지만 근거기록이 없다. 해방후 최대 87호까지 살았다. 지금은 30호가 산다. 마을과 어촌계가 각각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洞山이 17정보 있지만 수익성이 없다. 火田의 흔적이 섬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짐승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밭 주변에 돌 달을 쌓았다. 박정희 전대통령 때 산 자락을 개간하여 논·밭을 일구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묵히고 있다. 1년에 두 차례 洞脣를 연다. 동회는 이장이 소집하고 경비지출등에 관하여 의논한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연 단위로 이장에게 보수를 주었다.

<도움말>

김영호 (남: 76세)  
주소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17 -1  
전화 : 0666 33 3980  
참고사항 : 이장 역임 / 상업

### 1. 마을연혁

해방전까지 洞契가 존재하였다. 동계는 이식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동계의 有司는 나이 순으로 맡았다. 계모임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렸다. 대동회의에서는 꾸지람이나 변상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근의 다른 마을들에서는 '덕석몰음'[명석말이]도 행해졌다. 일제 때에는 청년회가 활동하였는데 규칙을 어겼을 경우 '용가무'라는 벌칙을 주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벌칙이다. 마을 사람들도 그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外作'이라는 이름으로 소작이 행해졌다. 현재 노인인 제보자들의 할아버지 때에는 산너머 '예내들'은 하반마을의 소유이었다. 부모대에 이르러 도박등 주색잡기가 성행하여 예내 마을 사람들이 토지소유권을 회복하였다. 植民地期에는 토지소유 질서가 많이 동요되었다. 日帝의 '세보'측량 당시 그 전의 소유권자들이 많이 무시되었다. "내가 차지하겠다"든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나로도(특히 내나로도)내의 명소에는 아직 일본인들의 집터가 남아 있다. 식민기 일본인들은 나로도(신금리 축정마을)를 어업전진 기지로 삼았다. 그들은 상해 등지로 가는 배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엄낭기미'에 대형 저유탱크를 설치하였고 제빙소를 세워 고기를 일본으로 운반하였다. 면소재지에 발전시설도 갖추었다. 마을 노인들은 일제시대의 통치에 대하여 향수를 가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서비스하였다. 일본상점들이 많았다. 일본인 상인들은 경찰제를 실시하였고 자기 상점에 물건이 없으면 쫓아나와서까지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일본인들은 재산등급제를 실시하면서 각호의 등급을 마을에서 정하여 숨겨진 재산을 색출하게 만들었다.

## 2. 生産關係

마을 앞의 작은 섬[목섬]과 등대섬[‘넘여’라고 부른다]은 마을소유이었다가 어촌계 소유로 넘어갔다. 예전에는 어선들이 많았다. 어촌계는 전복 면허지와 반지락 면허지를 관장하고 있다. 전복 값이 떨어져 외지인들이 면허지를 헐 값에 사려고 한다. 1997년에 포자 2천만원어치를 투입하고 생산을 중단하였다. 홍합[합자 또는 담치라고 부른다]도 생산된다. 김을 제일 많이 생산하였고 미역도 켜다. 툇과 가시리[진포]는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특히 가시리는 일제 때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금덩어리로 생각하였다.

예전에는 인근 바다에서 갈치와 조기 등이 번갈아 많이 잡혔다. 주낙배(연승선)는 장어<sup>36)</sup>를 잡았고 유자망은 삼치를 잡았다. 특히 참장어<sup>37)</sup> 활어사업이 활발하였다. 약 25년전부터 어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금년에는 어획량이 더 저조하다. 주민들은 태풍을 기다리기도 한다. 빨 아래 먹이가 뒤집혀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해초생산량도 저조하다. 주민들은 생산량 저조를 바다오염 탓으로 돌린다. 주민들은 바다오염의 원인으로서 오염물질의 유입, FRP선박의 유해성, 배에 칠한 페인트의 분해, 양식장의 약품사용, 낚시떡밥의 남용, 적조 등을 꼽는다. 나로도는 적조피해를 양쪽에서 받는다. 서풍이 불 때는 완도양식장으로부터 그리고 동풍이 불 때는 여천·삼천포·통영 양식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3. 自治 및 儀禮

어선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生業은 나무하기와 해초채취였다. 나무는 여수와 부산 등지에 팔았다. 흉년에는 나무가 돈이 더 되었다. 그러나 연탄이 나온 후에는 해초가 더 나왔다. 海草採取權을 얻기 위하여서는 ‘동네가입’(戶들기)이 필요하다. 호에 들기[入村儀禮] 위하여서는 막걸리 5말을 내야 한다. 분가[저금낸다]한 자녀들도 독립된

36) 장어는 여름에는 얇은 곳에서 잡히고 찬 바람이 불면 깊은 데로 간다. 지금은 장어가 귀하다. 위탁판매를 안한다.

37) 참장어는 장어에 비하여 가시가 많다. 모양은 민물장어와 비슷하다. 주둥이가 뾰족하다.

호로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마을 헛간이나 방을 얻어 살아도 호수에 들었으나 지금은 집이 있어야 호로 친다. 일단 동네가입을 하면 “모든 일에 행사를 같이 한다.” 마을 산(洞山)을 팔면 그 이익을 분배하고 마을 청소도 같이 한다.

토착민들의 묘지(古墓)들은 호화분묘가 아님에도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마을 뒷 산에 독담골이 있다. 이 골에는 여러 기의 ‘독담불’(돌담불)들이 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로 쌓은 묘지이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독담불은 매독에 사람 뼈가 좋다는 소문 때문에 많이 훼손되었다. 당 숲에는 처녀당이 있다. 근자에는 堂祭를 지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때로 아들 없는 사람들이 제주를 자청하였다. 그러면 아들을 댔다. 당제를 모시자고 약속해 놓고 모시지 않으면 큰 해를 받았다. 갯날이 정해지면, 제주는 일반인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 뒷간에 출입한 후에는 꼭 목욕을 하여야 한다. 떡도 남자가 하고 상차리기(노무새)도 남자가 한다. 집집마다 상을 차려 나왔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고인들은 와서 자시라”고 말한다. 임자 없는 기타 귀신들도 와서 먹도록 땅에 짚을 깔고 음식(거례밥)을 부어 놓는다.

▼ 외나로도 예내리



## 第5節 開放의 實驗場 : 흑산도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낙도중의 낙도였던 흑산군도는 근래에 폐속선의 등장과 텔레비전의 보급과 더불어 그리고 관광과 생선회에 대한 수요증가에 힘입은 소득향상으로 인하여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방과 더불어 흑산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의 저서 '오래된 미래'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득의 증가 그리고 외래문화의 직수입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곧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여부이다. 소득증대가 문화적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괴리, 어업 아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결여,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부재가 문화적 갈등의 주요 원인들이다. 젊은이들은 관광객들과 텔레비전을 통해 도시문화를 동경하지만 사회기반과 물적시설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도시로 떠난다. 흑산도에는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끔 귀향(U-turn)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공동체정신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절대 부족하다. 남아 있는 노인들은 옛날이 그림고 현재의 생활양식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sup>38)</sup>

### 1. 多物島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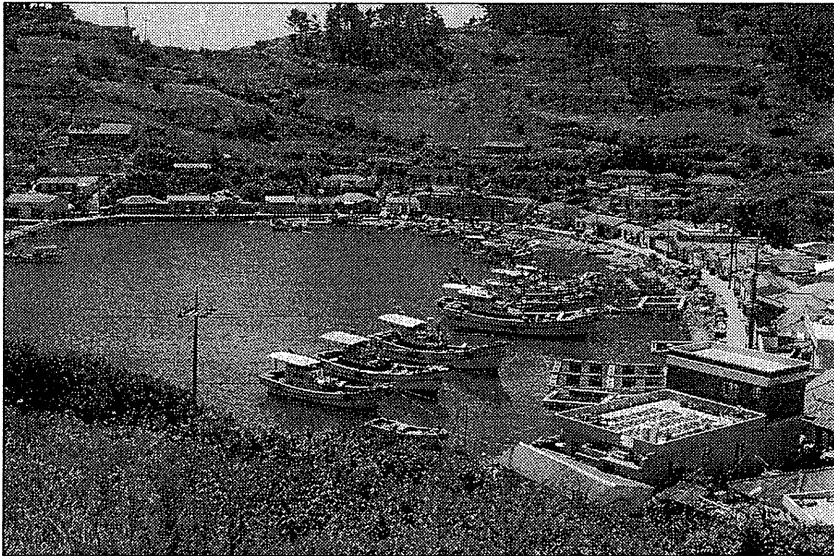
김 동 윤 (남: 45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61번지  
전화 : 0631 246 4011  
참고사항 : 흑산水協 대의원 / 연안어선 경영

1960년대까지만 해도 多·物·島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흑산도 내에서 부촌으로 꼽혔던 多物島리는 변화와 개방의 길목

38) 대담98다물도27, 참조

에서 정체성의 혼돈이 심하게 나타난다. 지금도 공동생산·공동분배라는 전통적인 생산양식을 추구하며 뚝과 같은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식 김·미역의 등장으로 해초의 가격이 하락하고 또 해초수입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과 더불어 그리고 고령층의 증가 및 이주민의 증대에 따라, 공동체의 결속이 해체되고 있다. 공동체정신의 해체는 당집의 퇴락과 전통적인 당제의 중단으로 표상화된다. 기상정보 및 어군탐지기 등의 발달은 외래종교의 확산과 더불어 풍어굿과 같은 전통문화의 쇠퇴를 촉진시켰다. 일부 어민들은 어자원의 고갈과 어업경영의 실패로 떠안게 된 부채에 시달려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함으로써 공동체의 해체를 방관하고 있다. 한편 어민후계자 지정 및 지원금 배정에 있어서의 비리와 같은 행정난맥은 어촌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 다물도 마을앞 포구



## 2. 水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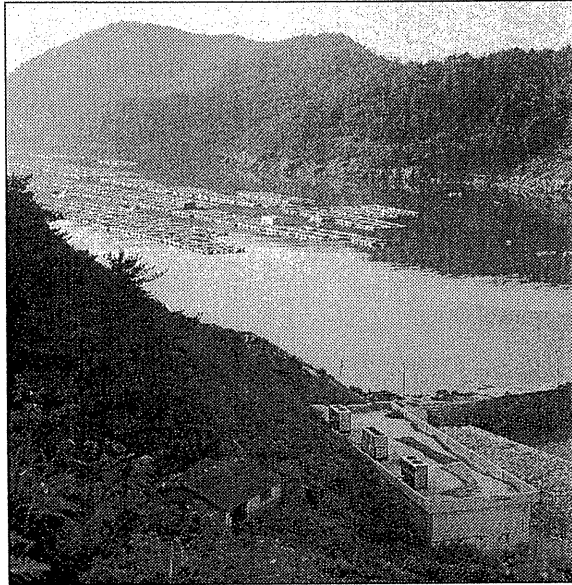
<도 음 팔>

김 정 옥 (남: 68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수리 102번지  
 전화 : 0631 246 2315  
 참고사항 : 마을이장 역임 / 연안어선 경영

다물도와 마주보고 있는 섬마을 수리는 행정구역상 다물도리에 속해 있는 부속섬 '간데대섬'(가운데 대나무 섬 : 中竹島)의 해산물(미역) 채취권을 둘러싸고 1960년대 후반 다물도와 격렬하고 심각한 다툼을 벌였다. 간데대섬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물도리에 속하지만 수리 주민들이 - 구체적으로는 수리 김씨 문중에서 - 간데대섬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미역)에 대하여 관습상 입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朝鮮 正祖代 郎廳 金 理守 할아버지의 공로(딱나무 껍질에 관한 흑산도민들의 부역의 면제)에 감사하는 뜻으로 흑산도에서 증여한 간데대섬(채취권)을 후손들이 관리해 오던 중 1963년의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1종 공동어장내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및 어패류를 마을 어민들이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게 됨으로써 다물도 주민들이 간데대섬의 채취권에 주목하게 되었다.<sup>39)</sup> 재판결과, 수리 김씨 문중은 미역채취권을 확인받았지만 두 마을의 감정대립은 아직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다.

39) 전재경·이종길,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한국법제연구원·1997), 167~171쪽, 참조

▼ 수리 포구



3. 紅 島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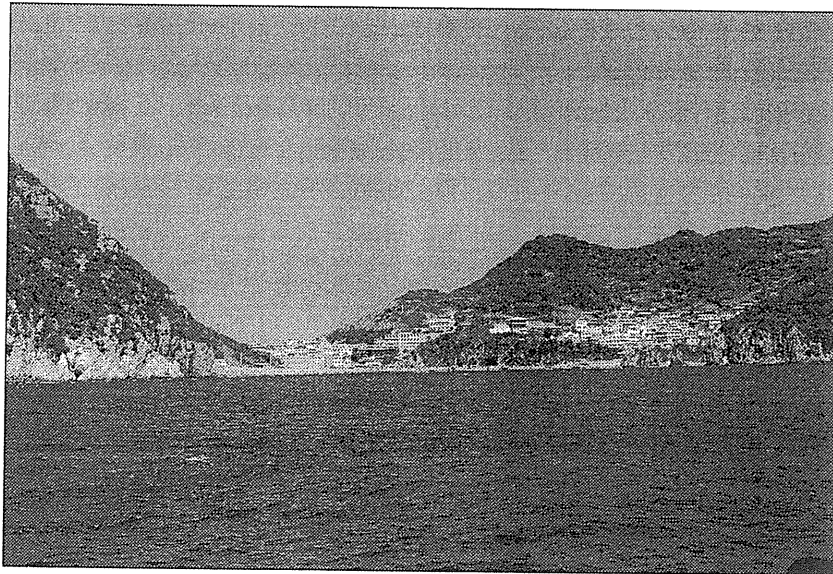
이 재 경 (남: 44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구 165번지  
전화 : 0631 246 3764  
참고사항 : 백제여관 대표 / 관광어선 경영

섬 전체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 풍란의 자생지인 홍도는 조사대상 지역중에서는 가장 먼 곳이지만, 흑산도 본연의 모습을 가장 많이 상실한 섬이다. 겨울철 일부를 제외하고는 목포에서 2시간 30분만에 주파하는 쾌속선으로 연중무휴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과 그 수입으로 인하



여 흥도 주민들은 흑산도에서 본도의 예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개방화되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안내)업, 요식업 내지 숙박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해산물 생산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흥도에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어민은 찾기 힘들다. 흥도에서는 어촌사회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해산물은 뜰 별로 관리·채취되고 다른 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명인방법으로 채취구역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제 그 해산물과 이를 둘러싼 규범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토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객지에서 살다가 귀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토착민이면서도 도시화된 이주민의 성향을 띤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 흥도리 1구



## 第6節 生存競爭의 바다 : 남해어장 (통영 · 거제)

### 1. 통영항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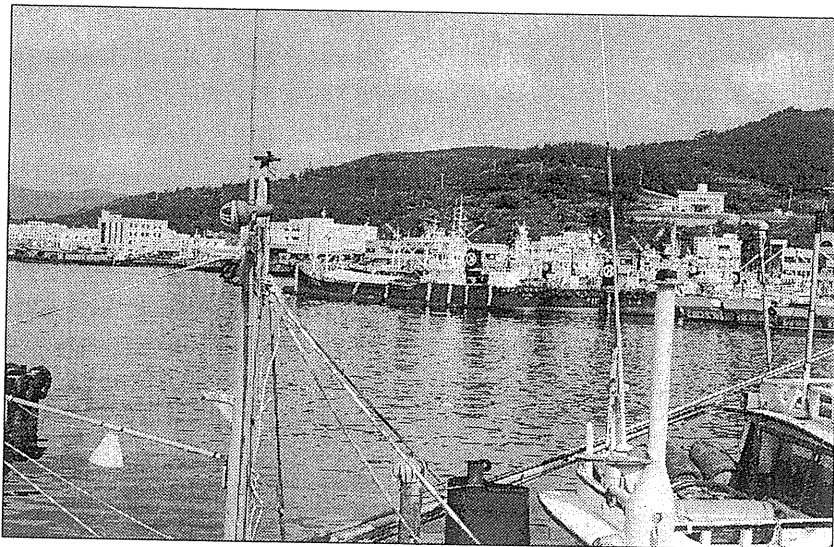
강 평 삼 (통영수산업협동조합 지도과)  
주소 : 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번지  
전화 : 0557 646 1221-4

뚝이 없이 오가는 멸치잡이(권현망) 선단과 한가롭게 정박중인 파란색 고등어잡이(건착망) 배들이 대조를 이루며 바다의 풍경을 지배하는 통영의 항구에서는 생존경쟁의 숨결이 느껴진다. 부두의 역동성은 시장의 활기를 닮았다. 대담과정에서 만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은 남해어장의 이해구조를 골고루 파악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업종별 수협은 남해어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시사하였다. 업종별 수협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하였다.<sup>40)</sup> 통영에서 부딪힌 수산관계 법률문제는 전형적인 어민들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기업형이었다. 즉 어선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개선의견들이 많았다.<sup>41)</sup> 가장 다름이 많은 사안은 경남과 전남 사이의 조업구역 : 경계갈등이었다. 현재의 어업경계선은 외관상 공평한 듯이 보이지만 어업의 역사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적 소산이라고 강변한다. 조합관계자들이 대변하는 어업가들은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남는다면 처벌도 불사하고 어업경영에 몰두하는 인간상을 지니고 있다.

40) 南海岸의 漁業權과 관련된 수산업법상 제도의 변천 및 갈등 현상과 과제에 관하여서는, 調査資料 제1장제3절의1. 操業區域調整 : 멸치잡이를 중심으로, 참조

41) 예컨대, 調査資料 제1장제3절의2. 禁漁期間의 조정, 3. 그물코의 조정 및 4. 船員賃金債權保障法案에 관한 意見, 참조

▼ 통영항



## 2. 구조라리

<도움말>

- 노재경 (남: 71세)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71번지  
전화 : 0558 681 2626  
참고사항 : 마을어장(1960년 - 1971년) 역임
- 임인용 (남: 57세)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409-3  
전화 : 0558 681 1394  
참고사항 : 연안어선(유자망) 경영
- 김정록 (남: 48세)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89번지  
전화 : 0558 681 9543  
참고사항 : 마을어장(1989년 - 1995년) 역임

별신굿<sup>42)</sup> 전승지로 알려져 있는 거제의 舊助羅里는 반관광·반어업의

42) 구조라리는 重要無形文化財 제82-라호인 남해안 별신굿 전승지이다. 남해안별신

마을이다. 옛 날 지명은 項里이다. 구조라는 日帝 때의 명칭이다. 日帝는 옥포 1구를 '助羅'라고 명명하였다.<sup>43)</sup> 서로 붙어 있는 삼정과 수정의 두 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수는 300여호 정도이다. 마을의 어선수는 60척 정도이다. 2톤 내지 5톤 내외의 구획어업선이<sup>44)</sup> 대부분이고 연안어업선도 약간 있다. 정치망과 건어망(멸치) 또는 가두리 양식장 사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있다. 노를 저어서 고기잡던 시절에는 멸치와 갈치가 밋쳤다(풍부하였다). 이고 지고...하여 산 너머로 팔러 다녔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인 을유년과 병술년에 큰 흉년(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옥지로 건너갔다. 섬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사하였다. 해방후에는 전반적으로 어황이 퇴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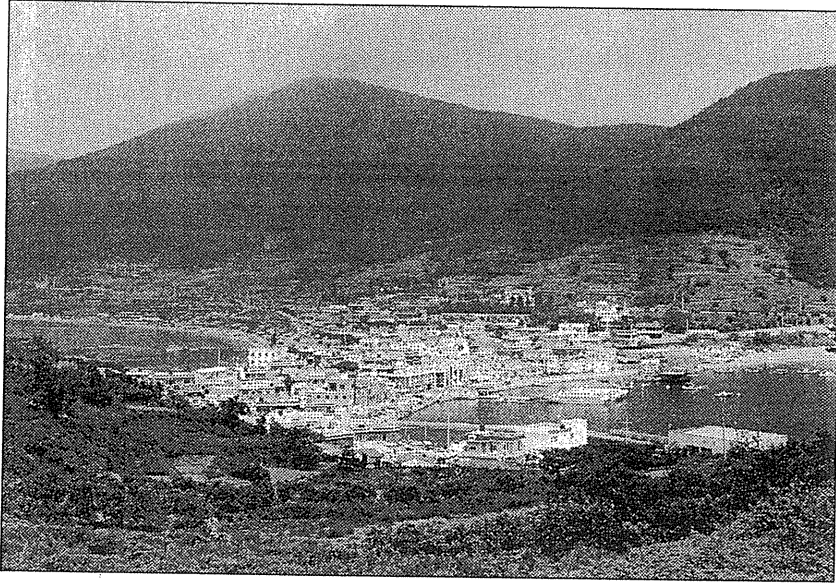
---

굿보존회와 구조라마을청년회는 1998년 8월 15일~16일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구조라 별신굿(마을에서는 '배선굿'이라고도 한다)을 연출하였다. 3년 마다 시행되었던 별신굿에서는 島神에게 빌었다. 노를 저어 어로하던 시절에는 어부들이 많이 죽었다. 이들의 혼백을 위로하였다. 용왕당(당집: 본래부터 돌집이었다. 지붕은 짚으로 이었다)에 제사한다. 무당에게 돈을 준다(상을 쓴다). 굿을 잘못하면 동네가 망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이 없으면 동네 일도 못 보게 하였다. 요즘은 별신굿을 연출할 만한 무당들이 귀하다. 최근의 마지막 굿은 1993년에 있었다. 무당(대모) 김연희(오랜 단골이었다)씨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굿을 못하겠다"고 선고하였다. 앞으로 제사만 지내겠다고 약조하였다. 대모의 제자들이 굿을 전수받았다. 정월 굿판은 마을잔치이었다. 별신굿과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신궐(일명 지동궐)이 있었다.

43) 舊助羅의 사회경제적 구조 및 古文書 현황에 관하여서는, 정순우·안승준 편, 古文書集成 三十五: 巨濟 舊助羅里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4~5쪽 및 14~20쪽, 참조

44) 일정한 수역에서 무동력어선 또는 5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을 말한다. 水産業法 제41조제3항, 참조. 이에 비하여 연안어업은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이다. 水産業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 구조라리



### 1) 사회경제적 변화

구조라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변화가 많았다. 집촌으로 살기가 편찮은 편이었다. 다른 촌락보다 어세다. 그러나 정은 있었다. 객지사람들이 들어와 힘을 못썼다. 인근 농민들이 쌀·나무 등을 가져와 어류와 교환하곤 하였다. 1965년 마을 항구 방파제 공사 때 외부 기술자와 인부들이 많이 들어와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화폐경제가 가속화되었다. 객지사람들은 들어와 돈으로 정을 쌓으려고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심이 점차 야박해졌다. 그 이전에는 품앗이 뿐이었다. 20년 전의 해수욕장 개장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구조라해수욕장은 거제군내 유일한 공설 해수욕장이었다. 남해 상수해수욕장에 비하여 개발이 여의치 않았다. 바닷가에 그늘을 조성하려다 실패하였다. 전통 야당지역의 영향 때문이었다.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관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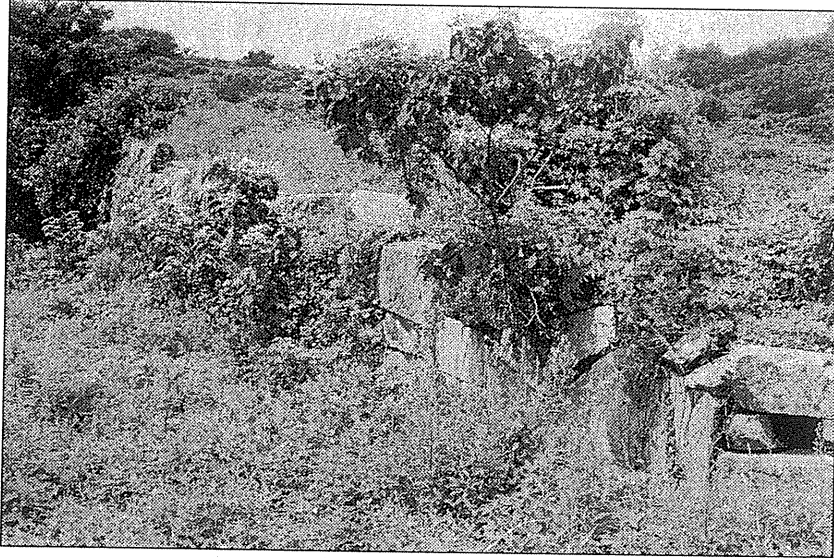
## 2) 마을문화

한국 문화의 뿌리는 생활무속에서 비롯한다. 이는 단순한 샤머니즘과는 구별된다. 종교 다원론에 터잡고 있으며, 타인을 속박하지 아니하고 구속받기도 꺼리는 생활양식을 보인다. 한국의 법률문화는 불교의 문화적 요소(神 - 귀족 - 서민 - 평화 - 남성 - 여성 - 직관)에 유교의 문명적 요소(人間 - 귀족 - 평화 - 남성 - 합리)가 접목되었고 다시 그리스도교의 문명적 요가 추가됨으로써 외래 종교규범과 서구 문명규범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그리스도교는 보편성이 높은 종교문명이지만 한국의 경우 신자 층의 샤머니즘적 요소가 전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구조라에는 오래된 성곽이 존재한다. 성 바깥에는 지금도 시멘트와 돌로 수리한 당집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마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다. 불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동사 옆에 연못(수정·삼정동 경계에 위치한다)을 팠다. 이 연못과 선창가 포구나루 아래 등 마을 곳곳에<sup>45)</sup> 12개의 제단을 차렸다. 제단 부근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대개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단을 기피하였다. 굿하기 전 날 두 곳의 삼거리(벽수거리)에 빨강 흙을 양 쪽에 둔다. 흰 새끼로 금줄을 친다. 소지한다. 벽수는 굿할 때에만 세운다. 짚을 깔고 밥을 해 놓는다. 여러 신을 모셨다: 벽시골 할배(하늘이다)와 벽시골할매(땅이다)·당산할배·용왕할배·담할매 등을 모셨다.

45) 洞堂山(나무) / 연못 / 큰샘 / 당상나무(정자나무 : 선창가거리 : 일제 때 강습소 자리) / 참샘(문혀 버렸다) / 목은밭 / 길옆(탑 할매를 모셨다) / 東삼거리(당상나무 : 현재 연립주택터 : 일제 소학교 자리) / 西삼거리(구조라 초등학교 옆) 등

▼ 구조라 성곽



3) 통합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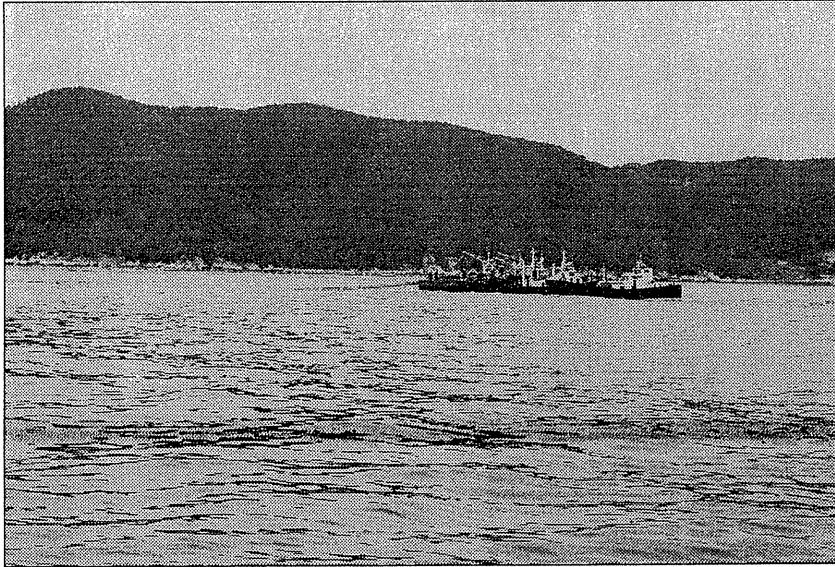
일부 제보자들은 구조라리의 역사청산이 미진하다고 증언한다. 해방후 좌우익 사이에 갈등이 심하였던 시절 거제경찰서 강화병 사찰주입의 주도로 많은 주민들이 고문을 받았다. 보도연맹 소속원들과 친일파를 좌익으로 취급하여 돌로 수장시키기도 하였다. 거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998년 8월 15일에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김관수·김현수·김영수 형제들도 이때 수장당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좌익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였다. 실제 좌익운동가들은 대부분 잔존하였다. 6.25때에는 좌익활동가(빨갱이)들을 남향 끝에서 총살하기도 하였다.

4) 조업방법

멸치잡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1) 후릿배(거르망 : 권현망 : 선단을 이루어 잡는다) (2) 챗배(밤에만 조업한다) (3) 오식어장(정치망 : 아

침에 채포한다) (4) 꼬마겐짜(해변에서 조업한다) 등의 방법이 있다. 후릿배 선단은 5척의 배로 구성된다 : (1) 망쟁이(망꼬맹이)배 1척을 앞 세운다 (2) 중간에 후릿배 2척이 양쪽으로 그물을 끈다 (3) 종선(운반선) 1척과 (4) 이리야(가공선) 1척이 뒤 따른다 (5) 예전에는 망쟁이와 후릿배만으로 조업하였다. 고등어잡이는 꼬도리(겐짜 : 건착)라고 부른다. '불배'(종선)가 앞에서 인도한다. 요즘은 비교적 먼 바다에서 조업한다.

▼ 멸치잡이 선단





### 第3章 漁民의 法意識

어촌사회의 주역은 어민이다. 어촌은 대개 半農·半漁의 구성체를 보이고 계절적에 따라 관광촌으로서의 면모를 띠지만 어촌 사람들의 생래적 본질은 어민이다. 라드브루흐(Radbruch)가 말하는 '法의 人間像'을 원용하자면 水産業法制의 인간상은 분명히 어민이다. 그러한 까닭에 漁民의 法意識이 곧 어촌사회의 법의식이다. 이에 비하여 갯벌을 규율하는 공유수면매립법은 어촌사회와 어민들의 운명을 온통 뒤흔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상은 어민이 아닌 商人〔公企業 내지 財閥〕이다. 20세기 韓國의 어촌사회가 경쟁과 갈등 그리고 좌절의 길목에서 매립·항쟁함은 바로 인간상이 다른 법률들이 동일한 생활권역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민의 인간상이 외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sup>46)</sup> 종래 한국의 어민들은 海洋文化圈과 어울리지 않는 농경문화(예컨대, 갯벌을 매립하여 농토로 사용한다)와 산업문화(예컨대, 갯벌을 매립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한다)의 法律觀들이 각축하는 가운데 그들의 권리·의무를 찾았다. 이질적인 法律文化圈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어민들은 커다란 저항의식 없이 脫法을 감행한다. 이방인들에 被害意識은 때로 저항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 第1節 權利意識

##### 1. 生存意識

어촌사회의 주민들이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주장중에는 '생존권' [補償對策]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sup>47)</sup> 생존권은 실제 생활권과

46) 漁業權에 대하여 土地規範을 준용하는 현행법제가 그 예이다. 1953년의 水産業法(법률제295호) 제24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는 "漁業權은 物權으로 하고 土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하였고, 1990년에 전문개정된 수산업법(법률제4252호) 제15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漁業權은 物權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民法중 土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47) 예컨대, 1994년 6월 22일자 부안군 계획면 계획리 전체주민일동 명의로 작성된 계화도 주민요구사항 또는 1998년 8월 31일자 같은 마을 516 - 11, 장남조氏의

중중 혼용된다. 그러나 양자는 개념구분이 가능하다. 生活權이 인간적·문화적·복지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生存權은 경제적·사회적·생명적 요소가 강하다. 어촌사회의 주민들이 생존권 내지 생활권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sup>48)</sup> 분석하여 보면, 어민들은 생활권보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대체적으로 (1)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을 확보해 달라”는 주장(이는 生業權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는 定住權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주장(이는 環境權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등이 있다.

#### 1) 生業權 : 入漁權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들에서 예외없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대두되는 주장이 바로 생계대책의 보장이다. 간척사업의 영향을 받는 권역내의 어민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영위하던 생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원인자(사업자)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업자가 조성가 아닌 감정가로 땅 장사를 하는 이주대책은 “어민들이 그 땅을 살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고 (매립)보상금은 개인당 실질소득의 2~3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慣習上 入漁權은 생업권의 주요한 실체이다. ‘入漁慣行’이라 함은 마을 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없이 어떠한 마을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 동식물을 채포·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 入漁慣行은 이미 조선어업령 시대부터 인정되어 온 제도로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성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당해 어업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입어관행이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判例

서한, 참조

48) 예컨대,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표출된 어민들의 주장: “새만금 간척공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1994년 4월: 계화리 김병국외) 및 “존경하는 지선어민 안녕하십니까?”(1994년 9월: 새만금협의회), 참조

는 관행에 의한 입어자의 지위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sup>49)</sup> 또한 入漁慣行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sup>50)</sup>

정부정책은 보상대상자들에게 “당분간 먹고 살 고기를 잡아주겠다”고 하지만 어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새로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달라” 즉 “생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산촌 사람들을 해변으로 옮겨 어부로 만든다”(댐지역 수물민 이주대책의 경우)거나, “어부들을 육지로 옮겨 농부로 만든다”(간척사업의 경우)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생업권의 주장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직업보도 또는 유사한 생업여건을 갖춘 곳으로의 이주와 같은 종합대응이 필요하다. 생업권에 관한 어민들의 요구는 권리의식의 표현이라는 외관을 넘어 인간의 존엄가치와 직결된다.

## 2) 定住權

生存意識의 이면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바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욕구이다. 낯선 곳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설레임에 못지 않은 불안감이 있다. 더욱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불안감이 기대감을 앞지른다. 아파트단지에서 떠오르는 달(月)은 해변의 달과 같음에도 다르게 느껴진다. 설사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 도시에서 좌판을 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定住權〕를 보장한다. 종래 어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바로 거주이전권의 침해에 따른 대안이 결여되었다.

어민들은 점차 정주권에 주목하고 있다. 부안 창북리와 계화도의 보상 갈등은 표면상 보상자격·수준등이 돌출되지만 그 이면에는 정주권의 침

49) 大判1963. 3. 28.선고62다882: “입어관행은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가해진 일종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50) 大判 1989. 7. 11선고88다카14250

해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한다. 창북리와 계화도 주민들의 상당수는 섬진강 댐 건설시 수몰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촌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고생하였다. 그런데 그 어촌사회가 다시 농촌사회로 바뀔 운명에 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정체성의 혼돈을 빚고 있다.<sup>51)</sup> 대개의 경우는 직업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갈등과 곤경이 따른다. 대부분의 간척지 매립은 직업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측면에서 정주권을 침해한다. 어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이중의 피해로,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받아들인다.

### 3) 環境權

어업권 갈등 또는 매립지 보상과 관련하여 환경권(건강권·생명권)이 직접 주장된 사례는 없다. 환경단체들의 경우, 갯벌의 매립이 환경가치를 크게 침해한다고 보고, 갯벌매립에 반대하지만, 정작 어민들은 매립에 따른 환경가치의 저하에 커다란 관심이 없다. 어민들의 이러한 의식은 시화호나 새만금 지구에서의 환경운동이 주민운동과 연계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환경권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생존권의 문제로 제기된다. 즉 다수 어민들은 바다오염의 가속화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다.<sup>52)</sup> 이러한 의식은 갯벌생태계 속에서 사는 어민들보다 어선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민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어민들이 스스로 환경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거제도 구조라리의 제보자들은 바다의 가두리양식장과 육지의 배양장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목인하는 당국자들에 대하여서도 불신이 깊다. '기르는 어업' 정책이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더욱 고갈되며(이는 다른 한편 소득저하를 초래한다), 어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흑산도의 경우에도 사려깊은 어민들은 폐그물등의 쓰레기 투기와 유류등의 배출로 인한 해수와 해저의 오염을 걱정한다. 선장들은 국립공원인 홍도 근해에도 바다밑 쓰레기가 많다고 증언하면서 바다오염으로 인한 어자원의 고

51) 대담98창북01-02, 참조

52) 대담98창북15, 참조

갈을 염려한다. 아직 다수의 어민들은 거제 해금강·흑산 홍도등 청정해역의 오염이 환경과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반신반의한다.

## 2. 所有意識·信託意識

현대의 「소유권」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모든 재산에 대해 제1차로 성립하는 지배권 - 「소유권」이라 불리는 - 이 객체에 대한 모든 지배를 포함한다는 全包括的인 權利이다. 라는 것이다. 日本 民法에서는 이것을 「소유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자유로이 그 소유권의 사용, 수익 및 처분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구절로 표현하였고(제206조), 각국의 민법전도 유사한 단어로 같은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예컨대, 프랑스 민법 544조, 독일 민법 903조 등).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요컨대, 소유물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어떠한 행위라도, 법률상 정당시되고, 법률 = 재판상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어촌사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갯벌·갯바위·바닷가에 관한 한, 이러한 근대식 소유권 관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식과 행태들이 실존한다.

### 1) 갯벌

람사르협약(1971·2·2채택/1975·12·21발효)에 의하면, '갯벌'은 '濕地'(wetland)에 속한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습지'에는 천연·인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속적 또는 임시로 물이 정체하거나 흐르는 습지로서 담수·수증기 또는 염수로 이루어진 소택지·습원·토탄지 또는 수역이 포함되며 간조시에 수심 6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제1조). 즉 갯벌은 염수가 계속적으로 드나드는 천연적 수역에 해당한다.

갯벌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불리고 있다. 갯벌은 그 성상 때문에 '빨'이라고 약칭되기도 하며 어패류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빨밭' 또는 '갯밭'이라고도 불리운다. 시화호 인근 마산포 사람들은 갯벌을 '갯바닥'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갯바닥 가야지 . . ."라는 표현을 썼다. 부안의 계화도 사람들은 '빨땅'이라고 부른다. 또 부안의 창북리에서는 '빨바닥'이라고 부른다. 태안의 신두리에서는 마을 앞의 광대한 갯

벌을 '장벌'이라고 부른다. 하여튼 갯벌에는 '들판', '밭' 또는 '땅'이라는 관념들이 내포되어 있다.

어민들은 생업의 터전인 갯벌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여러 갈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서해안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첫째 갈래는 강한 소유의식을 보인다.<sup>53)</sup> 송산의 마산포에서는 갯벌을 '뿔밭'이라고 부르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조개채취가 생업의 대부분이었던 시화호 정도의 부녀들은 갯벌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였다.<sup>54)</sup>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제한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산물들을 채취하였다. 공동생산·공동분배의 전통이 이어져 왔었다.

전라북도 서해안 갯벌에서 볼 수 있는 둘째 갈래는 소유의식이 희박한 유형이다. 새만금사업지구에 포함된 부안 창북리의 제보자는 "갯벌은 내 땅이 아니다"는 주민의식이 많다고 전한다. 소유관념이 희박해진 데에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생산면적과 생산방법이다. 이 지역에서는 갯벌이 광대하고 그 활동반경이 넓었다. 그리고 각자 잡고 싶은 종류만을 잡았다. 공동생산·공동분배의 전통은 없었다. 또 하나는 생산량이다. 인구가 많지 아니하면서도 생산량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장진입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절박성이 크지 않았다. 역사적 요인도 소유의식을 약화시켰다. 박정희 전대통령 당시 시행되었던 1차 간척사업(2차 5개년개발계획) 때 받은 피해의식이 갯벌에 대한 어민들의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는 지적도 있다.<sup>55)</sup>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에 위치한 새만금 지구에서는 지금도 갯벌의 생성과 소멸이 활발하다는 것도<sup>56)</sup> 소유의식 약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셋째 갈래는 소극적 유형의 소유의식이다. 태안반도의 신두리에서는 갯벌을 '장벌'과 같은 식으로 특정

53) "선대의 조상들은 제한 없이 바다에다 생계를 의지하고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해방후 어촌계가 탄생하였으나 그동안 각 행정구역 단위로 통합 및 분리되면서 유명 무실하게 존립하였다"는 독지리 제보자의 증언 : 조사자료 제2장제1절의1. 김지의氏 명의의 탄원서, 참조

54) 대담98형도11, 참조

55) 대담98창북18, 참조

56) 대담98계획08·09, 참조

하여 공시하고 약간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도 갯벌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지 않다.<sup>57)</sup> 그들은 갯벌을 마을에서 사용·수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갯벌이 바로 마을의 공동재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sup>58)</sup> 생산이나 채취는 개인별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해변이 아직 자연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해수욕장이 비공식적으로 개설될 정도로 외부와의 교통이 두절되어 있다. 갯벌매립이나 보상과 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초래할 계기가 없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 우선 이 지역은 해변이면서도 오지이다. 반도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어선들이 접안할 만한 지형이 없다. 주변지형의 대부분이 모래밭이고 갯벌은 부분 부분 산재한다. 인구밀도도 낮다. 생산물량이 풍부하지 아니하다. 굴 양식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내농을 만한 물산이 귀하였다. 어촌계와 같은 조직도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 2) 갯바위 : 미역바위 · 독살

동해남부 해안과 달리 서해안과 남해안 어촌에는 미역바위(藪巖)와 같은 갯바위에 대한 개인소유 의식이 없다. 그 대신 집단소유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갯바위에서의 해물·해초 채취권의 거래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법인)어촌계라는 '집단' 단위로 이루어진다. 어민들은 갯바위가 국가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 바위에서의 채취가 국가로부터의 은혜(은전)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자연자원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濱賣 즉 '경매 방식에 의한 패류와 해초 채취권의 양도'(이를 어민들은 '行使契約'이라고 부른다)를 말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서해남부 흑산도에서는 집단소유 의식에 대한 역사적 예외로서 개인소유 의식이 인지된다. 다물도에 딸린 간데대섬(中竹島) 분쟁사례는<sup>59)</sup> 갯

57) 대담98신두08·09, 참조

58) 신두리 바닷가에 위치한 60만평 정도의 모래언덕(砂丘)을 마을재산으로 의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마을주민들의 總有였던 이 모래언덕은 共有地로登記되었다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私有地로 변하여 외지인들에게 넘어갔다.

59) 대담98다물도07, 참조

바위에 대한 집단[마을]소유 의식과 개인[金氏門中]소유 의식 간의 충돌로 이해된다. 흑산 수리의 김씨문중이 간데대섬의 미역 채취권을 행사하고 다른 해물(김·전복·우뭇가사리등)의 채취권은 다물도에서 행사하는 절충적 관행은 서해안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간데대섬은 이를 미역바위(藨巖)로 보는 한 여전히 '사유'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병존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복합적' 소유관계라고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60)</sup>

서해중부 태안반도의 의항리(개목)外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독살(어살)도 갯바위의 집단소유 의식에 대한 예외이다. 독살 또는 어살은 바다물이 드나드는 갯바위 자락에 바위나 돌맹이로 울타리를 둘러 놓고 밀물 때 들어 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 원시적 물고기 채취방법이다.<sup>61)</sup> 민속학자 주강현의 현장조사보고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독살은 (법인)어촌계가 아닌 개인들에 의하여 소유·관리되고 있다.<sup>62)</sup> 서해안의 독살(어살)은 동해남부의 미역바위(곽암)와 더불어 갯바위를 둘러싼 집단소유 의식에 대한 예외로서 개인소유 의식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이다.

거제 구조라리는 1962년까지 즉 1953년의 수산업법이 1963년 개정되어 어촌계가 조직되기 전까지 미역물주(藨主) 제도를 운용하였다. 공동생산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곽주' 1~2명이 해산물 채취를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종래에는 해안을 어촌계원 숫자(250명)대로 분할하였다. 분할방법은 추첨이었다. 계원들이 다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안에 따라 풍흉이 달라 추첨방식이 불편하였다. 현재 구조라 어촌계원은 모두 68명이다. 공동생산·공동운영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촌계 정관상 수협조합원만이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구조라에서는 미역바위와 같은 갯바위에 대한 개인소유가 인정된 역사가 없다. 어촌계원들은 현재에도 채취권(행사계약)을 경매에 붙임으로써 즉 수익권을 행사함으로써 -이것이 합법적인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總有에 가까운 집단소유 의식을 보이고 있다.

60) 대담98다물도08, 참조

61) 대담98신두20, 참조

62) 대담98신두16, 참조



3) 바닷가 : 개 · 모래톱 · 사구

‘바닷가’는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線’의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사회통념상으로는 바다半 · 땅半인 약간의 ‘面’이 존재한다. 실정법은 이 ‘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유관계를 따지고 있다. 1990년의 수산업법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9호). 1961년의 공유수면관리법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濱地’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2항). 결국 ‘바닷가’와 ‘빈지’는 근거법이 다를 뿐 동일한 개념이다. 빈지를 한글로 옮긴다면 ‘갯가’<sup>63)</sup>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닷가 · 갯가 · 빈지는 모두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64)</sup> 이하에서는 ‘바닷가’를 갯가와 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공유수면관리법은 국유인 ‘빈지’를 공유수면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제1항). 그러나 ‘국유인 빈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유로 등록된 빈지도 없고 국유빈지를 등록한 公簿도 없다. 한편 사유인 빈지 또한 없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빈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지에 해당하지 빈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 빈지를 국유로 규정하고 싶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숨겨진 의도에도 불구하고 - 빈지(바닷가 · 갯가)는 실정법상 국유도 사유도 아닌 관습법상 ‘民有’<sup>65)</sup>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63) ‘개’의 사전적 의미는 “강 ·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으로 정의되지만, 사회통념상 ‘개’는 갯마을 · 갯바람 · 갯마을 등의 용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닷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태안의 신두리에 있는 ‘안 개(개)’는 “마을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린다.

64) 바닷가(濱地)에 대한 용어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동해남부의 감포 지방에서는 바닷가를 ‘물씨밖’으로 지칭한다.

65) 이른바 共同所有의 한 형태로 회자되는 ‘總有’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民有’라는 개념을 쓰고자 한다. 근대식 토지제도에서 국가는 ‘總有’ 개념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또 일단의 영리한 사람들은 등기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總有’ 재산을 ‘個人’ 소유로 돌리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總有 개념을 무너뜨렸다. ‘總有’란 과거세대로부터의 유산이었다. 未來世代의 所有財産을 표상하는 개념으로서 ‘民有’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현재세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자연자원은 이를 ‘民有財産’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닷가는 無主의 - 미래세대가 소유하는 - 땅이다. 요컨대, 바닷가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 물 밑의 갯바위를 제외한 - 바닷물이 드나들지 아니하면서 사유도 국유도 아닌 땅 - 개, 모래톱, 사구와 같은 民有財産들이 산재한다. 그렇다면 어촌사회의 주민들은 이러한 민유재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태안 신두리 바닷가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반주민들은 용도가 불확실한 - 현재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 '바닷가'를 구태여 '누구 누구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의 손자 때까지 같은 모습의 바닷가가 존재하기를 바랄 뿐이다.<sup>66)</sup> 이것이 그들의 선택가치이다. 그들은 바닷가를 지킬 뿐 처분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식은 소유의식이라기 보다 信託意識에 가깝다. 바닷가가 국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나마 과거로부터 또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미래로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탁의식은 소유의식에 밀려 오래전에 소진되어 버렸다. 최근에 이르러 개발이익이 토착민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현상에 직면하면서 신탁의식은 실낱 같은 숨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이름을 빙자한 현재세대의 이해집단들은 제도의 맹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처분권을 남김 없이 행사하였다. 이해집단들은 오래전에 사기혐의가 농후한 방법으로 신두리의 거대한 모래언덕을 사유화시켰고 바닷가의 자투리 땅마저도 남김없이 등기하였다.<sup>67)</sup> 적어도 신두리에는 법률상 의미에서의 '바닷가'(濱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民有財産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아니하다.

### 3. 利用意識

#### 1) 漁業權

해초류나 조개류 등을 중심으로 하는 入漁權과 달리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하는 漁業權에 있어서는 소유의식보다 이용의식이 두드러진다. 배

66) 대담98신두08·대담98신두12, 참조

67) 대담98신두03, 참조

를 타고 해양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의식은 육지 가까이 위치한 갯벌이나 갯바위 그리고 바닷가(濱地)에서 관찰되는 어민들의 의식과 다르다. 바다 한 가운데(海洋)에서 조업하는 어민(漁船漁民)들은 바다가 생업의 터전이라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바다에 대한 애착은 '채취'어민들에 비하여 떨어진다. 어선어민들에게 있어 가족과 동료들을 삼킨 바다는 일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조업하는 장소는 계절과 물때에 따라 세월에 따라 늘 변한다. 즉 채취어민들에 비하여 어선어민들은 '場所性'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선어민들에게 있어 바다는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 정복의 대상이었고 이용의 대상이었다.

어선어민들이 보유하는 어업권은 어선어업의 실체와 어민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수산업법과 같은 실정법은 어업권을 어선어민들이 전통적으로 보유하는 생래적 권리로 파악하기 보다 허가어업(제41조)과 같이 반사적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한다.<sup>68)</sup> 채취어민의 입어권과 달리 어선어민의 어업권이 반사적 이익이라면 어업권은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용의 질서는 소유의 질서만큼 강하지 않다. 당사자가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권은 침해당하기 십상이다. 통영·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어장에서 전남과 경남 사이에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됨은 어업권에 대한 어민들의 의식과 직결되어 있다. 어업권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이용권에 머무르는 한, "먼저 잡는 사람이 입자"라는 의식을 떨치기 어려우며 규제당국의 단속 또한 어려울 것이다.

## 2) 海邊享有權

길이 열린 곳이면 아무 곳이나 차를 몰고 갈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캠핑·낚시·사냥을 즐길 수 있다. 곳에 따라서는 약간의 입장료나 청소비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그들의 뜰(전원)이나 산야를 이방인들께 내주는 셈이다. 산야나 전원을 누릴 수 있는 고유한 권리는 경제적 가치로 주민들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될 수 없을까?

68) 수산업법(제8조)이 채취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어업'을 '반사적 이익'의 성향을 띤 면허어업으로 규정함은 관습상 어민들의 自然資源權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서 유래하는 田園享有權(countryside right)논리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유와 이익을 법적 권리로 환원시키고 있다. 전원향유권은 게르만법에서 말하는 下級所有權(Un-terreigentum)<sup>69)</sup>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의 경우, 해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입어로 같은 것을 내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해변은 대부분 낚시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고흥의 외나로도 주민들은 한 때 오염방지를 명분으로 섬에 드나드는 낚시꾼들을 통제하였다지만<sup>70)</sup>,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외지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어민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던 막연한 권리 - 종래에는 이를 '텃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 개념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를테면 海邊享有權(seaside right)의 맹아라고 볼 수도 있다.

외나로도 주민들 중에는 육지(연륙교)와 통하는 산너머 도로를 뚫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겉으로는 "화장실 1개 짓는데 5백만원이 든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조도 없다. 개발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사람을 받을 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약수터 꼭대기까지 차가 들어가는 것을 봤느냐?"고 되묻는 이면에는 "마을 또는 개인 소득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포장도로가 개통되어 외지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심이 자리잡고 있다.

#### 4. 去來意識

##### 1) 採取權讓渡 : 濱賣 · 獨商 · 行使契約

어촌계 내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관할하는 종전의 제1종 공동어장 즉 현재의 마을공동어장의 어업권(마을어업권)은 다른 어업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전할 수 없고(수산업법 제18조제1항), 임대할 수도 없으며(동법 제33조),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동법 제32조제1항). 이 금지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9) 下級所有權에 관하여서는, 本文 제1장제3절 4의 1) 法史學的 接近, 참조

70) 대담98외나로23, 참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다(동법 제95조). 그러나 이러한 금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아니한다. 마을어업권은 종종 濱賣, 獨商 또는 行使契約이라는 형식으로 1년 내지 2년의 기간 동안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sup>71)</sup>

· 흑산 홍도의 주민들은 '독상'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빈매를 행하고 있다. 다수 주민들은 이러한 채취권(행사계약)의 양도가 실정법에 배치된다는 사실조차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 구조라 어촌계원들도 협업이 힘들기 때문에 부인이 해녀인 계원과 마을어업,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장에 대한 행사계약을 맺어 행사료를 받아 조합출자에 편입시키거나 개인별 공제에 넣거나 총회에서 배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도는 대부분 경매방식을 취한다. 물론 남해안의 경우에는 동해안과 달리 채취권이 외지의 상회등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원중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실정법상의 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 제보자에 따라서는 채취권의 양도를 매매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구조라의 제보자중에는 어촌계가 연간 '행사료'를 받고 어패류(해삼·성게·전복) 및 해초류(미역·우무·톳)의 채취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바다를 판다"〔濱賣〕라고 표현한다.<sup>72)</sup> 빈매가 실정법상 不法이라고

71)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의 사례는 경제적 관계가 채취관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곳은 일찍이 어패류 채취를 나잡업자가 주도해 왔고 근래에는 이 형태의 경제관계만이 남아 있다. 해안구역은 마을공동체의 점유로 되어 있으나 마을공동체는 어패류채취의 권리를 나잡업자에게 불하하고 이 업자는 다시 해녀들을 고용하여 채취를 행한다. 업자들은 마을공동체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해녀들과는 채취물을 나눈다. 이는 단순한 형태지만 고용-임노동 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채취영역과 임금, 기타 운송 및 관리 등에 대한 자본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제적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동고리의 채취경제를 파악할 때는 이 관계를 중시해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요는 나잡업자가 투여한 자본에서 회수하려는 이윤에 대한 기대가 단기적이고 착취적인 채취경제를 자극하고 있을 것이며, 채취물의 양에 따른 분배 체계 아래 놓인 해녀들은 보다 많은 분배량을 위해 이 단기적이고 착취적인 채취경제 속에서 다시 조업을 강화하고 기술과 채취 수단들을 강화할 것이다.(조경만, 1995)

72) 연안어선(유자망)을 경영하는 임인용氏(57세 : 舊助羅里 409-3)의 증언(1998·

하더라도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어민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바다팔기'〔濱賣〕가 실정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違法性〕을 잘 모른다. 다음에 해초 가격의 하락등으로 빈매로 인하여 계원들에게 돌아오는 구체적 이익이 사소하다. 대개의 경우 동네경비 확보가 고작이다. 어민들의 표현대로 "바다는 작고 마을은 크다." 결과적으로 어촌계원들은 빈매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2) 觀 光

혹산 흥도나 거제 구조라의 경우, 관광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실제 관광(안내)업〔운송·유람·선상음식판매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래서 때로는 허가받은 관광사업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당국의 단속을 받기도 한다.<sup>73)</sup> 소형선박을 이용한 해상관광이나 해물판매등의 행위는 안전이나 위생등에서 상당한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관광(안내)업의 제한에 대한 어촌주민들의 태도는 단속에 별로 유념하지 않는다. 단속의 손길이 먼 탓도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다른 한편 제도권의 사업 형태만으로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용량도 제한되어 있다. 독과점에 따른 폐단도 따른다. 현지주민들의 관광(안내)업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들은 돈을 벌어 좋고 관광객들은 친절하고 편리해서 좋아한다. 현지주민들은 그들의 자연자원을 팔아 외지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며 관광객들은 현지주민들의 사업행위가 실정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 第2節 義務意識

### 1. 두 레 : 공동채취

마을어업은 수산업법상 이전이나 임대차 또는 타인지배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동생산·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노동의 형태는

8·8), 참조

73) 대담98흥도22, 참조

전통사회에서의 두레와 같은 모습을 취한다. 마을이나 어촌계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공동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공동노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공동분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흑산 다물도와 수리에서는 과거나 현재 모두 공동노동의 의무가 잘 지켜진다. 갯밭에 갈 때에는 동참을 권하는 '옛소리'를 하였다. 고흥의 외나로도도 공동노동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홍도는 흑산군도에 속하지만 다른 섬과 달리 생산물에 따라 공동노동의 의무를 달리한다. 미역 채취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동노동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전복등의 채취에 있어서는 '獨商'이라는 이름으로 濱賣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동노동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sup>74)</sup> 불참이 곧 경제적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홍도주민들의 경우, 공동채취에 종사하여 얻는 수입보다 관광(안내)업에 종사하여 얻는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공동노동은 힘도 더 든다. 남해의 섬과 달리 육지의 시화호지구나 태안반도 그리고 새만금지구 등지에서는 개인별로 패류나 해초를 개인별로 채취한다.

## 2. 秩序維持

어촌의 규범은 농촌의 그것보다 엄하다.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대체적으로 농촌의 그것보다 각박하였기 때문이다. 흑산 다물도에서는 개방이 가속화되기 전까지 마을의 풍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탈자들에게 징치를 가하였다. 수범자들은 戶(해물채취권을 의미한다)를 박탈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마을공동체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였다. 특히 물(食水)관리 질서는 엄격하였다. 흑산 홍도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어덩구석'골에 있는 샘은 유일한 식수원이면서도 썰물 때만 물을 길 수 있었기 때문에 물관리 규칙이 각별하였다. 각 반(뚝)은 뚝장(금장)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관할에 속하는 해안을 관리할 의무를 졌다.

인류학자 조경만의 조사보고(1998)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두리의 갯벌생태계에서의 주요 생업은 자연산 굴의 채취와 갯지렁이 포획이다. 이 중 굴은 어촌계에서 일괄 관리하며, 이에 대한 자치적인 규

74) 대담98홍도12-13, 참조

약이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 주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공동체적으로 수행하여 남획을 막고 자원획득의 평등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어촌계장과 서기, 그리고 10가구당 1인씩의 간사가 어촌계를 운영하며 이들이 신입계원들에게 가입금을 받고, 매일매일 조별로 가능한 채취량을 통제한다. 그 이상 채취하는 것은 다음에 채취할 자원의 고갈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지나친 개별 이익 추구가 다른 이들의 손실을 안겨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원보전과 채취의 지속이 실현된다.

거제 구조라의 마을자치는 역사가 깊다.<sup>75)</sup> 일제 이전부터 마을에 여러 명의 洞頭員으로 구성된 洞會를 운영하였다. 모임은 주로 洞舍에서 가졌다. 회장(회람)을 돌려 참석여부를 물었고 도장을 받았다. 동회의 지시와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어촌계의 옛날 명칭은 欸조契였다. 欸조계는 동두원들이 관리하였다. 주민들의 공동채취는 없었다. 미역의 경우, 해녀들이 채취하여 분배하였다. 마을들끼리 특히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 경계시비가 많았다. 洞山은 1960년대까지 이장 개인명으로 등기하였다. 해수욕장을 개설할 때에는 13개반이 공동으로 물 밑의 돌을 치웠다.

### 3. 共同納 : 入戶

어촌사회의 주민들은 마을재정을 꾸리기 위하여 일종의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戶들기(入戶) 또는 동네가입이 그것이다. 해산물 채취가 행해졌던 곳에서는 예외 없이 호들이기 시행되었다. 이는 入村儀禮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입호는 住民權 취득요건이다. 홍도나 다물도에서는 입호하여야만 '뚝'에 배속되었다. 고흥의 외나로도에서는 입호를 '동네가입'이라고 부른다. 흑산 다물도에는 半戶도 존재하였다.<sup>76)</sup> 반호는 해물채취시 반짓미만을 배당받았다. 마을에 살지만 남의 방에 세들어 살거나 입회비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반호로 간주하였다. 일제시대에는 반호를 隱戶라고도 불렀다.

75) 이하,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71번지 노재경氏(71세)의 증언(1998·8·9), 참조

76) 대담98다물도14, 참조



요즘은 입호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현저하게 퇴색하였다. 당사자가 채취할 능력이 없다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입호비가 높기 때문에 해물을 채취해서 이를 충당할 수가 없다. 옛날에는 미역이 아주 비쌌기 때문에 호에 한번씩 들려고 해도 힘들었다. 몹이 적어지니까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입호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간에는 호에 든 만큼 돈을 못뽑기 때문에 신규입촌자들도 입호에 별 관심이 없다. 이제 입호는 점차 역사적 절차로 사라지고 있다. 입호는 사회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던 시대의 산물이었다.

### 第3節 脫法意識

#### 1. 不法漁撈

다수의 어민들은, 거제 구조라의 제보자들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어업면허 내지 어업허가를 벗어나는 어로행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들은 “고기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게 죄인가?”라고 반문한다. 따라서 당국에서도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분야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남해어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신규면허(허가)는 불가하지만, 한 철만 벌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sup>77)</sup>, 철따라 어업의 종류를 바꿀 수 있고 당사자 상호간 업종의 교체도 가능하다.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은 반납분을 활용하기도 한다. 어민들이 ‘불법’어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삼중망(‘산마이’)이나 소형저인망(‘고대구리’) 정도에 불과하다. 남해안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거의 없어졌지만, 흑산도 근해에서는 마을에 따라 아직도 소형저인망 어업이 행해지고 있다.<sup>78)</sup>

#### 2. 境界侵犯

새만금지구의 경우 경계조정이 늘 시비의 대상이었다. 인근 4개군(군

77)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4계절 모두 어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로는 날씨·물때(조금·사리)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실제 조업일수는 연 4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

78) 대담98다물도28, 참조

산·옥구·김제·부안)에서 수역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하지만 어민들은 “郡勢가 세어야 땅을 뺏어온다”고 믿었다.<sup>79)</sup> 지선의 정의가 다양한 것도 갈등의 씨앗이었다. 육지로부터 3마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경우 옥구군의 지선은 몇 십미터에 그친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과거 금산군을 충청남도로 붙여놓고 연도와 어청도를 전라북도에 붙였다. 연도는 충청도 서천 앞이고 어청도는 보령 앞이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해역이 넓어졌다.

어민들이 면허(허가)나 조업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불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동종경쟁자에 의한 고발(내부자고발)이 단속관청에 제출될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때에는 감추어져 있던 실정법의 규제기능이 발휘된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 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증가하고 그 결과 당사자들이 벌금을 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구조라 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 3. 環境汚染

이른바 ‘기르는 어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가두리양식장(축양장)과 배양장(해변에 위치)은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면서도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은폐된 해양오염원이다. 행정당국이나 사업자 모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 거제 구조라리의 경우, 배양장 때문에 1995년 주민들과 거제시가 다투었다.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고기들은 뿌려주는 사료의 1/3도 못먹는다. 먹고 남은 사료들은 모두 물 밑에 침전된다. 남해안의 배양장들은 한결 같이 절경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배양장에서 투여하는 고기용 약품으로 인하여 바다 밑의 돌 색깔이 시커멓게 변한다. 인근 바다 밑에는 오염물질 퇴적층이 두텁게 깔려 있다. 해초들이 없어지고 기형어가 발견된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멍게·해삼·굴 등이 살지 못한다. 어민들은 배양장 주변의 바다가 일부 죽었다고 증언한다.<sup>80)</sup>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종 사업자들의

79) 대담98계화24, 참조

행위를 방치하기도 한다.

## 第4節 被害意識

### 1. 法執行 不信

實學者 안정복은 관리들의 뇌물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 “음식을 빼앗아 먹고 뇌물을 요구하는 습관은 진실로 오늘날의 고질화된 폐단이다. 하급관리[軍校·吏胥·面任]들에게는 항상 주의시키는 한편 금지법령[禁條]을 분명하게 하여 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處罪] 한다. 그리고 민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변의 魚鹽이나 산속의 꿀(蜂蜜) 및 과실류는 일체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의 주민들은 어업권 내지 입어권을 관장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공복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자가 되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한다. 흑산 다물도 어민들은 쾌속선의 다물도 경유 건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들은 아래에서부터 건의하면 민원을 묵살하곤 한다”고 털어 놓는다. 흑산 홍도의 주민들은 “마을 돈의 상당 부분이 행정관리들 접대에 지출된다”고 불평한다. 마을회의 때 “많이 지출하였다”는 의심이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홍도에서는 “이장 한 번 하면 부자된다”는 속설이 나돈다.

고흥 외나로도도의 주민들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법집행에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불만의 골자이다. 증언에 따르면<sup>81)</sup>, 일부 공무원들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면 민원인의 신원을 꼬치 꼬치 확인한다. 민원의 상대방이 강하다 싶으면 거꾸로 민원인을 되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나빠진다. 불필요하게 오라·가라고 하여 신고하는 쪽만 괴롭다. 오지의 응급환자를 어선으로 수송하는 이른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고<sup>82)</sup>, 공직을 사칭하고 다니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sup>83)</sup> 때

80)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89번지 김정록氏(48세)의 증언(1998·8·9), 참조

81) 대담98외나로05, 참조

82) 대담98외나로20, 참조

문에 이러한 불신은 더욱 증폭된다.

거제 구조라리의 제보자들은 법에 변칙이 횡행하고 정치에 지조가 없다고 비판한다<sup>84)</sup>: “수신도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니 . . . 모두 거짓말을 한다. 말만 번드르르하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개인 감정을 앞세운다. 이승만 전대통령의 김구·여운형·조봉암 선생 축출 사례를 보라. 정신개조가 시급하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국법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탈당사태는 지조부재의 결과이고 변칙이다. 위정자들부터 법질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는 피땀의 결과이다. IMF사태는 역대정권의 빛이다. 외채가 많은 나라는 머지 않아 채권국에 종속될 것이다. 일본에 예속되었던 역사적 경험과 무엇이 다른가 . . .” 법질서에 관한 주민들의 성토는 끝을 모른다.

거제 구조라리의 제보자들은 적조보상에 관하여서도 문제를 제기한다.<sup>85)</sup> 수온증가와 바다오염으로 발생하는 적조(독수대)는, 어민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적조에 대한 보상체계는 농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아니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적조로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가 죽으면 정부에서 억대까지 보상해 준다. 일반 주민들은 바다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오염자들에 대하여 후하게 보상하는 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 2. 强者의 利益 : 조업구역·지선

통영의 업종별 수협 의 최대현안은 해상에 그어놓은 어업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이다. 수협관계자들은 경계선이 관례에 따라 설정되어기 때문에 직선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예전에는 통영 어선들이 군산 앞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조업상 분쟁이 있어 입건도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사자들은 “고기가 없어 고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전북까지 가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들은 “입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sup>86)</sup>

83) 대담98외나로06, 참조

84)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71번지 노재경氏(71세)의 증언(1998·8·9), 참조

85)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89번지 김정록氏(48세)의 증언(1998·8·9), 참조

86) 대담98통영01, 참조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조업구역을 통합시켜달라. 이것이 우리의 숙원사업이다. 같이 조업을 하면 이 선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립지리원의 해석에 따르면, 해상경계표시는 경계선이 아니므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 행정지도상으로 보면 경계표시가 중간에 꺾여 있다. 해경은 이것을 가지고 단속한다.<sup>87)</sup> 이러한 법집행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거제 구조라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마을어장 구역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구조라항(1종어항이다) 안에는 모든 면허권이 금지되는 결과 예전에는 1종 공동어장(마을공동어장)으로 허가가 났던 곳조차 입어가 금지되고 있다. 현재 (불법)관행으로 입어하고 있다. 어민들은 불법관행이 합법화되기를 바란다. 구조라해수욕장내에서도 마을공동어장이 불가하다. 마을어장 구역이 점차 협소해져 어민들의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 3. 移住民排斥

이주민들에 대한 토착민들의 배타감정은 연혁이 깊다. 부안의 계화도 인근은 이주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의 감정대립이 심하다.<sup>88)</sup>朴正희 전대통령 당시 섬진강 지구 수몰민들이 많이 이주해 왔을 때 해변을 많이 이용하였던 이유는 처음부터 좋은 토질이 아니었던 땅을 시험대상으로 사용할 의도도 있었다. 논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갯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벼를 심어도 5년 동안은 다 죽었다. 지금도 모내기하면 죽는 데가 많다. 이주민 보상이라고 해서 토지와 집을 내주었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웠다. 지역민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였다. 자기들은 황금어장을 잃어버린 데다 보상도 못받았고 이주민들이 득세해서 농경지를 사고 하여 갈등이 많았다.

87) 대담98통영03, 참조

88) 대담98창북02, 참조

## 第5節 漁民의 法實踐

### 1. 權利의 主張

#### 1) 漁業權 및 入漁權 補償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된 현행법제를 살펴보면, 농근법(농촌근대화촉진법) 및 공유수면 매립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간척매립사업 중 어업피해손실보상에 관한 절차 등은 공토법(공공용지및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토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는 면허, 허가,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액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토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현재, 어업피해보상시 보상액 산출방법은 관련법규에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생산량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 (1) 시화호 사례

화성의 마산포 주민들은 시화호 간척으로 가구당 1천만원씩의 보상을 받았다. 매립전에는 조개채취로 가구당 연간 5백만 정도의 기본소득을 올렸고 낙지잡이로 1천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을 올렸음에 비추어 "(굴 양식업에 대한) 1천만원 내외의 보상이 최고 2년치의 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바다 생활이 어느 일면 지겨웠고 관광객들에게 '거지'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매립보상에 도장을 찍었다"는 어민들은 그러나 지금은 보상합의를 후회하고 있다. 그들은 간척 당시 공장이 생기면 새 일자리를 얻게 되고 "가구당 3천평의 간척농토를 푼다"는 유언비어에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사로잡혔다고 덧붙인다.

마산포 주민들은 현재 다투중인 관행보상 소송에서<sup>89)</sup> 300만원 내지

89) 시화호 인근 13개 어촌계중 2개만 관행보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심리가 진행중이다. 사업자측은 3개월분의 생계대책비(주민 1인당 26만3천원씩)를

500만원 정도씩의 보상을 기대한다. 여기에서 '관행보상'이란 전통적인 조개채취 즉 관습상 입어권에 대한 보상을 뜻한다. 매립사업자인 수자원 공사는 생계대책비 지급 당시 '주거생활 대책비 각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조건을 달았다. 그 내용은 "이후 관행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업자측은 이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각서를 쓰지 않았나?"고 반문하면서 관행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각서의 의미를 몰랐으며 "억울하다. 사기가 아니냐?"고 항변한다. "채취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는 '자연 뺨'에 대한 보상(관행어업 즉 慣習上入漁權 보상)만으로도 마산포 쪽의 양식업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았다"고 주장한다.

매립대책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갯벌을 빨리 막아서 갯벌채취면적에 상응하는 농경지를 분할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시화방조제 넘어 전곡리로 이주시켜 달라는 것이다. 인근 오이도 주민들에 대하여서는 생계대책이 곤란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안산 이주단지에 좌판(5평씩)을 분양하였었다. 안산시 사동어촌계의 경우에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중의 보상을 받았다는 시비도 있다.

마산포 사람들은 아직 농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어촌계 지도자들은 한시보상이 아닌 영구보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정보상과 아울러 무상이주 내지 농지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내심 원상회복을 바라기도 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마산포에서는 포도생산 등으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제보자들은 "주민의 절대다수가 사체를 얻어 보상금을 되돌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농토대환보다 시화방조제를 제거하고 갯벌을 되살리기를 바란다"고 호언한다. 그들은 시화방조제를 허물면 10년 안에 어패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 (2) 새만금 사례

부안의 계화도·창북리 등지에서는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 기공되면서 보상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가장

---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행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은 보상자격의 확인과 기준이었다. 이른바 관습상 입어권으로서 맨손어업<sup>90)</sup>신고증(포패증 : 유효기간 1년)을 발부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각 어촌계 사무실에는 매일 50여명씩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촌계원들의 경우에는 보상자격의 확인이 용이하였지만 계원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자격확인 업무는 자연촌락 단위와 어촌계 단위로 나뉘어 이장과 어촌계장이 주도하였고 관내 군부대에 어민들의 출입현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sup>91)</sup>

당시 전북 도지사는 1991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때까지 포패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서만 보상한다고 발표하였고 농림수산부는 “1991년 10월 22일(公有水面埋立免許告示日)까지의 신고자에 대하여서도 보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군청 수산과 직원들은 도의 방침을 알면서도 10월 22일까지 신고를 접수하였다.<sup>92)</sup>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커다란 갈등과 혼선을 빚었음에도 아직 미결이다. 당시 검찰청에서는 “신고에 부정이 있다”며 어촌계장들을 수사하였고 도 수산과장과 일부 어촌계장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sup>93)</sup>

보상기준(금액)도 말썽이 많았다. 당국에서는 평가를 거쳐 보상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군산대학(김중래 교수)팀에게 용역을 맡겼다. 용역팀은 맨손어업자들이 어촌계에 채취물을 판매한 실적을 중심으로 평균소득을

90) 여기에서 '맨손어업'이라 함은 특별한 漁具나 漁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호미나 갈퀴와 같은 간단한 도구나 맨 손으로 갯벌에서 조개류나 낙지 등을 잡는 채취방법을 말한다. 水産業法上으로는 慣習上 入漁權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을 흔히 '慣行補償'이라고 지칭한다.

91) 대담98계화01, 참조

92) 부안군청에서 일선 마을에 시달한 '無申告實際맨손漁業者選定方針'에 의하면, 보상대상자(적격자)는 “1991년 7월 21일 현재 해당 부락 세대별 주민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중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지역내의 무신고자(1991년 10월 22일 이후 맨손어업신고자·새만금 간척사업 지구외 신고자 포함)로서 실제 맨손어업을 한 자(군인·학생 및 타 직업종사자는 제외)”를 말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상대상자들은 신청서에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조업사실 확인서'와 함께 마을단위 또는 어촌계 단위 '맨손어업 보상대상자 선정위원회'(5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93) 대담98계화02, 참조



추산하였다. 1차 보상은 1군이 1,030만원, 2군이 800만원, 3군이 600만원, 4군이 320만원 순으로 이루어졌다. 1차 보상에서 제외된 10월 22일까지의 신고자들은 각처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보상과 관련된 계화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포패업에 대하여 특별보상을 실시하고 생활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sup>94)</sup> (1) 계화지역은 1963년 간척 공사이래 다른 지역과 달리 보상대책이 없었음을 특별보상의 근거로 한다.<sup>95)</sup> (2) 포패업 보상액은 1년치 생활비밖에 안되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생활대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생활권의 내용을 이룬다. (3) 이주보다는 영구적으로 이 지역에서 살고 싶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지채권 형식으로 농지를 분배해 달라는 것[農地補償]이 '생존권'[定住權에 해당한다]의 내용을 이룬다.

1994년 강현욱 당시 전북지사는 (1) 특별보상 요구에 대하여 “맨손어업은 개인별·지선별 조업실적을 감안하여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며 조업구역이 넓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보상액 평가에 충분히 반영,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용역완료후 보상금 지급시 예산범위내에서 맨손어업자에게 우선 보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생존권 요구에 대하여서는 갯벌(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동시행령 제45조, 동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립으로 인한 피해 農漁家は 조성농지 분배시 1순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sup>96)</sup>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1995년 10월 27일 농림수산부장관은 계화리 김영선외 411명에서 보낸 민원서 회신에서 “(1) 무신고 맨손어업 및 어선어업 보상에 대한 민원사항은 동 사업의 보상을 담당할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고 (2) 간척농지는 사업이 준공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3) 어업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94) 계화면 계화리 전체주민 명의로 작성된 계화도 주민 요구사항(1994.6.22), 참조

95) 박정희 前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갯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갯벌(公有水面) 매립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부안 계화도의 경우에도 1963년 간척사업 때에는 보상이나 대토가 없었다. 界火面 계화리 86번지 박관길氏(63세) 증언(1998·8·25), 참조

96) 계화면 계화리 516번지 11호 장남조氏의 서면증언(1998년 8월 31일자)에 첨부된 기록, 참조

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sup>97)</sup> 이는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한 셈이다.

1997년 봄부터 당국에서는 제외신고자들에 대하여 240만원씩의 생계 구호대책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지침〔漁業補償對象者 選定推進〕에 의하면, 당국에서는 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일인 1991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1년 7월 22일 이전부터 1997년 4월 15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폐업지역내에서 연중 60일 이상 무어업 종사자 및 既보상(개인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세대별 3개월의 주거대책비와 시설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면의 경우 1997년 4월 15일 보상대상자 신청공고후 1차로 988건(무신고 591건·무면허 197건·무허가 200건)을 선정하고 1997년 10월 7일 재조사 지시에 의하여 마을단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중심으로 2차로 460건을 선정(신청자중 현재 소송중이거나 미종사자는 대부분 철회)하여 1998년 4월 15일 새만금사업소 직원과 현지 합동조사로 보상대상자를 확정지었다.<sup>98)</sup>

### (3) 불공정 사례

監査院의 지적에 따르면, 1991년 12월 14일부터 1998년 5월 31일 까지 사이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어업권 등 9,356건 총 보상금 420,192백만원 상당의 보상업무 처리함에 있어, (1)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을 한 후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간척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권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물건과 보상액을 확정하고 보상을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2) 1991. 8. 13. 위 사업중 간척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어업권 등 보상은 전라북도에 각각 위임하여 같은 해 11. 28.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면서 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액을 확정하지 아

97) 농림수산부, 민)용수 51070-186(1995·10·27), 민원서에 대한 회신, 참조

98) 界火面, 面政報告書(1998년 8월), 20쪽, 참조.

니하고 17,230백만원 상당의 보상금 예산만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 어업권 등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전라북도에서는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확정전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 1979. 12. 31. 부터 수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척사업 등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된 85건의 부관부 면허어업권자에 대하여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손실보상 협약을 체결한 것을 그대로 승인한 후에, 별표 1 “연도별 보상금 예산배정 및 부족현황”과 같이 전라북도가 요구한 연도별 보상금 소요예산의 1.27% 내지 49.2%만 배정하여 어업권별로 최고 4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99)

한편 보상금을 확정하면서는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물건을 확정된 후 보상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1992. 7. 4.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보상대상 8,950건을 1994. 8월 기준가격으로 우선 보상평가를 의뢰한 후 1994. 8. 14. 납품된 위 용역결과에 따라 1995. 7. 24. 예야 보상대상과 보상금을 확정된 후 추가피해대상으로 선정된 406건을 1997. 4월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1996. 5. 23. 2차 평가용역을 체결하여 별표 2 “용역평가시점 차이로 인한 보상액 차이명세”와 같이 김양식의 경우 단위면적(1ha)당 손실보상액이 형평에 어긋나게 산출되게 되었는데 그대로 승인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부관부 면허 어업권 보상금 32,631,840천원 상당을 지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확정 및 지급이 지연되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14차례에 걸친 어업보상관련 민원을 야기시켰다.

1988. 2. 1. 새만금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99) 附款附 漁業을 둘러싼 분쟁 및 同免許의 無效性에 관하여서는, 調査資料 제2장제 2절 附款附 漁業權 분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료(95고충2235,3153간척사업어업 피해보상등), 참조

해 3. 18. 위 사업지구내의 제반신규설권행위를 억제하도록 요청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위 사업지구내의 제반허가 및 면허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할 때에는 어업면허 및 허가 처분권자에게 어업면허뿐만 아니라 어업허가도 억제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전라북도지사가 1991. 8. 26. 군산시장의 3개 군수에게 「새만금간척사업 지구내에서의 조업금지 조건부이외는 어업허가를 억제하고 보상목적의 어업허가, 신고수리는 금지」하도록 지시할 때까지 위 시장, 군수들은 별표 3 “어선어업허가 처분기간별 어선보상현황”과 같이 아무 조건없이 1991. 1. 1.부터 같은 해 8. 26.까지 8개월 동안에 208척의 어선을 신규어업허가하거나 선적항을 사업지구내로 변경허가함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위 선박들이 보상기준일인 1991. 10. 22.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인정하여 위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업시키는데 따른 어업보상금 9,632,428천원을 지급하도록 승인요청한 것을 그대로 승인·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사업비를 아끼지 못하게 되었는데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업무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sup>100)</sup>

## 2) 公示 : 뚝·삼들기

흑산군도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뚝’은 법인어촌계가 등장하기 이전의 자연어촌계의 일종으로서 채취구역 또는 그 표시를 의미하였다. 흑산항도에서 관찰되는 ‘뚝’표시는 아주 희귀한 明認方法이다. 해물채취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취구역을 분할하는 것은 어느 어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항도에서는 해안의 바위에 구체적인 도형(원형의 하얀색 점)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뚝의 표시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관리주체는 매년 순환한다. 예컨대, 흑산본도 사리의 경우에는 마을에 4개의 뚝이 있는데 금년에 동리뚝이 1구역에서, 서리뚝이 2구역에서, 남리뚝이 3구역에서, 그리고 북리뚝이 4구역에서 채취하였다면, 내년에는 서리뚝이 1구역에서, 남리뚝이 2구역에서, 북리뚝이 3구역에서 그리고 동리뚝이 4구역에서 채취한다.

100) 監査院, “주의사항 6 : 漁業權 보상업무 처리부적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추진실태’(감사원 : 1998·9), 참조

고흥의 외나로도에서는 산림관리와 관련된 명인방법으로서 '쌘틀기'가 행해졌다.<sup>101)</sup> 쌘틀기는 현재 노인들의 선대들이 젊었을 때(19세기로 추산된다) 자기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쌘틀기를 하면 산을 덩어리 채 이관하였다. 제보자들은 쌘틀기를 구전으로만 기억하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다.

### 3) 入島稅

관광지 또는 위락지에서 주차료 겸 오물청소료 조로 받는 몇 천원의 돈은 입장료금 내지 입도세라고 볼 수 있다. 고흥 외나로도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외지인들에게 3천원의 입도세를 받는데 외지인들의 항의로 기자, 경찰, 군청에서 찾아와 "근거 없이 왜 돈을 받느냐"고 힐문한다. 주민들은 "쏟아지는 쓰레기를 해결할 길이 없어 돈을 받는다"고 말한다. 당국자들은 "말썽 없이 하라"며 묵인하고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도세를 더 주는 사람들도 있다.

## 2. 義務의 履行

### 1) 資源保全 : 갯따기 · 슈아주기 · 禁漁

갯바위가 발달한 섬에서는 -밭에 김을 매듯이- 사람에게 유익한 해물들이 잘 자라도록 전통적으로 갯따기를 실시하였다. 흑산 다물도에서는 주로 봄철에 갯따기를 실시하였다. 쇠붙이로 바위를 긁어 굴통이나 지충과 같은 잡초·이끼들을 제거하였다. 전 해변을 매년 실시하기 보다는 구역을 나누어서 부분 부분 갯바위를 딱았다. 제보자들은 해방후 몇차례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홍도에서도 갯따기와 슈아주기를 병행하였다. 해초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근년에는 갯따기가 사라졌다.

부안 창북리의 제보자는 다수 주민들의 생태 내지 환경의식이 빈곤하다고 증언한다.<sup>102)</sup> 같은 지적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은 보상금을 달라는 권리주장에 비하여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의식이 약하다. 결과적으로

101)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17-1 김영호씨(76세)의 증언(1998·8·4), 참조

102) 대담98창북15, 참조

씨고기(치어)와 새끼조개까지 잡는 일이 많다. 일정기간 일정어종의 못 잡게 하는 '禁漁'는 중요한 자원보전 수단이다.

구조라의 제보자들은 "어업면허(허가)를 주더라도 작은 고기를 잡지 말도록 그물크기를 철저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행정당국의 지침이 잘 안 지켜진다고 안타까워 한다. 고기가 잘 안 잡혀 작은 고기까지 잡는 경향도 있다. 결국 그물코의 크기에 대하여서는 자율통제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준을 벗어나는 그물의 제조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은다 : "불법어구를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어 놓고 쓰지만 말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 2) 汚染統制

고흥 외나로도외 주민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에게 오물수거료를 받으면서 그들 스스로는 일부라고 할지라도 해변에 생활하수를 그대로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어촌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친하지 않는 상품들을 소비한 결과 발생하는 쓰레기나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를 실제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바닷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실정법상 불법일지라도 해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다. 소각잔재는 대부분 바닷가나 갯바위에 방치된다.

해양에서의 오염통제는 어민들 뿐만 아니라 해양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종래에는 폐유의 방출이나 선박 쓰레기의 배출들이 문제되었으나 지금은 폐그물과 폐어구들의 투기가 바다 밑 오염의 주범이다. 대부분의 어선들은 오염물질의 투기에 둔감하다. 환경의식이 있는 어부들은 청정해역인 흥도 근해에도 바다 밑이 쓰레기 투성이라고 걱정한다. 특히 불법어구로 조업하는 어선들은 단속선이 나타나면 그물등을 버리고 달아난다. 폐그물은 물고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린다.<sup>103)</sup>

103)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82번지 김완식氏(48세)의 증언(1998·7·26).  
참조

3) 相隣關係 : 境界維持

(1) 마을어업

거제 구조라에서는 해초의 가격이 좋았던 시절 채취권 분쟁이 빈발하였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채조계(어촌계)끼리의 분쟁이 많았다. 일운면 와현리 관할에 속하는 외도 옆에 있는 '동섬'분쟁은 대표적 사례이다. 동섬의 채취권을 두고 일제 때부터 1960년대까지 와현리와 구조라리가 서로 관할을 다투었다. 와현리는 일제 때 동섬의 주민이었던 강학구씨가 와현리로 호적을 옮겼음을 근거로 내세웠고 구조라리는 동섬의 주민 강학기(강학구씨의 子)·김계춘·김성만씨가 이 섬의 채취권을 구조라리에 매각하였음을 근거로 내세웠다. 구조라해수욕장 앞에 있는 윤들섬도 망찌 사람들과 구조라 사람들이 서로 채취권을 다투었다.<sup>104)</sup>

시화호 독지리의 경우에는 시화호 매립보상문제가 격화되기 전까지는 자연촌락 단위로 경계선을 두고 입어관행에 따라 평화적으로 조업·어장 보수 및 관리를 행하였다.<sup>105)</sup> 육지로는 응굴 비둘기 바위 뒤에서 동쪽 방향으로 200m 지역에서 북쪽으로 바다에서는 논쟁이 개고랑을 경계로 동쪽은 독지1리 어민이 보호관리하고 양식을하며 생산하였고 또 논쟁이 개고랑 서남방 어도·고포1리쪽으로는 독지2리(문지) 구역으로 정하여 양식 및 조업을 하였으며, 또한 독지3리(형도)와는 안골개를 경계로 이를 지켜 서로 타지역을 침범치 않았으며, 혹 침범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거나 채취기구를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보호하면서 3개 마을이 각자 조업에 임하였다.<sup>106)</sup>

(2) 漁船漁業 : 통영사례

어업경영인 공인찬은 제61·62 금정호 선박(예인선)과 제63·65·66·68호 선박(어탐선, 운반선, 가공선, 어탐선)으로, 김영채는 제7·8·대원호 선박(예인선)과 제9·15·57·77·78호 선박(어탐선, 운반선,

104)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71번지 노재경氏(71세)의 증언(1998·8·9), 참조

105) 調査資料 제2장제1절의 2. 독지리 어업권 피해보상 관계관 회의록, 참조

106) 조사자료 제2장제1절의1. 김지의氏 명의의 탄원서, 참조

가공선)으로 각 멸치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산업자들이다. 금정호의 어로장 공무웅은 1996. 8.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61·62 금정호 선박에 적재된 선인망(일명 '뺏지망')어구로 조업허가 구역 밖인 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동방 3마일 지점해상에서 멸치잡이 어로작업을 하였다. 대원호의 어로장 천수봉은 1996. 8. 27.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제7·8 대원호 선박에 적재된 선인망어구로 조업허가구역 밖인 전남 여천군 삼산면 억만도 동방 2마일 지점 해상에서 멸치잡이 어로작업을 하였다. 통영시장은 1996. 10. 10. 이들에게 어업정지(공인찬에게 20일간·김영채에게 30일간)처분을 내렸다. 공인찬과 김영채는 부산고등법원에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96구11389)을 제기하였으나 1997. 8. 20. 패소하였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였다.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52조제1항은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1991. 3. 28. 대통령령 제13333호로 개정) 별표15 [기선선인망어업(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 관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인찬과 김영채는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모법 수산업법 제52조제1항 제3호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였다.

구 별	조 업 구 역	허가의 정수
제1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선간의 해역	124건
제2구	전라남도 해역	16건
제3구	전라남도 해역	10건

문제의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역인 제1구 연해인데 근래 멸치어장이 제2구 연해인 전라남도 해역과의 경계선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조업의



약70%를 그 곳에서 하게 됨에 따라 (1) 제1구 조업구역의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어업허가를 받은 124건의 선박중 상당수가 조수의 흐름과 물때, 날씨, 어군의 형성등을 감안하여 위 해역에서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2) 제1구 제2구 연해의 경계선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sup>107)</sup>, 경계선 침범여부를 모르고 조업하는 경우가 많고 (3) 어군을 쫓아 조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불분명한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고 (4) 작업중 조류에 밀려 일시 경계를 넘는 경우도 있고 (5) 허가받은 조업 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획한 멸치물량이 근소하고 (6) 실제로 위 어로작업을 지휘했던 어로장들은 이미 처벌(벌금형)을 받았고 (7) 선박을 계류시키면 임금손실은 물론이고 선원들이 해산되어 어업을 영위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으며 (8) 어선단의 규모, 조업구역 이탈정도, 해상경계의 불분명, 원고들에 대한 처분내용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법리해석에만 의존하였다.

---

107)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구역별 조업구역에 대한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도계를 정함에 있어 국립지리원 지도 58260-609(1994. 10. 26)호(첨부민원회신서 사본참조)에 의하면 "해상의 관할구역(경계선)은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第4章 事實과 規範의 接點

法社會學的 調查에서는 實定法規를 금과옥조(當爲命題)로 보는 대신에 “受範者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는가?” 즉 法意識 내지 法行態을 법률문화라는 事實과 存在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외면당하였거나 아무도 지키지 아니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제도는 그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살아있는 법’은 때로 제도를 앞선다. 그러나 法的安定性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사회학과 법해석학이 서로 묻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과 규범이 만나기 위하여서는 입법자와 수범자의 법적 가치관이, 필요하다면, 전환되어야 한다. 存在와 當爲가 공존할 때 사실은 規範世界의 주민이 되고 實定法의 내용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른 한편 규범은 그 限界의 극복을 위하여 事實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 第1節 살아 있는 법

#### 1. 法의 人間像 회복

법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文明의 產物로 본다고 하더라도 中世 봉건 사회 農民들의 관습법에 기반을 둔 근대 유럽의 私法과 私權 그리고 公示등의 體系를 20세기 한국 어촌사회의 어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모든 법은, 라드브루흐의 언명대로, 그 중심이 되는 인간상을 예정한다. 어민은 수산법제와 해변개발법제의 주인공이다. 어촌사회 주민들의 해변항유권과 관습상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갯벌에 살던 주민들에게 그 매립지를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이중의 착취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

#### 2. 葛藤解消의 順序

어촌사회의 갈등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보통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법론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농토가 부족하다고 하여 經濟的 費用便益分析을 강조하거나 해양환경이 소중한다고 하여 環境權을 우선시

킬 수만은 없다. 어민의 生存權이야 말로 갈등해소와 분쟁해결의 최우선 척도이다. 막연하게 원용되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어민들의 주장과 의식의 이면에는 '居住移轉의 自由'(定住權)를 핵으로 하는 生活權과 억압적인 물리적 환경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자유를 추구하는 生命權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生業權 등이 자리잡고 있다. 즉 漁民 生存權은 생업권·생활권·생명권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 持續可能開發의 實踐

어민의 권익보호는 '미래세대의 몫'이라는 생략적 한계에 기속된다. 자연자원의 처분과 보상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현세대의 어민들은 그들의 전래의 권리를 모두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없다. 미래세대의 몫을 현재세대가 모두 처분함은 민사상 권한을 넘는 表見代理 행위이며 형사상 명백한 橫領이다. 해변개발이나 갯벌매립에 대하여서는 世代單位 보상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바로 "미래세대의 수요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지속가능개발 이념의 구체화이다.

### 4. 世代單位補償

농토나 임야처럼 인위적 가공이 행해진 토지에 대한 보상과 갯벌과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보상의 논리가 같을 수 없다. 양자는 원상회복의 가능성과 수준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 때문에 자연자원이 파괴될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에 시간적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갯벌을 매립할 경우 역내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은 자손만대 계속될 수 있는 무기한 보상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역내 어민에게는 당해 자연자원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자연자원의 손상이 계속되는 한 다음 세대들도 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개발피해 대한 보상은 당연히 세대단위 보상이 되어야 한다. 즉 보상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0년 길어도 5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음 세대들은 국

가나 개발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다. 미래세대들은 선조들의 無權代理 행위를 시정하고 본인들의 자연향유권을 행사할 뿐이다.

## 第2節 價值觀의 轉換

### 1. 經濟的 利益의 超越

어촌 주민들은 물론 지역엘리트들 역시 갯벌생태계를 경제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이는 드물었다. 환경운동단체나 지역언론에서 갯벌생태계에 대해 많은 언급들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생태학적 관점은 갯벌의 오염방지효과·어족서식처의 기능 등에 치중된 것이었고 이는 갯벌생태계의 효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제중심주의의 또 다른 형태였다. 이를 벗어나 갯벌생태계의 비경제적 가치, 정서적 가치, 문화적 가치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자연환경이 경제중심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삶의 질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설정하고, 공존과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생태계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요한다. 바로 이러한 생태계에 입각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경제에도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게 되면서 발전이 도모된다. 그러나 어민들의 사고는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역엘리트들의 사고는 현대사회의 한가지 문화현상인 '자연의 상품화',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의 자연변형과 소득창출'에 머무를 것이며(조정만, 1998), 그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계와 인간생활의 공존체계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 2. 갯벌 公概念

갯벌을 매립하는 이유는 갯벌을 '개발하여도 좋은 땅'〔荒蕪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갯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갯벌을 '보전하여야 할 땅'〔公有土地〕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公概念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구보전의 필요가 현저한 토지 또는 수면은 그 소유권자를

불문하고 보전의 취지를 선언하고 기대이익을 단절시킴으로써 해당 토지 및 수면을 공공화시켜야 한다. 기왕의 공유수면들에 대하여서는 영구보전 취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선행조건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국토조사(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자원조사)(제22조)를 완수하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보전율'의 개념과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토지정보(지적·GIS)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영구보전에 따르는 불이익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토지나 수면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처분권능을 제한하되 사용권능 또는 수익권능만의 양도나 임대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 3. 歷史的 過誤의 是正

해변마을의 조상들이 감행한 총유재산의 사유화는 무효이다. 예컨대, 태안반도 신두리의 砂丘 60만평을 몇 명의 마을유지들이 대저울 7개와 바꾸고 이를 외지 기업인들의 소유로 이전시킨 행태는 어떠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이 땅을 준농림지로 바꾸어 분양가치를 높여준 관할 행정청들의 처사는 脫法的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이를 검증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가 명확한 성문의 근거도 없이 공유수면과 바닷가(濱地)를 국유로 간주하고 해산물채취권등을 관습상의 入漁權으로 격하시켰음은 토지와 비교할 때 형평을 상실하는 조치이었으며 어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지역갈등을 유발한 초법적 행위이었다.

### 4. 入漁權의 再生

어업권에 대하여 전면적인 國家管理를 선언한 1953년의 수산업법은 그 제40조(入漁의 慣行)제2항에서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慣行에 의하여 그 漁業場에서 어업하는 자의 入漁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慣習上 入漁權의 지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入漁權은 점차 제한되었다. 1990년의 수산업법 제2조(정의)제7호는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入漁者로 정의함으로써, 공동어업권

설정 이후의 慣行의 生成 가능성을 부인하고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漁民을 배제하였다.<sup>108)</sup> 이러한 입법은 “입어권을 둘러싼 補償是非의 재발을 확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기업이익 및 행정상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입법은 어민들의 生來的 權利를 박탈한다. 해변에 거주하는 모든 어민과 그 후손들은 ‘어업권원부상의 등록’이라는 행정적 요건과 관계 없이 해변의 주민이라는 자격만으로 당연히 입어할 수 있는 권리〔自然資源權〕를 보유한다.<sup>109)</sup> 공동생산·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어촌(예컨대, 흑산 다물도)에서는 실제 입어권이 불필요하며, 개별포획·채취가 행해지는 어촌(예컨대, 부안 계화도)에서는 입어권에 맞서는 마을어업이 존재하지 않는다.<sup>110)</sup> 실정법상의 규제를 풀어 어민들에게 입어권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 第3節 制度의 限界克服

#### 1. 갯벌立法의 補完

미국에서는 갯벌(tideland)을 ‘공유토지’(public land)의 일부로 취급한다. 갯벌의 주요 法源은 3개의 연방법규와 1개의 판례법이다. 沿岸域管理法(The Coastal Zone Management Act(CMZA) : 16 U.S.C.A. §§ 1451-64)은 연안소재 州로 하여금 갯벌경계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권하였다.<sup>111)</sup> 연방행정청들이 어느 州의 연안역

108) 1990년의 水産業法 附則 제11조(入漁者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어업의 어장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入漁者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慣行生成 可能性을 排斥하는 태도를 더 한층 강화시켰다.

109) 實定法上 어업권원부상의 등록은 ‘마을어업’(1990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제9조)의 어업권자와 입어권자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넘어 ‘매립등에 따른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10) 새만금지구의 계화도 인근처럼 漁業場(갯벌)이 광대한 곳에서는 마을어업이 존재하더라도 그 어업장과 입어권자들의 어업장이 서로 경합할 여지가 근소하다.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까지 국가가 관리함은 불필요한 行政規制에 불과하다.

111) Jan G. Laitos & Joseph P. Tomai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West : 1992), p.119

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당 주는 연방행정청에 대하여 연안역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sup>112)</sup> 연안역관리법(CZMA)은 연안역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州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연안역관리법은 연방허가 없이 행위하는 私人을 州정부가 소추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sup>113)</sup> 한편 沿岸가두리資源法(Coastal Barrier Resources Act : 16 U.S.C.A. § 3501)은 가두리 바깥 지역(outerbanks)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사업비용을 증가시킨다. 하구지역법(The Estuarine Areas Act of 1968 : 16 U.S.C.A. §§ 1221-1226)은 연방행정청들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하구(estuary)의 가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公共信託原理(public trust doctrine)는 항행가능성(navigable) 여부와 관계 없이 潮水가 드나드는 지역을 토지에 포함시켰다.<sup>114)</sup>

현행법제는 갯벌이 토지에 속하는가 아니면 바다에 속하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다. 갯벌을 적당히 메워서 쓸 수 있는 불모지로 파악하는 입법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갯벌이 토지에 속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개정하여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만약 갯벌이 바다에 속한다면 해양개발기본법과 수산업법에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종래의 법제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갯벌을 바다로 취급하였다. 그럼에도 갯벌은 생태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바다로 취급되었다. 갯벌을 바다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볼 것인가는 절대적 구분기준이 없다. 입법태도 같된다. 새로운 법률관의 적용을 받는 갯벌은, 바다로 취급되든 토지로 취급되든 간에,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역관리법(안) 등에서는 차라리 갯벌의 이중성을 구체화시킨다면 갯벌의 법적지위가 강화될 것이다.

## 2. 特別埋立의 制御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통합하더라도 각종 특별법에<sup>115)</sup>

112) Secretary of the Interior v. California(1984) & California Coastal Com'n v. Granite Rock Co.(1987)

113) State of New York v. DeLyser(1991)

114) Phillips Petroleum Co. v. Mississippi(1987)



의한 갯벌 매립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별법들에 의한 갯벌 매립이 계속된다면 공유수면매립법을 폐지하는 실익이 현저히 축소된다. 특별법들에 의한 매립을 막기 위하여서는 자연자원관리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행정적 접근이다.<sup>116)</sup> 둘째는 입법적 접근이다.<sup>117)</sup>

행정적 접근 방안은 그동안의 법집행 경험이 말하듯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계부처들의 자의적 법집행 내지 부처할거주의가 문제된다. 아울러 모든 갯벌은 가치에 있어 평등하고 따라서 갯벌 상호간의 비교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전하여야 할 갯벌'과 '매립할 수 있는 갯벌'을 구분하기 어렵다. 입법적 접근방안에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연안역관리법(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마찬가지로의 한계를 안고 있다.

### 3. 行政的 代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안역관리법(안)이 자주 거론되나 역시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은 연안('갯벌')의 개발('매립')과 이용을 전제조건으로 상정하고 있어 갯벌 보전에 미흡하다. 습지보전법(안)은 습지를 이원화시킴으로써 이중의 기준에 원용될 우려가 있다. 갯벌보전특별법(안)은 간명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처가 없을 것이다. 환경부는 힘이 미약하고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는 입법에 반대할 것이다. 갯벌보전특별법(안)을 제정할 힘이 없다면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행정적 접근방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갯벌을 '생태계보전지역'

115) 1998년 6월 현재 高速鐵道建設促進法·公共鐵道建設促進法·觀光振興法·農漁村道路整備法·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農漁村整備法·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送油管事業法·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水道法·新港灣建設促進法·漁港法·自然公園法·자전거利用活性化에 관한法律·電源開發에 관한特例法·第14回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濟州道開發特別法·住宅建設促進法·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靑少年基本法·宅地開發促進法·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 및 周邊地域지 원등에 관한法律·下水道法·航空法·港灣法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認許可 擬制를 규정하고 있다.

116) 행정적 접근 방안은 갯벌을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117) 立法的接近 방안은 연안역관리법(안)이나 갯벌보전특별법(안) 또는 습지보전법(안)과 같은 특별법(안)을 통하여 갯벌매립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내지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일괄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sup>118)</sup> 필요하다면 -세대간 형평 내지 횡령 이론을 적용하기 전에 - 매립과 보전의 경제적 이익을 교량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갯벌을 해양생태계보전 및 람사르조약의 국내법적 적용의 문제로 접근한다. 1981년의 野生田園法(The Wildlife and Countryside Act)(제36조 및 제37조)은 海岸生態系保全地域(MNRs : Marine Nature Reserves)제도를 채택하였다. 해안생태계보전지역은 조수가 드나드는 지역과 바닷가(濱地)를 포함한다.<sup>119)</sup> 해안생태계보전지역은 다른 생태계보전지역들과 달리 자연보전청(Conservation Agency)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하고 관할 국무대신(Secretary of State)에 의하여 지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청들은 외부 당국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보전지역을 통지하거나 선언할 충분한 권한을 보유한다. 실제 해안생태계보전지역의 설치에 관한 절차들(1981년의 법 別表12)은 대립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완수가 너무 어려워 법제정 이후 10년 동안 런디(Lundy : Devon해안의 섬)와 스코머(Skomer : 남서 웨일즈 해안의 섬)의 2개 지역만 지정을 완료하였고 3개 지역은 여전히 지정을 추진하는 중이다.<sup>120)</sup> 법(제37조)에 의하여 제정된 하위법령(byelaw)들은 해안생태계보전지역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동식물 그밖의 대상물에 대한 방해

118) 갯벌을 보호할 것인가 또는 어느 갯벌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진부한 논쟁이다. 서해안의 모든 갯벌은 현재 수준으로도 자정능력 내지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서해안의 대부분의 갯벌은 그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자연경관의 관점에서,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의 표본지역으로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모든 갯벌을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제18조제1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은 이를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제18조제2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갯벌의 경우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할이 곤란하고 최소한의 범위설정도 어려우므로 전체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119) Richard Burnett-Hall, *Environmental Law* (Sweet & Maxwell : 1995), p.194

120) The Nature Conservancy Council, *The 17th Annual Report(for 1990/1991)*, p.14

를 금지할 수 있으며 허가제(permit system)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들은 유람선(pleasure boat) 이외의 선박의 통행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유람선이라도 모든 보전지역에서 연중 계속 제한할 수는 없다. 또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안전확보 내지 손해방지 조치와 선박으로부터의 배수를 금지할 수 없다. 아울러 바다 밑 30미터 이하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금지하지 못한다. 법집행은 검찰국장의 이권이 없는 한 자연보전청이 맡는다.<sup>121)</sup>

#### 4. 公有水面法制의 整備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일반법·절차법이다. 다른 개별 법률들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적용하는 절차들을<sup>122)</sup> 규정하였다. 한편 공유수면매립법은 절차법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체법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기본계획 내에서 매립면허만 받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sup>123)</sup> 그것이다. 나아가 공유수면매립법은 특례법이기도 하다. 즉 실제[매립면허]에 관한 특례들을<sup>124)</sup> 규정하고 있다.

121) Richard Burnett-Hall, *Environmental Law* (Sweet & Maxwell : 1995), p.195

122) 공유수면매립법 제1장의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공유수면매립법 제2장 면허 (일부 실체조항 및 특례조항 제외)·공유수면매립법 제3장 감독·공유수면매립법 제5장 벌칙 등은 절차법에 속한다.

123) 예컨대, 다음의 조항들은 실체법규들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④ . .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 . .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24) 다음의 조문들을 참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의2(농업진흥공사의 공사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시행하는 매립사업중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 1972년 12월 30일) 법 제29조의2(농업진흥공사등에 대한 면허)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발조합이 용수원의 여력이 있어 확장사업으로 하는 매립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개정 : 1972년 12월 30일) 법 제15조(不用국유지의 양여) ① 국유

더 이상 매립할 갯벌이 남아있지 아니하다면 그리고 뒷 날 미래세대의 몫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으려면 상징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옳다. 특히 특정한 공기업들의 편익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법상의 특례조항들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근거법(免許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통합 없이 연안역관리법(안)이나 습지보전법(안)을 제정함은 모순이다. 양자의 공존 현상은 “방 안에 난로를 피우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부조리와 다를 바 없다. 공유수면매립법의 절차법적 조항들은 이를 공유수면관리법에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5. 漁業權 管理의 柔軟性

慣習上 入漁權과 달리 漁業權은 자원고갈 현상과 더불어 국가관리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크지만, 바다란 늘 변하기 때문에,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기술의 발달 등에 비추어 어업권 관리의 내용이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시비가 끊이지 아니하는 어장경계 내지 조업구역의 갈등(예컨대, 경남과 전남의 사이의 어장분쟁)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總許容漁獲量(1995년의 수산업법 제54조의2)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해당 어업권자들의 우선권이 확보된다면, ‘共同操業水域’(1996년의 수산업법 제53조 : 조업구역등의 조정)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禁漁時期의 조정 또는 그물코 규제등의 조정은 현행 실정법(수산업법 제78조 : 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 / 제52조 :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 제79조 :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상의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만큼 법집행(行政)상의 柔軟性 확보로 가능할 것이다.

---

의 도로, 제방, 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調查資料



## 第1章 對談資料：法意識1998

### 第1節 흑산 다물도

<제보자>

김완식 (남: 48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82번지  
전화 : 0361 246 2182  
참고사항 : 마을이장 역임 / 홍어잡이 어선 경영  
박동환 (남: 73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63번지  
전화 : 0361 246 2121  
김중기(남: 70세)·김명일(여: 71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61번지  
전화 : 0361 246 2692

대담98다물도01 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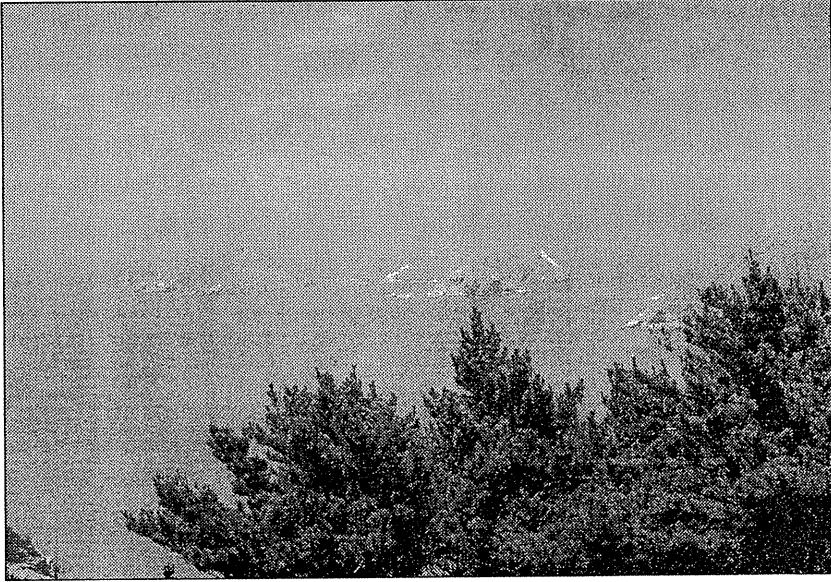
全在慶: “안녕하세요. 존함과 주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분쟁이 많았던 다물도와 수리사이의 경계구분을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朴동환: “박동환이요. 다물도리 163번지에 삽니다. 옛날 국왕때는 면의 협의회에서, 면의 협의회라는 것은 유지 어른들이 모여서 협의·타협하는 곳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朴: “흑산면 섬들을 각 부락에 배당 분배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락에 밭이 많으면 섬을 하나 덜 주고 농토가 적으면 섬을 하나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섬들을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중죽도라든가 하는 섬들은 그때 분배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해초를 뜯어먹고 살았는데 수협이나 도에서 또 군에는 수산과라고 해서 그 섬들을 관리·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중죽도(멀리 가운데 섬)



대담98다물도02 행사계약

쫄: “행사계약은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朴: “일제 이후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입니다. 그때는 한번 섬들을 어느 부락에 계약을 하면 계약이 5년간 유효해서 5년간 해먹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경신했어요. 우리 한 부락만 아니라 수리부락 다촌리부락이 섬[중죽도] 하나를 가지고 두 부락에서 서로 섬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채봉이라는 사람이 수협의 감사를 했고 흑산수협장 박찬대라는 사람하고 문채봉이 결재하고 다촌리에서 해왔던 행사계약을 수리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쫄기를 해서 군청으로 데모대가 40명 나갔어요. 그 섬 가지고 양 쪽 섬에서 재판까지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시다.”



대담98다물도03 입어금지가처분·상속논쟁

쫄: “재판에 직접 다니셨습니까?”

박: “이 부락에서 나 혼자 주동했습니다.”

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 “그쪽(수리)에서 입어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요. 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켰지요. 우리들이 종전과 같이 입어해서 그대로 행사해 왔으니까 이긴 결과가 되었지요. 법원(목포지원)에 소송서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당시 법원장은 허진명씨.”

쫄: “박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입니까? 종전대로 행사했다면 거기서 전북도 채취하고 미역도 따셨습니까?”

박: “옛날 수리 김씨네 노인이 무슨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찬곽이라 해서 수리 노인의 집안에 주기로 되었답니다. 공동어장에서 공동채취 공동분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떠나서 옛날에 노인이 공이 있어 그 집안사람들이 받기로 했으니 그 집안사람들이 받게 해야한다는 주장(수리측)입니다. 찬곽이라는 것은 공로가 있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찬곽이지 돌아가신 후 그 자손에게까지 찬곽이 아니지 않느냐해서 그 일로 옥신각신 말이 많았지만 지금도 유래대로 어느 집안에서 공동어장을 독식하고 있지요.”

대담98다물도04 독점비판

쫄: “현재는 전북을 양쪽 마을에서 같이 채취합니까? 구역을 나눠서 합니까?”

박: “공동으로 따니다.”

쫄: “재판에 전북도 기록이 되었습니까?”

박: “예, 재판에는 전북도 하라는 말이 없이 종전대로 하라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합니다.”

쫄: “예전에는 전북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 “우리 마을만 했지요.”

쫄: “예전대로 한다면 다물도만 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박: “저쪽 마을에서는 입어해 온 사실이 없고 우리 마을만 쪽 입어를 해왔기 때문에 관행을 살려서 법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섬에서 생산된 각종 해초물을 어느 마을에서 주로 해먹었느냐 하는 종전관행에 따라 채취권을 정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어장에서 공동채취 공동분배가 원칙인데 어느 개인이 입어해서 소득을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가에 있는 마을이 그 섬에서 생산된 해초물을 독점해서 관리해줘야 한다고 결정 내려지는 것이 후손에까지 깨끗한 결정이지요. 그 일로 여러 해를 애썼지

만 지금까지 아쉽다.”

쫄: “섬(채취권)을 어떻게 정했나요?”

박: “섬을 가지고 면에 앉아서 섬의 유지들이 여기는 덜 주고 저기는 농토가 적으니 더 주라고 나누어줬던 것 같다. 그 시절에 다물도 산1번지 다물도 산2번지 다물도 산3번지식으로 다물도에 뭘 연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물도에 번지수를 주었을 것이다.”

대담98다물도05 섬 분쟁경과(1)

쫄: “중죽도 재판이 언제 있었나요. 이장님 몇 살 때 일입니까?”

금이장: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니까, 1966~68년 당시 일입니다.”

쫄: “중죽도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했나요?”

박: “옛날에 오리의 김능원씨하고 다촌리의 김세균씨와 김병인씨 세분이 돌아가면서 섬을 관리해서 해초를 뜯어 먹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하기가 복잡하니까 그 섬을 팔게 되었을 때 다촌리에서 샀어요.”

쫄: “섬을 샀어요?”

박: “예, 옛날 일이죠. 육성회에서 그 섬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다촌리 공동인이 그 섬을 취급하게 했죠.”

쫄: “육성회 일은 언제 일입니까? 해방 전의 일입니까? 해방 후의 일입니까?”

박: “해방후요.”

쫄: “육성회는 학교 육성회입니까?”

박: “예, 여기 북초등학교. 그렇게 섬의 영역이 아주 복잡합니다.”

대담98다물도06 미역채취권

쫄: “그럼 다물도에 팔았으면서 미역채취권은 여전히 수리 김씨 문중에서 행사했습니까?”

박: “미역채취권만 그렇습니다.”

쫄: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팔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역채취권을 팔았다는 것인가요?”

박: “그 해의 관리자를 팔았다 \*\*\*.”

쫄: “관리자를 다물도로 넘기면서 미역채취권은 여전히 수리가 가졌다는 말인가요?”

박: “나머지 김 파래 툇 가사리는 우리 마을에서 따고 미역만 가졌지요.”

쫄: “그 섬은 그 당시만 해도 다물도 관할이 아니었겠네요.”

朴: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다물도의 김병인씨 등은 육지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로 해방 이후 토지개혁때 농토를 다 쥐버렸다. 흑산도의 이 조그만 마을만 어촌으로 형성되어서 어획고를 늘려 돈을 조금 모아 육지에 많은 논밭을 샀다는 얘기죠. 1공화국 토지개혁때 토지를 다 반납하고 육지로 떠나버렸다.”

대담98다물도07 간테대섬(中竹島)

쫐: “토지개혁 당시 중죽도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까?”

朴: “중죽도를 관리하던 3명의 어른이 우리 마을에 팔았다.”

쫐: “행사계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朴: “어업조합으로 있다가 어업협동조합으로 바뀐 것이 1962년으로 알고 있다. 그전까지는 수산행정이고 뭐고 두서가 없었고 1962년 이후로 해양관리에 대한 행사계약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쫐: “어른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했던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다물도에서 채취를 안하고 돌아가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朴: “노인들이 모여서 뒤죽박죽 했던 모양입니다. 막걸리 한잔 가지고도 섬 하나를 사고 바꾸고.” “명섬을 진리사람들이 내다 팔아먹었소. 대둔도하고 오정리하고 다물도 사이에 있는 명섬을 진리 사람들이 막걸리 한잔을 먹고 팔아먹었지.”

대담98다물도08 복합소유권

쫐: “섬 소유권 전체를 넘겨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물이나 나무들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고 그랬을까요?”

금이장: “해초만이지 섬 위에는 엄연히 다물도 거니까 물 위에건 관리를 안한 거예요.”

쫐: “중죽도의 경우에는 수리의 낭청할아버지네 문중에서 미역채취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 전복, 우뚝 등은 세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채취를 하다가 다물도에 넘겨줬다는 것입니까?”

朴: “그 당시에는 해녀들도 없고 해서 전복을 채취할 능력이 없었다. 미역채취를 낭청할아버지네 자손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물도가 관리해 왔다고 보는 편이 옳다.”

대담98다물도09 해녀

쫐: “언제부터 해녀들이 채취하기 시작했나요?”

금이장: “여기서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0년 정도 될거예요. 제주에서 해녀를

모셔다가 한 것은 일제 때부터니까 60년정도 됐습니다.”

췌: “일제 때 해녀들이 전복채취를 시작했습니까?”

朴: “흑산도에 왜정 때 흑산 읍동이라는 곳에다가 제주해녀를 모셔다가 전복을 많이 잡기 시작했어. 그래서 알았지. 그전에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 전복을 잡는다는 것은 없는 일이었어요.”

대담98다물도10 섬 분쟁경과(2)

췌: “중죽도 관련 재판에 어떤 분이 동참을 하셨죠?”

朴: “김명출, 김종을, 이양희, 안두채 이장등입니다.”

췌: “그럼 어촌계가 중심이 되고 이장도 참여하시고 그랬습니까? 재판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朴: “시작해서 한 3년 걸렸어요.”

췌: “한계선의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경계선을 말하는 건가요?”  
“가운데 섬이나 다른 이웃의 신섬 갖대섬 이런 데의 경계를 한계선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朴: “저쪽서 반대하고 미결이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죠. 우리는 관행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 섬에 못들어 온다. 이 섬을 관리 못한다'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쪽 마을 사람들을 막았죠.”

대담98다물도11 어촌계

췌: “어촌계는 분쟁에 어떤 일을 했나요?” “법으로 정해진 어촌계였습니까?”

朴: “법으로 있었어. 1962년도에 어업조합이 어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죠. 그 때부터 어촌계가 있습니다. 다촌리 어촌계를 말하는 거지요. 행사라도 하려고 하면 다촌리 어촌계가 중심이 돼서 했어야 했으니까요.”

金이장: “그때 문채봉씨가 흑산수협이 감사를 했어요. 수협장이 박찬대씨인데 서로 처남매부간이지요.”

췌: “그래서 행사계약을 수리에 넘겼다는 겁니까?”

金이장: “다물도가 하고 있던 것을 박찬대씨가 조합장이 되면서 수리의 문채봉씨가 감사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넘겨서 싸움이 되었다.”

췌: “프린트물로 하셨단 말씀이죠.”

朴: “행사계 용지같은 것이 프린트한 용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행사계약을 한다면 상죽도면 상죽도 중죽도는 중죽도해서 관리를 어느 마을이라고 쓰면 되고 채포물은 김이면 김 해삼이면 해삼이라고 써넣기가 있을 때에 행사계약을 일년에 한번씩.”

대담98다물도12 섬 분쟁경과(3)

쫄: 중죽도 문제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은요?”

금이장: “하루아침에 관행으로 해왔던 것을 뺏겨버렸지요.”

쫄: “김세균 어르신들 세 사람이 돌아가며 관리하다 다물도에 넘겨줘서 오년마다 행사계약을 경신해왔었는데 어느날 문채봉씨가 조합장이 되면서 수리에 이 행사계약을 넘겨줘서 싸움이 시작된 것인가요?”

금이장: “그렇지.”

쫄: “박찬대씨는 어디 사람이죠?”

금이장: “사시(사리)사람 \*\*\* 그때 당시 수협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때고 그 시절에는 흑산에는 조기가 나면 먼저 본 것이 임자여요.”

쫄: “수리 쪽에서 재판에 나온 분은 누구누구로 기억하세요?”

박: “다 돌아가셨습니다.”

쫄: “변호사 이름은 기억하세요?”

박: “곽병문씨.”

쫄: “재판진행중에 수리분과 다물도 분들 사이의 감정이 조금 나빠있었나요?”

박: “예.”

쫄: “법정 밖에서도 말씨름하고 그랬습니까?”

금이장: “수리에서 다물도를 보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로 일대일로 하면 그 마을이 우리 마을에 지니까.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내려와요.”

박: “나같은 경우는 우두머리였는데 수리사람들이 다물도 산도 보기 싫다 했지요. 재판 후로는 한동안 다촌리를 잘 왕래하지 않았고 다촌리를 두려워하고 꺼려했어요.”

쫄: “어르신은 재판 당시 어떤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박: “나는 직책이 없었어요.”

쫄: “직책이 없는데도 앞장서서 하셨다고요. 당시 나이는 몇 살 정도였지요?”

박: “45,6살 정도. 입어금지가처분신청 서류가 법원에서 왔는데 서류를 가지고 어촌계장과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젊은 기분에 그리고 회피한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앞장섰지요.”

쫄: “소송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박: “마을 자체 경비를 썼지.”

쫄: “가처분신청 자체를 수리에서 해서 다물도에서 응소 한 셈이군요?”

朴: “행사계약이 아니면 이 섬에서 행사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행사 계약을 그쪽 부락에서 잡으니까, 우리 마을은 입어를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지고 해서 재판에 응한 겁니다.”

全: “증거는 법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朴: “변호사에게 입어내력을 드렸으니까 그분이 사건내용에 모두 기록했죠.”

대담98다물도13 입 촌

全: “마을 연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金중기: “옛날에는 상리, 중리, 삼리로 갈라졌는데.”

全: “삼리요? 하리가 아니고 삼리요?”

金: “이것은 해방 후로 그 시기에는 부락호수가 적었지. 그래서 세동으로 갈랐는가봐. 여기 살아도 입호하지 않으면 반호(半戶)라 해서 생각해서 조금씩 주고.”

全: “반호도 돈을 냈습니까?”

金: “안냈습니다.”

全: “어떤 사람들에게 반호를 줬나요?”

金: “합법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입호를 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있어요.”

全: “아무것도 안줘도 될텐데 뭐하러 반호를 주나요?”

金: “부락의 다른 일은 반호를 준 사람도 나와서 하거든. 예를 들어서 부락의 청소를 한다던가 하면 그 사람들도 나와서 협조를 해요. 인정상으로 조금씩 줍니다.”

全: “실제 남들 가지고 가는 것 반짓 가지고 가나요?”

金: “반짓 줄때도 있고 조금 못미칠 때도 있고.”

全: “반호 받는 사람이 입호할 수도 있을텐데 돈이 없어서 안했나요?”

金: “돈이 없어서 안한 사람도 있으려니와 반면 자기 자신이 안한 사람도 있어요.”

全: “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金: “원칙을 말하자면 반호라는 것은 집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너무 작은 방에 사는 사람은 정당한 호에 들 수 없어. 자격이 없어. 호라는 것이 집호자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호에 들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집없이 작은 방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호에 들어요 못들어요. 옛날부터.”

全: “반호라고 하는 사람이 대강 몇 집이나 됐을까요?”

金: “불과 몇 집 안되지.”

全: “옛날에도 있었어요?”

金: “암, 있었어요.”

대담98다물도14 은호·반호·입호

全: “일제시대에는 어떠했나요?”

金: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그때는 반호라고 안하고 은호라고 한 것 같아요. 숨을 은자있잖아. 은호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년에 은호라는 말이 없어지고 반호라고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은호라고 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사람이 채취할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해서 안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취를 해봤자 입호비만 높지 채취해서 입호비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미역 그것이 아주 비쌌잖아요. 그것 때문에 호에 한번씩 들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몫이 적어지니까 객지에 사는 사람 누가 입호 시켜주겠어요. 안 해줬어요. 근간에는 호에 든 만큼 돈을 못뽑아내요.”

全: “옛날에는 입호할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입호금을 내야 되고 또 무슨 조건이 없었을까요? 몇 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金: “몇 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객지사람에 한한 것이고 여기 사람은 1년이면 되었지. 한 집에서 분가를 하잖아? 분가를 해서 작은 방으로 가면은 입호를 못들어요. 정당한 집을 샀을 때 입호를 듭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입호금을 조금 적게 받았어요.”

全: “돈 내줬다면 일년을 살았건 몇 년을 살았건 기간은 관계없이 받아줬습니까?”

金: “몇 년을 살아서 이 사람이 인제 여기서 정착을 하겠다싶으면 그때 컷어요.”

全: “몇 년이나 살아야지 받아줬어요?”

金: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입호하기가 힘들었어요.”

全: “입호할려다가 못한 사람도 있었겠네요.”

金: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대담98다물도15 짓·배삯

全: “채취할 때 배물고 가는 사람에게는 몫을 더 줘니까?”

金: “배가 가면 한짓을 줘요.”

全: “그날 작업한 것 중에서 줍니까?”

金: “한짓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게 되요. 배삐이라고 해가지고.”

全: “그럼 일곱 척이 갔으면 한호에 돌아갈 것을 일곱으로 나누겠네요?”

金: “그렇지. 한짓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놓고 보면 원  
짓한 사람이나 원짓 한짓 더 탄 사람이나 비슷해져요. 그래서 배짓 한짓  
이 된다 이거여.”

대담98다물도16 뚝 터버리기

全: “뚝을 언제 놓습니까?”

金: “채취가 거진 됐을 때.”

全: “시기로 봐서는 음력 어느 때일까요?”

金: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간다고 하면 너댓번 다니면 싹 다 뜯어버려요.”

全: “가시리 같은 경우예요?”

金: “예 가사리.”

全: “그럼 미역은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金: “미역은 두 사리나 걸리지. 한달에 다 안 끝나. 한달이 30일 아닌가? 30  
일을 다 채취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간조가 됐을 때 가서 건지는  
것이지 물이 만조 됐을 때는 채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리이  
라는 것은 보름동안을 한 사리라고 하기 때문에 불과 한 3,4일밖에 나가  
지 못해요. 한 사리가 보름이니까 두 사리면 한달이라고. 그런데 날짜로  
따지자면 10일도 못될거야.”

全: “그게 음력 언제쯤이나 될까요?”

金: “5월에서 6월말. 날씨와 관계있는데 비가 오면 터버릴텐데 못하지.”

全: “터버린다고요. 뭐를?”

金: “터버린다는 말은 채취권을 방치한다는 말이지. 그렇다해서 다른 뚝 사람  
이 그 뚝에 와서는 터버린 날 못와요. 큰일나버려! 다른 뚝 사람이 오면  
그 뚝 사람들만 가서 캐먹지.”

全: “각자 뚝을 터야겠군요.”

金: “그러니까 그것도 늦게 튼 뚝이 있고 일찍 튼 뚝이 있고 그래요.”

대담98다물도17 김·가사리·뚝

全: “김도 뚝으로 나눠서 채취하고요?”

金: “김은 언제 하는가 하면 시한쯤에 한번씩 맨 사람이 있고 날씨 좋으면은



3,4월쯤에 한번 매는 사람이 있는데.”

쫄: “시한쯤예요?”

金: “시한,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설세기 전을 말하지.”

쫄: “세한쯤에 한차례 맨다고요?”

金: “한두차례 매고 그 뒤로 정월 보름쯤에 날씨 좋으면 한번 매는 때가 있고 \*\*\* 음력 2월부터 3월, 4월 그때 많이 매는데. 일제 때는 가사리가 비쌌지. 툇 이런 것에서 생활이 유지가 되었고 다른 벌이도 했지.”

쫄: “가사리하고 툇은 언제부터?”

金: “가사리하고 툇, 음력 5월부터 6월사이.”

쫄: “가사리하고 툇은 똑같이 5,6월입니까?”

金: “가사리부터 뜯고 툇을 뜯을 거여.”

쫄: “미역은 그 중간에 뜯나요?”

金: “미역이 잘되면 미역부터 뜯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미역이 전혀 없었어.”

쫄: “툇도 트고 가사리도 트고 그러나요? 툇하고 가사리도 공동분배하고 공동 채취합니까?”

金: “다 채취하고 놔버리면 잠수하는 사람들이 물밑에 가서 뜯어오고 \*\*\* 저 밑에 있는 미역은 못뜯지. 물밑에 있는 미역이 좋아요.”

대담98다물도18 잠수삿·미역채취 방법

쫄: “물 밑의 미역을 어떻게 뜯습니까?”

金: “옛날 구식에는 뜰 내에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해녀들같이 깊이는 못가도 서말내지 너말 이렇게 하는 해녀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이제는 해요. 그렇게 하면 그때도 잠수삿이라고 해서 줘요.”

쫄: “잠수삿을 주었나요?”

金: “잠수삿은 사람을 봐가지고 미역채취한 것 봐가지고 나눠요. 일제 때부터 저울법이 생겼을 것이여. \*\*\* 점방에 앉아서 생미역을 주고 술을 받아먹었어. 간조가 되면은 미역을 하나 가득 배에 실으면 뜰 사람들이 전부가 빨발을 으샤으샤하고 밀고 저위에까지 올라가요. 배차 미역차 전체 사람이 빨발을 밀고 올라가지.”

쫄: “물 들때까지 기다리면?”

金: “안되지 그때는 미역이 전부 썩어버리는 상황인데 안되지. 갖다가 밤에 널어야돼요.”

쫄: “세계 뜰 네개 뜰 있는데 거기에 각 뜰을 일괄처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金: “구식에 뚝을 관리하는 사람은 채취할 때만 그랬지 그때는 배 선주들이 많이 했어.”

대담98다물도19 갯닦기

全: “바위청소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金: “일제때 했지.”

全: “어떻게 했나요?”

金: “일제때 갯따기도 하고 그 후로도 많이 했어. 이 근간에는 안하는 것같지만. 갯따기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하면 삽같이 생긴 것 가지고 가서 굴통 따기라고 있어. 굴통 바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가사리고 뚫고 안된다고 해서 다 쳐버리지. 매끈하게 근간에는 해봤자 타산도 안맞고 별로 신경 안씁니다.”

全: “갯따기는 시기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金: “봄에 했지.”

全: “미역 잘 기르라고 한 것인가요?”

金: “김도 잘 기르고 미역도 잘 기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해방후로도 몇 번 했지.”

全: “갯따기 할 때 마을사람들이 다 참가했나요?”

金: “전체가 다 나왔어. 부락민 전체가 나왔어. 대강 그때는 지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충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먹지도 못하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색깔이 놀놀해. 질어기는 요것보다 조금 길어요.”

대담98다물도20 노동배당

全: “일 안나가면 미역 안나눠 주었나요?”

金: “인정이 많아서 말만 그렇게 했지. 호를 떼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호라는 것이 소중했었습니다.”

全: “호 실제 떼는 적도 있었습니까?”

金: “호를 떼는 기억은 잘 안나는데 입호만 해놓고 실제 생활은 여기서 안하고 딴 데 가서 있다가 그 시기에 맞춰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에 한해서 호를 떼내 안떼내 논란이 있었지요. 실제 그 사람들에게 호를 떼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겠어요.”

全: “호 그만둘 때는 입호금 돌려 줘니까?”

金: “그 사람이 일년을 했건 이년을 했건 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돌려주는 일은 없어요.”

대담98다물도21 두 레

쫐: “동네에 폐기친다거나 해서 호를 뺐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金: “그런 일은 없어요. 가령 호에 든 사람도 그날 물건 채취하러 갔을 때 사람이 그 집에서 만나와 버리면 안줘요. 옛날 구식에는 한부분은 찢지, 인정상. 그 사람이 고의에 따라서 안나온 사람은 없겠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안 나온 사람도 한두번은 찢는데 지금은 무조건 만나오면 안주거든. 전연 안줘요.”

쫐: “남을 대신 내보내기도 하나요?”

金: “대신 내보내지.”

쫐: “남자가 가나 여자가 가나 한명만 가면 되나요?”

金: “상관없어요.”

쫐: “한집에 한명씩만요?”

金: “그렇지. 배가지고 간 사람만 두명이 가고 \*\*\* 옛날 사람이 인정이 후했어. 구식에는 미역을 전부 보리 바꿔서 걸보리 보리밥 교환해가지고 식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막걸리를 누룩해가지고 웬만한 집에서 담궜거든. 서로 내것 먹으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막걸리 담구는 집도 없지만. 옛날에는 섬이라 해도 서로가 정이 넘치게 살았지.”

쫐: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金: “시대가 변한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객지 사람이 많이 살아. 그럼 여기 태생들이 모여 살 때하고 객지사람들이 여기 주둔해서 살 때하고 달라. 또 도시를 일일생활권으로 매일 왔다갔다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도시화 되어버렸어. 옛날에는 돈이 없이 살았어도 서로가 협조를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 옛날 인정이 다 없어지더라구. 여기 뿐만이 아니라 그런 형태는 어디나 똑같을 거여.”

쫐: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떻게 했나요?”

金: “그때는 마이크도 없는 세상이고 부락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면 윗소리라고 있어. 윗소리를 해요. 알리는 말이지. 저기 높은데 서서 외치죠. 그럼 윗소리 한사람도 연말에 보수를 줌 주죠. 한사람 정해놓고 하지. 일년에 한번. 젊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나이먹은 사람이 했어.”

대담98다물도22 언 어

김명임: “아심찮이, 감사하다는 말이지.”

쫐: “여기 와서 배우셨어요?”

김명임: “함평서도 썼지요.”

쫄: “어떻게 썼는데요?”

김명임: “누가 무얼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도 하고 아쉽잖다고도 하고.”

쫄: “흑산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함평에서도 썼나요?”

김명임: “예, 함평에서도 많이 해요.”

쫄: “미안하다는 뜻이 있나요, 아쉽잖하다에?”

김명임: “그런 뜻은 없지. 미안하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쫄: “어머니 성함은요?”

김명임: “김맹임(명임)이요.”

대담98다물도23 뱃노래

쫄: “뱃노래를 불렀습니까?”

김: “배를 운영할 때 순간적으로 피로를 잊어버리자는 필요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돛을 단다든지 하는, 손으로 하는 것을 전부 노동이라고 봐요.”

쫄: “한 명이 합니까?”

김: “한 명이 앞에서 하면 다 따라해요. 가령 밧줄이 다 땡겨졌을 때는 빨리 땡겨야 되거든. 어여디야 어여디야 어여처처 어여자차. 또 인자 머시기 할 때 우리가 그 소리는 잘 모르겠어. 고사지내고 배를 여기다 대놓고 인자 고사지내고 풍장치고 할 때 그 소리 형태는 내가 잘 못내겠다. 징, 깡매귀, 셋강, 북, 요렇게 들어가, 갡갡갡\*\*\* 징을 치면은 '칠삼바닥에 돌질로 가잔다. 어어어 어야 갡갡 어어어야 \*\*\*' 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한다. 소리가 참 듣기좋았어. 어렸을때 큰고사라 집에다 금줄을 쳐버렸다. 일체 부정한 사람은 못들어오게. 제사하듯이 상을 차려요. 화장은 목욕정성 다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고삿날은 일절 선원들도 못올라가고.”

쫄: “화장이라뇨?”

김: “밥해먹는 사람을 화장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기를 봐요. 생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이 사람이 생기가 맞고 깨끗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채택하여 고사를 지낸다. 고사 다 지내고 나서는 아까처럼 소리하고 팽매기치고 북치고 풍악 울리고. 요새는 그런 것 없어. 소리할 것이 있어야지.”

대담98다물도24 조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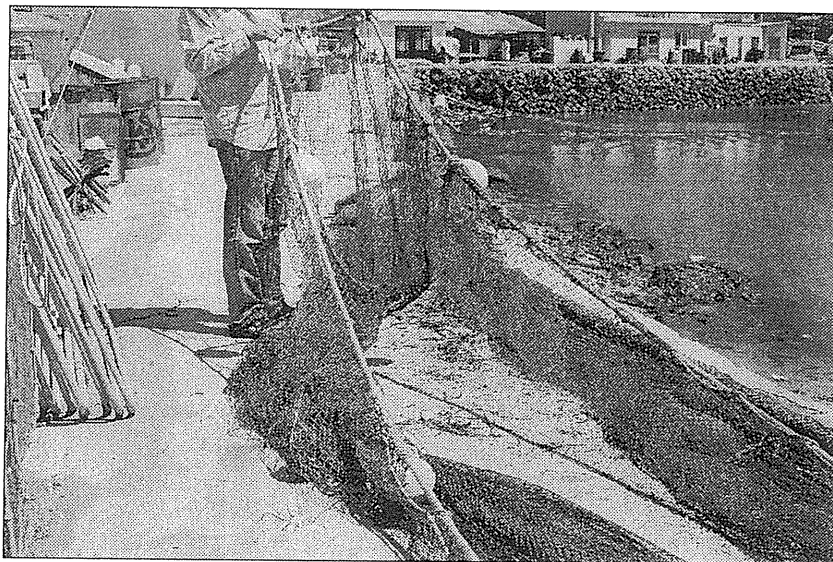
쫄: “뱃 일을 좀 설명해 주세요?”

金: “아메수에라는 것이 있어요. 수에라는 것은 한 육십자나 될거요. 아메라는 것은 참나무나 가시나무나 둥근 것으로 해서 \*\*\* 그물을 아래다 달고 우에다 달고 해서 아마 그물길이가 여기서 저 배는 더 같거야 \*\*\* 조류가 심해 한그물에 고기가 몇 십동씩 들어가 있어. 그럼 마개로 돌려가지고 아메수에가 합일이 돼 마개가 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배 한척에 7~10명이 다녀. 마개를 둔 곳이 6군데 있을 것이요. 6군데에다가 마개대를 하나씩 꼽아요. 가슴에 대고 돌면 파도가 치면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위험하다. 반대방향으로 돌때면 하다마라는 것으로 고정을 하지요. 그렇게 돌려놓으면 40통이고 50통이고 조기는 부레가 있어 떠요. 그 때는 전부 술을 걸치고 나서 그걸 당기지. 가운데다 기를 질러놓으면 그배가 고기 팔배인지 알고 상선이 모이고 또 뒤에다 기를 질으면 고사지낼려고 하는 줄 알고 앞에다 질러놓으면 사고가 있는 배로 알고.”

준: “기 색깔같은 것은 없어요?”

金: “색깔은 관계없어. 잡기만 많이 잡았지. 그 사람들 좋은 일만 많이 해버렸어. 일일이 거기서 다 셀 수가 없어.”

▼ 고기잡이 그물



대담98다물도25 거 래

준: “바다 가운데서 거래하였습니까?”

金: “그랬지. 고기 잡는 장소에서 그런다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고기를 팔아야 또 뒷물고기를 잡아팔지.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칠사시기가 끝나면은 잠깐동안 산란시기가 돌아온다. 한달이나 한달보름 정도 잡니다. 그럼 황해도 연평으로 잡니다. 돛달고 올라잡니다.”

준: “산란시기에는 고기가 안잡힙니까?”

金: “안잡히지. 고기가 나가버리는데.”

준: “산란전에 잡았군요?”

金: “그렇지. 산란할 때가 되면 고기가 칠산바위로 모이지, 수심이 얇거든.”

준: “칠산바다가 범성포 앞이에요?”

金: “그렇지.”

준: “그리고 연평바다로 잡니까?”

金: “거기서 끝나야 연평으로 가요. 연평서 잡아가지고 내려오면 여기 보리가 시 다 끝나고 6월에나 7월에 내려온다. 마음대로 못내려와. 역풍을 해서는 못다닌다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대담98다물도26 어 구

준: “어구는 어떻게 썼나요?”

金: “요즘은 줄을 사다하지만 그때는 줄을 들여서 하는데 고무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 하면 하얗게 넓은 나무에 구멍을 세 개 뚫어요. 홀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홀치가 뭐냐하면 칩깍질을 벗겨서 이만치 이만치 잘라요. 그것을 수십만치 사다가 보통 요만하게 돌리고 돌리고 해서 그 실가닥을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구멍이 뚫려서 사람 들이 잡고 앞으로 가면서 뒤에서 돌려주고. 선원들 가족과 부락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보수로 해줘요. 그렇게 협동심이 있었어.”

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金: “중선에다 쓸려고 줄이 귀하니까.”

준: “아메수에라고 했지요?”

金: “그건 일본 말이에요. 그 때 말로는 질채라고 하지유. 아시메기 웃대 질채. 웃대는 물에 뜨는 것, 아시메기는 가라앉는 나무, 질채는 전체를 말

하고.”

대담98다물도27 삶의 질

全: “못마땅한 것이 좀 많으시죠.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金: “사람이 나이가 먹으니까 벗이 없어져요. 고독이 되요.”

全: “같은 또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金: “있어도 그 사람들도 매 한가지여.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서로 술 한잔씩 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술같은 것 잘 하지 않고 또 다리가 안좋으니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멀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먹은 사람과 잘 놀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나 다 그럴테지만 고독이고 외로워요. 심심할 때는 쓰네기 이놈 타고 나가기도 하고.”

全: “쓰네기요?”

金: “쓰네기라고 하는데 내가 책자를 보니까 선외기여요.”

全: “조금만한 배 말인가요?”

金: “배 선자 밖 외자라고 배밖에 있는 기계라고 해서 선외기.”

全: “옛날에 선주셨기 때문에 살기가 좋으셨지 다른 분들은 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金: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 지금이나 그때나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살기가 나아졌지. 단 인정은 그때만 못하다 이 얘기지.”

全: “살기는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金: “지금이 더 좋지 문화시설이 얼마나 발달했어. 전기발전됐지, 무동력선이 동력선으로 바뀌었지, 교통수단 좋아졌지. 전부가 생활주택지라고 해서 주택들 다 좋아졌지.”

全: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보다.”

金: “행복이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 있고 자기가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첫째는 가정이 행복해야 해요.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한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 집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대담98다물도28 불범어로(고대구리)

全: “고대구리를 어떻게 보세요?”

金: “나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힘이 약해서 못하고 가두리 그것이 증노동이  
예요. 또는 나이가 많아서 할 사업도 못돼고.”

全: “가두리가 아니라 고대구리요?”

金: “고대구리. 나는 한마디로 생존경쟁이라고 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 결론은 생존경쟁이라고 봐야 맞  
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의견은 말할 수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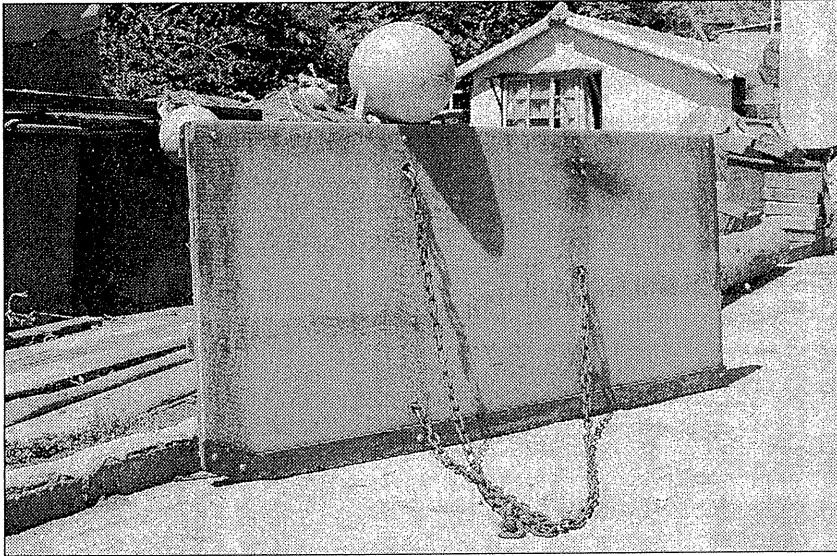
全: “법에서 금해도 생존경쟁상 부득이하다는 말씀인가요?”

金: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몇 십년 전부터 법에서 금했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고대구리를 하는 것은 생존경쟁으로 봐야지.”

全: “나쁘다, 좋다고 따질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金: “없지. 원칙은 고대구리를 안하는 것이 좋지.”

▼ 고대구리용 어구





## 第2節 흑산 수리

<제 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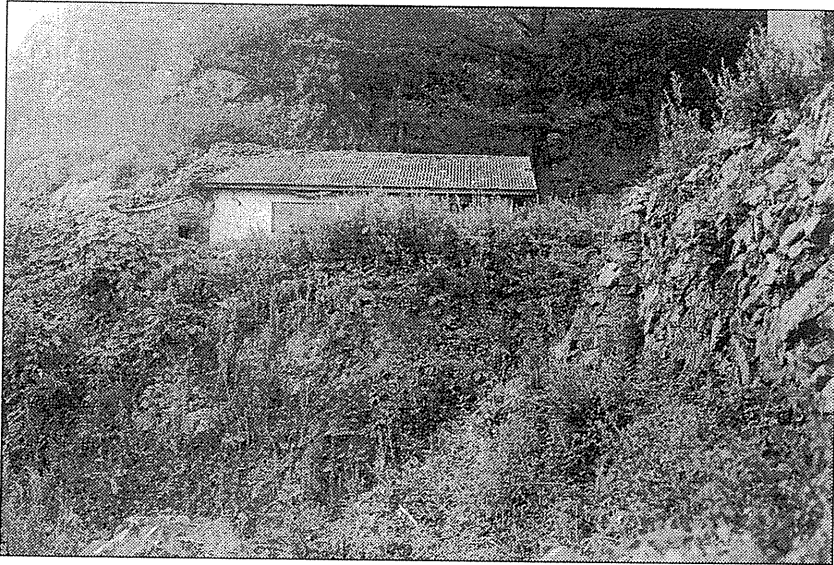
김 정 옥 (남: 68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수리 102번지

전화 : 0631 246 2315

참고사항 : 본쟁대상 中竹島의 入漁權者 金理守 郎廳의 宗孫

▼ 수리 해변가옥



대담98수리01 조사경위

全在慶: “그간 별고 없으셨어요? 기록을 위해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낭청 할 아버지 조사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金정옥: “신안군 흑산면 수리 102번지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었으나 관심을 안가졌겠지. 비가 많이 온 그날, 배를 뒹고 있는데 문상기씨를 보내서 나보고 빨리 집에 왔다가라고. 인사를 하니까 목포대학 이해준 교수더라구. 그런데 한문같은 것도 잘 아시고 가보 족보같은 것도 잘 아시더라고. 낭청 할아버지가 흑산 거주민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여. '할아버지 제자들이나 유족들이 있습니까? 유래사를 들어봤습니까?'하고 물어서 그때만 해도 기억력이 좋았어."

대담98수리02 선원관리·어업허가

준: "짧어서 하신 일을 말해주세요?"

金: "세자면 한이 없지. 처음에 유자망하고 \*\*\* 장사도 해봤지 \*\*\* 세면은 (헤아리자면) 30년 동안에 20가지를 했어. 나는 복어를 안먹지. 일곱명이 복 먹고 난리가 났었어."

준: "채낚기도 하셨나요?"

金: "허가가 잘 안 났어."

준: "서로 채낚기할려고 하니깐 허가를 잘 안내줬나요?"

金: "그때만 해도 채낚기가 대형업이었거든 \*\*\* 지금은 냉동고나 있고 얼음공장이나 있네. 그때는 없었어."

준: "뭘 낚았는데요?"

金: "쓰르메\*\*\*장마철이라 건조상태가 안좋지 \*\*\*."

준: "울릉도 오징어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金: "똑같은 오징어지."

준: "그게 언제쯤이었는데요?"

金: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있긴 있는데 잡아먹을 줄을 몰랐어 \*\*\*."

대담98수리03 대상례

준: "이 대상례 책은 어디에서 필서를 하신거예요?"

金: "그렇지. 글자 한자 틀림이 없어. 육일 밤낮을 김정옥이 공들여서 썼다. 상권도 몇일 걸렸는지 써 있을거여. 그때는 종이도 없어서 여기 저기에 썼어."

준: "한문은 언제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金: "내가 명심보감밖에 못배운 사람이네. 한문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써먹기는 많이 써먹었지."

대담98수리04 상례실천

준: "실제 대상례를 치렀습니까?"

金: “사실이지. 그래서 효자말을 들은 것이지. 도시사람들은 운구차로 운반해 버리니까 몰라요. 대상례 도면에 보면, 양쪽에 운불이라고 있어요. 운사는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 하면 저승을 표시한 것이여. 관직 있는 요인들이 죽어서 나가는 것과 일반 평민이 죽어서 나가는 것이 달라요.”

全: “대상례에서는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례에서는 해가 바뀌어야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金: “사람마다 자기 별이 있는데 그것을 직성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 직성을 못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입에다 음식을 놓는다 \*\*\* 목욕하고 옷입힐 때는 자손들이 울어서는 안되요 \*\*\* 수의 옷고름은 산 사람의 옷고름과 반대로 매야 한다 \*\*\* 옷을 마지막으로 입히는데 여기까지가 소령이 끝나는 것이다. 그럼 비로소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입관 즉 매장을 계령이라고 하는데 이 때부터 남의 손을 빌린다 \*\*\* 차령부터 운다 \*\*\*.”

대담98수리05 지선·어장경계

全: “어장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金: “한일합방 이후에 흑산면에서 지정할 때는 다물도 것도 아니고 수리 것도 아니고 오리 것도 아니었어. 엄청 해먹었어. 진리사람이 수리와서도 해먹고 수리사람이 진리가서도 해먹고. 해먹고 싶으면 미역이면 미역 마음껏 해먹었지. 해양의 지기가 갈라지지 않았었어. 그때는 지선이라는 것이 없으니 타지 사람이 마음대로 와서 뜯어먹었지.”

全: “지선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金: “우리 아버지 때 갈라졌네. 일제압박 이후에 사동경쟁이 있었어. 들어보는가?”

全: “못들어봤는데요.”

金: “나는 조부모나 부모님으로부터 마을의 내력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핵가족이라 그렇지 않다.”

대담98수리06 4洞경쟁

全: “마을간 어장다툼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金정옥: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수산업 법규가 대한민국 수립당시에도 이어졌어요. 사동경쟁은 한일합방 직후여. 공통적으로 진리사람이 수리가서도 있고 수리사람이 진리가서도 있고 읍동사람이 다물도 가서도 있고 그랬다면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그때는 지선관계가 없을 때지. 일본놈들이 한국을 손아귀에 쥐고 일본법대로

전부 분배하라고 했지. 이태희 면장이 마음대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오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리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다물도한다고 정했고 그때부터 일본치하에의 지시를 받기 시작했어 \*\*\*.”

全: “윗대 어른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金: “중자 완자 되시지. 17살에 구장(이장)으로 참여를 했지. 우리 아버지가 구장이니까 대표로 나갔고 오리서는 김세준씨가 나왔어요. 당시 흑산을 관찰하던 지도군수가 김동호씨였어요. 그 싸움이 4년 걸렸어요. 아버지는 싸움에 쫓아다니셨기 때문에 이 집은 어머니가 지으신 것이다.”

全: “사동경쟁 때문에 4년동안 집을 비우셨다고요?”

金: “4년이지.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놈의 지시에 의해서 지선이 생겼지. 흑산 면장이 강압적으로 명을 내렸어. 그래 재판이 시작된 것이여. 수리 사람이 ‘안된다, 오리는 농토가 좋고 수리는 농토가 없다’고 했다. 그때는 순물만 보고 산 세상인데. 거의 4년 걸렸어. 지금의 수산과같은 곳의 사람들을 모시고 해리를 데리고 갔지. ‘보십시오. 해리상에서 보면 실제 우리 농토는 육지 농토와 똑같아요. 우리는 농사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수리 주민은 먹고 살려면 해초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 장물 앞까지가 지선으로 확정된 것이요. 판결에서 이태희라는 면장이 한 소리는 목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수리가 이겼지요.”

全: “법원에까지는 안갔나요?”

金: “법원에는 안가고 군 수산과에서 해결을 봤지. 그때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해안선 청사진이 나와서 도면으로 한 것이 나오지요. 수리와 오리사이의 불화를 끝내놓고 다물도 옆 중죽도에 갔지. 물려받은 것을 개인 소유하려고 청사진을 다 찍었지. 그것이 박대통령 시절에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대담98수리07 간데대섬(中竹島)(1)

全: “4동경쟁할 때 중죽도는 빼놓았습니까?”

金: “예, 수리에도 안넣고 다물도에도 안넣지요.”

全: “그때 해물은 미역만입니까?”

金: “전체를 다 쫓았어요. 미역 김 해초 가사리 등 다섯가지요. 중죽도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살인이 났어요 \*\*\*. 큰 집 모신 사람이, 5대 할아버지 제사모신 사람이, 해먹어야 할 것 아니요. 그래야 과일값이라도 보탬 것 아니요. 자손이 많으면 시끄럽지 않소? 집안 사이에서 ‘너희만 해먹을 일 있냐, 우리는 작대기에서 나왔냐, 우리도 다같이 5대 할아버지 자손이다’ 해서 싸움이 나고 끝내 산모의 배통을 차버렸어요.”

全: "산모가 돌아가셨어요?"

金: "죽어버렸지."

全: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金: "바로 우리 종가집 모시는 작은 어머니여."

全: "작은 어머님께서 그때 종가집을 모셨나요?"

金: "아버지가 우리 큰어머니를 잃자 우리 작은 아버지가 큰 집을 모시게 되었지."

全: "작은 아버님의 존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金: "중자 진자, 중진씨라고."

대담98수리08 경계갈등

全: "중죽도에 관해서 수리에 유리한 근거가 있나요?"

金: "중죽도를 개인소유해버릴라고 하니까 일본놈들이 '청사진이 바로 허가다. 몇 년이상 해먹으니까 그것이 허가다 그러니 할 필요 없다' 해서 계속 해먹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다시 사건이 되었지. 당시 수산업법상에는 개인 소유를 못하게 하였지만 옛날 청사진에 중죽도를 수리경계에 넣어 놓더구만. 청사진이 있는지 몰랐지.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한 일이라. 박대통령때 다물도에서 조합을 통해 도 수산과에 가서 중죽도를 다물도로 넣도록 장난을 쳤어. 당시 조합장은 박이문, 다물도 이장은 황이철, 수리 이장은 문채봉이었어. 문채봉은 조합 감사도 했지. 아버지 명을 받고 내가 나섰지. 심리를 가서 문서를 발견했어. 이관대씨한테 가서."

대담98수리09 분쟁관련기록(1)

全: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金: "우리 5대 할아버지 유공을 표한 일로 중죽도를 공여한다는 내용의 책자여."

全: "어디서 작성한 책자입니까?"

金: "그 당시 면사무소. 이번에 군의원된 최면장이 보니까 우리 5대 할아버지 서적이 있다고 했네."

全: "지금도 있을까요?"

金: "모르지."

全: "옛날 기록이 중죽도 싸움에 도움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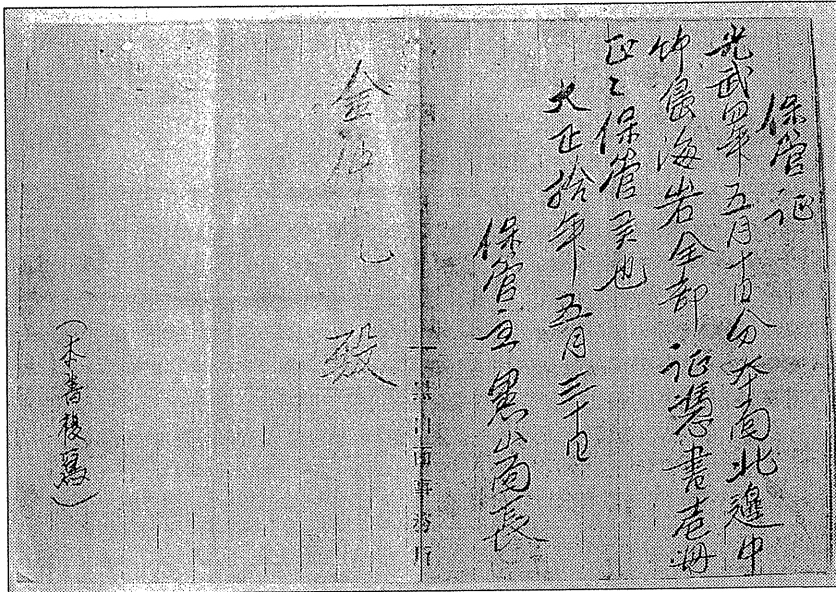
金: "다물도하고 수리하고 중죽도 싸움이 붙었을 때 신안군 수산과에서 나오

고 수리 사람 다물도 사람이 모여서 옛날 책자를 보고 따졌지.”

全: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다.”

金: “지들이 문서를 알아야 말이지.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지들은 꿈에도 못 들어 본 소리거든. 그때 수리 돈 다물도 돈 많이 들었지. 법적으로도 수산법규상 개인소유 할 수 없거든.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입어관행법이 있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1종공동어장은 개인소유 할 수 없어.”

▼ 중죽도 기록보관증



대담98수리10 분쟁결과

全: “중죽도 싸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金: “공동구역이라 어디도 줄 수가 없거든. 또 수리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고, 다물도 사람만 협조해 주면 타협을 보겠다고 했지. 우리 5대 할아버지 이름 석자에 이차수 석자에 뚫칠 수가 없어. 그러니 법규에 의해서 가져가면 돼. 이것은 흑산면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누구 것을 뺏어 온 것이 아니네. 어느 소유도 없는 시절에 공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지. 수산법규 관리를 수협에서 한다니까 수협과 면과 흑산도민 전체가 우리 5대 할아버

지의 공을 갇아야지. 양 부락 다 돈만 없었고 분쟁지역을 어디 부락의 지선으로도 넣어줄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여. 양 부락이 패류만 공동으로 해먹고 있어.”

- 쫄: “천초나 가사리는요?”  
金: “다 거기(다물도)서 해먹어요.”  
쫄: “전복은요?”  
金: “나눠먹고.”

대담98수리11 간데대섬(中竹島)(2)

- 쫄: “4동(洞)경쟁때 증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金: “그때는 빼버렸어요. 어디로도 안 넣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를 개인소유로 만들려다가 청사진만 만들었지. 청사진만 만들어 놓고 서류를 갖추어 놓았다가 이것은 개인소유를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었는데 두 부락에서 싸움이 붙은 것이지 \*\*\*.”  
쫄: “지금도 그 청사진이 있을까요?”  
金: “모르죠. 조카가 이장하니까 조카가 보존했었는데.”  
쫄: “지금은 없어졌나요?”  
金: “모르겠어. 어디로 넘어갔는지. 청사진에는 수리 지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리 사람이니 수리 지선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신청서류지. 우리 형님이 도 수산과에 가서 보니 다물도 앞으로 해놓은 것이 명증히 나타나더라는 거여. 청사진과 맞겠어요? 안맞지. 수리 지선으로 써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물도 지선이냐 따졌으나 도에서 아무말도 없었지. 깜짝 놀래더라구 \*\*\* 다물도가 불법을 했던 것이고.”

대담98수리12 채취권 양도비리

- 쫄: “초등학교 육영회 때문에 파래채취권을 팔았었나요?”  
金: “아니네. 가사리 천초 툇 그런 몇 가지를 팔아먹었어.”  
쫄: “누가요?”  
金: “면 육영회에서.”  
쫄: “육영회에서 팔았다구요?”  
金: “다물도 사람이 그것도 김건재하고 김능한이 둘한테 팔았어요.”  
쫄: “면에서요?”

金: “육영회에서 흑산국민학교 건립 기금을 마련하느라고 육영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몇 가지를 팔아먹었어요.”

췌: “중죽도 것어요?”

金: “그렇지.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우리 집안의 문서를 가지고 간 것이예요.”

췌: “남의 집안의 것을 허락도 없이 팔아먹었다는 말입니까?”

金: “원수같이 보인다니까.”

췌: “초등학교 육영회는 해방 후에 그렇게 한 겁니까?”

金: “아니지요. 모두 일제시대예요.”

췌: “일제시대의 면장은 누구였습니까?”

金: “일제시대의 면장은 李씨였어.”

췌: “그때 넘겼던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金: “뚝은 그때는 돈이 안되었어. 해이(김), 자반(늑은 김), 가사리, 천초같은 것을 넘겼네.”

대담98수리13 분쟁관련 기록(2)

췌: “박대통령이 집권하고 몇 년 있다가 수리하고 다물도하고 싸웠습니까?”

金: “얼마 안되어서.”

췌: “면사무소에서 가져갔다는 문서는 무엇이라고요?”

金: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중죽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여.”

췌: “내용은 모르시고요?”

金: “그거야 모르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일인데.”

췌: “어디서 작성을 한거죠?”

金: “면에서 작성해서 5대 할아버지 자손들한테 넘겨준 것이지.”

췌: “일제시대 훨씬 전의 일이네요.”

金: “전이지. 그리고 지선이 나누어진 것은 사동경쟁때부터 나누어진 것이지.”

췌: “면사무소에 보관문서를 돌려 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金: “있지. 이씨와 원수가 된 것이 그것이에요. 면에 우리 5대 할아버지 유적 서류 보관함이 있더라요.”

췌: “왜 안준다고 하시죠?”

金: “모르니까.”

췌: “왜 중죽도를 낭청 할아버지에게 증여하였을까요?”



金: “가까우니까. 그 당시 줄 때 제일 안 좋은 섬을 준것여. 지선의 범위도 제일 좁고 생산물량도 안 좋은 것을 준 것여.”

全: “섬 자체는 국가 것이라면 채취권만 주셨다는 것인가요?”

金: “그렇지. 개인소유할 수 없다고 수산법규에 명시된 것 아녀.”

대담98수리14 분쟁전망

全: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金: “수리 어촌계 이름으로 채취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

全: “수리와 다물도가 다툼 이후의 일입니까?”

金: “아니지 다툼 때의 일이지.”

全: “그럼 수리에서 미역도 공동으로 채취해야겠다고 말씀했습니까?”

金: “어촌계에서 하겠다고.”

全: “어촌계에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군요. 재판할 때 어른신이 청사진을 들고 나가서 권리주장을 하셨나요?”

金: “청사진이 없었으면 다물도에게 졌을 지도 몰라.”

全: “양 마을에서 재판을 할 때 아버님도 참여를 하셨나요?”

金: “그런데 어디에도 편을 들지 않았어.”

### 第3節 흑산 홍도

<제 보 자>

이 석 진 (남: 76세)

주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구 169번지

전화 : 0631 246 2800

대담98홍도01 공동채취·경계구분

全在慶: “안녕하세요? 어르신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李석진: “이석진이에요.”

全: “춘추는 어떻게 되십니까?”

李: “일흔 여섯이요.”

全: “해초채취를 위해서 섬을 나누었나요?”

李: “홍도 전체는 1구하고 2구하고 두 개 뿐이에요. 면에서 섬을 딱 갈라줬지요.”

全: “언제쯤 면에서 분할해 줬습니까?”

李: “우리 어릴 때 일이지요. 그 전전에는 서로 뜰어다 먹었어요.”

李: “사람이 많이 살면 한구역으로는 삼십년 사십년 백년 이백년 이렇게 집을 쳐서 살면은 복잡해서 해초를 나누기가 어렵다. 도면을 딱 떼어가지고 법원에서 점을 딱 찍어놓았어. 점을 하나 찍은 데도 있고, 둘 찍은 데도 있고, 셋 찍은 데도 있지. 세 구역(뜸)으로 갈랐단말요.”

全: “1구만 세 뜰으로 나누었습니까?”

李: “아니, 1구도 그렇고 2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지.”

全: “몇 가구나 됩니까?”

李: “120가구. 많이 늘었어요.”

全: “옛날에 어른신 어렸을 때는요?”

李: “한 30가구 됐어. 면적이 커졌으니까 많이 늘고 이렇게 커졌지요.”

全: “면에서 나와 분할할 때가 일제시대 같은데요?”

李: “그렇지요. 일제시대지요.”

全: “그때도 하얀 색을 현재처럼 가운데 직선으로 긋고 양쪽에 하얀 색 둥근 점들을 찍으셨나요?”

대담98홍도02 뜰 관리

李: “예, 칠도 면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미 남미 북미 이름을 지어 주고 갔지요. 중미뜸 남미뜸 북미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중미뜸 사람은 점을 보고 자기네 뜰인줄 알고 가서하면 됩니다. ‘점이 두 개면 중미뜸이다. 점이 한 개면 남미뜸이다. 점이 세 개면 북미뜸이다’고 딱딱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연년이 돌아가요. 내년에는 반대로 가요. 두 개가 북미뜸 되고 남미뜸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바뀌가요.”

全: “1년에 한번씩 바뀌 겁니까?”

李: “예. 일년에 한번씩 바뀌가요. 설 막 쇠고 나면 딱 바뀌놓고 설명 방송을 다 해줘요. 그러면 다 알아요.”

全: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시는군요.”

李: “아 그렇죠. 그런데 중미 남미 북미는 그 뜰에 대한 한계, 그 한계안에서 만 해라. 한계를 못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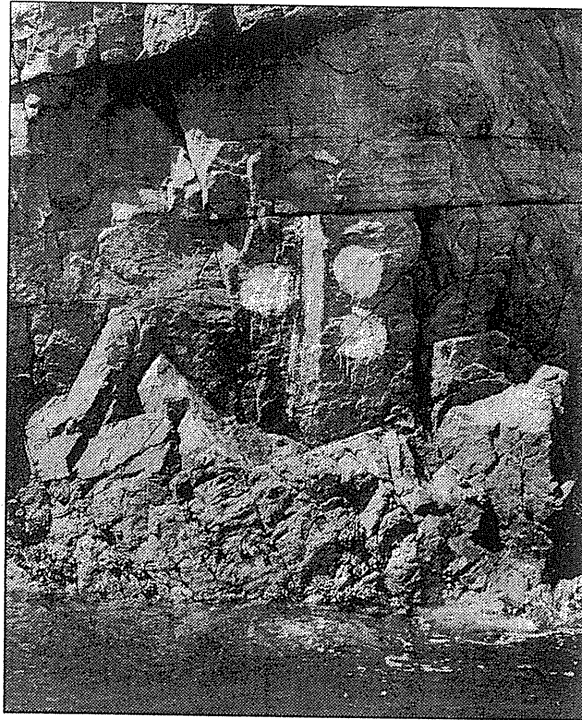
全: “한계라니요?”

李: “점 찍은 데 한쪽 밑입니다. 거기는 먼저 타고 간 사람이 미역을 채취하지요. 그럼 싸움이 나서 야단이지요. 니것이 내것이다. 니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느냐, 이런 식이 돼요.”

全: “그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李: “먼저 켜 사람이 갖다 먹어버려요.”

▼ 홍도 뜰



대담98홍도03 놓아버리기

全: “채취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李: “4월 금정(그믐)이나 되면은 놔버립니다. 찢겨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배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가서 찢겨다 먹습니다.”

全: “4월 그믐께요?”

李: “예 놔버려요. 그 책임자가 그냥 간섭을 안 해버려요. 금장도 있지요. 금장도 간섭을 안하고.”

全: “금장이 뭐예요?”

李: “금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초를 금지하는 사람.”

대담98홍도04 채취시기

全: “초봄부터 뜰 수 있나요?”

李: “뜰 수 있어요. 그러나 미역은 그렇게 안되지요. 2월 중순(음력)부터 채취를 합니다.”

全: “언제까지 하죠?”

李: “지금 아직 미역은 안 났지요. 지금 미역을 해산을 시킬 것인데 날이 장마가 들어서 맑지를 못하니까 금장이 간섭을 하고 있지요.”

全: “김은 4월 그믐께 놔버린다구요?”

李: “예 그렇죠. 배가 있는 사람은 많이 해오고 배가 없이 남의 배 얻어타는 사람은 조금 해오고 그렇지요.”

대담98홍도05 금 장

全: “금장은 어떤 사람이 금장으로 뽑힙니까?”

李: “제일 대찬 사람.”

全: “사람은 한 명입니까?”

李: “응 한 사람. 대찬 사람, 주민을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全: “주민들이 뽑습니까?”

李: “주민들이 뽑지요. 홍도로 말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

全: “금장은 매년 정합니까?”

李: “매년 정하지.”

全: “금장은 일을 안 해도 한 것(뭉)을 줍니까?”

李: “일 안 하죠. 그 사람이야 권리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지, 일을 할 사람은 밑에 많습시다.”

全: “금년에 금장한 사람이 내년에 또 금장할 수 있나요?”

李: “예, 그렇지요.”

대담98홍도06 계

全: “계에는 무슨 계가 있었나요?”

李: “어촌계가 있지요.”

全: “어촌계는 뭐라고 불렀나요? 어촌계에서 무슨 일을 했죠?”

李: “고기잡는 배 소선박. 고기잡는 배를 다뤘죠.”

全: “미역이나 김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관할하지 않았고요?”

李: “관할하지 않습니다.”

대담98홍도07 제 재

全: “뜯지 못하는 시기에 뜯거나 했을 때 별도 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음 번에는 빼버렸습니까?”

李: “여자들이 말요, 남자들 같지 않지. 다시는 하지 말라고 훈계를 시킵니다. 훈계를 하지 벌금은 없습니다.”

全: “그것은 본인이 못가지고 갑니까?”

李: “그것은 못갖고 가죠.”

대담98홍도08 호들기

全: “새로 이사오면 한 짓을 했나요. 그냥 집만 가지고 있으면 집만 차지하고 살면 됩니까?”

李: “돈도 쥐야지.”

全: “돈은 대강 얼마정도나 줍니까?”

李: “금년에 물가가 비싸니까 덜 받아야 한다 더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全: “미역금새로 따져가지고 몇 못 정도 되는 금을 했을까요?”

李: “대략 미역 30못 40못 값을 냈지요.” “일년에 미역을 잘하면 그 돈 값을 댄 사람도 있고 못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담98홍도09 생산량

全: “잘 낚을 때 50못씩 했습니까? 한 가구에서 제일 많이 할 때는요?”

李: “제일 많이 할 때가 100못 70못 80못정도, 지금은 그렇게 안돼요.”

全: “최고 100못도 했대구요?”

李: “예 최고 100못.”

全: “그럼 미역 호만 들면 김도 뜯을 수 있나요?”

李: “다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대담98홍도10 생산물

준: “뜰을 수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李: “툇이라고 있어요. 조합에서 채취하죠.”  
준: “어떻게요?”  
李: “말리면은 인제 조합에서 와서 돈만 계산해주죠.”  
준: “미역, 김, 툇 또 뭐가 있습니까?”  
李: “우뭇가사리도 있죠.”  
준: “우뭇가사리도 조합에서 수매하나요?”  
李: “예.”

대담98홍도11 관광업

준: “관광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李: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관광되니 서울사람들이 돈을 뿌려줘서 먹고 살지. 자식들 목포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유학시키고 이렇게 살지. 예전에는 참 흥도, 사람 참 못살 데입니다. 어디 집 이런 게 있어요. 택도 없소. 살다가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된거지.”

대담98홍도12 전복채취

준: “전복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李: “예전에는 전복(전복)이 수두룩했어요. 1m만 들어가면 수두룩했어요. 각자 잡아다 먹었어요. 각자 각자 잡아다가 팔아먹을 데도 없고 먹기 싫으면 내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전복바구(바위)를 이장이 팝니다. 이장이 팔아요.”  
준: “전복바위는 누가 팔죠. 금장이 팝니까?”  
李: “이장이 팔아요.”  
준: “어디에다가 팝니까?”  
李: “이 부락에다가 팔지.”

대담98홍도13 독 상

준: “전복 판매한 그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李: “돈은 이장이 책임합니다. 팔아서 그 돈도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디다 썼다면 그걸로 끝납니다. 독상거리에 팔지요.”

쫄: "독상이라고요?"

李: "예." "공고를 붙이면 인자 독상할 사람들이 금액과 이름을 적어 놓고 누가 당선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잡는 전복을 모두 사요."

쫄: "독상이라면 '혼자한다'는 뜻인가요?"

李: "그렇지. 혼자 사서 다한다고 해서 독상이지."

쫄: "채취권을 준다는 뜻이지요?"

李: "그렇지. 채취권을 주는 거지. 연년이 돌아가면서 하나까요. 연년이 돈 많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전부 그 전복을 산채로 산 거지요. 그럼 해녀가 자기들도 돈벌어먹으려고 잡지요. 그 사람에게밖에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전부 채취하지요."

대담98흥도14 해 너

쫄: "해녀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해녀들이 각자 따다가 다시 독상에게 팝니까?"

李: "독상에 당선된 사람이 사요."

쫄: "그러면 해녀들이 덜 딸 수도 있겠네요?"

李: "예 덜 따죠."

쫄: "자기 돈벌기 싫으면 해녀들이 덜 팝니까?"

李: "아아 자기 돈벌기 싫으면 덜 따지요. 돈 벌기 싫으면 말아라 뭐 이런 식이요."

쫄: "독상들이 해녀들을 10명~20명 고용해서 구역 구역 따는 것이 아닙니까?"

李: "놔버려요."

쫄: "놔버리면 해녀들이 따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줍니까?"

李: "그렇지. 다른 사람들끼리는 못사. 맘대로 못팔아먹어. 그 사람이 독상을 샀으니까 꼼짝 못해요. 남몰래 팔다가는 큰일나요. 난리나지. 그럼 그 사람은 해녀들한테 전복을 사가지고 살려요. 살렸다가 흑산도에서 배가 오면 독상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쫄: "독상을 했던 시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입니까?"

李: "일제시대부터 있었어요."

쫄: "전복을 해녀들이 따다 먹는 건 괜찮았죠. 자기 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면요."

李: “그렇지요. 따다 먹는 것은. 우리가 잡지 않소. 배에 오르면 우리가 조금 감춰요. 몇 개씩 감춰왔다 먹는 것은 괜찮아요.”

全: “해녀 작업하는 사람 말고 마을 사람들은 못갓다 먹겠네요?”

李: “그렇지 못갓다먹지. 그 사람이 시키는 건 꼼짝 못해요. 남은 일체 손을 못댁니다.”

대담98홍도15 난 상

全: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李: “해방이 또 돼요. 음력으로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쪽 독상을 사지 않았수? 그러니까 해녀들이 잡아다 주잖아. 달수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달수가 차게 되면은 그때는 또 난상이 돼버려요.”

全: “난상이요?”

李: “난상이 돼버리면 각자 잡아다 팔아먹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全: “그게 언제쯤입니까?”

李: “관광손님들이 막 터질 참에 그때 잡아다가 여름철 한철이면 놔버려요. 놔버리면 자기 멋대로 갓다 손님들한테 팔아도 먹고.”

全: “음력 6월경입니까?”

李: “6월경이죠. 팔아먹고 그래요. 날짜 한도가 있어요. 달수가 있어요.”

全: “그건 누가 정합니까? 이장이 정합니까?”

李: “이장이 정하지요.”

全: “가을에는 전복 못잡나요?”

李: “잡죠. 가을에도 잡는데. 가을에는 살이 몇 점없어요. 여름(관광)철 지나 가면 각자 잡아다 먹어요. 그때는 팔고 사는 것이 없어요. 해녀들이 가서 무조건 잡아다 먹어요. 그런다고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全: “독상기간은 언제 정합니까?”

李: “음력설 쇠면서 정해놓지. 금년에는 아무개가 당선됐으니까 그 사람이 샀다.”

全: “시작은 음력 3월부터 켈 수 있습니까?”

李: “예.” “그때는 남은 사람한테 못팔고 전부 자기가 취득을 하지.”

全: “이 마을 사람이 아니면 독상이 될 수 없었습니까?”

李: “그렇지.”



대담98홍도16 해삼·소라

- 쫄: “해삼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李: “해삼요? 해삼은 전복하고 같이 잡아요. 전복 사는 사람이 해삼을 사는데 그것이 같이 몰아 들어가요.”
- 쫄: “전복만 독상하면 해삼은 저절로 독상하는 겁니까?”
- 李: “예.”
- 쫄: “전복하고 해삼 두 개를 독상이 실제 관찰 하는 것입니까?”
- 李: “꾸적같은 것도 실제 다 몰아 들어가요.”
- 쫄: “꾸적이라뇨?”
- 李: “소라. 같이 들어가니까 전복 독상 산 사람이 같이 취득을 해버려요.”
- 쫄: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 李: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심하게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독상 산 사람도 몇 개 갖다 먹는다고 하면 그냥도 주는데 몇 개 갖다 먹는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 쫄: “현재도 독상이 있습니까?”
- 李: “예.”
- 쫄: “서로 할려고 합니까?”
- 李: “서로 할려고 하죠. 서로 할려고 경쟁이 붙어서 돈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죠.”

대담98홍도17 입 찰

- 쫄: “작년에는 얼마 정도에 응찰되었습니까?”
- 李: “작년에 천백만원.”
- 쫄: “그러면 독상하는 사람은 가을에도 천백만원 넣고, 해녀들이 따오면 값도 또 세어주어야겠네요.”
- 李: “해녀들한테 다 계산해줘야지.”
- 쫄: “해녀들은 어디 해녀들이예요.”
- 李: “여기요. 전부 지방 사람들이지요.”

대담98홍도18 소 득

- 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녀활동을 하세요?”
- 李: “아가씨 때부터 계속 한 사십 오십 살까지 해요.”

全: “이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해녀일을 할 수 있습니까?”

李: “다 할 수 있죠. 해엄만 칠 줄 알면 다 해요. 아무 것도 아니죠 해엄만 칠 줄 알면 다.”

全: “남자들은 물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까?”

李: “남자들은 일체 없습니다.”

全: “남자들은 다 고기 잡나요?”

李: “남자들은 고기 잡아도 해녀들이 가장 큰돈을 벌지요.”

全: “고기 잡는 것이 해녀들 수입보다 못했어요?”

李: “전복이 비싸지 않소. 전복이 비싼데 여름 한철만 잡아도 하루면 십만원 을 버느니 이십만원 을 버느니 하는데.”

全: “해녀들이 금년에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李: “작년에도 많이 벌었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겜브지’ 았았다니까. 연년이 추산할 때가 있고 추산이 안 날때가 있고 그래요.”

全: “작년에는 하루에 십만원씩 버는 분도 있었어요?”

李: “십만원 이십만원까지 벌었어요.”

全: “해녀들은 3월부터 작업을 합니까?”

李: “그렇죠.”

全: “그럼 6월부터는 각자 관광객들에게 팔고요?”

李: “그렇지. 그렇게 관광객들한테 파는 것도 대단히 큰 돈입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길에 돌아설 틈이 없었어요. 동네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대담98홍도19 숲

全: “산에 나무가 많은데요?”

李: “예, 이 산에 들어가면 잣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억수로 많아요. 한 20벌 나무가 총총 있어요. 그런 나무를 잘라 가지고 숲을 만듭니다. 인 부는 어디서 구했다면, 홍도에서 안 오고 장성에서 왔어.”

全: “언제 작업을 했나요?”

李: “동지 선달에도 굽고 사철이요.”

全: “그렇게 나무가 많아서 일제시대 내내 했습니까?”

李: “그렇지요. 나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무가 많았어요.”

대담98홍도20 갯바위·공동재산

- 쫄: “해변의 바위들은 누구 재산입니까. 미역 따고 김 따고 해초 따고 하는 바위들은 개인 바위들은 없었습니까?”
- 李: “개인 바위는 없지. 개인 것은 없고 면에서 딱 해줬으니까? 공동 것이지.”
- 쫄: “고기잡는 어장도 그렇습니까?”
- 李: “어장은 그렇게 안됩니다. 어장은 각자 배 있으면 각자 잡아 가지고 먹어요. 고기 잡는데 쫓아다니고 그런 것은 없었소.”
- 쫄: “마을의 공동재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 李: “공동재산은 별로 없었어요. 산은 적산이 많았지요. 공동자본(마을돈)은 있었지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요.”

대담98홍도21 재산관리

- 쫄: “마을에 돈은 어디다 씁니까?”
- 李: “그것이 기가 막힌 노릇이지. 공동자본이 있으면 군에서나 도에서나 면에서나 사람을 보내서 오지 않소. 그 사람 닳새밖에 안 있었는데 돈 백만원 썼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홍도는 이장을 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 쫄: “감사 같은 것도 있을텐데요?”
- 李: “전부 이장책임이지. 이장책임. 이장관리대로 해버리는 거요. 싸움이 났고 야단이며. 먹는걸 봤어 쓴걸 봤어 어떻게 알겁니까. 홍도는 예전부터 이장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난 말요.”
- 쫄: “독상한테 넘길 때 마을 돈이 들어오고요. 달리 마을 돈 들어올 곳은 없지 않습니까?”
- 李: “굴 그걸 팔아요. 조그만 배가 고기장사를 합니다. 회장사 그걸(이권을) 팔아요. 그것도 공금이지요.”
- 쫄: “그것도 한 천만원씩 마을에 들어옵니까? 다 합쳐서 이천만원 수입이 있겠네요.”
- 李: “넘지. 독상이 천오백만원인가 얼마나 그렇다는데.”
- 쫄: “그러고 다른 수입은 없겠고요.”
- 李: “해수욕장에 방파제 그 양쪽으로 텐트 쳐놨지요. 그 장사도 못하지요. 그걸 팔았어요. 한칸씩에 오만원씩 컷어요.”

대담98홍도22 관광업

준: "개인들이 배로 관광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李: "금년엔 한 일이 없지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큰배를 탈라요 작은 배를 탈라요 하고 물어요. 잔잔하고 그럼 조그만 배가 유리합니다. 그럼 자기 집 손님 자기 배에 싣고 돌아요. 관광선은 팔천원이라고 하면 조그만 배는 이천원이 더 있어요. 그 사람들 싣고 가다가 가에 내려요. 내려서 구경도 시키고 어디 굴속에 치밀하게 들어가서 구경도 시키고 \*\*\* 그럼 이천원은 '싼 심'이지요. 허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건 안 내줍니다."

준: "소선박은 면허나 허가 받고 하는 게 아닙니까?"

李: "소선박은 고깃배요. 큰 관광선만 허가가 있어요."

준: "소선박은 마을에서 사업하도록 관리합니까?"

李: "만원을 받고도 운전하고 오천원을 받고도 운전하고 자기 할 뜻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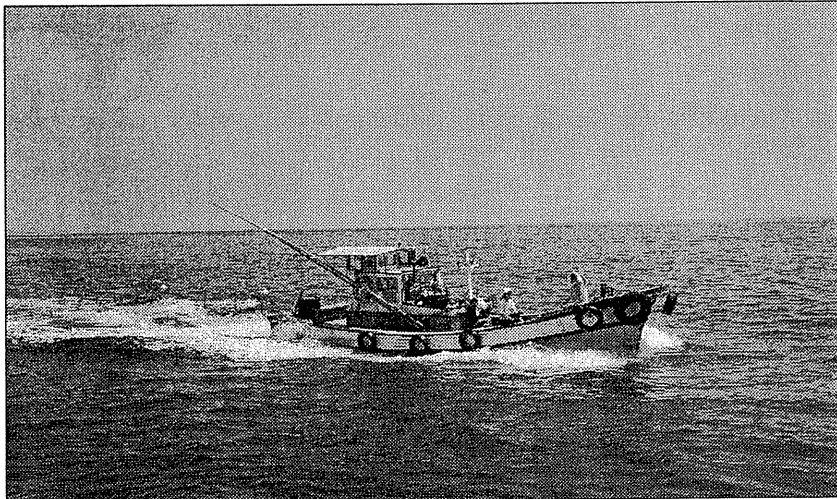
준: "관광선이 무슨 자격으로 못하게 하죠?"

李: "허가를 냈다. 우린 허가가 있다. 너희는 소선박에 사람을 싣고 못돈다. \*\*\* 꿈쩍도 못하죠. 면허가 알아보니까 소선박(고깃배)에는 (관광업)허가를 안 해준대요."

준: "관광선 사람들이 못하게 했을 때 실제 소선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떤 벌을 받나요?"

李: "벌받은 일은 없지."

▼ 관광어선



대담98홍도23 물관리

- 全: “물이 귀해서 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 李: “물은 해수욕장 넘어가면 제일 아래 구석지가 물이 났어요. 바위 속에서 물이 났어요.”
- 李: “바닷물이 빠져야 길이 나죠.”
- 全: “샘도 바닷물 속에 있었습니까?”
- 李: “그럼.”
- 全: “참 불편했겠군요?”
- 李: “원체 물이 귀하니까. 무안군 때입니다. 무안군수님이 여길 시찰하셨어요. 동네서 이장이 말을 했어요. 샘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한 통 두 통 저다 먹고 살자니 참 죽을 지경이라고. 군수님이 샘을 구경하고 와서 그러면 너희들 살 수가 있다. 시멘트를 300푸대를 줄테니까 \*\*\* 바닷물이 못들어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 주민들이 좋다고 살게 생겼다고 곡괭이를 가져가서 거기를 팠어요. 파고 보니까 물이 안가요.”
- 全: “물이 안 고인다고요?”
- 李: “물이 안 고이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물을 먹다가 물이 안 가버리니, 군수한테 얘기를 했단말여. 진정을 했어요. 그럼 큰일 났구나. 시멘트를 몇 백푸대를 줄테니까 한 집에 이십푸대씩 나눠서 땅을 파고 물탱크를 파라 이렇게 했지.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그 탱크에 받아서 먹었어요.”
- 全: “고생이 많으셨네요.”
- 李: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요. 인자 저수지도 생기고, 빗물이 오면 슬라브에 받아서도 먹고 . . .”
- 全: “샘이 안나온 것은 곡괭이질 하다가 수맥을 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 李: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발견을 할 수가 없단말여. 어찌 나던 샘이 그것을 더 파니까 더 안나오니 뭘 일이나. 깊이 파니까 빨이 나오고 모래가 나오고 그래. 모래 밑으로는 빨이 나오고 빨 밑으로는 자갈밭이여.”
- 全: “굵기가 하나 있었다구요?”
- 李: “무조건 가서 파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어떻게 돼가고 물이 나오는가 그것을 분간을 못하죠. 빨이 자연히 샘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빨을 헐어버렸으니 물이 나와봤자 밑이 돌밭인데 돌밭으로 물이 빠져버려 물이 고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없었어요.”

대담98홍도24 언 어

준: "어르신, '아심찮다'는 말 아세요?"  
李: "아짐찮하다고. 아 감사하다, 그말이지."  
준: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짐찮다입니까?"  
李: "아즘찮하다."  
준: "아즘찮하다, 그게 감사하다 그 말인가요?"  
李: "예. 고맙다는 말이오."

대담98홍도25 질서유지

준: "혹시 마을에서 술 먹거나 놀음하거나 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어떻게 혼내거나 꾸짖습니까?"  
李: "그런 일은 없어."  
준: "없었어요?"  
李: "그런 사람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홍도가 이렇게 생겨서는 몰라도 참 인심이 후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처벌할래도 처벌할 수가 없어. \*\*\* 꼭 하는 목적으로 봐서는 처벌해야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조그만 동네에서 형님 동서 이렇게 부르고 사는데 죽을 짓을 해도 할 수 없어요. 다시 하지마라 훈계해 주고 그건 법으로 따지거나 그런 일은 일체 없어요."

대담98홍도26 혼 인

준: "결혼할 때는 밖에서 시집을 많이 왔습니까?"  
李: "밖에서 많이 왔지요. 흑산도 사리에서 많이 와 살고 다물도 같은데서 와서 살긴 살어. 그런데 하나둘여. 혼인연락은 사리가 좋아 홍도하고 사리하고 인연이 좋다해요. 홍도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흑산도 섬이 딱 막아져갔고 인연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인들이 흑산도 부인들입니다."  
준: "여기 처자들은 어디로 시집갔습니까?"  
李: "여기 처녀들은 목포로도 많이 가고 흑산도로도 가고."  
준: "사리로 간 사람은 별로 없구요?"  
李: "없어. 별로 없어. 온 사람만 많아."  
준: "마을에서 결혼한 예는 거의 없었겠네요?"  
李: "마을에서 결혼도 많이 하지. 1구하고 2구하고 딱 떨어져 있으니까."

대담98홍도27 풍 란

준: "1구에서 2구까지 산길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李: "십리."

준: "걸어 갈려면 상당히 힘들죠."

李: "조금 힘들죠. 지금은 가도 못해요."

준: "요즘도 풍란이 있습니까?"

李: "풍란, 풍란이 홍도가 참 실했어요. 근데 관광지 되면서 풍란이 멸종됐지. 아주 서둘러 오면 이 사람들이 도사요, 도사. 다 뽑고 멸종돼버렸어요."

대담98홍도28 제주해녀

李: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여자들을 만났어."

준: "무슨 여자들요?"

李: "해녀들. 풍선이라고 해서 낙배가 있어요. 풍선에 해녀들 20명, 30명 데리고 왔어요. 그 배가 커요."

준: "독상들이 해녀들을 데려왔습니까?"

李: "데려온 수도 있고 여기서 모집을 해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무조건 타고 나온 수도 있고 그랬어요."

준: "제주 해녀들이 잡은 전복도 독상들에게 넘깁니까?"

李: "아니 그때는 독상들이 어디 있어."

준: "그건 언제 이야기 입니까?"

李: "그때는 일정여 일정. 내가 쪼간(조그만)해서. 일제시대 독상되기 전에."

준: "독상되기 전입니까? 그럼 그때 제주 해녀들이 와서 전복을 잡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까?"

李: "그건 아니고 천초하러 왔어요. 우뭇가사리."

준: "천초는 따가지고 제주 해녀들이 가져갔습니까?"

李: "여기서 팔기도 하니깐 홍도사람이 예전에 제주 가서 모집해 가지고 나와서 해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들이 갑자기 배를 막 타고 나와가지고 우뭇가사리를 매가지고 말려가지고 \*\*\*돈벌어서 간 사람도 있고, 뜸이라고 싣고 나와요 뜸. 뜸이라고 있어요."

대담98홍도29 뚝

준: “뚝이 뚝니까?”

李: “물 따는 것이여.”

준: “물 빼는 것입니까?”

李: “물 빼는 거요. 비와도 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만 빠지는 것.”

준: “그것을 덮어서 싣고 갔습니까?”

李: “암 그것을 덮어서 집을 졌어.”

준: “사람 사는 집 말입니까? 아 뚝이 이영이군요. 짚으로 만든 이영과 같은 것을 말하는군요.”

대담98홍도30 성풍속

李: “해수욕장에 집 하나도 없었고 자갈밭이었어. 거기다가 뚝으로 막을 처요. 여기 또 대구리어선이 많이 왔어요.”

준: “저인망 어선말이죠?”

李: “부산에 있는 대구리. 대구리 뱃사람이 내리면 형편없어요. 한번 여기 바다에 논다면은 닷새 엿새요. 보통 그렇게 먹고잡니다. 백만원 이백만원 돈으로 안 알고 그때만 해도 돈이 참 귀할 때지만은 돈 많이 썼어요.”

준: “그때가 언제입니까?”

李: “해방되기 전에 일본세상이요.”

준: “옛날에는 여기서 소실을 얻어도 말이 없었습니까?”

李: “옛날에는 보통이었지.”

준: “보통이라고요. 사람도 별로 안 살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소실을 뒀습니까?”

李: “대구리, 군산에서 인천에서 온 풍선, 그 배들이 전부 돈을 퍼주고 가는 거지요. 배가 짝 차버립니다. 잡배들이 짝 차고 대구리들이 들어옵니다.”

준: “소실을 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까?”

李: “아니요.”



### 第4節 고흥 외나로도

<제 보 자>

김 영 호 (남: 76세)  
 주소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17 -1  
 전화 : 0666 33 3980  
 참고사항 : 이장 역임 / 상업  
 김 소 아 (여: 김영호氏 사촌동생)  
 주소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김 동 민 (남: 60세)  
 주소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103번지  
 전화 : 0663 33 6344  
 참고사항 : 어선선장 역임 / 통발어업(현재)

대담98외나로01 무단영업

所在慶: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 마을 사람들입니까?”

김소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차려놓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자기 장사만 하고 말면 좋겠는데, 남이 허가낸 장사까지 뭐뭐 해서 옆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金영호: “허가없이 무조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옆의 장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김소아: “허가를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구애를 받지요.”

奎: “마을에서 허가내서 하는 겁니까?”

金: “아뇨.”

奎: “이미 하는 분은요?”

金: “마을에서 내는 것 아니죠.”

김소아: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서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것이고.”

奎: “마을사람은 마을사람이고요?”

김소아: “예 우리마을 사람인데 자기네도 허가내서 하지요. 여기는 말하자면 똥글로 어디서 와가지고 저렇게 딱 차려놓고는 부락민들한테 인사의 말 한마디없이 차려놓고 허가내고 하는 장사인양 간판을 딱 붙여놓고 한다는 것이예요.”

奎: “인사라면 부녀회같은 데 인사를 해야 할까요?”

金: “저것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부락의 풍토로 말하자면 장사를 안하더

라도 '제가 여기 왔습니다'하고 신고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차려놓고 부락에 말이 없는 것은 우리 부락에 한한 문제이고요, 저 장사하는 데는 세금을 물고 당연히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해야 맞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이동포장마차처럼 어딘가에서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의 장사는 지장을 받지요."

대담98외나로02 무례·무시

준: "얘기를 하면 마을에서 좀 봐 주신다는 것인가요?"

金: "타협이 되면 할 수도 있지."

김소아: "우리 부락 주민도 내가 그런 것을 할려면 어른들에게 '이렇습니다' 하고 술 한잔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작정 와서 어물세를 낸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없이 자기네들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金: "한마디로 생각하자면 부락을 무시한 것이죠."

김소아: "깊은 데 살고 있다고 무시하니까."

준: "어떤 분에게 말을 해야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닐까요?"

金: "지금 이장이 없거든요."

김소아: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내 땅에다가 내집에서 장사를 하지만, 다 같은 장사인데 나는 '우리 부락에 다만 얼마라도 내놓고 장사를 할랍니다' 하고 장사를 하는데요."

金: "이장이 부산서 임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 얘기도 안하고 물론 그네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하고 기다려도 봤지요. 원래는 장사도 안하고 뜻밖에 야간에 와서는 텐트치고 있어서 놀러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손님이 오고 또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된거지."

준: "못하게 말리실 건가요?"

金: "부락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락을 떠나서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거지. 세금도 물지않고 무조건 와서 장사를 한다 옆사람에게 방해를 준다해서 장사측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대담98외나로03 이방인

준: "외지 상인들을 철수시킬 건가요?"

김소아: "철수하는 것보다도, 마을의 청년 승평이가 그러대요: 부락 상호씨랑 작은 아버지가 '그래 뭐 사람인디 저렇게 와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승평이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치 않고, '여기서 포장마차식으

로 준비해서 이 부락에서 안하는 장사를 한번 해볼랍니다'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락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부락사람한테 예고도 없이 장사를 시작해서 되겠느냐, 부락에 다만 뭐라도 내놓고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까지 생각치 못하고 우리는 한달보름쯤 안하는 장사만 할려고 했고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金: "안한 장사고 한 장사고 간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김소아: "이야기는 해볼랍니다 했지만 지금까지 어디 우리 주민들이나 부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었느냐? 물으니 아무 말 없었다고."

金: "그쪽에서 먼저 말 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김소아: "아무 것도 안하고 간판을 딱하니 달고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金: "부락사람을 무시한 것인지 장사를 무시한 것인지 물어보면 알겠지."

준: "아주머니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기록할려고 합니다."

김소아: "우리 사촌오빠예요."

金: "김가요."

준: "그럼 시집은요?"

金: "우리 집에서 최씨네 집으로 시집을 갔지."

준: "한 마을에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김소아: "예."

金: "김소아라고 해요."

김소아: "저기도 우리 동생이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마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합원도 만들고, 이 부락 주민이 되면 백날을 살아봐도 어디 가입을 안하면 아무것도 못해먹고 살았어요."

대담98외나로04 입 호

준: "지금 무슨 조합이 있습니까?"

金: "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 "어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소아: "예, 여기서 분가를 하면 동네에 가입을 해야해요. 옛날에는 막걸리와 좋은 안주로 대접하고 해야 해초 같은 것을 같이 뜯어먹게 되고 했어요. 그런 마을인데 어디서 온 사람이 말도 없이 이러니까 '어쩐 일이냐' 오며가며 하는 말이에요."

金: “전박사님은 농촌이나 어촌의 문제를 조사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거든.”

김소아: “선생님, 나 하는 말은 지워주세요. 이것은 우리 오누간에 하는 말이니까.”

金: “요즘에는 지방의원이 있지만 민원 홍보가 잘 안되는 것같더라고요. 이장이나 면사무소 말단직원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나 할까.”

대담98외나로05 민원불만·고발기피

췌: “어떤 일에서 민원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까? 말단에서 주민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金: “요새 말단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있으면 법에다 호소(민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당신이 누구요?’ ‘어디 사요?’ ‘성명이 누구요?’ 이것부터 다루거든. 상대방이 강한 것 같으면은 민원인을 잡아요. 그래서 평가가 나쁘게 되어버려요. 민원인이 고소를 했느니 고발을 했으니 해서 아주 나쁘게 되어버려요. 사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쁘게 돼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다 해서 법에 고소하면 ‘그런 일로 법에 고소를 하느냐’면 고소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金: “대한민국은 거의 그렇다고 생각해요.”

췌: “선생님이 겪으신 거나 주변에서 겪은 사례가 있습니까?”

金: “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고소를 하면 왔다갔다 괴롭기만 하고 대가가 없거든요. 도시에서도 길거리에서 맞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버립니다. 끼어들어 봤자 내가 피해를 보니까 안해버린다 이거죠.”

대담98외나로06 공직사칭

췌: “뉘시나 수산, 관광 문제로 불편한 적은 없으세요?”

金: “많이 불편하죠. 서울이나 광주 등에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촌이라고 무시합니다. 시골사람을 함부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영업을 하고 뉘시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한번은 순천사람이 ‘나는 검찰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촌사람들이 감히 ‘신분증 봅시다’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그 사람이 항상 와서 저기 섬에 가자면 가고 또 돈도 주는대로 받는 거지요. 6,7년 전의 일인데 서울서 우리 아들이 와서 보니 삼촌뻘 되는 사람을 지 마음대로 부리고, 돈도 기름값도 안나오게 주더라고요. 애가 ‘삼촌 손해갈 일은 하지 말라고 하니 그쪽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검찰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경찰이 와보지 않고 전화로 '차번호 적어주라, 뭐 적어주라' 고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싸움이 나서 가보니까 검찰에서 왔다면서 증명서를 주더라구요. 그때는 어두워서 안보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 밑에서 보니 검찰증명서가 아니라 옛날에 정보부에서 부락마다 정보원을 둔 일이 있었는데 그 증명이더라구요. 이 일을 파출소에 알렸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빌고 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대담98외나로07 해변항유권(1)

全: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불편하시지요?"

金: "오물세를 3000원씩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자들도 오고 많이 옵니다. 기자가 와서 허가가 있는 것이냐고 묻드만요. 무슨 허가가 있겠느냐고 했죠. '주차세는 받지 않고 오물세만 받고 있다. 오물물 하루라도 안치우면 차로 한 차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부녀들이 전부 주워서 소각시키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어야지. 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 해서 말썽 없이 해주시오' 했더니 그때부터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全: "상당히 중요한 문제군요. 사실 길이 있다고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조상대로 살던 본고장이니 못들어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金: "나는 '산 너머 도로를 뚫지 말아라. 왜냐하면 개발이 많이 돼서 손님이 많다면 되는데, 개발도 되지않았는데 사람부터 들어오면 여기는 엉망이 될 것이다. 개발부터 되고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全: "그래서 여기 도로공사를 하다가 말았군요."

金: "그래서 오다가 말았는데, 우리 부락 사람들은 여기서 거기(내나로도)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왜 공사를 막느냐고 하거든요. 나는 경기도 땅을 다 가봤는데, 약수터 가는 길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차로 가다가 막힙니다. 약수터까지 차가 들어가면 약수터가 안좋게 변하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이죠. 나는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고 느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가 해상공원이 되었습니다. 언제 일할려는 지는 몰라도 완전히 일을 해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거든요. 부녀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또 '3천원이면 너무 적지 않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원을 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대담98외나로08 어 황

全: "옛날에는 수산업이 잘 됐습니까? 요즘 수산업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金: “나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한동안은 갈치가 많이 낚다가 한동안은 삼치가 많이 낚다가 한동안은 조기가 많이 낚다가. 옛날에는 각종 고기가 많이 낚거든요. 일본에 수출해 돈도 많이 벌었고. 자꾸 바뀌어간다구요. 삼치가 많이 나서 유자망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던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무슨 고기든 전부 고갈되어 버렸어요. 뭘 고기고 안 잡힌다 이거지요.”

쫄: “언제부터 안잡혔어요?”

金: “이렇게 갑자기 안잡힌 것은 금년이고 자꾸 고기가 줄어든다고 한 것은 한 10년, 고기가 옛날만큼 안잡힌다고 한 것은 25년으로 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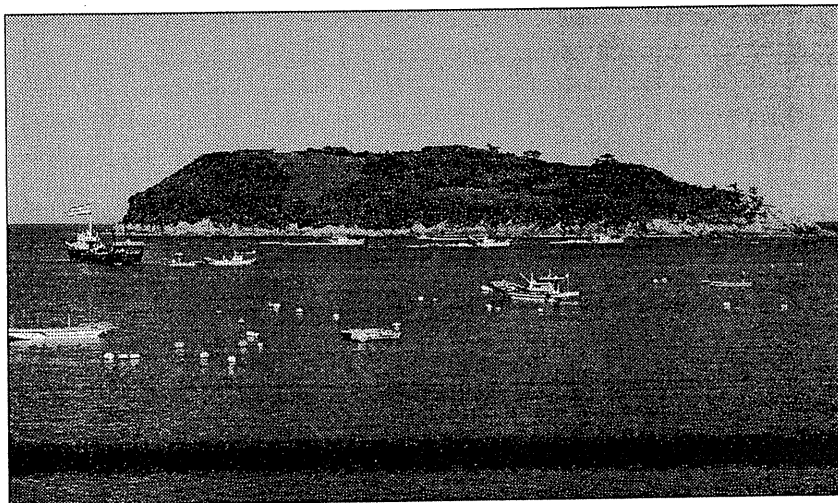
쫄: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한 이유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 분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金: “우리가 몸에 이나 벼룩이 있다고 약으로 그것을 잡으려 해도 안잡히던 것처럼 고기도 아무리 잡아도 자꾸 잡히더니 중간에 이렇게 없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장폐수같은 것이 바다로 들어가거나 배에도 파래가 잘 안 지고(자라고) 오래 가도록 페인트질을 하니까 물이 전부 오염이 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쫄: “FRP선박도 안좋다면서요?”

金: “그것도 처음에는 허가를 안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가를 준 데가 있어요. 그것이 말도 못하게 독하거든요. 양식하는데 쓰는 약, 그리고 낚시하러 다니는 분이 쓰는 떡밥 등 여러 가지가 해롭지요.”

▼ 외나로도(목섬)



대담98외나로09 뉴시 오염

쫐: “떡밥이 어떻게 나쁜가요?”

金: “그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방송한 뒤 ‘떡밥을 뿌리면 구속하겠다’고 했지만 그 법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몰래 몰래 가져와서 쓰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일도 없더라구요.”

쫐: “떡밥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金: “떡밥을 먹지는 않는데 그 냄새가 좋아서 고기가 쫓아온데요. 감생이 같은 것은 5,6월에 잡으면 알이 탕탕하고 고운데 산란을 똑꿍어지게 했데요.”

쫐: “물이 안 뒤집히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지요?”

金: “물도, 오염이 세기만 했지, 안뒤집는다 이겁니다. (오염물질들이) 물에 떠 다니다가 가라앉는데 물이 뒤집어져야 하는데 안뒤집어져서 고기가 못살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죽어버리는 것이지. 양식장 가에 약품있는 곳의 고기는 죽어버리거든요.”

대담98외나로10 적 조

쫐: “양식장에서 약을 뿌리는가요?”

金: “그 약을 먹지요. 또 옛날에는 강으로 만든 것을 던져 터지면 고기가 떴는데 요새는 적조를 만나면 싹 죽어버려요.”

쫐: “적조가 많나요?”

金: “나루도는 적조가 많이 닿는 데예요. 근처에서 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완도 여천에서 많이 하고, 그 외에 통영에서 많이 해요. 동풍이 불면 여천에서 오고 서풍이 불면 완도에서 오고 해서 만나는 곳이 나루도라서 적조를 많이 만들어요. 삼천포 통영 같은 곳은 동풍 불 때만 튀가 떴서 밀려오는데 나루도는 동풍, 서풍 다 받아서 적조같은 것이 제일 심하지요.”

쫐: “물이 뒤집어지면 도움이 될까요?”

金: “경험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 장어활어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장어를 많이 잡아서 일본에 수출했거든요. 태풍이 한번씩 오면 고기가 잘 잡혀요. 뒤집어지면 빨밑에 먹이가 많이 일어나 먹을 것이 많아져서 좋고 (생땅이 묻혀서 좋은지는 몰라도) 태풍이 지나간 후로는 고기가 잘 물려요. 제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다 그렇게 말해요 ‘태풍이 지나가 봐야 안다’고.”

대담98외나로11 장어·통발이

- 준: "장어를 통발이로 잡아다가 키워서 수출했나요?"
- 金: "옛날에는 통발이로 한 것이 아니었어. 민물장어처럼 생긴 참장어라고 있어. 지금은 참장어라고 하고 옛날에는 개장어라고 했거든."
- 준: "강물에 갓다오는 장어 말입니까?"
- 金: "아니지. 그건 민물 반 갯물 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 갯물에서만 사는데 맛이 좋아요."
- 준: "칠성장어라고 하는 건가요?"
- 金: "가시가 많이 있어. 주둥이가 뾰족하고 민물장어처럼 생겼어. 삼치 사시미와 장어 사시미라고 했는데 장어 사시미는 탈도 없고 좋은 거요. 한국 사람은 먹을 줄을 몰라서 일본으로 다 갔는데 한국사람이 알고 나서는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경도 못해요. 금년에도 조그만 배들이 많이 와서 장어를 잡았어요. 가서 물어보면 '잘 안잡혀요' '죽은 장어 있으면 한 마리 팔쇼' 해도 '장어 없어요' 합니다. 그렇게 장어가 소중한데, 여기서 그렇게 흔한 장어를 잡는 가는데 장어구경을 못한다니까. 옛날말로 말하자면 구전도리라고 있어. 구전을 먹고 돈을 내준다고. 배도 한짝 해주고 출어자금 다 해주고. 옛날에는 하야시까네같은 일본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자본을 가져다가 중간 구전도리가 업자들한테 나눠주고 했어요. 선불을 쓰거든요. 장어를 잡아줘야죠."
- 준: "일본사업가들이 그랬나요?"
- 金: "예. 여기서 바로 신고 일본으로 가요. 일본은 한 마리를 못사간데요. 잘라서 동강이를 싸가지고 가지. 한 마리는 너무 비싸서."
- 준: "참장어를 예전에는 이 부근 어민들이 직접 잡으셨나요?"
- 金: "우리 부락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잡았어요."

대담98외나로12 거래방법(구전도리)

- 준: "요즘은 잘 안잡히나요?" "거래조건은 어떤가요?"
- 金: "요즘은 화섬이라고 그 부근에서 잡아요. 거래조건이 옛날하고 틀려요. 말들어보면 옛날에는 금년에 성의대로 잡아다 주면은 빚을 못갚아도 공으로 그것을 쥐버린 모양입니다.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번덕이 있으면 안되도, 적게 잡든 많이 잡든 성의대로 잡아 일년을 채웠다하면 나중에 떨어진 돈은 공으로 쥐버린 모양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대담98외나로13 장어잡이·활어선

全: “몇 월달에 장어가 많이 잡힙니까?”

金: “지금 많이 잡히죠. 하사마라고 3월말에 된다치면 굉장히 얇은 물에서 장어가 잡히거든요. 여름되면 이 부분에 많이 잡히죠. 찬바람이 나면 온도 따라서 깊은 물로 나가요. 원양어선에서 잡은 장어는 이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것은 맛이 없고.”

全: “화도 사람들은 지금도 장어잡이를 합니까?”

金: “화섬, 금년에 한 여남은척 와서 하던데요.”

全: “가깝습니까?”

金: “여기서 가깝지요. 화섬이라는 데가 옛날에 우리 동네라고 해서 나루도에 딸렸었거든요. 중간에 말하자면 거적변경을 안했다고 지역거적을 떼어서 도화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가버렸어요. 가까운 데로 다 떨어져 나갔지요.”

全: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金: “얼마 안걸려요.”

全: “뉘시배로 가면 얼마나 걸려요?”

金: “한 두시간이면 걸립니다. 나루도로 갈려면 한 40분 걸려요.”

全: “장어활어사업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잡아서 활어선에다 싣고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까?”

金: “‘이끼수’라고, 말하자면, 장어를 살려서 운반하는 배가 있지요. 조금 높게 배를 지어 가지고 장어가 구멍으로 안 나오게 그물코마냥 구멍을 촘촘히 내요. 한 창에 얼마 담는다고 하는 것이 딱딱 있거든요. 많이 담으면 죽어요. 여기서 싣고 화섬 가서 싣고 어디 가서 싣고 해서 싣 걸어 실어요. 양이 차면 일본으로 가죠.”

대담98외나로14 어 황

全: “지금 마을 분들은 장어를 안잡으시나요?”

金: “사람이 다 없는데, 죽고 객지 나가고. 해방된 후로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일본가서 그렇게 비싸도 잡는 사람은 수지가 안맞아서 그만두고 객지로 나가버렸지. 그리고 장어가 안잡혀. 한국에는 힘있는 회사가 없었거든.”

全: “주소와 존함을 말씀해주세요.”

金: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부락 17-1, 김영호.”

쫌: "마을 내력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金: "조금 있다가 식사하고 내려오면 그때 얘기 해요, 지금도 장어잡이같은 것 하는 분들이 있어요."

쫌: "지금도요?"

金: "과거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담98외나로15 연안어업·근해어업

쫌: "김동민 선생님, 경력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김선장: "20대부터 남의 배도 타보고 책임자도 해보고 직접 사업도 했습니다. 한국 바다면 어디에서나 조업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어디 배는 어디까지 못하고 어디서는 어디 밖에 못하고 합니다. 어디 가서 어장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그것 밖에 안돼요. 전국 허가가 있고 군의 허가가 있습니다."

쫌: "연안어업이 있고 근해어업이 있죠. 지금 연안어업이 불편하다는 말씀인가요? 근해어업은 전국 어디나 다니는데."

김선장: "연안어업을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쫌: "그럼 근해어업으로 허가종류를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김선장: "그런데 안바꿔줘요. 현재 저는 문어잡는 통발이를 하고 있는데, 서류까지 전부해서 냈습니다만 통발이 허가를 금년에는 안내줘요. 통발이 저것이 바닥에 던져서 고기가 들어가면 잡는 것이고 안들어가면 못잡고 하는데 허가를 안내줘요."

대담98외나로16 통발허가·어장침탈

쫌: "통발이를 매년 갱신합니까?"

김선장: "아니예요, 저것도 연도가 있네요. 제가 통발이 허가를 못냈습니다."

쫌: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김선장: "티오가 없어서 앞으로는 통발이를 못하는데요. 부근 10톤·15톤되는 배들이 통발이를 가지고 여기 앞바다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조그만 것도 못하게 해요. '당신네들 남의 해안에 와서 불법으로 그럴 수 있어요'하면 '허가가지고 하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하게 당한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정리해줘야겠고요. 가에서는 조그만 배들이 잡아야 하는데 굵은 배가 이런데 와서 쏘시고\*\*\*."

쫌: "굵은 배들은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인데 연안에 와서 할 수 있나요?"

김선장: "허가있다고 하면서 와서 해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허가를 줘도 툰

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톤 이상은 통발이 허가를 안준다든지 1톤 이상 1.5톤이나 2톤까지만 허가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겠고.”

쫄: “현재는 통발허가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대담98외나로17 어장갈등

김선장: “안주니까 우리가 못냈죠. 어디로 못갔지.”

쫄: “큰 배들은 주고요?”

김선장: “그 배들이 와서 할 때 우리들이 가서 질문을 하면은 ‘허가 가지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뭐요’ 하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다 이겁니다.”

쫄: “그 배들은 어디 배들입니까?”

김선장: “여천갈래 경남갈래 이런 배들이 많이 오지요. 그런 배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들도 허가를 줄려면 같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싶고.”

대담98외나로18 불법어로

쫄: “대구리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다른 어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던데요.”

김선장: “지방의 근해에서 고대구리 배들이 굵으면 작은 고기 하나 없이 쓸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정부에서 부정어업이다 해서 단속을 하고 저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줄려고 하면 일체 단속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마음대로 해라 하든지 해야지. 단속한다고 매일 해 봐야 단속이 안되죠. 그 배들은 계속 작업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어업이 안 줄어 들고 고기들도 안 나오고 하지요.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

쫄: “고대구리는 어디 배들이 많이 합니까?”

김선장: “잘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어디나 하겠지요. 경남, 나로도 할 것 없이 다 하겠지요.”

쫄: “나로도에도 고대구리 배들이 있습니까?”

김선장: “있지요. 척수는 몰라도 있다고 보지요.”

쫄: “어민들이 고대구리를 싫어하시죠?”

김선장: “다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막 훑으니까 그리고 금지보다도 척수를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산란시기에 못하게 하면, 동네 고대구리가 100척 같으면 20척이나 30척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제거해 버린다

든지 그렇게 안할려면 해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든지 해야지요.”

대담98외나로19 문어잡이·관행권

쫄: “허가 없으면 문어잡이도 마을 앞에서 허가 없으면 못합니까?”

김선장: “우리 부락은 우리 부락이니까 하지요.”

쫄: “그건 하계 합니까?”

김선장: “예, 여기는 우리가 몇 백년 지켜온 해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락 주민이 우리 부락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남의 동네는 못가죠.”

쫄: “허가 있는 사람은 남의 동네 들어갑니까?”

김선장: “들어 갈 수 있죠. 남의 동네 가서 마음대로 해버리죠. 뭐라고 하면 허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당했고 직접 당한 사람도 있고.”

쫄: “서로 자기 동네 앞에서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마을 안가고.”

김선장: “이것도 원칙은 산란기 때는 안 했다가 지나면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산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봄 가을 여름이고 계속 새끼가 있고 알을 차고 있어요. 10월 중순부터 그 이듬 4월이나 5월까지는 건들지를 않죠.”

쫄: “안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선장: “잡히죠. 그런데 파도가 높고 날씨가 추우니까 안하죠. 날씨가 풀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나가서 일을 하고 하지요.”

대담98외나로20 관료주의

쫄: “단속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김선장: “지금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고 하는데 우리 부락 사람이 산에서 일하다가 발을 분질렀거든요. 어찌 할 수도 없고 나루도에 병원도 없고 해서 조일호라는 우리 배에 싣고 여수로 들어갔어요. 여수문항장에 들어가니까 관리선이 와서 잡대요.”

쫄: “언제쯤요?”

김선장: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나 어장할 때니까 7,8년 이상 되었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깐 왜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고 하데요. 그래 '이보쇼 환자가 이리이러한 데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는 객선도 없고 차도 없고 해서 부득이 우리가 싣고 왔소' 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서류를 뺏어서 상당히 힘들어서 찾았습니다. 정부에서 '봐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의심없이 봐주고 안되는 것은 다시는 뿌리가 안생기게 만들어 버려야지 하는데, 줄이 있는 것인지 버젓이 하는 놈은 하고 한 낙에 걸린 놈은 딱딱 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욕을 보고 하는 것이죠.”

대담98외나로도21 조업갈등

- 쫄: “멸치잡이 배들과 마을하고나 다른 어업하는 분과는 갈등이 없습니까?”
- 김선장: “멸치잡는 분들을 우리가 붙들고 ‘멸치를 안 잡아야만 고기가 들어올 텐데 왜 고기밥을 당신네들이 내버려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배들이 전부 허가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 쫄: “허가구역이 많습니까?”
- 김선장: “모르죠 어디까지인지는 안받아 봐서. 허가구역이 어디까지 나는지 모르죠.”
- 쫄: “멸치를 많이 잡으면 먹이가 없어져서 고기가 안온다는 생각이십니까?”
- 김선장: “그렇죠. 절대 그렇죠. 아까 부정어업인 고대구리도 전부 씨를 말리니 고기가 안 들어오죠. 방해되죠.”
- 쫄: “멸치잡이나 고대구리가 연안어업에 장애가 됩니까?”
- 김선장: “많이 되죠.”

대담98외나로도22 조업한계

- 쫄: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김선장: “제가 10톤이나 20톤을 가지고 제주도나 이런 데를 다녀봤지만 지금은 조금만 배 타고 다니니까 애로는 없습니다. 우리 배가 조그만해도 기계에 쇠내기(선외기)를 달아서 기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 쫄: “마을 앞바다는 보통 몇 마일이나 나갑니까?”
- 김선장: “우리가요? 몇 마일도 아니죠. 바로 가에만 찍어 다니는 거죠. 가서 10미터 내지 5미터 요게 어장입니다.”
- 쫄: “더 나가면 안 됩니까?”
- 김선장: “안돼요. 빨이 되니까.”
- 쫄: “빨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김선장: “이것은 돌 짝 이런데 사이에 문어가 있거든요.”

준: “뺨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선장: “뺨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 “그럼 마을 앞의 가예로?”

김선장: “예 그렇죠.”

대담98외나로23 낚시거부

준: “목섬에 나가보니까요, 바다 밑의 바위들에 때가 많이 낀 것 같아요. 바다가 예전과 달리 깨끗하지 않은 것같은데요.”

김선장: “그렇지요. 우리 부락에서도 한동안 낚시 하러 다니는 분을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미끼라고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바다에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락에서는 통제를 하며 우리 부락에 들어온 차는 돌려 보냈는데 관광선이 실어다가 쫓습니다.”

준: “낚시꾼들을 말입니까?”

김선장: “예. 낚시하는 사람들을 잡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준: “잡으로요?”

김선장: “잡으로요. 해봐야 여기 젊은 분들이 있습니까,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라 배에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만일에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일도 시도를 하다가 그만두었지요.”

준: “낚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김선장: “없죠. 우리는 해안이 오염되고 쓰레기 가져다 버리니까 ‘오지마시오’ 하는 것이지. 낚시를 통제할 수는 없죠. 다만 쓰레기를 버려 오염을 시키니까 ‘당신들은 우리 해안에 오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준: “낚시하는 사람이 입어료나 입장료 같은 것을 냅니까?”

김선장: “전혀 없지요.”

준: “아무나 와서 낚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선장: “그렇지요. 이 근년에 도로변에 많은 차들이 무단주차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부녀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가 수고비를 받아야겠다 해서 면에 의뢰를 하고 면에서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치울랍니다’ 하고 3천원인가를 수고비로 받는다고 합니다.”

준: “제가 생각하기에 낚시하는 사람은 마을에 입어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와서 낚시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김선장: “그분들과 대화도 안해봤고 주민들도 그것까지는. 그분들도 하루나  
왔다가 서해로 갔다가 동해로 갔다가 하는 사람이라 입어로 같은 것  
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약같은 것을 해놓고 일년내내 다  
닌다든지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각처에서 왔다갔다하  
니까 입어로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대담98외나로24 해변 향유권(2)

쫀: “외지인들이 마을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면 못하게 말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마을 바다라면 외지인들이 낚시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선장: “제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온 낚시꾼들을 낚시배하는 사람  
이 안 실어다 줘서 낚시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기도 했어  
요. 그런데 다른 곳 배가 실어다가 주고 하니 그분들은 우리가 조금  
벌어먹겠다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고 다른 배는 왜 하게 놔두냐고 그  
래요. 낚시꾼들은 언제나 새벽에 여기 사람 일어나지도 않아서 낚시  
터에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지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도리가  
없죠. 하반마을 주변에 낚시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정부에서 못막는  
일을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쓰레기 때문에 해초도 안  
자라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여기에 쓰레기  
를 버리면 우리 부락 부녀가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날짜에  
관계없이 수고비로 해서 차 1대당 3천원을 받는 것으로 했죠.”

대담98외나로25 갯뚝기

쫀: “해초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갯뚝기 같은 것도 했습니까?”

김선장: “했어요.”

쫀: “요즘도 하세요?”

김선장: “요즘에는 안합니다.”

쫀: “사람이 없어서요?”

김선장: “예, 제가 63세인데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쫀: “갯뚝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김선장: “예전에는 갯뚝기를 하고 비료도 주고 했어요. 연장을 가지고 가서  
약간 비리거든요. 굴통, 오조개 같은 잡조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해줍니다. 미역이나 돌김이 자라는 자리에 잡초가 자라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문대주는 것을 우리는 갯뽕기라고 하거든요. 근래 들어서 돌미역이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까지도 갔거든요. 그만큼 알아줬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툇같은 것도 우리 부락이 제일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듣는 말에 의하면 미역양식하고 해태양식하는 사람이 잡초가 영기니까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느냐고 합니다.”

쫄: “갯뽕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김선장: “겨울에, 미역·김·가사리·툇 같은 해초가 봄에 나거든요. 가을쯤 이것이 없을 때 닦아놓으면 이것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85호 이상되었을 때는, 인구가 450명 내지 460명 되고 학생이 120명 되고 했을 때는 해초로 하반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지금 농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부락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한달거리도 안되요. 전부 외지에서 들여와요. 해초로 쌀도 사먹고 했는데 금년에는 미역같은 것이 전혀 안되더라고요.”

쫄: “물 밑에 보니까 실제 미역같은 것이 없더군요.”

김선장: “아직 안 길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길어서 할 만하면 봄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와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못 해버리고.”

대담98외나로26 생업대책

쫄: “앞으로 수산자원이 점점 귀해지고 경쟁도 점점 심해질 것같은데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세요?”

김선장: “우리 부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초가 막상 길어도 노동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해안을 유지를 해 나가느냐만 생각하고 있지. 나만 해도 노젓고 밧줄 당기고 하는 것이 1,2년이지 앞으로는 문어통발이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처럼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부 나가고 활동할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쫄: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입어료라든가 관광수입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선장: “그런 방법을 해주면 좋죠. 거기까지 손이 닿아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죠. 도로가 어디나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렇게 군수나 면장에게 건의해도 안돼요. 이런 마당인데 정부에서 관광사업으로 하반주민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이 언제 될지 모르죠.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로 막아져서 내 땅에 내가 집도 못짓고 아무 것도 못해요. 하다 못해 장사집이라도 지어서 뭐든 할려고 해도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아무 훼손이 없으니까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98외나로27 그린벨트·불법소각

썰: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조사중입니다. 고흥, 여기 먼 섬인데도 그린벨트 제한이 심합니까?”

김선장: “그렇죠.”

썰: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가꾸자면 낚시군이나 양식업자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고 관광객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사는 분들이 생활 쓰레기를 버리시는 것도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요?”

김선장: “당연하죠. 소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원칙은 도시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차가 싣고 가야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쓰레기차는 면내 주위만 돌기도 바쁘거든요. 분리수거하고 전화하면 깡통같은 것은 싣고 갑니다. 우리가 소각시킬 것은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각을 시키지 해변가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대담98외나로28 풍어굿·인력부족

썰: “혹시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낸 적이 있으셨어요?”

김선장: “있죠. 처음에 배를 묶었다 출어를 할려고 하면 무당들한테 물어서 고사를 지내고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우리는 고기가 잘 안된다하면 가서 물어서 ‘뭇이 어떻다’ 하면 그렇게 하고 했지요.”

썰: “요즘은 그런 것 안 지내세요?”

김선장: “요즘은 그런 것 없죠.”

썰: “왜 안 지내세요?”

김선장: “요즘은 그럴 배들도 없어요.”

썰: “어선이 없는 것이 고기가 없기 때문인가요?”

김선장: “고기도 고기지만 운영을 못해요. 우리 부락 사람은 몇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사람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객지사람은 복덕방에 가서 얼마 주고 빼가지고 온 사람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담98외나로29 어선 복덕방

쫌: "술로 조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김선장: "조져버린다는 말이지, 돈을 벌면 한 입에 다 써버린다는 말이죠. 어선 복덕방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이 들어 필요합니다' 하고 둘 얼마주고 소개비주고 데려오면 몇 일 있다 어디로 날라버리고."

쫌: "그 사람들이 조집니까?"

김선장: "예, 선원들이 달아나지만 앓는다면 이 사업은 할 사업은 할 사업인데. 당시 나라도에 유자망이 40척 내지 50척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두척에 불과합니다. 이 배들도 연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밖에 가서 잡아온답니다. 20톤·30톤, 크게 만들어서."

쫌: "어선 복덕방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선장: "나라도에는 없고 여수에 있습니다. 목포도 있고."

쫌: "선원들 주로 소개해주는 곳인가요? 지금도 있나요?"

김선장: "지금도 있지요."

대담98외나로30 당 제

쫌: "굿하실 때 처녀당 같은 곳을 찾습니까?"

김선장: "그런 것은 없어요."

쫌: "당제를 안 지내십니까?"

김선장: "그전에는 당을 깨끗한 사람으로 모셨는데 그것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당을 안지내거든요. 마음만 가지고 있지요. 그전처럼 제주를 정하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쫌: "혹시 당에 누구 모시고 있는지 아세요?"

김선장: "모릅니다."

쫌: "여기가 고향이시죠?"

김선장: "예."

쫌: "당제를 지내지만 누구를 모시는 지는 모르고 그냥 당제를 지내셨습니까?"

김선장: "저는 안 지내 봤으니까 모르는데 당제에 산신님을 모신 것인지 우리 부락의 주체를 모시고 이런 분을 당제로 하자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 하반마을 고묘



대담98외나로31 선거법 유감

쫄: “선거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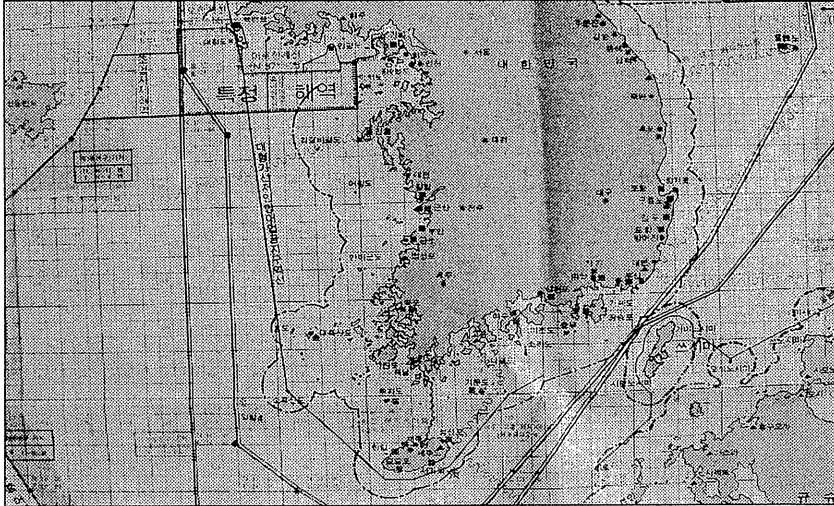
김선장: “선거운동할 때 돈을 못쓰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낱돈으로 먹었지만 지금은 다발돈으로 먹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 그 말이 딱 맞는 말야. 술 한잔도 접대 못한다. 뭐도 못한다.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봉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 봉투 주는 데 그것을 누가 아냐 이거요.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소비해 주고 술 한잔도 소비해 주고 하는 것인데 왜 벌을 주느냐 이거요.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로인 것을. 돈을 오히려 더 쓰고 있지요. 지금 사람들은 금을 싸 준다고 해도 안 찍을 사람을 안 찍어요.”

쫄: “선거법을 엄하게 한 것은 기업가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기업가들이 부정하는 것을 봐주고 해서 돈 마련하여 선거비용을 쓴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선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감정만 있었는데 지금은 당감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김대중을 보고 그 당 사람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해야 지역감정이 없어지죠.”

## 第5節 통영항

▼ 인근해 해구도



<제 보 자>

곽 봉 남 (機船權現網水産業協同組合 專務)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1405번지

전화 : 0557 646 2218

김 광 수 (近海통발水産業協同組合 지도계장)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1402번지

전화 : 0557 646 9321-4

대담98통영01 조업구역 경계

全在慶: “안녕하세요? 조업수역에 대하여 갈등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해상에 그어 놓은 어업경계선에 대하여 전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郭전무: “지금의 경계선은 관례에 따라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직선으로 하든지 해야지요.”

全: “현재 직선으로 나간 게 아닙니까?”

전무: “가다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는 직선으로 그어도 되는데 왜 옆으로 이렇게 그어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쑤: “이 섬사이의 행정구역은 관계가 없습니까? 실제 단속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무: “예, 단속에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지요.”

쑤: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전무: “예전에는 군산 앞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조업상 분쟁이 있어 입건도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고기가 없어 어민들이 고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경계선을 잘 모릅니다. 고기를 찾아가다 보니 전남 전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쑤: “선주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왜 그렇게 가셨는지요?”

전무: “쉽게 말해서 경상도에서는 고기가 안 나니까 고기를 찾아가는 경우죠.”

쑤: “실제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무: “입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고기를 찾아가는 거죠. 고기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도 하고 하니, 우리의 숙원사업이니 이것을 철폐해달라는 겁니다.”

대담98통영02 조업구역 통합

쑤: “아주 경계를 없애달라는 말인가요?”

곽전무: “경상남도도 전라남도의 조업구역을 통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원사업입니다. 같이 조업을 하면 이 선이 필요가 없지요.”

쑤: “혹시 이 선을 중심으로 공동조업구역 같은 것을 제안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전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까운 연안에는 영세 어민들을 위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바깥에서 경남과 전라남북도가 공동조업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담98통영03 경계표시 오류

쑤: 조업경계설정에 대안이 있습니까?

곽전무: “도 경계선을 정하는 법적인 근거, 해상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의 의미구역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국립지리원에서 민원을 해석해 온 것이 이것입

니다. 해상경계표시는 경계선이 아니라고 되어있고 기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상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선만 굵거나 점선으로 표시만 했지 \*\*\*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바다는 금지 구역을 정할 때 몇 도에서 몇 도로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쫘: “법전에는 직선으로만 되어 있고 꺾인 표시는 없군요.”

전무: “행정지도상으로 보면 중간에 꺾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경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쫘: “그것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전무: “고시는 안되어 있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대담98통영04 막연한 단속기준

쫘: “이렇게 알기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전에 공포되어 있는 것만이 근거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곽전무: “지도에 있습니다. 여수 끄트머리에서 똑바로 꺾여져 있습니다 \*\*\* 지리원에서 한 내용이 해도상으로만 행정구역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역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쫘: “그것은 해경만이 알고 있는 수협도 모르는 일인가요?”

전무: “실제 어느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쫘: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무: “육상의 도계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가지고 산이나 내같은 가까운 곳을 양쪽으로 나눠서 해안선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해상에 나오는 것은 직선으로 쪽 나갈 수 있습니다.”

쫘: “경북과 경남의 경계선은 직선입니까?”

전무: “107도선 직선으로 나가지요.”

대담98통영05 선박안전조업규칙

쫘: “이름을 말씀해주시고 경계분쟁의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金광수: “지도계장 김광수입니다. 관할통발어업의 허가상으로만 본다면 동해안을 빼고는 전국 어느 해안이든지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안전조업규칙에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어선들 몇 척이 어항부진으로 출어 자체를 못하고 있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특정지역에 들어가보자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어업으로 잡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연안 자체에서도 어장이 감

소되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쪽의 어선 노조 등의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그 지역에 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망이라든지 또는 우리와 유사한 업종들은 다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기타통발같은 것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대담98통영06 조업구역 분쟁

- 쫄: “톤수 때문에 금지되니까?”
- 金광수: “아닙니다. 톤수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업구역분쟁이죠.”
- 쫄: “북한하고 관련된 것이나 선박의 안전때문이 아니라 인천부근이나 강원도 일대의 기득권을 위해서 특정구역이 설정되었습니까?”
- 金: “강원도 같은 경우나 동해안 같은 곳은 자기네 조업구역 보장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 쫄: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 金: “통발어업인들입니다. 기타통발 어업인들도 진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쫄: “인천이나 강원도 쪽은 근해통발이 없습니까?”
- 金: “있습니다.”
- 쫄: “그쪽의 근해통발은 어업허가상 타지역에 출어가 가능하고 (남해) 통영에 서는 이쪽까지 못가게 해놓았습니까?”
- 金: “서해안 쪽은 갈 수 있습니다.”

대담98통영07 기타 통발

- 쫄: “기타 통발은 신고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 金광수: “특정지역에 들어갈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쫄: “장어 통발은 입어할 수 있습니까?”
- 金: “장어 통발은 안들어가지요. 특정지역에는 장어가 거의 안납니다.”
- 쫄: “동해쪽은요?”
- 金: “동해쪽도 장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 쫄: “기타통발은 결국은 안전조업규칙에 없어서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군요?”

金: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일종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주문진이나 이런 곳의 지역어민들은 기타통발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자체를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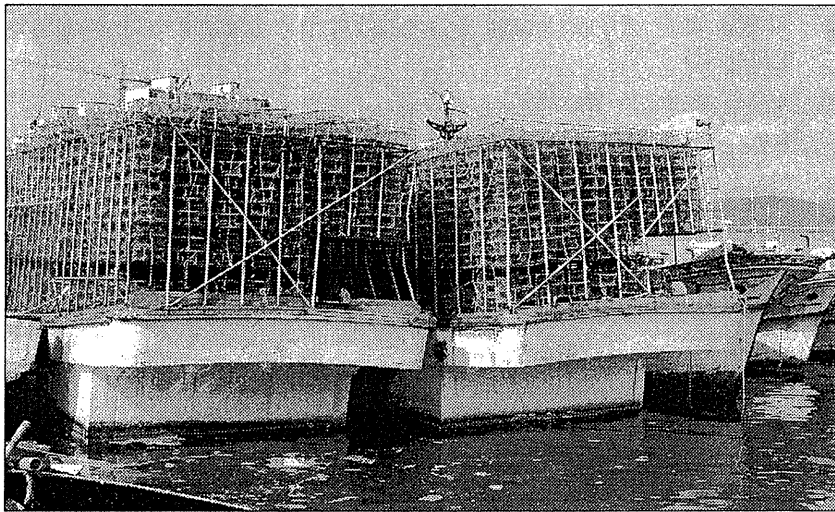
쑤: “경남지역의 기타통발은 서해안 특정구역에는 못들어가고 서해안이나 인천 쪽에서는 기타통발이 조업을 할 수가 있나요?”

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도 특정지역에 와서 보통 연안통발로 많이 들어가지요. 가까우니까.”

쑤: “흑산도쪽에 삼천포나 통영의 배들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흑산도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통발어선



대담98통영08 어구·어법

쑤: “어망은 조업분쟁과 관련이 없을까요?”

金광수: “업종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쑤: “근해망과 유자망은 어떻게 다릅니까?”

金: “근해망은 같은 멸치인데 유자망은 보통 백멸치라고 합니다.”



全: “저인망은 통영에 없습니까?”

金: “없습니다. 저인망은 부산 쪽에 허가가 많은데 그것도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全: “고대구리는 없습니까?”

金: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지금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통영지역에는 고대구리가 거의 없고 전라도 목포나 여수 삼천포로부터 전라도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고대구리가 성행하고 있지요.”

全: “통영만 없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金: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의 지역에서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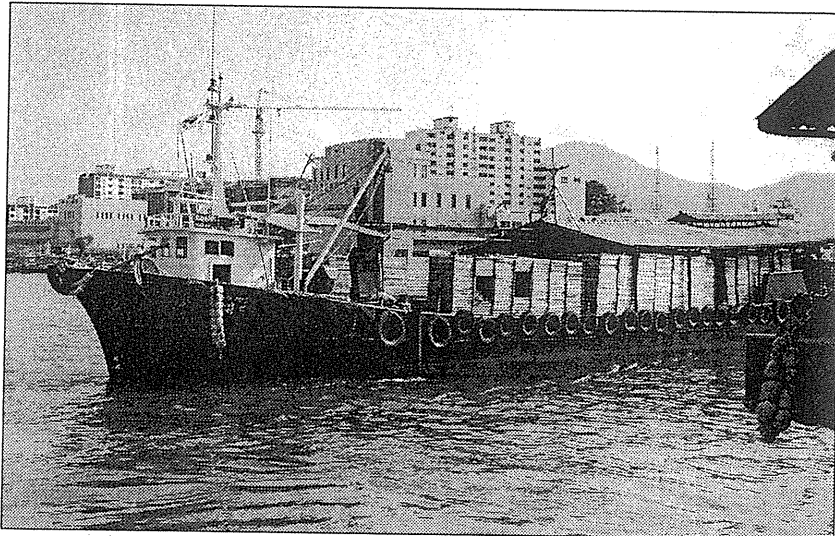
全: “설득력이 있군요.”

金: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불법으로 근해통발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장어통발 어업허가없이 장어통발 어로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산이나 목포로 많이 갑니다.”

全: “부산·목포에서 판다는 뜻인가요?”

金: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은 많은데 판매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멸치·가공운반선



대담98통영09 불법어로(1) 단속·생산자증명제

쫄: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金광수: "떠있는 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냉동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생산자증명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니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자증명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불법어로행위를 견제하면서 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우리나라 어장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쫄: "전 어업에 생산자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金: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산통계라든지 모든 자료가 엉망인 이유가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어서지요. 우리나라가 수산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통계자료를 보면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수산에 대한 정책 자체도 아주 과소평가하는 실정이고 양 자체가 적으니까 정부예산도 적게 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이나 이런 곳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 못지않게 투자해야 할 부분이 수산업인데 1/10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생산계통이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에 기준을 삼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산업은 기초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적게 지원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쫄: "고대구리는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하지요?"

金: "그것은 우리말에 없어요."

쫄: "작은 저인망쯤 될까요."

金: "기선 저인망과 비슷하지요."

대담98통영10 불법어로(2)

쫄: "대형기선 저인망이 경계선 밖에서 잡는 것인데 고대구리는 안에서 잡는 것이죠?"

金광수: "통발허가를 받아서 고대구리를 신고 작업을 합니다."

쫄: "바다에 떠있는 것을 잡을 수 있나요?"

金: "떠 있는 것을 잡을 수는 있어요. 지금은 없지요. 통영에 고대구리는 없고. 우리조합원들은 연안통발을 해서 직판을 통해 소비자가 바로 사가니까 위판되는 것은 거의 없고, 선방들 대형선방들이 모두 적어야 하고 양조망 같은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서 조만간 TAC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全: “TAC제도는 무엇입니까?”

金: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총어획량제도입니다. 또 임의상장제도(자유판매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수협공판장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시장에 나가서 팔아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全: “임의상장제도라고요?”

金: “예. 임의상장제도로 판매를 하면 이것이 불법으로 잡은 것인지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장관리를 위해서 총어획량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얼마나 잡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하다는 것인지. 결국 정상적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어민들만 죽이겠다는 소리밖에 안되지요. 불법어업자를 양성하겠다는 말 밖에 안되지요.”

대담98통영11 의견수렴

全: “그런 건의사항을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金광수: “그 안이 발표가 될 때 그런 부분을 의견제시안으로 올렸어요.”

全: “어디에서 주최가 되어서 올렸지요?”

金: “저희 조합에서는 그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총어획량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98통영12 총어획량제

全: “알 수 없는 이야기군요. 총어획량제도는 저희들도 권고하고 있거든요?”

金광수: “총어획량제도가 어장의 관리를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얘긴데요, 저희 조합과 관련해서는 어구어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연안통발에서 꽃게관리를 위해서 통발망목을 35밀리 미만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해통발 같은 경우는 65밀리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망목의 크기를 같이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담98통영13 그물코 크기

全: “근해통발의 크기를 연안통발과 같은 크기로 해달라고 제안하였나요?”

金광수: “예. 꽃게는 동일한 꽃게인데 왜 연안은 35밀리로 해주고 근해는 65밀리로 잡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나라 어장의 보호를 위해서 꽃게망목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인데, 근해인 중국의 어장에서 잡을 때는

65밀리로 하고 우리나라 어장인 연안에서 잡을 때는 어망목을 더 좁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쫄: “국제 어업협정상 그런 것은 아닐까요?”

金: “그런 것은 없어요.”

쫄: “관계기관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金: “수산조합에서는 아직 부인합니다.”

쫄: “이유는요?”

金: “검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망목 조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조절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정확한 해설은 없어요.”

대담98통영14 어구규제 완화

쫄: “그물코 규제에 연혁적인 이유가 있을텐데요?”

金광수: “65밀리로 된 것은 서해안에서 유자망인가의 그물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해는 같은 근해라고 하면서, 그러나 조업방법이 전혀 틀려요. 무조건 그물을 육지에 갖다놓고 어느 지역을 떼어놓은 다음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고기는 그물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물코를 크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통발 어구가 동그랗거든요. 이것 자체가 틀린데 저쪽을 기준으로 했더라구요. 수차례 이야기 해도 아직까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발 어획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담98통영15 선원임금

쫄: “다른 건의사항은 없으세요?”

金광수: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이 해양수산부 노동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서 전에는 100평 이상이었는데 30평으로 확대가 되었는지요? 사건입니다만 수산청과 원양어업청이 합쳐져서 해양수산부가 탄생이 되었는데 원양어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다 보니 소득원이 줄어들어 연안어업까지 확대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쫄: “무슨 소득원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金: “원양어업 선원들이 없어지니까 더이상 노조를 받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쫄: “노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金: “선원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양어업은 대기업이니 임금지급 자체가 월급제였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옛날부터 고향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담98통영16 임금고합제

쑤: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金광수: “총생산액에서 출어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박소유자가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를테면 선원 10명이 18몫으로 나눕니다.”

쑤: “18몫으로 나누다니요?”

金: “선주가 절반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선장이 조금 더 가지고 가고 기관장은 조금 덜 가지고 가고 그 다음 갑판장은 몇 부 5리, 그리고 선원들은 1씩 가지고 갑니다.”

대담98통영17 짓가림제

쑤: “짓가림제는 무엇입니까? 고합제와 통하는 것 같은데요?”

金광수: “예. 이익배당방식의 하나를 짓가림제라고 합니다. 선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된 것같지만 배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주보다는 선장이 연간 소득을 훨씬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감가상각비라든지 각종 어업사업경비는 선주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주가 1/2을 가져도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짓가림제 방식은 자기가 많이 잡으면 그만큼 돈을 버니까 공동경영체적 사고방식을 지니게 됩니다. 월급에 의한 임금방식하고는 애시당초 사고방식이 다르고 또 공동경영체에서는 자기 자체가 주주라고요. 그러니 임금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것이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는 임금채불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일종의 보험 비슷하게 노동과에서 선주들한테 그 금액만큼을 몇 년마다 받아서 확보를 했다가 파산이 나면 그것으로 임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근해어업은 임금채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양어업이 좋았을 때 그쪽에서 인력을 많이 빼가고 또 도시화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주들이 어업은 해야겠으니 선원 선급금을 지급했어요. 선급금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일년 동안에 얼마를 벌 수 있겠다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선원한테 주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지요. 나중에 그 금액에 못미치면 돌려주고 남으면 가져가고 했습니다.”

대담98통영18 선급금제

쑤: “지금도 선급금을 줍니까?”

金광수: “예. 선원임금이 채불될 이유가 없습니다. 짓가림제에서는 선원선급금도 받지만 생산달이 작으니 그때 그때 계산을 합니다. 그점에도 영

세한 어업경영주들한테 돈을 내라면, 이것이 돌려주는 것도 아니니 어업경영인에게는 부담만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선주들은 선원선급금 물린 것만 해결되면 배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쑤: “선원이 돈만 받아가지고 도망간다는 말인가요?”

金: “그냥 도망가버리는 돈을 해결해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선주들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연근해어업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선주들이 경영을 하지 않으면 선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선원노조들의 농간입니다. 자기들의 노조기금을 위해서지 선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대담98통영19 금어기간 모순

쑤: “금어기간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金광수: “봄어귀에 꽃게통발 어업이 조업을 못합니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9월부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12월달까지 3개월만에 연간어업생산량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좋은 어장자리가 난한 어선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매년 자금난이 악순환됩니다. 금어기 때는 어떻게 버텨오다가 출어기 때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선원선급금만 1억원 이상이 들고 그 외에 다른 선품들을 사다보니, 금어기간이 종전에는 2개월이었는데 97년 1월1일부터 2개월반으로 늘었습니다.”

쑤: “이 때가 산란기입니까?”

金: “6월부터 산란기라고 되어있거든요. 성장기를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8월달부터는 거의 성숙을 한 상태이고 우리 나라 기타통발 어민들이 안 잡아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 어민들이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출어를 앞당겨달라는 것이죠. 꽃게를 잡는 주업종이 기타통발입니다. 기타 통발어업에는 금어기를 만들어서 출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기선저인망, 트롤 같은 것은 5%를 넘지않는 범위에서는 포획을 해도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업종은 포획을 절대 금하면서 타업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산해서 5%를 넘지 말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5%를 잡는지 50%를 잡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결국 얼마를 잡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금어기 동안에는 미성숙된 꽃게를 잡으니까 질적으로 저하가 되거든요. 그런 상품이 마구잡이로 나가니까 어장관리도 안될 뿐더러 물가 자체도 하락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대담98통영20 직능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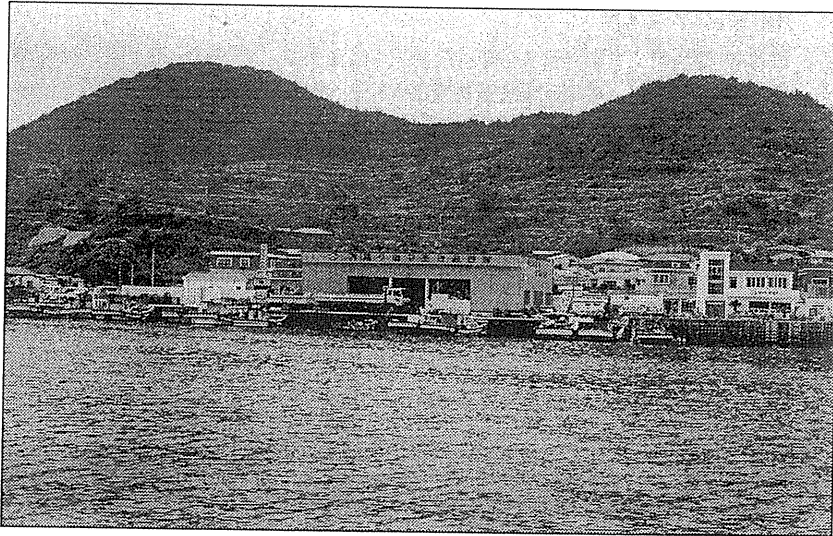
쑤: “통영수협하고 업종별 수협하고 서로 협력관계나 업무 분담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업종별 수협이 그냥 통영수협 산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같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인망 중심으로 발전해오다가 다른 어업이 발전해서 업종별 수협이 발전된 것인가요?”

姜평삼: “통영수협의 강평삼입니다. 원래 직군별 수협하고 업종별 수협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직군별 수협은 통영에 하나 있습니다. 업종별 수협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직군별은 어촌계를 구성해서 어촌계에 일어나는 어업분쟁이라든지 이런 직무를 합니다. 업종별은 멸치, 장어, 게,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 第6節 거제 구조라리

▼ 구조라항구·수협공판장



<제 보 자>

강 상 입 (여: 69세)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421번지  
전화 0558 681 1386  
박 중 례 (여: 80세)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할 머 니 (연령·주소 미상)

대담98구조라01 내력·연혁

- 쫀: “안녕하세요!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존함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姜: “이름은 강상임이고 주소는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421번지고 전화는 681의1386이고.”
- 쫀: “여기가 고향이신가요?”
- 姜: “고향이지요.”
- 쫀: “춘추는요?”
- 姜: “올해 69입니다.”
- 쫀: “강습소에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 姜: “옛날에는 국민학교가 아니고 강습소라고 있었어요. 강습소는 4년제였어요. 옛날에 못사는 사람은 강습소를 나오고 좀 잘사는 사람은 보통학교를 나오고 그랬어요.”
- 쫀: “관리학교는 뭐예요?”
- 姜: “뒤에는 2년되면 졸업하는 관리학교가 있었어요. 강습소 공부를 하다가 관리학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옛날에 일본말 반 우리말 반 배워서 지금 한글도 똑똑히 몰라요.”
- 쫀: “구조라리에 일본 사람들 얼마나 살았어요?”
- 姜: “일본 사람이 거의 열몇명 살았어요.”
- 쫀: “얌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람 이름입니까?”
- 姜: “얌체는 염소를 많이 먹여 양생이 많이 준다고 그렇게 부르고, 짜브랭이는 눈이 짜브러져서 짜브랭이고, 일본 사람도 어장하고 점방도 하고 여기 사람들은 어장 밑에서 배도 타고.”

대담98구조라02 식민지 상황

- 쫀: “할머니, 주소와 존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朴: “번지는 잘 모르겠고 이름은 박종례요.”
- 쫀: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 朴: “올해 80입니다.”
- 쫀: “굉장히 정정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어장도 하고 점방도 하고 그랬습니까?”
- 朴: “점방도 하고 미루치(멸치)도 하고”
- 쫀: “조선 사람들은 어장을 못했습니까?”



朴: “일본 사람들이 미루치 어장을 하면 여기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품팔이 하며 살았지요.”

全: “그때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姜: “조선 사람은 많이 살았는데 일본 사람은 몇 명 안살았지요.”

대담98구조라03 후리배

全: “후리배는 뭘 말하는 겁니까?”

朴: “멸치잡는 배를 후리배라고 해요. 여름에도 하고 겨울 되면 밤에 갈치, 멸치 잡고 낮에는 쉬어요. 후리배 몰고 참나무 몽둥이 매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시간 보내자고 ‘에이야 도꼬 이 좋다 잉여라차잉여라차’ 하면 그것도 앞소리 주는 사람이 있어서 ‘잉여라차’하면 뒤소리도 ‘잉여라차 잉여라차’ 하면 뱅글뱅글 돌아가거든. 밤에 해요. 음력 9월 10월 동지달 선달까지 하더라구. 밤은 길고 시간은 지루하니 별 소리를 다하지요. ‘웃으면은 가와자 쨩야라야차’ 이리도 하고 ‘저기 가는 아가씨 속옷 가랭이 피붙었다’ 고도 하고 ‘그것을 피하니라 동네자지 선들렀다’ 이리도 하고 \*\*\*.”

全: “할머니는 잡으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朴: “잡으러 안나가도 가고 오고 하는데 안 들소. 옛날에 우리 이웃 할매가 빨래를 하러 가는데 뱃사람들이 ‘징야라라차 징야라라차’하자 할머니는 ‘네 보지 네 보지’로 들고 영감한테 이르기도 했지.”

대담98구조라04 멸치잡이

全: “할머니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할머니: “충무서 커가지고 통영으로, 옛날에는 통영을 질남이라고 했고 통영이라 해서 나중에는 충무까지 통영이라고.”

全: “질남요?”

할머니: “우리 클 때는 질남이라고 했어. 통영이라고 하더니 충무 이러대요.”

全: “거기서 바로 구조라리로 시집오셨어요?”

할머니: “응. 충무라고 하더니 인제는 통영이라고 하대요.”

全: “멸치잡을 때 참나무 몽둥이는 왜 가지고 가셨어요.”

할머니: “요새는 기계로 하니까 손으로 당기면 되지만, 옛날에는 후리 그물이 뱅뱅 돌아가며 감기데 \*\*\*.”

全: “그럼 감아내는 거예요?”

할머니: “작대기 꽃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꽃아놓으면 돼.”

대담98구조라05 식민지생활상

준: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 "일본 사람이 멸치 어장을 하면 그 밑에 가서 멸치 잡고 갈치니 조구니(조기) 많이 잡았어. 그리고 아줌마들은 멸치 잡아오면 잔 것 큰 것을 골라내고 그럼 일본사람들이 마산 충무 부산으로 팔러 가고."

준: "팔기는 일본 사람들이 팔러 갔나요."

할머니: "일본 사람들이 어장을 하는데 전부 조선 사람입니다. 서류도 조선 사람, 물량 관리하는 사람도 조선 사람, 인건비 주는 사람도 조선 사람이데."

준: "일본 사람들이 멸치 잡기 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멸치 안 잡았습니까?"

할머니: "4월 5월 달이면 햇불을 달고 챗배로 잡았지."

준: "일본 사람들은 어떤 배를 가지고 했나요?"

할머니: "큰 배 두 개, 만경이 한 개 \*\*\*."

대담98구조라06 멸치선단

준: "무슨 배라고요?"

할머니: "만경이. 일본 사람은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했어요. 조선 사람은 같이 일하면 똑같이 줬는데 일본 사람은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했어요."

준: "마을에서 도둑질이나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그때는 일본 순찰이 있었지."

준: "마을에서 따로 어른들이 모여서 다스리고 한 일은 없었나요?"

할머니: "그렇게는 안하고. 조선 사람은 만원이라면 9천원에 가져가소 하지만 일본 사람은 깎는 것이 없소."

준: "일제당시 여자들도 훈련을 했다고 하셨지요?"

할머니: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어."

준: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했나요?"

할머니: "갯가이 개요 하면 비행기 온다고 옆드렸고 굴파서 들어가는 훈련도 하고."

준: "처녀들은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했어. 아주머니들이."

준: "해방하고 나서는 멸치는 누가 잡았습니까?"

할머니: "해방하고 나서는 조선사람이 마저 했어."

준: "일본 사람이 멸치어장 할 때는 살만 하셨습니까?"

할머니: "살만하기는요. 그냥 애들 키우고 했지."

대담98구조라07 해방 후 생활상

준: "해방 후에는요?"

할머니: "밥은 못먹고 칩도 캐먹고"

준: "일제 시대에도 칩을 캐먹고 했습니까?"

할머니: "예."

준: "해방 후에도 살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  
그 때는 돈이 있어도 장사를 못하는 거라 \*\*\*"

준: "보리 흉년이 크게 든 것이 언제쯤이었나요?"

할머니: "한 35년전예요."

대담98구조라08 풍 습

준: "구조라가 이 일대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할머니: "잘 사는 마을 아닙니다."

준: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할머니: "없어요 \*\*\*"

준: "미신이나 방법이나 양밥 같은 것은 마을에서 안하세요?"

할머니: "옛날에는 도둑을 맞으면 \*\*\* 양박한다고 \*\*\*"

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 "양밥"

준: "고양이 갖다가 양밥하는 것은 어떻게 했지요?"

할머니: "보지는 못했어요."

준: "마을 제사같은 것은 안 지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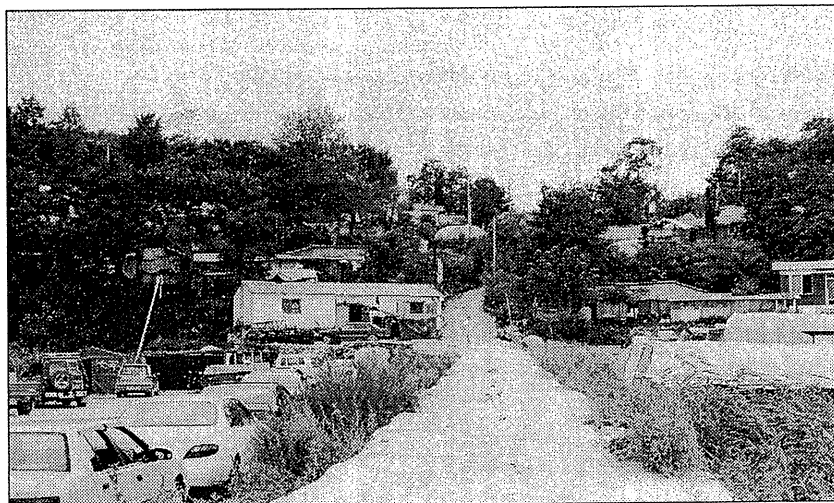
할머니: "바다의 용왕을 믿어. 고사는 마을에서 지내는 것이고 일년에 한 번  
씩 용왕을 믿어."

▼ 마을 제사 나무



## 第7節 시화호 형도

▼ 형도 마을 전경



<제 보 자>

홍 철 순 (남: 50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산200번지  
 전화 : 0339 57 7717  
 홍 순 재 (남: 65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산200번지  
 전화 : 0339 57 1880  
 정화자(여:36세)·장순애(여:51세)  
 주소 : 경기 화성군 송산면 독지3리 산200번지

대담98형도01 생활상

全在慶: “안녕하세요! 방조제 공사전에 살기가 어떠셨습니까?”

朴경준: “독지3리 이장 박경준입니다. 사실 보상하기 전에는 여기 살기가 참 평화로웠어요. 사강쪽으로 나가서 육지사람들 돈 쓰는 것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바다에서 벌어서 쓰는 것이지만 서울의 중산급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보통 하루에 5만원/6만원을 벌었어요. 땅덩어리만 없다면 벌어서 쓰는 것은 걱정이 없었어요. 수원과 군포 가서 살아봤지만 확실히 먹고 사는 것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여기였는데, 막히고 나서는 큰 낭패죠.”

全: “매립되기 전에는 몇 가구 몇 명이나 살았습니까?”

朴: “그 때가 37~8호쯤 되었습니다. 막힌다고 할 때는 34호 정도가 살았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지요.”

全: “매립으로 보상받을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朴: “우리는 보상을 왜 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갯바닥 해 먹는데 무슨 보상이나 했었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못해먹게 되니까 보상을 해 주나보다. 보상을 어떤 뜻에서 주는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시화방조제를 막으면 그 안에 있는 굴양식장 같은 모든 시설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결론을 얻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88년이니까 경기가 참 좋았잖아요. 또 하루밤만 자고 나가면 땅값이 3만원인 것이 4만원이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보상을 주고 막는다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주는대로 받고 이주해 주면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못막게 할 수는 없다. 정부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보상을 받게 된 것인데. 지금와서 보면 허탈감이 많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당시에 보상 안 받고 버텼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나서 어디로 갔을 것 아니냐고 하죠. 난감해요.”

全: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朴: “그때 당시에는 기대가 컸죠. 한 집에 2천만원씩 탔는데 그 돈으로 나가서 무슨 가게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담98형도02 보상현황

全在慶: “죄송하지만 존함하고 주소 좀 말씀 해 주십시오.”

洪순재: “송산면 독지 3리에 있는 홍순재입니다.”

全: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洪: “지금 예순 다섯입니다.”

全: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洪: “저희들이야 여기 사는 것이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종로 부럽지않게 살았어요. 여기에서 안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조개 같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막히고 나니까 면허있는 양식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많이 탄 사람은 2천4백~5백의 보상을 탔습니다. 생활대책비라고 해서 20만원 정도 받았고, 건강망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았어요.”

全: “건강망요?”

洪: “바다에 그물을 매서 고기잡았던 사람, 그것도 허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사는 것이 다 똑같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적지 (보상금) 탄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주를 해준다’ ‘농지를 준다’하더니 깜깜 무소식이요, 보상문제가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법적으로 끈 것도 8년째 되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어요. 그때 2천5백을 타서 근 10년을 살았으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갯바닥만 있지 이것이 우리 땅만 같아도 되요. 이것은 개인의 산이에요.”

대담98형도03 생활여건

全: “언제 팔렸습니까?”

洪: “팔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한 사람 땅이에요. 장익환의 딸 장정자의 남편 김동분씨가 소유하다가 김봉식씨로 넘어간 것인데, 한 사람의 땅이어서 우리가 밭 한지기를 한다 해도 거기에 도지를 풀어요. 여기가 메말라서 고구마나 할까 해서 비료주고 하면은 우리가 사먹는 것만 못해요. 지금은 비가 와서 질척하지만 식수도 딸린 적이 있어요. 육지서 길러다 먹고 하는데 지금은 요지부동이에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는 생선이라도 잡으니까 각 기관장들이 라면 부스러기라도 가져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어디 하나 대가리 디미는 놈도 없어요. 도

장찍어 달랄 때만 와요.”

金: “독지 3리에 사는 김영보입니다. 여기는 본주민도 있지만 실항민이 대부분이에요. 맨 주먹으로 여기 와서 살아요. 여기는 낙지 바지락 소라 없는 것이 없었어요.”

대담98형도04 매립지 분양·관행보상 소송

全: “황해도에서 오셨습니까?”

金: “홍진서 왔어요. 여기서 해작해서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全: “해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金: “바다에서 조개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못모았지만 잘 살았어요. 어느시기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폐류같은 것이 죽기 시작하고 반월공단에서 폐수도 나오고, 막아놓으니까 고기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 여기서 도저히 해먹을 것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여름에 등짐을 지고 갯벌에 돌을 깔아서 굴양식을 해서 굴도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막아놓고 보상이라고 2천만원씩 주고 마산포 근처에 이주단지들 닦아 놓았는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1등급/2등급/3등급이 있답니다. 1등급이 70평에 9천만원을 내야 하고 2등급이 5천~6천만원을 내고 3등급은 3천만원을 내놓으래요. 우리는 갯벌에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편찮게 살다가, 막는 기간에 손발을 묶어 놓으니까 돈 한 푼도 없지요. 그런데다 이주를 해준다고 하며 돈을 내고 가라 하니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곳에서 관행보상이라는 것을 탄 곳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도 해보자 해서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하고 고등법원에 올라간지 현재로 7년째 되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선착장이니 집이니 이주를 가면은 보상을 해준다더니 하나도 해결을 안 해줍니다. 이주단지라고 길도 안 해주고 전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 여기의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노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지만 나이먹은 사람이나 그런 것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생계유지가 곤란해요.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설사 일을 다닐려고 해도 교통수단이 없어 못다닙니다. 여기서 사강까지 가는 거리가 수원에서 사강 오는 거리만큼 걸린다구요. 그렇게 먼길도 아닌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복으로 쌀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데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대담98형도05 입어권소멸·주민숙원·방조제허물기·농토조성

全: “박경준 이장님, 주민들의 숙원은 무엇입니까?”

朴: “말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우선 정부가 우리 주민의 발을 10여 년째 묶

어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이 돈이 있어 다른 곳에 가서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 탄 것은 다 쓰고 거지되다시피 한 거예요. 관행보상 그것도 얼른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다 못해 차라리 수협에서라도 우리 농수로 길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 공장이라도 지어서 우리 어민들이 한달에 7,80만원씩 받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답답한 얘기도 했는데, 정부가 너무 무관심해요. 군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들도 협조 해주겠다고만 하지 실상 그분들이 나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도 빨리 이주가 되든지, 오죽하면 바다를 터버리자고 했어요. 터서 예전대로 살게 해달라. 이 바닷물 터놓고 일년이나 이년이면 어패류가 다시 살아서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어쨌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차라리 이주를 안 보낼려면 이 땅이라도 메워서 여기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어야지요. 안산 공단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시화호가 썩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바다로 먹고 산 사람들인데 그 물에서 잡아먹는 사람을 지금에 와서 불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안의 어구와 배가 불법이에요. 물이 오염되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봄부터 수문을 열어서 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물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안산서 폐수가 안 내려오니 물이 깨끗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 보면 먹고 못 먹고를 알지 않습니까. 잡아 먹는다고 TV에서 두 번 맞았는데 그럼 여기 사람이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여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정리를 해서 바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여기를 농경지로 만들어서 여기 주민이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 살게 해주어야지요. 이주단지는 틀렸어요. 애초에 정부가 약속할 때는 바지락 때문에 농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동네주민 60명이 나가서 잡으면 7.8톤을 잡았거든요. kg당 350원을 받는다면 두 내외가 하루에 10만원씩 벌었어요. 이렇게 벌던 것을 (현대) 사람들이 와서 선착장을 만들면서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농성을 했어요. 농성장에 농업진흥공사의 공감소장이 왔는데 '이주는 92년도 하반기에 해주겠다. 틀림없이 1순위로 해주고 이 섬에서 사방 10리 밖으로 나가면 이주나 농경지 혜택 그 어느 것도 안 주겠다'고 발을 묶은 것 아닙니까."

쫀: "그게 언제 입니까?"

朴: "90년도일 겁니다."

쫀: "공감소장요? 무슨 뜻이죠? 공사감독이라는 뜻입니까?"

朴: "예."



대담98형도06 관행권보상·이주단지분양

쫄: “10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박: “나가면 이주고 농경지고 없다 이거죠. 그러니 여기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지가 한 10여 년 넘습시다. 또 관행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타고 얼마 안 있다가 생계대책비로 3개월분이 나왔어요. 한집에 5식구 살면 5식구 앞으로 개인당 다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관행보상문제가 광양만에서 터졌잖아요. 우리는 생계대책비는 받았지만 관행보상비는 모른다고 하니까 이용길씨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관행보상을 타게 되면 한 집에 3천~4천만원 된다는 말을 해요.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한 6년 되었습시다. 지금 2년 쯤 되었는데 농진에서 이주든지 관행보상이든지 하나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은 보상이고 이주는 이주다. 이주단지는 얼마냐’니까 75평에 8천~9천만원이래요. 이주를 보낼려면 땅덩어리 매꾼 조성가를 계산해 해서 우리를 이주시켜야 원칙이지 8,9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농진의 담당 과장이랑 우리랑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있는 땅에 조성을 했으면 조성가를 계산해서 땅을 쥐야지 왜 감정가로 주느냐’고 따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말단이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여기 사람 다 죽어요.”

대담98형도07 불법어로 시비(1)·보상후회

쫄: “마을 입구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자 뭐라고 하시던데요?”

박: “몇일 전에 KBS에서 와서 불법어장·오염된 물이라고 하는데 답답하다고요. 우리가 200명만 된다고 하면 농성이라도 하고 싶어요. 물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또 거기서 고기잡아 먹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 싶어요. 사람이 적으니 우리가 농성을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쫄: “잡으신다는 물고기는 바다고기입니까 민물고기입니까?”

박: “수문 열어서 꽃게랑 저 바깥에, 사는 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쫄: “그럼 이 물은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입니까?”

박: “예. 바닷물입니다. 제가 올 봄에 군산에 가서 나룻배를 탔어요. 타면서 물을 보니까 여기 물이 더 맑아요. 우리는 이것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죽게 생겼어요. 또 이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3년치의 보상을 해줬고 우리도

그때 당시에 포기각서에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게 팔 줄 알았다면 그 보상을 왜 땀쳤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빨리 해결해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사람들 관행보상 나오기를 바라고 남의 돈 얻어 쓴 사람이 많아요.”

洪: “농진이나 정부에서 이주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아먹게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매듭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독 안에 든 쥐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女: “여기 사람 병원에 다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대담98형도08 분양불만·어로희망

준: “이주를 하신다면 토지는 무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洪: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朴: “원래 조성가는 우리가 물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가로 팔아먹으니까 문제죠. 정부가 땅장사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곡리 주위의 땅이 10만원 한다고 치면 그런 땅을 왜 몇 천만원씩 받아 먹느냐는 거죠.”

洪: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7천만원을 내놓고 건축비를 물어냅니까. 7천만원을 부자한테 팔고 그 돈을 보상금으로 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살던 집이라도 기어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급하니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朴: “차라리 이주를 하느니 이 자리를 이 만큼을 메워서 농경지로 만들어 주고 내수면에서 고기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내주면 우리의 불만도 없고 불법도 아니잖아요. 오염은 정부에서 시키고 우리에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죄없는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모자를 씌우냐는 것이죠.”

洪: “그냥 내수면에서 고기잡아 먹고 살아라 하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소련이나 이북이라도 보내주든지.”

金: “지금 IMF시대라 정부도 돈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우리 자립적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물도 좋아지고 고기도 많아지고 있으니 고기라도 잡아먹게 해주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를 간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98형도09 포기조건부 이주·불법어로 시비(2)

준: “어의도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洪: “건너편이 어의도요. 거기 사람들은 3백만원(270만원 정도)도 안들이고 다 이주시켜준다구요. 그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하고 나서 지금 3층집 짓고 3억짜리 집이 되었어요. 우리는 공사를 몇 년간을 했다구요. 관행보상을 포기하면 이주를 해주겠다는데 이주 해주면 뭐합니까, 돈을 그렇게 내라는데 어디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으면 여기 사람들 여기서 편안하게 고기나 잡아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朴: “1997년 9월 27일 KBS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법이라고 해서 검찰에 끌려가고 했는데, 걸리고 나서 고기를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안산 앞에 가서 잡아다가 국립과학연구소에 갖다줬어요. 해독을 풀기 위해서. 그때 판명 난 것이 기준치 미달로 나왔어요.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요. 검사가 '기준치 이상이면 당신은 구속이요' 했는데 미달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KBS에서 자꾸 문제화하고 있지요.”

쫄: “마을에서는 고기를 잡습니까?”

朴: “예 쫄대로 다 다 잡아요.”

洪: “KBS에서 취재를 할려면 동네를 와서 동네사정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녁 때 와서 아무도 없는 어의도를 찍어서 우리인 것처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어의도 그물(배에 실어놓은 것)을 찍어서 우리 형도 그물이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물과 함께 고기도 오염이 되어서 얼마만큼 위험하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든가 해야지. 우리는 금방 안 죽으니까 고기를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방송국이 어쩔 그렇게 무법천지로 방송을 합니까?”

쫄: “방송사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洪: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도방침을 해줘야지.”

쫄: “이번에 KBS가 방송을 하면서 대책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朴: “사실 저는 못봤는데 좋은 얘기를 빼고 나쁜 얘기만 방송했나 봅니다.”

홍철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독지 3리 200번지 홍철순입니다.”

대담98형도10 언론유감

쫄: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홍철순: “오십입니다. 군 수산과 직원이 신문까지 들고 와서 환경부에서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 미달이라는 판정이 났으니 고기를 잡아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낚시질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오염되었다고 하면 일본에서도 어떻게 수입을 하겠습니까?”

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낙도주민들에게 너무 소홀합니다. KBS가 취재할 때 '주민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면 무엇으로 자식들 공부 시키며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겠습니까."

쫄: "KBS에서 방송한 것이 몇 일자였죠?"

朴: "이번에 밝혀진거요? 지난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홍철순: "일본 코스모스라는 회사에서 고기를 수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KBS에 찾아가서 사과방송이라도 해달라고 할 작정입니다."

쫄: "여기 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합니까?"

朴: "겨울에는 새우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새우를 잡아다가 일본 코스모스상에 낚시 입감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 달 정도 잡아다 판적이 있지요."

대담98형도11 갯바닥 소유의식

쫄: "갯바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갯바닥이 땅에 금을 긋기도 어렵고 조상대대로 여기가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매립하여 땅을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는 대토를 해서 어민들에게 돌려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민들 생각은 옛날부터 갯벌을 본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女: "우리 땅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뺀 돌아서 개고랑 선을 쳤거든요. 그래서 마산포면 마산포 구역대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곳 사람이 이 구역에 와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촌계가 조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날까지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먹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쫄: "아주머니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정화자: "형도 정화자요"

쫄: "몇 살이십니까?"

정화자: "36세입니다."

쫄: "고향이 형도세요?"

정화자: "군산에서 왔습니다."

쫄: "여기로 시집오신 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정화자: "16년요."

쫄: "막히기 전에 왔군요. 이 갯벌을 보고 이것이 우리 마을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화자: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쑤: “성함을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장순애 : “장순애, 51세, 여기서 40년도 더 살았어요. 이북 황해도(어른들이 황해도라니까 그런 줄 알지 정확히 모른다)에서 어렸을 때 와서 살다가 시집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쑤: “갯바닥이 나라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장순애: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담98형도12 무상이전·우선권

쑤: “갯바닥이 마을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를 육지나 농토로 만들었으면 일정 부분은 무상으로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으세요?”

장순애: “그렇죠.”

洪: “처음에는 준다고 했어요. 10리 밖으로 안 나가면 준다고 했어요.”

쑤: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무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지요.”

洪: “그 때는 농진공에서 자청해서 이걸 매립을 하면 우선권으로 이 섬에 사는 사람만.”

쑤: “우선권이라는 것이 섬사람들에게 판다는 것인가요?”

洪: “돈 이야기는 안나왔어요. 3천평을 준다고만 했어요.”

쑤: “그냥 준다고요. 돈 이야기는 없이 말입니까.”

洪: “섬의 방죽을 막아서 바지락이 죽을 때 우리가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1순위로 이주를 보내주고 3천6백평을 줄테니 이것을 묵인해달라고 했어요.”

쑤: “매립을 묵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까?”

朴: “선착장 만드는 것을 묵인해달라는 거죠.”

洪: “각서를 받고 우리에게 농토를 주고 이주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때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갯바닥에 잡아먹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지 국가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3천평을 준다는 것만 알고 있고 또 10리 안에서 살 때만 줄 수 있다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탄도에 이주단지를 만들어놓아서 농지를 준다고 해도 못부쳐먹어요.”

대담98형도13 이주단지

쑤: “탄도는 어디지요?”

朴: “전곡리죠. 탄도는 안산시에 있어요.”

全: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朴: “여기서 40분이면 가요.”

洪: “거기서 이주단지를 해주면 우리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못짓지요. 현재 유자망으로 배가 허가가 난 사람이 있어요. 또 허가를 유자망만 내줘서 다른 것을 잡으면 불법이에요. 거기 가서 어떻게 어장을 합니까, 집도 없는데.”

홍철순: “제일 섭섭한 것은 농성을 할 때 군청이나 농진공 사람이나 시화호 소장들이 와서 각서를 써줬어요. ‘형도 사람만은 우선권으로 가고 싶은 데로 이주를 해 주겠다. 농지도 우선권으로 3천평씩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10년이 흐르니까 군수도 갈리고 다 바뀌고 각서를 보여줘도 무관심하답니다. 섬 사람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말을 제대로 합니까, 우리를 목살해버립니다.”

洪: “우리가 200호 정도 산다면 민원이 가니까 들어주겠죠. 그렇지만 우리 32세대인데 가서 농성해봐야 쳐다도 안 본다고요. 기별오기만 기다립니다.”

홍철순: “농진공에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은 ‘이주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이 어떻게 이주를 합니까?”

대담98형도14 관행보상

全: “관행보상을 하면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홍철순: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중이니까 그때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농진공사에서는 관행보상을 포기하고 돈을 내고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장순애: “우리는 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던지 해달라는 거죠. 없는 것 없이 고기가 다 들어왔어요.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일하게 해 주세요.”

全: “정부나 농진공에서 자꾸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대담98형도15 불법의식·이주권란·생업한계

全: “불법으로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朴: “이제는 생사가 달린 일이니까 안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참을 만큼 참고 살았고 이제는 굶어죽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정화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군에서 왔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불법이라고 해도 빗을 얻어서라도 할거다. 배운 것이 없으니 해먹고 살 것이 없다고요.”

洪: “정부에서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하겠어요.”

朴: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우리는 어려서 이것을 해먹고 살았는데, 또 물이 더럽다면 안잡죠.”

쑤: “정부나 농진공에서 땅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洪: “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주단지에 대해서만 돈을 내놓고 가라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잡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헌집을 사서 들어가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자면 2억이 있어야 하는데 2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부자한테 팔든지 해서 그 돈을 우리한테 섭섭치 않게만 주면 조건없이 나가겠습니다.”

朴: “지금도 이주단지라는 곳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이 바닥을 빨리 개발해 어민 살게 해주고 농지를 여기서 주면은 우리가 살아야 한다. 시화호 허가를 빨리 내서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주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홍순철: “물론 정부차원에서 불법어장이라 해서 고기를 못잡게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안산에서 폐수를 버리는 사람을 먼저 조치를 해야지, 피해 보는 것은 어민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金: “그때 기관장들이 나와서 ‘이걸 막으면 여기서 내수면이 된다. 그럼 섬에 살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했지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추워지면 다 (고기잡이) 나갈 겁니다. 나가서 걸리면 다 끌려가는 거죠.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뿐이니 이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화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굶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순애: “요즘 세상에 학교를 못보낸다면 누가 곤이 듣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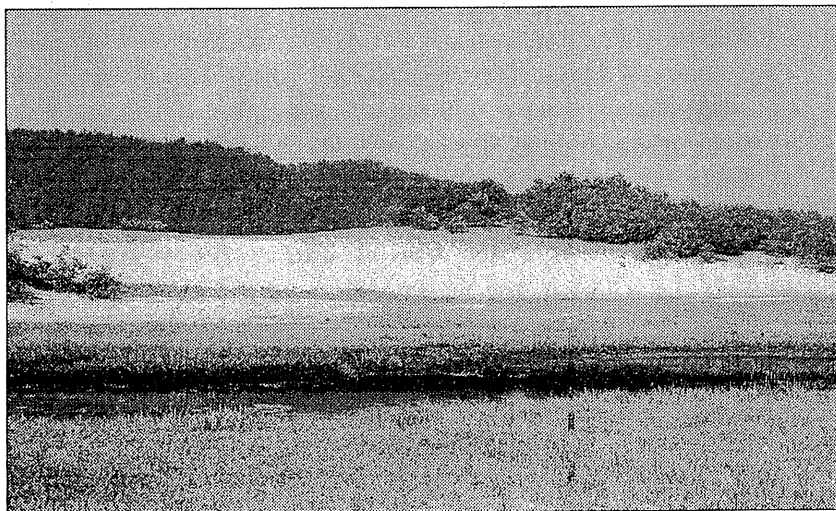
洪: “말로만 ‘뭐도 주고 뭐도 준다’고 하고, 제대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관장들도 예전에는 여기 낙지가 많이 나오니까 와서 얻어먹고 싸들고 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옵니다.”

▼ 버려진 소형 어선들



## 第8節 태안 신두리

▼ 신두리 사구·늪





<재 보 자>

최 규 식 (남: 59세)

주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73번지

전화 : 0455 672 5413 / 0455 672 3435(노인장)

참고사항 : 마을이장 / 砂丘內 準農林地 관리인

대담98신두01 모래언덕 소유관계

全在慶: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崔규식: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73번지 최규식입니다."

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崔: "마을 이장입니다"

全: "백사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 번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崔: "큰 번지는 1번지, 2번지, 3번지, 94번지, 95번지, 97번지요."

全: "이것들이 처음에는 동네산이었다면서요?"

崔: "예, 동유재산이었어요."

全: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崔: "6·25전까지"

全: "크기를 다 더하면 대강 몇 만평쯤 가져야 될까요?"

崔: "60만평 정도."

全: "이게 어떻게 개인들에게 넘어갔을까요?"

崔: "예, 동유재산이었지요. 옛날에 관리하던 노인들이 개인한테 판 것입니다."

대담98신두02 총유재산매매·마을연혁

全: "그 때 마을회의를 열었다는 말씀을 혹시 들었거나 기억하십니까?"

崔: "마을회의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몇 명의 노인이 팔은 것입니다."

全: "판 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崔: "대금은 반별로 신두리 전체 반별로 옛날 대저울(고추 다는 저울) 하나씩 반별로 해줬지요."

全: "반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崔: "한 7반 정도 되었습니다."

全: "지금은 신두 1리, 2리, 3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3리 땅이었습니까?"

崔: "예, 여기가 3리 지역입니다."

全: “신두리 3리의 옛날 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崔: “여기요?”

全: “순 우리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崔: “둔개, 수목골”

全: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崔: “백사장은 아랫벌, 중벌, 윗벌.”

全: “이 백사장 다 포함해서 ‘벌이’라고 불렀군요.”

崔: “도랑골, 농대, 둔개, 탕수골, 수목골, 범집골, 신두리 3구 마을의 골골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全: “3구는 일제시대부터 3구로 나뉘었나요?”

崔: “그때부터 나누어져 있다가 신두리로 통합되었지요, 그러다가 백사장이 개인에게 넘어갔었지요.”

全: “통합하면서요?”

崔: “예, 신두리 전체를 묶어서 7반으로 만들었었지요.”

全: “6·25후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이장님은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었던 때인가요?”

崔: “어렵듯이 알지요. 그때 12,3세 정도였으니까요.”

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崔: “1940년생입니다.”

대담98신두03 개발관(1)

全: “지금 눈 앞에 보이는 백사장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의 동쪽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백사장인데, 여기 물이 드나드는 백사장도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崔: “아니요, 이걸 공유수면이지요.”

全: “이 앞에 토락되어서 개인소유가 숨어 있다면서요?”

崔: “예, 있어요. 측량에서 전부 지역정열이 되었지요.”

全: “여기 백사장 물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 모래언덕으로 소위 사구가 잘 발달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개인에게 넘어가고 최근에 대기업들이나 리조트 회사들이 여기 소유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시는 지 아니면 개발되나 안되나 주민들에게는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崔: "주민의 의견요? 개발되는 것을 좋아하지요."

全: "이유는 무엇인가요?"

崔: "어쨌든 발전되고 오지가 개발되면 살기가 나아질 것 같아서 개발되는 것을 원해요."

대담98신두04 총유변화

全: "옛날에 동유재산을 넘길 때 혹시 너무 싸게 넘기셨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崔: "하지요. 싼 값에 넘겼지요. 그때 가격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지금 가격으로는 싼 값에 넘긴거죠."

全: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崔: "한화국토개발과 백제 주식회사입니다."

全: "한술도 있다면서요?"

崔: "예. 백사장 위로. 전부 다 리조트 개발 허가까지 났었거든요. 저희들은 서류를 봤습니다. 면사무소까지 서류가 내려왔어요."

대담98신두05 군사보호지역

全: "왜 개발을 안하고 있을까요?"

崔: "지금 대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요. 전부 국토변경 허가까지 났었어요."

全: "최근에 군사보호지역까지 해제되었나요?"

崔: "예. 해제되었어요. 훈련기간만 일년에 2~3번씩 2~3일 정도하고 사격 후에는 철수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全: "이 모래언덕일대가 다 군사보호시설이었습니까? 6십만평 거의 다요?"

崔: "예. 그 전에는 철조망 치고 전부 다 민간통제하고 그랬었죠."

全: "탱크로도 훈련하고 했었습니까?"

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全: "언제쯤 보호지역이 해제되었습니까?"

崔: "몇 년 되었습니다."

대담98신두06 생산현황

全: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다란 백사장은 공유수면이고 현행법상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here를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지금은 굴양식도 하는데 백사장에서 무엇이 생산됩니까?"

崔: “현재는 굴이 많이 생산됩니다. 고동도 있고 소라, 조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준: “굴 같은 것을 양식하는 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崔: “간조되면 나타나요.”

준: “모래 밭에다가 돌을 심어 놓았습니까?”

崔: “수화식, 간이 수화식.”

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崔: “굴껍질을 줄에 꿰어서 포자, 굴 종자를 붙이고 나무를 박아 줄로 달아매는 겁니다.”

준: “간이 수화식을 어촌계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崔: “개인이 합니다.”

대담98신두07 어촌계

준: “양식허가는 받지 못하구요?”

崔: “예. 어촌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어려워요. 모든 허가는 어촌계를 거쳐서 되거든요.”

준: “왜 어촌계가 구성이 안 되었을까요?”

崔: “어촌계를 구성하려고 조합원 가입을 했거든요. 신두리 전체도 조합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속이 방갈어촌계예요 학암포 방갈. 거기서 분계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마 조만간 분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촌계 구성이 될 겁니다.”

대담98신두08 소유의식

준: “옛날에는 굴양식을 안 하셨는가요?”

崔: “옛날에는 안 했죠.”

준: “그 때는 백사장을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崔: “조개나 잡고 했어요. 관심을 두었나요 \*\*\*\*”

준: “백사장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소유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여기 바닷물이 드나들지 않는 산 아래 백사장은 동유재산이었는데. 물이 드나드는 지역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것도 동유재산으로 생각하셨는지요?”

崔: “여기도 우리 지역의 토지라고 할까 바다라고 할까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쫄: "굉장히 넓은데요."

쫄: "넓지요. 백사장 길이가 4km예요."

대담98신두09 배타적 지배

쫄: "마을 주민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실제 다른 개인들이 와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굴양식을 할 때 혹시 말리신 적은 있습니까?"

쫄: "무슨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말리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쫄: "이장님은 말리지 않았습니까?"

쫄: "말리지 않았지요."

쫄: "실제 개인들이 와서 아무나 양식을 할 수가 있나요?"

쫄: "인근 주민들은 할 수 있어요."

쫄: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하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쫄: "하는 것을 억지로 말릴 수는 없지요."

쫄: "실제 물 드나드는 백사장에 굴양식장이 어느 정도 들어서 있습니까?"

쫄: "60헥타 정도입니다."

쫄: "다 신두리 주민이 하시는 겁니까?"

쫄: "신두리 주민이 주동적으로 하지요. 인근 이곡리나 황촌 같은 데서 다소 하고 주로 신두리 주민들이 합니다."

대담98신두10 개인생산

쫄: "공동으로 생산하고 팝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구역을 나누어서 생산하고 판매합니까?"

쫄: "자기 개인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수집상이 있어요."

쫄: "60헥타 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쫄: "예. 더 할려면 할 수 있지요."

쫄: "60헥타는 백사장 전체를 어느 정도 이용한 겁니까?"

쫄: "2/3정도."

쫄: "여기 혹시 개인이 양식허가를 얻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쫄: "없어요. 방갈어촌계원이 석화식을 조금해요."

쫄: "신두리 3리는 이 백사장만 관리를 했었고 다른 갯벌은 없었나요?"

쫄: "없었어요. 갯벌이 앞에 있는데 거기도 굴양식이 있어요."

쫘: “거기는 누가 관리하시죠?”

쫘: “다 의항리 주민들이 해요. 거기도 굴양식도 하고 낙지 같은 것 잡아요.”

대담98신두11 해수욕장

쫘: “여기를 해수욕장으로 개장한다면 정식으로 해수욕장 허가가 났다는 말인가요?”

쫘: “아니요.”

쫘: “해수욕장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쫘: “원하죠. 주민들이 번영회를 구성한지 7년 정도 되었거든요. 쓰레기 관리도 해요.”

쫘: “여기 들어올 때 입장료 같은 것도 안 내는 것 같던데요.”

쫘: “예. 안 내요.”

쫘: “무슨 돈으로 쓰레기를 치우세요?”

쫘: “텐트 치면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협의해서 받는거죠. 사람 사서 쓰레기도 치우고 해요. 행정기관에서는 간이 화장실 좀 지원받고 쓰레기 수거비도 군에서 약간 받고 있어요.”

쫘: “신두리 지역의 백사장 모래언덕이 국내에서 드물게 잘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가 생태계 보전지역 같은 것으로 지정되어서 이 모습이 영구적으로 간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분들은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군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주민들은 오히려 싫어할까요?”

쫘: “예. 그렇지요.”

대담98신두12 개발관(2)

쫘: “실제 현지주민들의 소유가 많지 않은데 개발될 경우 이익이 얼마나 돌아올까요?”

쫘: “그렇지요. 주민들은 개발되어도 많은 이익은 없어요. 전부 외지사람들의 토지이기 때문에.”

쫘: “그런데도 개발을 바라실까요?”

쫘: “예. 개발을 바라더라구요.”

쫘: “얻는 이익이 무엇까요?”

쫘: “교통이라도 좋아지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쫘: “여기를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태안군에서 책임지고 환경을 보전

하면서 개발하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崔: “그렇게만 한다면 좋지요.”

全: “그런 건의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崔: “없죠.”

全: “이 백사장이나 모래언덕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평범하니까 이런 데다 나무를 심어도 좋겠다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면 좋겠다든지 아 파트를 지으면 좋겠다든지 \*\*\*”

崔: “여기 주민들은 옛날부터 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가 봅니다.”

全: “몇 백년이 지나 이런 지역이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가진 자연환경은 훌륭한 재산인데 그것이 많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崔: “좋을 것이 없지요.”

대담98신두13 마을조직·생업구성

全: “마을은 몇 호 정도 됩니까? 신두3리요.”

崔: “57호 정도 됩니다.”

全: “주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崔: “한 200명요.”

全: “모여서 회의도 하십니까?”

崔: “총회를 하지요.”

全: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崔: “일년에 3번 이상 하지요.”

全: “주로 안전이 됩니까?”

崔: “마을에서 서로 결의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全: “독특한 풍습이라든가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소개할만한 특색이 있습니까?”

崔: “특색이 없어요.”

全: “생업은 주로 농업이신가요?”

崔: “농업하고 어업 겸업입니다.”

全: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崔: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농한기에 굴생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3~4억 정도 됩니다.”

全: “마을 전체로요?”

崔: “예.”

全: “굴은 대강 언제부터 생산하셨는가요?”

崔: “굴 생산은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全: “30년쯤 되었습니까?”

崔: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全: “그 이전에는 백사장에서 특별한 생산은 없었습니까?”

崔: “없었지요.”

全: “갯벌에서 조개라든지 고동을 잡는 지역에서는 갯벌에 대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崔: “없었어요. 그렇게 생산이 많지를 않습니다.”

全: “내 것, 네 것이라는 다툼이 적었나 보죠?”

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었지요.”

대담98신두14 재산권 특징·장벌

全: “지금 이 굴 심은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컨대 갯밭이라든지. 아니면 갯바닥이라든지, 무슨 말로 부르시죠?”

崔: “예, 장벌이라고 부르죠.”

全: “무슨 뜻입니까?”

崔: “넓은 곳이라는 뜻이죠.”

全: “이 4km 전체를 장벌이라고 부릅니까?”

崔: “예.”

全: “언제부터 그런 말을 쓰셨습니까?”

崔: “옛날부터 썼지요.”

全: “6·25전부터인가요?”

崔: “옛날 할아버지때부터 장벌이라고 부르더라구요.”

全: “백사장이라는 말은 안 쓰셨군요.”

崔: “바다 보고는 장벌이라고 하고, 물 안들어 오는데는 백사장이라고 부르고.”

全: “장벌에 대해서 마을에서 논의하시거나 장벌을 어떻게 관리하자는 말씀은 없었나요?”

崔: “양식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촌계를 구성해서 허가를 내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논의를 했었지요. 뜻대로 되지 않더라



구요. 4차례 총회도 하고 했었어요.”

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공유수면관리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공유수면은 국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혹시 ‘그럴 수 있느냐, 주민들이 여기 장벌에서 양식을 하거나 조개를 채취하는데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논의를 노인들한테서 들은 적은 없습니까?”

崔: “들은 적이 있지요.”

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崔: “그럼 우리가 굴양식이나 조개도 마음대로 생산을 못할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요.”

준: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이야기였을까요?”

崔: “그렇지요.”

준: “다른 지역에도 장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崔: “이 근처에서는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 대담98신두15 공유수면 특징

준: “남쪽으로 의향이 보이고 북쪽으로 학암포인데요, 그쪽은 물 들어오는 백사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崔: “거기도 있지요. 땃돌, 다매, 태배.”

준: “또 더 없습니까?”

崔: “신노루, 소돌.”

준: “땃돌·소돌은 무슨 뜻인가요?”

崔: “물 찌는데에 소돌이 있어요. 돌언덕.”

준: “돌언덕이요?”

崔: “예. 물 들어오면 찌고 물 나가면 보이고.”

준: “물 들어오면 ‘찌다’는 말은 ‘돌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崔: “예.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보이지를 앓습니다. 물이 나가야 보이지.”

준: “개인 소유는 아니지요?”

崔: “아니죠. 그것도 공유수면입니다.”

준: “얼마나 큼니까?”

崔: “땃돌요? 크고 길어요.”

준: “소돌은 소처럼 생겨서 소돌인가요?”

崔: “작아서 소돌이지요.”

준: “백사장을 마을마다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군요?”

崔: “저쪽 뺨 있는 데는 ‘안 개’라고 하지요.”

준: “뺨발을 ‘개’라고 했나요?”

崔: “마을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 개(깨)’라고 했지요.”

준: “발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까?”

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안개, 장별.”

준: “안개는 모래사장인가요?”

崔: “뺨이요. 육지하고 연결된 데는 모래고.”

준: “모래사장 바깥에 뺨이 있는 건가요?”

崔: “예. 물이 나가면 뺨이 나요. 물이 이 정도 들어오면 전부다 이렇게 백사장이고 물이 간조되면 뺨이 나고요.”

준: “여기도 그렇습니까?”

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전부다 백사장이예요. 경사가 완만하고.”

대담98신두16 독 살(1)

준: “배로 어업을 하시거나 고기잡는 분은 없나요?”

崔: “여기는 없어요. 의항에 많고요. 의항은 어촌마을입니다.”

준: “의항에 혹시 독살(어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崔: “예. 독살이라는 것 있어요.”

준: “언제 그 말을 들으셨어요?”

崔: “오래되었지요. 지금도 있어요.”

준: “언제까지 고기를 잡았나요?”

崔: “지금도 독살 관리를 하더라고요.”

준: “마을 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崔: “그걸 독살이라고 부르죠.”

준: “의항에는 어촌계가 있습니까?”

崔: “예. 있지요. 독살은 개인이 관리하고.”

준: “어떻게 개인이 하십니까?”

崔: “옛날부터 개인이 하더라고요.”

대담98신두17 외지인소유·개발낙후

준: “장래를 생각했을 때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崔: “동네주민들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해 가면서 개발을 해보자는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노인네들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전부 동참해서 여름이 되면 찾아온 손님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안간힘을 써요. 도로 같은 것도 그 전에는 경운기도 못다녔어요. 농촌에서 없는 돈 각출해서 길도 닦고 전지 같은 것도 해서 지금은 오는데 편할려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을 보전해 나가나, 이것이 지역 사람 땅만 같아도 괜찮을텐데... 외지사람 땅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지역사람 땅 같으면 주민들이 동참해서 문제가 안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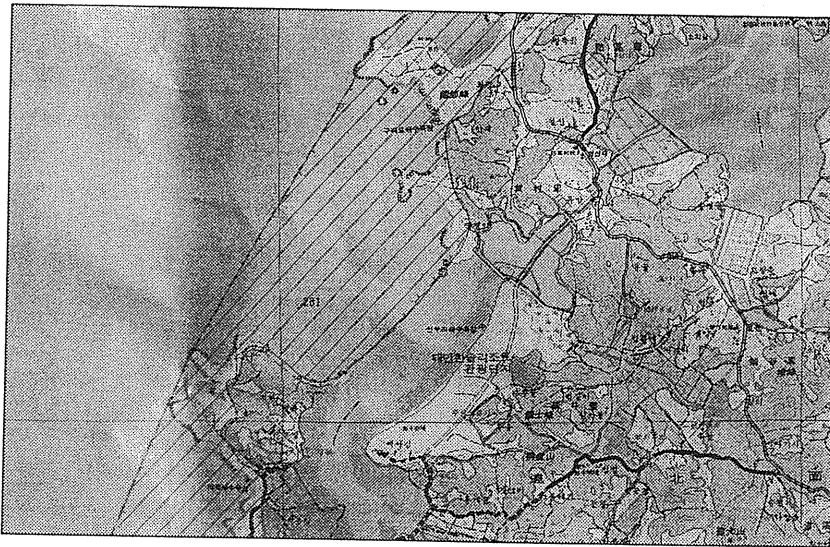
全: “외지인들의 땅이 많아서 협력이 잘 안되나보죠?”

崔: “협력도 안되고 주민들이 헌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개발단계에 도달하니 까 자기들 땅값은 한없이 상승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대가가 없고 인사도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는 버려져요. 군수님도 여름이면 몇 번씩 다녀가시거든요.”

全: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장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 “마을 발전은 주민들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행정당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큰 기업체에서나 해야 할텐데 기업체들도 지금은 어려워서 할 수도 없고.”

▼ 신두리 토지이용도



대담98신두18 생활고

준: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분들은 생계도 어려웠겠습니다."

崔: "어려웠지요. 그렇다고 어디나 가서 품 팔 때도 없고. 지금은 바다에서 굴이라도 생산해서 먹어 식생활 같은 것은 그냥 유지해나가지요."

준: "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있나요?"

崔: "많지 않아요. 거의 노인네들이죠."

준: "마을이 잘되자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와서 혜택을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들 생활의 터전을 정착해야 할테데 들어와봤자 아무 것도 아니죠."

준: "이장님은 객지생활한 경험이 있으세요?"

崔: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는 거지요."

대담98신두19 분쟁해결·생활수준

준: "마을에서 분쟁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崔: "주민들의 협조는 잘돼요.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살던 분들만 살기 때문에 협조는 잘돼요."

준: "외지인들은 들어와 살지는 않지요?"

崔: "외지인은 산다고 해봐야 몇 되지도 않지요. 전부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니 분쟁이 날 일이 없고."

준: "여기 당집은 없습니까?"

崔: "없어요."

준: "굿같은 것도 없지요?"

崔: "예."

준: "미신같은 것은 안 지켰습니까?"

崔: "점 정도는 있었지요."

준: "뱅이나 양밥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崔: "없었어요."

준: "이 아래 의항은 신두리 보다 살기가 낫습니까?"

崔: "낫지요."

준: "어째서 그럴까요?"

崔: "거기는 어업권이 상당히 낫지요. 배가 많아요. 그리고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서 양식장이 많아요. 허가양식장.”

全: “허가양식장 아니어도 양식은 실제 하지 않습니까?”

崔: “하기야 하지요.”

全: “정부에서 허가 없다고 해서 단속은 안합니까?”

崔: “예. 단속은 안해요.”

全: “불편하신 점은 없었지요?”

崔: “지금까지는 대량으로 하지 않으니깐 별로 없지요. 자기들 능력이 소화시킬 만큼만 양식을 하니까. 의항 같은 곳은 배가 많으니깐 어촌이라도 부촌이에요.”

대담98신두20 고유지명·매립연혁·독살(2)

全: “의항의 옛날 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崔: “개목요. 저기 잘록한데 보이죠. 개미 목이 저렇게 가늘잖아요 그래서 개미 ‘의’자에 목 ‘항’자 해서 의항이에요. 개미목인데 간단히 말해서 개목이라고 하지요.”

全: “옛날에는 그냥 개목이라고 하셨어요?”

崔: “예. 개목이라고 불렀어요.”

全: “저 마을하고는 왕래가 많았습니까?”

崔: “한 30년 전에는 왕래하는 나룻배가 있었어요.”

全: “갯벌이 매립되기 전예요?”

崔: “나룻배가 손님 싣고 왔다갔다 했었어요. 매립되면서 차로 왕래하지요.”

全: “매립이 언제쯤 되었는데요?”

崔: “한 10년 넘었어요.”

全: “30년 전쯤에는 배로 왔다 갔다 했다고요?”

崔: “예.”

全: “배로 왔다 갔다 할만한 물자나 이유가 있었나요?”

崔: “사람 왕래하고 짐도 배로 실어 나르고 여기서 물건도 사가고.”

全: “여기서 사가는 물건은 주로 무엇입니까?”

崔: “주로 시장을 다녔지요.”

全: “저기가 시장이었습니까?”

崔: “아니요. 이쪽이 시장이었지요. 원복시장. 그때 버스가 있나, 걸어다녔지요.”

全: “독살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崔: “독살은 독(돌맹이)으로 쌓아 고기가 못냄을 정도로 쌓더라구요. 물이 찌면 안보여요. 안 보이게 물이 들어와요. 나간 다음에 나가보면 고기가 있어요.”

대담98신두21 언 어

全: “물이 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崔: “독살이 물에 잠긴다.”

全: “그걸 ‘물이 찌다’고 해요?”

崔: “여기서 말할 적에는 물이 찌다고 하지요.”

全: “물이 들어와서 잠긴다?”

崔: “물이 들어와서 잠긴다는 말을 ‘물 찌다’고 하지요.”

全: “물이 나가는 것은요?”

崔: “물 쓴다. 밀물 썰물 하지 않고 ‘물 찌다’ ‘물 쓴다’고 하지요. 신두리 앞바다가 깨끗해요.”

대담98신두22 수질오염

全: “학암포도 깨끗한가요?”

崔: “거기도 깨끗해요.”

全: “서해안 오염이 점점 심해진다는데 걱정이 안되십니까?”

崔: “그런 걱정도 있지요. 더군다나 화력발전소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오염이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全: “태안화력발전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崔: “10여년정도 되었어요.”

全: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

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崔: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배양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고기 같은 것을 키워서 소득이라도 올려볼까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요.”

全: “화력발전소가 보이는 군요. 여기가 해수욕장으로는 만리포보다 길이가 길까요?”

崔: “길죠.”

쫄: “그런데 해수욕장이 발전되지 않은 것은 교통이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崔: “교통도 불편하고 땅 가진 사람들이 개발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요.”  
 쫄: “땅 주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崔: “글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대담98신두23 토지관리인

쫄: “이장님은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崔: “저는 얼마 없어요.”  
 쫄: “외지인들이 땅관리를 맡기나요?”  
 崔: “예.”  
 쫄: “관리해 주면 대가를 제대로 줍니까?”  
 崔: “예. 제가 한화 것을 관리하거든요.”  
 쫄: “몇 필지나 맡고 계세요?”  
 崔: “큰 필지가 세 필지, 전체 9필지 돼요. 조금만 토지까지 치면.”  
 쫄: “관리해 주시면 보수는 매년 줍니까 아니면?”  
 崔: “다달이요.”  
 쫄: “다달이 얼마씩이나 받으십니까?”  
 崔: “얼마 안 받아요.”  
 쫄: “10만원쯤 됩니까?”  
 崔: “그 이상 돼요.”

대담98신두24 억울·토지환수

쫄: “본래는 마을 공동 재산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외지인들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현재 이 마을의 자손들은 외지인 자손의 땅을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崔: “언제까지나 남의 땅 관리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이요. 심각한 문제죠. 외지 토지인들이 지방 주민들한테 환수해줬으면 해요.”  
 쫄: “어떻게요?”  
 崔: “저렴한 금액으로요. 주민들은 억울해요. 전체 동유재산이었던 것이 그냥 외지인들에게 넘어가버리고.”  
 쫄: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이 환수하기는 어려울텐데요?”

崔: “예, 어려워요.”

全: “그런 생각을 마을분들과 이야기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崔: “해봤지요.”

全: “옛날에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억울하시겠어요.”

崔: “그렇죠.”

대담98신두25 생활여건

全: “저 뛰는 고기는 무엇인가요?”

崔: “농어.”

全: “고기잡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崔: “밤에 물이 나갔을 때 그물로 끌(으)면 고기도 들고 중꽃게도 들고 해요.”

全: “팔기도 합니까?”

崔: “그렇게 해서 반찬 같은 것하죠.”

全: “주민분들은 해수욕을 거의 안하나요?”

崔: “안하지요. 주민들이야 긴 바지 입고 다니는데요.”

全: “왜 해수욕을 안 하세요?”

崔: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하는 걸. 천안 경기도 서울 전국에서 안 오는데 가 없더라구요. 또 오시는 분들마다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넓은 데가 없다고 해요. 교통이 불편하고 개발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야 개발을 하지요. 그냥 안타깝기만 하지요.”

全: “시내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崔: “저쪽으로 또 있어요.”

全: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고요?”

崔: “샘 파서 공급해요.”

全: “해수욕장하면 이 안에 심어놓은 굴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崔: “해수욕하는데는 여기고. 저 밑에 굴밭이 있다고 해도 전부 위험 표시를 하니까.”

全: “사시면서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崔: “여기서만 살아서 그런지 여기가 좋더라구요. 살기가 좋잖아요.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지.”

全: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요?”



崔: “애들은 서산 쪽에 가서 학교 다니죠.”

대담98신두26 매립지 방치

全: “저쪽 북쪽에 보이는 모래언덕은 방파제로 쌓았나요?”

崔: “제방. 두산 대화양식장 있던데요.”

全: “두산에서 제방 너머에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崔: “예.”

全: “지금은요?”

崔: “없어졌어요.”

全: “왜 안하죠?”

崔: “그게 몇 년 하니까 대화가 크지를 안더라구요. 빨에 양금이 앉아서.”

全: “거기가 빨이었어요?”

崔: “빨인데 그전에 대화양식을 몇 년 치니까 양금이 앉아요.”

全: “양금이라니요?”

崔: “죽은 빨. 그래서 대화가 크질 않지.”

全: “어디에 양금이 앉습니까?”

崔: “대화양식하는 바닥에.”

全: “빨발인데 그 위에 다시 죽은 빨이 생겨난다는 말씀인가요?”

崔: “그래서 대화가 성장을 못하더라구요.”

全: “지금은 무엇으로 씩니까?”

崔: “그냥 두죠.”

全: “두산이 매립해서 불하받았나요?”

崔: “예. 매립했어요.”

全: “그곳도 신두리입니까?”

崔: “신두리하고 황촌리하고 반반이에요.”

全: “저기를 매립해서 땅으로 쓸지도 모르겠군요?”

崔: “모르겠어요.”

全: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崔: “모르는데 넓어요. 저쪽으로 바다쪽으로 빨은 곳이 드라마 ‘민동’ 촬영한 데예요. 구례포라고.”

全: “구례포는 주로 생업이 무엇입니까?”

崔: “거기도 여기와 비슷해요.”

대담98신두27 마을현황

쫘: "마을에 오래된 문서같은 것은 없으세요?"

쫘: "글쎄요."

쫘: "오래된 문중은 없습니까?"

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백사장 하나 자랑거리지요. 모래사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잖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가 최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쫘: "여기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第9節 부안 창북리

<재 보 자>

김 병 국 (남: 46세)

주소 :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3리 474-3

전화 : 0683 82 1960

참고사항 : 10년간 서울생활후 歸漁

새만금맨손어업보상대책위원장(1993.8-94.12) 역임

대담98창북01 이주단지

쫘在慶: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金병국: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74-3번지에 사는 김병국입니다. 농사와 어업을 겸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쫘: "여기 사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金: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15년이고, 여기에서 5km 떨어진 곳이 제가 처음 태어난 곳이고요."

쫘: "여기서 태어나서 중간에 다른 곳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건가요?"

金: "7,8년 정도 서울 생활하다 수술을 몇 번하고 낙향했지요. 그런지가 15,6년 정도 되었지요."

쫘: "다른 곳에서 이주해오신 주민들도 계실텐데요."

金: "섬진강 수물민들이 여기에 이주해온 지가 22~23년 정도 될 겁니다. 생존권 때문에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아놓은 갯벌을 농지

화하면서 농토와 집터를 받아서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2/3가 넘지요.”

쫄: “창북리에요?”

金: “예.”

쫄: “마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金: “여기가 한 1000여 세대는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면단위로 밀집되어서 16개동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읍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대담98창북02 염해·피해의식

쫄: “매립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金: “동진강휴게소 옆에서 의복리까지는 일본사람이 한국사람 동원해서 만든 매립지입니다.朴대통령 당시 수몰민들이 많이 왔을 때 해변을 많이 이용한 이유는 처음부터 좋은 토질이 아니었던 땅을 시험대상으로 쓴 거예요. 갯벌은 염기가 많은데 이것을 몇 년만에 농경지로 쓸 수 있느냐를 1차적 시험대상으로 한 겁니다. 논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갯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벼는 심어놓으면 5년동안은 다 죽으니까요. 아직 염해지역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피해를 봐요. 지금도 모내기하면 죽는 데가 많아요. 이주민 보상이라고 해서 토지와 집을 내주었지만 실제 살기에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주민들은 살려고 했었고 지역민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했었어요. 자기들은 황금어장을 잃어버린 데다 보상도 못받았고 이주민들이 득세해서 농경지도 살려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도 지역갈등의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대담98창북03 전래 재산권·보상투기

쫄: “갯벌보상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金: “여기서 새만금 보상대책 위원장을 잠시 맡았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치권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 불만이 그겁니다. 조상대대로 해먹었던 땅을 선을 딱 그어놓고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갯벌에 대해서 어느나 \*\*\* 조사해보면 알지만 대부분 경찰이나 공무원, 건달들이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공무원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 해서 저들끼리 나눠먹기식이었지요. 주민들은 마음대로 채취해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금을 긋고 여기는 못들어 간다고 하니 \*\*\* 이런 것들이 소위 양식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8년부로 해서 받고 투기꾼들도 몇 배씩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대담98참복04 맨손어업허가증 모순

全: “투기로 몇 배씩이나 벌었습니까?”

金: “전매라고 해서 몇 배씩 영커서 올라간 것이 있어요. 정보부재, 자금력, 로비력을 못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됩니다. 새 만금 보상회라고 해서 50명의 대책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어촌계장, 수협장들, 양식업자들, 지방유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맨손어업자들은 50명중에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91년도에 토지개발공사나 농어촌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곳에서 로비를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맨손어업 허가증이라고 해서 호패증을 내주었습니다. 그 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그 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민들은 호패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언제 신고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박태국씨라고 1970년부터 맨손어업으로 먹고 산 사람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서 해변의 어패류를 채취해 오다가 차와 부딪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은 사람이 많을수록 보상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친구끼리도 쉬쉬했습니다. 여기는 부안읍 다음으로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생활환경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저 팔·다리만 움직여도 해변이 먹여 살렸어요.”

대담98참복05 생산물

全: “무엇을 주로 잡았습니까?”

金: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全: “한번 말씀해 주세요.”

金: “꼬막, 개우럭, 생합(백합), 피조개, 참맛같은 거요. 맛종류도 서너 종류 나오고.”

全: “낙지같은 것도 나오니까?”

金: “낙지는 안나오고 쭈꾸미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저회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해변이 바뀔지 몰랐는데 4년 전까지만해도 벌이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4년 전부터 거의 전멸이더라구요. 갯지렁이 같은 것도 미끼감으로 수출도 했는데 보상받았던 사람들이 가끔씩 후회를 하거든요.”

대담98참복06 보상후회

全: “왜 후회를 하지요?”

金: “당연하지요. 혼자 벌어도 1년에 6백에서 천여만원씩 버는데 그리고 그것은 순수이익입니다. 내 생활하면서 3,4시간만 하면 되니까요.”

全: “이 마을이 천여세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맨손어업에 몇 분이

나 종사하셨을까요?”

金: “종사자라고 얘기 할 수 있는 분은 2,30%정도지요. 전적으로 그것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밭이 없고 순 논 밖에 없습니다. 5월에 영농이 시작해서 길면 5개월 정도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반농반어)까지 친다면 더 많지요.”

대담98창북07 생업비법 · 소득실태

준: “농사도 지으시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시는 분까지 치면 전체세대의 반 정도 됩니까?”

金: “반이 넘지요. 왜냐하면은 갯벌을 전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노하우가 있어요. 개우럭 하나를 잡는데도 갯벌에서는 개우럭의 눈의 형태가 11가지 정도로 변해요. 그래서 잡는 종류가 달라요. 갯지렁이 잡는 사람들은 갯지렁이만 잡고, 갯벌에 나가면 이 쪽은 갯지렁이가 서식하는 곳 저 쪽은 개우럭이 서식하는 곳. 이렇게 다 달라요. 그것들도 조건이 맞아야 사니까. 지금은 새우잡는 시기에요. 육젓이라고 하면 여기 사람들은 쳐다도 안봐요. 그렇게 좋은 새우를 빨바다에서 잡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단 철에 2,3백씩 버는 사람이 많아요. 생합같은 것 잡는 사람들은 생전 그것만 잡아요. 자기가 해변에 나가면 아니까 한 가지만 잡습니다. 맛도 3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도 잡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잡는 것만 잡지 옆에 다른 것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 갯벌을 평당 무엇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국에서는 평당 천원씩으로 계산했습니다. 전혀 가치가 안 맞지요. 한 평에 갯지렁이가 500g만 나와도 2만원이 넘는데 일년소득을 그 정도밖에 계산을 안 했어요.”

대담98창북08 보상수준

준: “최소한 천만원까지 소득을 올리셨다는데 맨손어업으로 보상을 받은 분들은 실제 얼마를 받으셨나요?”

金: “жат대가 없어요. 처남 같은 경우도 계화도에 살면서 주택자금 받아서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이 깎였습니다. 벌어먹을 돈도 없는데 집 하나가 좋다고 해서 깎였다고요. 알고보면 돈을 다 갚아야지 자기 집인데.”

준: “일년 소득정도 보상해줬나요?”

金: “그 정도 되겠지요.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8백 받았습니디. 평생 보상으로.”

준: “가구당 8백만원입니까?”

金: “소득도 한사람의 일년 소득이지요. 부부가 같이 일을 했다면 두 사람 몫을 줘야 하고 또 아이들이 거들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이 무시되었어요.”

대담98참북09 재산의식

쥬: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金: “예. 호패가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보상을 받고 2차적으로 이야기 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고 보상정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 공동 아니냐’며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터전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내돈이 아니라 정부돈인데 내가 불량한 마음 먹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갯벌은 내 땅이 아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이제까지 먹고 산 것만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양식업이나 서양물 많이 먹은 사람들은 8년분을 받아 먹고도 부족해서 별 짓 다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현재 2차로, 즉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모여서 대책위를 만드니까 양식장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쥬: “어떻게요?”

金: “양식업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은 인건비까지 보상받았어요. 보상단가 천원 중에 3백원은 인건비거든요. 양식장의 경우, 채취는 역시 손으로 하니까, 보상액 중에서 인건비를 빼야 했지요. 새만금은 인건비까지 빼먹었어요.”

대담98참북10 호패증

쥬: “보상비 산정기준이 역시 말썹이군요?”

金: “인건비는 당연히 맨손어업자들에게 돌려줘야죠. 그런데 다 먹어버렸어요.”

쥬: “호패증은 문제가 없었나요?”

金: “관행어업을 인정하여 한 사람 앞에 3천만원 5천만원 주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워 만든 것이 호패법입니다. 허가를 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호패증이 없으면 해변에 못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 없이 1년에 한번씩 수수료만 댈 뿐이지 호패증은 생활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대담98참북11 주민조직

쥬: “대책위원회회의 정식명칭이 무엇이었습니다?”

金: “새만금 맨손어업 보상 대책위였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어촌계장들과 지방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볼려고 회의도 붙여봤습니다. 후회스럽고 미안한 것은 저 혼자 안되겠더라고요.”

쥬: “어느 정도 활동하시다가 그만두셨나요?”

金: "1년정도요."

全: "지금은 2차 보상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金: "부안읍에 생산자협회는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법으로 보상을 받겠다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全: "생산자협회는 계화면 분들로만 구성되었습니까?"

金: "부안군 전역의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3년 동안 주민들한테 2만원, 3만 원씩 받아다 썼는데 일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데모를 해서는 안되고,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새만금 보상대책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를 방해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위원중의 한 분이 '이것 잘못하면 깡패들한테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全: "깡패를 어디서 동원합니까?"

金: "그것은 모릅니다. 그 때만 해도 양식같은 것이 투기의 대상이었습니다."

全: "현재 맨손어업으로 호패증이 없어 보상을 못받았던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나요?"

金: "법적 투쟁밖에 없습니다."

대담98창북12 운동목표

全: "입법운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요?"

金: "우리가 생활했던 터전을 잃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평생보상을 해달라기 보다는 잘못된 보상법이라도 바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유종근도 지사 말로는 새만금을 전라북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것을 들으면 시공창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대담98창북13 개발논리

全: "전라북도의 시책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김환용: "도지사가 '도민들과의 대화'라고 각 시군을 돌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새만금이 완공되면 김제시 전체가 육상도시로 내몰립니다. 어마어마한 담수호가 생기고 북서계질풍이 김제시로 가면 냉해피해가 미칠 것입니다. 김제수협 같은 경우는 내륙도시로 몰리면서 바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존폐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내수면어업을 할 만큼 담수면 수질이 청정하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입니다.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잃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유종근씨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 국민들은 거지근성이 있어서 공짜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김제시민들이 황당해서 '그럼 당신은 거지 대장이나'고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의 뜻을 모아내는 도지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답98창북14 새만금 프로젝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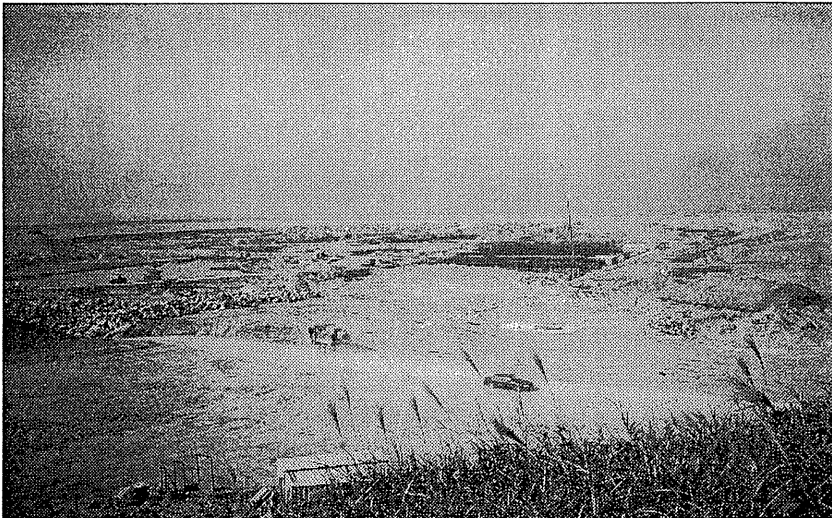
쫄: "새만금에다가 비행장을 만듭니까?"

김환용: "원래는 새만금 안에 전주권 공항계획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을 토목 공사관점에서 보면 1년 내에 막을 수 있다구요. 그러나 유입하천의 수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막아서는 안된다고 사정을 하는 형국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1조4천억원입니다. 거기에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에 하수처리장과 축산처리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50여 개의 처리장을 만들면 가동은 저절로 됩니까? 또 건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고 보조를 70% 해 준다고 해도 30%를 전라북도 재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해놓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운영비 자체도 국고로 해준다고 해도 절대 수질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쫄: "새만금 간척지역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김환용: "1억2천만평. 국민 1인당 3평씩 돌아간답니다."

▼ 새만금 매립현장





대담98창북15 부재자보상·환경오염

全: “행정청에서는 2차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끝을 냈습니까? 새만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김환용: “95% 정도가 끝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金: “후에 왜 이런 것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의 잡다한 것이 남아있고 맨손어업의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강개백은 죽으나 사나 뱃놈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반을 다른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보상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全: “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金: “배도 허가기간이 있어요. 허가받기에는 폐선처분하라고 할 것 같아서 아예 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 폐선처분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장의 허가권이 말살돼버려서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미리 정보를 안사간 사람들은 배를 사서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던 사람들 중 배를 묶어 놓고 잠시 떠난 사람들은 안되는 겁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어떤 식의 보상으로도 위로를 받거나 환경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새만금은 막으나 안막으나 환경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제품 안 쓰고 철저히 구분하여 쓰지 않으면 어떤 땅이라도 죽어버리지요. 옥구 미군 비행장 있는데는 이 리공단에서 나오는 공장물때문에 벌써 썩어 있습니다.”

全: “심각하군요?”

金: “옥구에서는 바지락이 나와도 잡으려 가지 않습니다. 갯벌은 지금과 같은 보호법으로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민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폐수, 공장폐수가 주범입니다.”

대담98창북16 어촌계·지선관리

全: “계화면에는 어촌계가 있습니까?”

金: “두 개 있습니다. 바지락이나 개우럭 같은 것을 많이 잡으면 그것은 팔아 줍니다. 수수료를 먹는 재미로 팔아주지만 그 사람은 어촌계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입도 안하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선별로 해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어촌계원들만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全: “없었다고요?”

金: “예.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만 있었지요. 그 탓에 어촌계는 해태 양식은 몇 헥타, 바지락 양식 몇 헥타와 같은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한 관리는 했어도 지선을 주장하는 사람은 옥구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때 만들었던 지선이 이미 군산땅이기 때문입니다. 계화도 사람들은 다 배타고 나가

서 신시도, 야미도 앞 갯벌에서 잡아요. 같은 해변에서 밥먹고 살아도 경운기나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 물이 빠지면 그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쫄: “어촌계에서는 지선관리를 안하셨다는 말인가요?”

金: “행정구역은 일본이 만든 것을 고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협이라고 해도 일본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어민들을 착취해먹은 곳 아닙니까. 농협은 투자하고 해서 나아졌는데 수협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용: “농민들은 전농이라고 조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민들은 조직체가 없어요.”

쫄: “부안 내에는 어촌계는 있었지만 지선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말인가요?”

金: “부안 내가 아니라 이 쪽은 다 그랬어요.”

김환용: “다른 곳의 어촌계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金: “전남 같은 곳은 지선에 철저합니다. 말뚝 막아놓고 ‘이것은 어느 어촌계 지선이다’는 것이 철저했습니다. 완도수협, 해남 쪽에 가면 굴 같은 것을 어촌계에서 공동채취합니다.”

대담98창북17 개방어장

쫄: “어촌계에서 공동작업을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양식장에서 하는 것 말고요.”

金: “없었습니다.”

쫄: “왜 없었을까요?”

金: “행정구역적인 지선만 있었지요.”

쫄: “너무 넓어서 아무나 와서 채취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金: “여기 사람들의 생활영역이 다양합니다. 자기가 채취하는 고유의 패류같은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껏 벌어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촌계원들 바지락 양식하나 제대로 하는 놈이 없습니다. 공동양식장도 다 임대해주고 수수료나 받아 먹지요. 생산부분에 어느 놈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안이 메말랐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눈물 흘리고 왔어요. 일본해안에는 텃고기가 많습니다. 산란기 금어도 문제가 있어요. 금홍이라는 꽃게가 있어요. 그것이 4월달부터 산란기이므로 못잡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 풀고 난 뒤부터 산란기로 잡혔어요.”

쫄: “산란기는 바다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金: “4월말에 배 바깥에 알을 풀어요. 옛날에는 동진강이 오염되기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거름했어요. 그것을 뽕떡기라고 합니다.”

全: “산란기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대담98창북18 소유의식

全: “여기 주민들이 워낙 넓은 지역에 가서 자기가 잡는 품목만 잡고 살기 때문에 뽕떡기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았다고 하셨지요?”

金: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박정희 전대통령때 느꼈지요. 의복리부터 동진면 이쪽까지 2차 5개 년개발계획 때 쓴맛을 봤어요. 그래서 지선개념이라든지 갯땅이 내 땅이라든지 새끼를 들게 해서 나중에 잡아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막보기로 돌아선 것이죠. 아예 내 능력껏 최대한으로 잡는 것이 최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全: “1차 매립 전의 정서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애착을 가지고 있었나요?”

金: “1차 매립 전에는 옛날의 해안선에서 1.5km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 第10節 부안 계화도

<제 보 자>

박 판 길 (남 : 63세)

주소 :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86번지

전화 : 0683 582 1546

참조사항 : 어촌계장(1992년-1997년) 및 이장 역임

장 남 조 (남 : 57세)

주소 :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16-11

전화 : 0683 582 1220

참고사항 : 어촌계장 역임(1986년-1989년)

/ 계화법인어촌계 이사(현재)

대담98계화01 간척사: 무보상간척 · 관행권확인

全在慶: “안녕하세요? 존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朴판길: “계화리 86번지에 사는 박판길입니다.”

全: “어촌계장 맡아보신 지가 언제쯤입니까?”

朴: “1992년부터 97년 10월 22일까지 민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맡을 때까지 했습니다.”

全: “어촌계 명칭이 무엇입니까?”

朴: “계화 법인 어촌계입니다.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계화법인어촌계.”

全: “어촌계장 맡기 이전에도 계화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셨습니까?”

朴: “예. 마을 이장도 하고 수산계통의 대의원도 지냈어요. 제가 원래 여기 태생입니다. 간척사업이 있기 전에는 낙도였습니다. 1960년대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면 계화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앞의 농경지에 어패류가 서식해서 그것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리입니다. 간척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았어야 하고 앞의 논이라도 받았어야 했어요. 그것마저 한 평도 받지 못했고 그 동안에 생활터전을 잃고 다시 어렵게 생활터전을 개척해서 생계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개화간척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1991년 11월 28일에 계화간척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주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 어촌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매일 50명씩 찾아왔어요.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증을 내겠다고 하면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을 해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군 수산과에 갔었습니다. 어촌계원으로 되어있는 사람만 확인해 줄 수 있어도 그 외에 사람들은 어촌계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당신들이 직접 조사해서 확인하라는 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없더군요. 민원인들이 어촌계장한테만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기에 각 부락의 이장 확인서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상문제가 따르면 확인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실제로 다니는 사람만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군이 해안초소망을 치고 출입통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다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확인증을 해준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복사해오면 해주겠다’ 했는데 하루에 150명~200명씩 와서 초소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우니 군에서 왔습니다. 군에는 ‘민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매일 100명씩 와서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니깐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어촌계장이 확인서를만 들어주면 ‘신고증을 발행하겠다’해서 제가 확인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담98계화02 보상행정난맥

全: “결국은 어촌계장한테 확인책임이 돌아왔군요?”

朴: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다로 나가서 작업을 하기 위한 신고증이지 보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신고증이 발행된 후 정부에서는 1991년 8월 19일 노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까지만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1991년 10월 20일까지 보상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전라북도 도지사는 1991년 8월 19일까지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쑈: "그렇다면 8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두 달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았는가요? 8월 19일까지 신고를 한 사람들은요?"

朴: "8월 19일까지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쑈: "8월 19일까지 맨손어업을 한 사람입니까? 8월 19일까지 신고를 한 사람입니까?"

朴: "신고를 한 분들이죠."

쑈: "8월 19일날 발표를 했으니까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했을텐데요?"

朴: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1991년 5월부터 있었어요. 앞서서 한 분들은 8월 19일 이전에 신고를 많이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8월 19일까지 보상을 주었습니다."

쑈: "어촌계에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한 분들은 8월 19일 전에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朴: "그렇지요."

쑈: "노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소문을 듣고 와서 확인해 달라고 했다는 말인가요?"

朴: "예. 8월 19일 후에는 딱 잘라서 신고증을 못내주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수산과의 의뢰를 받은 군 수산과에서 신고증을 계속 내줬어요. 전라북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8월 26일날 회의를 했으므로 8월 19일까지만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 후에도 신고를 받아줬어요. 전라북도에서는 해당 군수를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어촌계장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8월 19일 이후에는 절대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알렸을텐데, 자기들만 회의를 하고 8월 19일 이후에는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았단니까요. 그래서 어촌계장들이 어려움을 받았고, 민원이 늘어나자, 검찰청에 조사를 해보라고 건의를 해서 검찰이 신고증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했고 받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당시 관할하던 군수산과 직원과 어촌계장, 도 수산과 직원까지 구속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담98계획03 추가보상 신고

쫌: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었군요?"

朴: "예. 억울하게 당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어촌계장을 맡아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용역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군산조합장, 부안수협장, 김제수협장에게 위임을 했지요. 그 당시 보상대책위원이 52명이었는데 거기서 결정을 못내리니까 좁혀서 '수협장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며 수협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최종결정이 내려졌는데,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하면 부산대학보다 잘 할 것이다'해서 맡겼습니다. 그때 팀장이 김중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연구진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분야별로 용역평가를 나눠주셨더라구요. 바지락 양식을 하는 곳에는 바지락 양식팀이 와서 조사를 하고 맨손어업에는 맨손어업팀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어촌계에서 판매실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검토하더라고요.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신고액을 보상기준을 삼더라고요. 8월19일 이전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1차 보상에서 최고 실적이 많은 사람이 1천3십만원을 받았습니다. 8백만원, 6백만원, 3백2십만원 순으로 등급을 매겨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1991년 8월 19일 이후에 신고한 사람들이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보상이 마무리되었다면서 보상을 끝내버렸습니다. 98년 초에 군 수산과에서 '생계보호대책비로 2백4십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쫌: "2백4십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까?"

朴: "2백4십만원을 거절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주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마저도 현재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쫌: "그게 언제일이라고 하셨지요?"

朴: "98년도요. 사실조사를 해서 서류가 이미 도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98계획04 신고현황·선외보상

쫌: "계획 어촌계에서는 10월 20일까지 신고한 분들은 대강 몇 분이나 됩니까?"

朴: "보상을 도에서 지급할 때 본인 아니면 지급을 안했어요. 본인이 어촌계에서 구좌통장을 만들어 통장으로 직접 넣어줬어요. 명단이 있을 겁니다."

崔국서: "숫자가 조금 안맞을 것 같아요. 계획면 어촌계하고 전체 호패가 틀리니까."

朴: “정확한 숫자는 안맞습니다. 남의 사채를 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법원에서 압류를 시켰어요. 압류가 풀리기 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全: “보상은 세대(가구)단위로 이루어졌습니까?”

朴: “가족끼리도 8월 19일 이전에 신고를 했으면 보상을 받았거든요. 한 집 에 들어 받은 사람도 있고 셋이 받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崔: “그 때 전체 호폐는 약 600개 정도라고 했어요.”

朴: “8월 26일 시장 군수 회의를 하고 수산과에서 우리에게 전화로 ‘8월 28 일 오전9시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崔: “선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朴: “‘새만금 간척종합개발 사업지구 이외의 지선’이라는 문구를 붙여서 신고 필증을 내주었어요. 지선바깥 3.5km까지 보상을 해줬어요.”

대담98계획05 간접보상

全: “뚝방(지선) 3.5km까지 무엇을 보상해줬다는 말씀입니까?”

朴: “간접보상을 해줬다니까요.”

全: “누구를 말입니까?”

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요.”

全: “맨손어업 말고요?”

朴: “양식업에 대해서요.”

崔국서: “8월19일 이후 양식업자는 선외 3.5km까지 보상해 주면서, 맨손업자 는 선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받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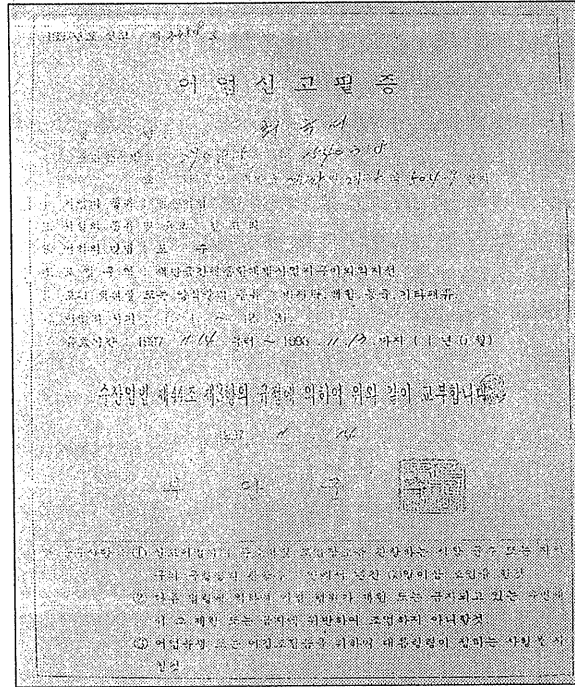
朴: “8월19일 이후 뚝방을 중심으로 3.5km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식업자에 게 간접보상을 해줬다면 8월 19일 이후 10월20일까지 신고를 한 맨손어 업자도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全: “맨손어업 신고필증도 선외가 있지요? 10월 22일까지 신고한 맨손어업자 들은 선내라도 보상에서 제외되었나요?”

崔: “맨손어업자도 ‘지구이외의 지선’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1년단위 어업신고 필증을 내줬습니다. 제 것은 1997년 11월 14일자입니다.”

김환용: “8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선내에서 신고한 맨손어업자들은 보 상에서 제외시키고 10월 22일 이후 양식어업자들은 선외라는 이유 로 지선외로 신고를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 어업신고필증



대담98계획06 보상내력·어촌계관할

쫄: “보상지역이나 종류가 많았지요?”

박: “대항리부터 새만금 사업의 뚝방을 막았어요. ‘보상도 안주고 무조건 막아 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생계유지를 하겠느냐’ 했더니 ‘1차로 해창부터 보상을 하라’ 해서 91년도에 어선의 입막음을 위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도에서 쫘았지요. 그래서 그 동네는 말썹이 없었는지 몰라요.”

쫄: “그 마을이 어디라고요?”

박: “대항리라고 변산해수욕장 옆에 방조제 처음 한 곳입니다.”

쫄: “호패에 상관없이 호당 보상을 쫘었지요.”

박: “저희 어촌계에서는 어선이라든지 양식장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디다. 어선은 톤당 기준으로 보상을 쫘었는데 허가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담98계화07 미래세대 보상

쫄: “어선은 어촌계 관할 밖입니까?”

박: “예. 그분들은 허가증에 의해서 보상을 5천8백, 6천몇백, 3천몇백 등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자기 실적대로 서류를 제출했지요.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맨손어업을 하던 분들이 나가서 다른 일을 했었는데 IMF사태이후 전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맨손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고증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세가 넘으면 군인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맨손어업의 실습을 받아서 학생들도 나가서 2,30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서 학생과 군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쫄: “보상자격을 만 20세로 제한했습니까?”

김환용: “만 20세로 잘랐는데 현실적으로 20세가 넘었어도 군대에 간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나라가 불러서 군대에 갔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인데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 “간척사업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농경지가 나오면 우선권으로 농경지라도 주겠다고 했지요. 저희는 1차 보상도 못받았으니 농경지라도 받아야 겠기에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로부터 확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쫄: “농토라도 받기를 바라셨나요?”

박: “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보상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사람들이 온순하기만 하지 잘난 사람도 없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건어서 지역의 연줄이라도 만들려고 해도 말썹이 생기지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저희들은 자손만대까지 걱정이 없습니다.”

대담98계화08 빨땅·갯벌형성

쫄: “이 앞의 갯벌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박: “갯변이라고 불렀지요.”

쫄: “빨땅. 빨이 말라서 땅이 되었다는 말이죠.”

박: “갯변이라고 부를 때는 다리 밑에서 외출뉘시로 농어도 뉘고 민어도 뉘고 고기가 여기까지 와서 산란을 하고 했습니다.”

쫄: “다른 말은?”

박: “여기서는 빨땅이라고 대개 부르지요.”

崔: “물이 빠진 다음에 빨밭이 나오면 그냥 빨밭이라고 했어요.”

쑤: “빨밭하고 갯변하고는 다른가요?”

朴: “다르죠. 바다가 일년이면 2,3번 바뀌어요. 자연적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쪽에 빨이 났다가 저쪽에 빨이 났다가 하더라고요. 썰물 밀물 때 조류에 의해서 변경이 자주 되니까.”

崔: “갯변은 바닷물이 들어온 주위를 말하고 빨밭은 바닷물이 나가고 빨이 나왔을 때를 빨밭이라고 해요.”

김환용: “간척사업 전에는 섬이었어요. 사이가 빨밭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고...”

쑤: “간척전에는 갯벌이 없었나요?”

朴: “그 때는 앞쪽으로만 갯벌이었지요.”

崔: “바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침전이 생기니까 일년에 몇 센티씩 높아져요.”

朴: “계화도는 1방조제, 2방조제 둘로 나뉘어져요. 1방조제가 13km고 2방조제가 4.2km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4.5m 수심이 되었습니다. 뚝을 쌓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토사가 쌓여서 갯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산 어패류가 서식하니 바다에 나가서 맨손으로 잡기 시작했지요.”

김환용: “간척사업을 한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 것이죠.”

朴: “계화도 사람들이 제2의 생활터전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새만금 사업 하는 곳을 말입니다.”

#### 대담98계화09 갯벌변화

쑤: “새로운 갯벌이 생긴다면 매립되는 갯벌에 대해 보상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김환용: “68년도에 계화도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갯벌이 생겼으니까 새만금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갯벌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생명력 있는 갯벌이 생길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방조제가 직선화 되어있기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崔: “그리고 설령 갯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깊은 수심에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갯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몇 대 후에나 가능하지요.”

김환용: “변산해수욕장의 백사장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까. 큰 곶이 있었고 바위가 많았는데 방조제를 쌓고 난 다음에는 백사장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퇴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대담98계화10 정주의식·생계대책·보상후회

쑤: “보상문제 말고 주민들의 바램이 있습니까?”

朴: “그래도 내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살아야 겠거든요. 정부에서 보

상해준 돈은 빚값고 하다보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새만금 사업을 2000년대에 하든지 말든지 그 안에 어족이라도 잡아먹게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해요 지금 소내기(선외기)라고 고성능 배가 100여대가 넘게 생겨났어요. 해수욕장에 놀이배로 만들어진 그 배를 어선으로 대치를 해서 크게 만들어서 부부간에 다닙니다. 꽃게도 잡고 어패류도 잡고 합니다. 지금 새만금 뚝방을 벗어나지 못해요. 불법이라 해서 해양경찰이 감시를 합니다. 또 수산청 배가 나와서 감시 감독을 합니다. 적발되면 벌금 물어야지 또 그 사람들에게 봐달라는 의미로 고기도 쥐여줘요. 뚝방이 막힐 동안만이라도 허가를 내줘서 주민이 먹고 살게 해줬으면 합니다. 승선정원도 늘려줘야 합니다.”

김환용: “수심이 깊었던 때는 기존의 배로 항행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토사가 계속 쌓이다 보니 소형 배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소내기 배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담98계획11 소형어선 허가 제한 · 농경지분양희망

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뚝방이 막아질려면 멀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큰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낚시배라도 계화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다른 곳은 내주지요. 낚시배라도 허가를 내주면 규격에 맞게 손님들을 싣고 다니면서 얼마씩 받아서 생계유지를 하겠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보상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어업허가를 내준 사람들은 보상기준에 따라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았지요. 지금 허가를 내주면 보상소지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허가 자체를 안 내줘요. 보상문제를 떠나서 뚝방이 막아지기 전까지는 낚시허가라도 내줘서 돈을 벌게 해달라는 것이 배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지요. 제 친구는 바다에 나갔다가 해경에 걸려서 벌금을 50만원 물었습니다.”

朴: “승선인원도 5,6명 정도로 명시를 해달라는 것이죠.”

崔: “FRP, 소내기라는 것이 0.8톤에서 1.5톤까지 아주 소형배입니다. 0.8톤이면 사람이 2명 이상 승선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가족 3,4명이 어로작업을 가도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사람을 제한하지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계산과 어민들이 실제 승선할 수 있는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崔: “현대식 배는 부력이 좋아서 탈 수 있는데 재래식 배에 기준을 두는 것은 잘못이지요.”

김환용: “승선인원은 배의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과거 나무로 배를 만들 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崔: “가족이 고기잡으러 가는데 둘밖에 못타니까 둘은 집에서 놀아야 하는 것이죠.”

김환용: “소내기라는 것이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소방법에 개인이 휘발유를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나하면 자동차의 탱크 크기입니다.”

朴: “여기서 작업하는 소내기는 20리터를 3통 신고 다니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수협에서 사와야 합니다.”

김환용: “휘발유 제한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에 여유분이 있어야 안전한 것인데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가 없어요.”

朴: “저희 지역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져서 농경지가 나온다면 인근에 살고 있는 어민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에 확실히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담98계화12 생활양식의 변화

췌: “여기 1방조제가 문포에서 계화도라고 하셨지요? 2방조제는 계화도에서 어디까지입니까?”

朴: “의복까지입니다. 그전에는 돈지라고 했었는데 계화면으로 승격되면서 의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췌: “이 방조제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섬 주변에 갯벌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朴: “예.”

췌: “그때는 조개같은 것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崔: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빨방이 있었어요.”

朴: “여기 바로 앞의 농경지는 옛날 물이 나가면 빨방이었던 곳입니다.”

崔: “그 때는 여기를 걸어다녔습니다. 간만의 차이가 8m입니다. 물이 차면 수심이 깊고 물이 빠지면 여기를 걸어다녔습니다.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朴: “겨울에는 짚신에 솜을 많이 넣어서 여기저기 묶고 한복 입고 걸어다녔어요. 10월부터 북서풍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돛단배 범선을 끌어올려서 못 다니게 해놓고 이듬해 봄까지 놀았습니다.”

崔: “물 빠지면 이 앞에 생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화 주민들은 구태여 안에까지 가지않았습니다.”

朴: “간척사업을 하기 전에 어촌계원들이 3일 정도 백합을 잡으니까 산이 되어버리더라구요.”

췌: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알아서 했습니까? 방조제 막기 전예요.”

朴: “개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다른 마을사람들이 와서 잡아도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창북리도 잡아다 먹고 싶은 사람은 잡아다 먹고 의복도 잡아다 먹고 싶은 사람은 잡아다 먹고 했습니다. 잡아오면 부안, 김제, 신태인 등의 시장으로 갔습니다.”

대담98계화13 소유의식 · 이주민정착

- 全: “갯벌에 대해서 내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요?”
- 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 때는 누가 잡아도 많았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필요가 없었어요.”
- 朴: “계화리 낙도로 있을 때는 자기 것이 아니면 손을 안대고 살아왔습니다. 논이 없고 밭만 있는데 보리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것 먹고 떨어지면 어패류 잡아서 다른 마을에 가서 쌀과 교환해 먹고 했습니다.”
- 全: “계화도에 가구가 몇 가구이지요?”
- 朴: “530세대입니다. 섬진강 이주민들도 있고, 현재 인구는 2,500명입니다. 9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서 9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 全: “계화도에요?”
- 朴: “예. 계화리가 9개 부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양지부락, 계상, 계1리, 계3리, 계중, 계4리, 계2리, 계하, 잠금부락. 섬이었을 때 계화도지 현재는 계화리입니다.”
- 全: “본래 사셨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 朴: “약 250세대 정도가 될 겁니다.”
- 全: “반이 조금 안되는군요?”
- 朴: “예. 간척사업 후 섬진강 이주민들에게 농경지 우선권이 있다 해서 최고 2정에서 1.5정까지 타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대담98계화14 경계갈등 · 보상후 입어권

- 全: “어패류채취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양식장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지요. 우리는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니 당연히 들어가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왜 남의 양식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나면서 따졌습니까.”
- 崔: “전박사님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더해 주세요.”
- 朴: “양식장 허가를 낼때에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50m 내주고 저쪽에 50m를 내줬으면 그 사이에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통로도 없이 양식장을 분할하였지요. 그것도 위법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양식장 사이에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로가 없는 양식장의 통로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남의 양식장에 들어왔다 하여 분쟁이 생깁니다. 아주머니들이 몇일 구류를 산 경우도 있고 양식업자와 타협하여 풀려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자기 양식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으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대담98계획15 보상의 한계

쫄: “갯벌 매립에 따른 보상갈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張남조: “보상이라고 말만 붙였지 우리 생존에는 일시적인 수단밖에 안되었습니다. 보상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군산대에 용역을 줘서 김교수라는 사람이 ‘최하 2천만원은 될 것이다’하여 자기들끼리 보고서를 주물러 결정해버렸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계화도민입니다. 해안연안의 보상을 받는 사람을 통틀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겼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알 수 없게 등급을 매겼어요. 제가 자료를 모아두고 있어요.”

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張: “예. 보상대책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투쟁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따라주지 않아서 저는 포기해버렸어요.”

쫄: “보상은 주로 맨손어업이 문제지요?”

張: “예. 선박어업 보상은 비교적 잘 되었어요. 또 여기는 선박어업 보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양식어업 보상도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양식업 허가도 못냈어요. 기관에서는 뭉치를 먹어야 자격을 주지 돈이 없으면 내 주지를 않았어요.”

대담98계획16 새만금 프로젝트(2) :  
황금어장 침탈·보상기준의문·보상부정시비

쫄: “장남조님께서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은 무엇입니까?”

張: “이사입니다.”

쫄: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張: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1-11에 살고 전화는 582-1220입니다. 금년 57세요.”

쫄: “계화도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張: “부정적입니다. 처음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지역주민을 공청회라도 참가시킨 적이 없습니다. 양식면허를 몇 십 헥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가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보상받는 것이 나오니 찬성을 한 다구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계화도 주민은

육체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었어요. 매일 같이 3,4만원은 벌 수 있습니다. 이런 황금같은 땅을 계화도는 말 한마디 못하고 뺏긴 것입니다. 돈 3백, 6백, 8백, 천만원으로 그 땅을 뺏긴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어요. 전에 데모할 때 농림부 장관에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1순위로 농토를 받는다고 거기에 써 있어요. 사탕발림을 하고 '서류를 만들어라'해도 실제 된 일이 없어요. 보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갈고리 하나로 먹고 산 사람중에 보상을 못탄 사람이 있고 다방에서 차만 팔던 여성이 보상을 탄 일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갠 사람은 2백만원, 3백만원 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만원 탄 경우도 있어 지역갈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崔: "조상대대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서류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새로 와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갖춘 사람은 6촌, 7촌까지 서류를 만들어서 보상을 받았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대담98계획17 어업권 허가모순

全: "어업권 허가에 말이 많던데요?"

張: "전에 수산과 직원 중 남의 명의로 해서 허가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도·군 할 것없이 남의 명의로 안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말단 공무원까지. '조사해 오시오', '측량해 오시오' \*\*\* 알아서 해오면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계화도 사람이 자기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안됩니다."

全: "양식면허 소지자가 없었다고 했지요?"

張: "없었어요. 계화도 어촌계의 면허지는 7.8% 됩니다."

全: "보상을 다룬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張: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소입니다."

김환용: "새만금 사업소의 직원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새만금 사업 예산쪽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담98계획18 간척지 분양·생계막연

全: "농토배정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상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저렴한 값에 분양을 원하시는지요?"

張: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324만원에서 1천31만원까지 줬어요. 그것을 주고 우리의 터전을 뺏아 가다시피했어요. 현재도 불법으로 잡아먹고 있어요."

崔: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여.”

張: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뚝을 다 막아버리면 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우리 지방민들을 위해서 농토라도 쥐여지 먹고 살 것아닙니까?”

대담98계화19 양식보상불만

全: “생업의 터전을 주장하시려면 이를 터전을 가꾸고 지킨 흔적이나 의식이 평소에 있으셔야 하는데요?”

張: “가꾸려고 노력했지요. 3,4월달 산란기 때 못잡게 해서 안 들어갑니다. 또 오뉴월에 서식할 때도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길렀는데 양식업이 생겨 나면서부터 자연적인 것은 두고 양식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같은 것은 서울 놈들이 다 타먹었어.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놈들이 양식면허만 내고 보상을 타먹은 겁니다. 어촌계같이 공동어장 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오히려 보상이 적었어요.”

대담98계화20 생산물

全: “공동어장에서 무엇을 생산하시죠?”

張: “바지락 백합 해태 동죽(꼬막).”

全: “지금도요?”

朴: “예.”

崔: “진짜 꼬막은, (전라남도産) 피조개라고, 조그만한 것이요.”

대담98계화21 거주이전·정주조건

全: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張: “간척사업을 해서 막아버리면 정부에서 법인 어촌계를 없앨려고 할겁니다. 2000년 안에는 다른 곳으로 합병을 시키거나 자본금 100억원이 넘으면 수협으로 승격시킬 겁니다. 100억 이하는 없앤답니다. 우리의 평생 직업이 어업인데 여기서 어떻게 어업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교통수단도 불편하고요. 300명이 이주를 할려고 합니다.”

全: “수협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이사갈 가능성이 있군요?”

張: “미지수로 있어요.”

朴: “진작부터 이주를 신청했었어요.”

張: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朴: “농경지라도 나오면 인근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그것이라도 타야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주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張: “젊은 사람은 이주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朴: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엇보고 살겠어요? 농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만금 사업후 농토를 준다는 것이 법으로 확정된다면 여기서 살겁니다.”

張: “농특법(?)에 지선의 해당어민들에게 1순위로 농토를 주는 법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문제죠. 법을 신설한다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담98계획22 황금밭·간척피해·근시안

全: “과거 간척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張: “우리는 피해를 조상때부터 봤어요. 계화간척 사업후 조개썩는 냄새가 나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 꼴을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승낙하지 않습니다. 이 황금밭을 막아놓고 땅 한평도 못받은 곳이 여기요.”

朴: “기공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땅을 준다’고 했는데 한 평도 안줬어요.”

張: “잔존하는 지방민들에게 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천만원을 받을 것이냐고 물으면 지금 천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朴: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가고 했는데 꼭 보여줘야할 화면은 잘라버렸어요.”

張: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싶어도 아무도 없어요.”

대담98계획23 경계(지선) 갈등

全: “유감스럽군요. 이웃지역끼리 경계분쟁은 없습니까?”

朴: “옥구군, 부안군, 김제군 이렇게 세군의 지선이 서로 얽혀 있어요. 지선이 옥구군을 깃점으로 해서 가락도까지 막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부안에 좋은 양어장 자리가 있어 공동어장을 취득하더라도 옥구군에서는 ‘우리 땅’이라면서 가로막을 겁니다.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옥구군 수산과에 가서 신청을 해보면 옥구 계원들한테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오라고 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옥구군, 부안군, 김제군 지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담98계획24 경계조정

張: “제가 수협 이사할 때 부안군 수협장하고 군산 수역조정문제에 참여했습

니다. 조상대대로 옥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인데 4개군(군산·옥구·김제·부안)에서 수역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해도 도세가 되었던 군세가 되었던 힘이 세야 땅을 뺏어옵니다.”

張: “지선의 정의가 다양해요. 옥지로부터 3마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옥구군은 몇십미터에 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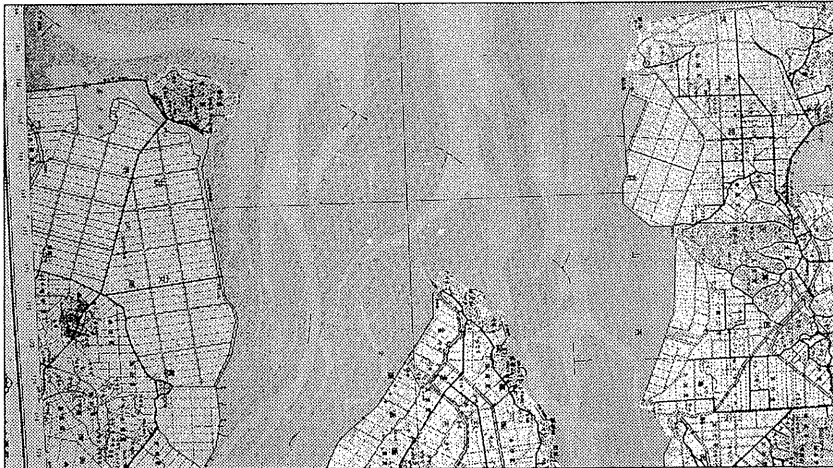
崔: “경계조정은 한마디로 파워게임이지요.”

김환용: “김종필씨가 금산군을 충청남도로 붙여놓고 연도하고 어청도를 전라북도에 주셨답니다. 연도는 충청도 서천 앞이거든요. 어청도는 보령 앞입니다. 전라북도의 해역이 넓지요.”

張: “여기를 계화리라고 부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김환용: “섬의 대부분이 섬‘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몇 개의 섬은 마을‘리’자를 씁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시산리가 있고요. 완도군에 청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사라든지 양반이 나오면 섬이라는 것은 낮춰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리’로 고쳐부릅니다. 거문도 백도가 여천군 삼산면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수시 삼산면으로 들어가요. 고흥반도하고 여수반도 사이에 시산리에 속해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악도라는 섬인데 그것은 삼산면 선죽도 옆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삼산면 섬이 되었어야 돼는데 시산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섬을 자기 섬이라고 했어요. 사돈을 삼았나봐요. 그래서 그 섬은 ‘우리 섬이다’해서 시산리의 부속 섬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고흥군 바다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새만금 해역도



## 第2章 紛爭資料：法意識1998

### 第1節 시화호 독지리 분쟁자료

#### 1. 탄 원 서

안정과 번영의 발전 시대로 도약하는 현 시국에 정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국민들도 안정을 바라는 이때에 저희 어민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 서해지구 시화사업으로 저희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독지 2리 앞 바다가 매립됨으로서 독지 2리 어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어 정부에서 이에 피해보상이 책정되어 통보됨에, 어촌계장이 법이 있으므로 법을 악용하여 저희 독지 2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산업법을 이용하여 가로챤려고 하는 행폭을 하고 있어서 독지 2리 어민들은 너무나 억울함을 금치 못해 본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각하에게 어민들의 연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먼저 독지리 어촌계의 존립을 말씀드리면 선대의 조상들은 제한없이 바다에다 생계를 의지하고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해방후 어촌계가 탄생하였으나 그동안 각 행정구역 단위로 통합 및 분리의 역순환을 겪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존립하면서 자연부락 단위로 분리되어 경계선을 두고 입어관행에 따라서 조업을 하고 어장 보수 및 관리하였으며 그런 관계로 (고) 지기연 어촌계장 재직당시 육지로는 응굴 비둘기 바위 뒤에서 동쪽 방향으로 200m 지역에서 북쪽으로 바다에서는 논쟁이 개고랑을 경계로 동쪽은 독지 1리 어민이 보호관리하고 양식을하며 생산하였고 또 논쟁이 개고랑 서남방 어도고포 1리쪽으로는 독지 2리(문지) 구역으로 정하여 양식 및 조업을 하였으며, 또한 독지 3리(형도)와는 안골개를 경계로 이를 지켜 서로 타지역을 침범치 않았으며, 혹 침범하였다 하여도 이를 통제 또는 채취기구를 압수하는등으로 지금껏 관리 보호하면서 3개 부락이 각자 조업하여 생산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증 1호 참조-자연부락 단위 조업구분 도면)

이 한계선을 중심으로 독지 1리와 독지 3리는 각자 양식 및 조업하고 독지 2리는 독지 2리대로 굴양식을 하고 조업하던중 지역내에 2개처를

당시 화성수협조합장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증2호 1964년 11월 5일 경기양식어업면허 44호, 증3호 1973년 4월 21일 경기화성제 1종 공동어업면허(증3호) 조업하여 오다 재차 1983년 12월 7일 경기양식어업면허 제763호(증4호)와 1977년 12월 28일 경기제1종 공동어업면허 제34호(증5호)는 어촌계장 명의로 득하게 되었으나 이는 엄연히 독지 2리 자연부락 단위로 양식·조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허가 당시는 독지 1리의 정계원은 27명이고 독지 2리 정계원 44명으로 구성되어 독지 2리 어민들은 이를 중심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농어민의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성화하여 절대적인 자원이 됨에 따라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출하(화성수협조합 사강출장소)하였습니다.(증6호 年출하결산서 및 개별생산표·출하전표) 이렇게 출하시에는 조합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또한 매년 어촌계에도 행사료 5,000원 내지 10,000원씩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생산출하도 면허구역 단위로 구분되었으며 조업도 면허별로 구분하여 입어 관행으로 조업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조업시 어장 출입은 군부대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출입의 구분조업확인을 군부대에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증7호 독지1리 어장출입 확인, 증8호 독지2리 어장출입 어민명단 확인) 또한 독지3리 어민들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증9호 독지3리 계원들의 확인서)

면허취득시 1977년도에 석화양식장 763호 증설 당시 독지2리 어민들은 정부보조금 120만원과 자체부담 675,000원과 연인원 732명이 출력하여 작업중 (故)최철식씨를 희생시켜가며 수많은 역경을 겪어가며 증설시 독지1리 어민들이 보조 및 협조한 사실이 전무한 것입니다. (증10호 보수시 결산서) 이렇게 서로간에 각기 면허지역외는 관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조업한 사실도 없고 생산실적도 전무하며 자연부락 단위로 각기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면허 취득후 독지2리 44명 어촌계원 중 증자치 못한 계원은 화성 수협조합에서 탈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자 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11호 수협출자증) 그후 준계원으로 (故 지기연) 계장이 추천하여 화성수협조합장 명의로 어민증을 발급받아 (증12호 어민증) 입어관행을 준수하며 현재까지 조업하여 출하 역시 수협조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수협조합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은 일도 없었으며 생산실적보고도 어장별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증13호 出力일보) 이렇게 독지2리는 정계원은 현재 6명이나 정계원·(준계원) 차등없이 조업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금번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서해안 매립으로 인해 저희들의 생계인 어장이 없어짐에 따라 그 대책으로 보상금이 책정됨에 현 어촌계장 이상철씨가 임명받고서 본연의 약속과는 달리 횡설수설하며 직권남용으로 사욕을 취하려고 하여 저희 독지2리 어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보상은 제34호만이 결정되어 1987년 9월에 시달되었습니다만 이 보상이 결정되기 전에 1986년에 수협중앙회에서 시화지구관계로 각 어촌계에 면허별로 생산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대로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1987년 6월18일 경기 시화지구대책사업소에서 면허별 조업어민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보상대상명단 61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명단 제출당시 신흥순 계장 재직시 어촌계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의결과 고지기연 계장 재직시 수협부채액 210만원과 보상관계의 어촌계 경비를 독지2리 어민들이 부담하는 조건 등 면허별 보상대상자명단 확인등으로 하여 임원 10명중 9명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종공동어장면허 제33호·773·713·764, 4개지구 독지1리 범위지역은 독지1리 계원만 작성하고, 제1종공동어장면허 제34호·763, 2개 지역은 독지2리 계원만 작성하여 명단을 수협조합과 시화지구대책사업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1987년 7월 10일자로 이상철씨가 어촌계장으로 임명된 후, 화성수협조합서 다시 회의록 첨부하여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1987년 7월 25일 임원소집하여 회의한 결과 어장면허별로 구분하여 명단 작성해서 임원 10명중 5명 참석 5명은 위임하여 회의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확인날인하여 익일 수협에 제출하였습니다(증14호 보상자명단)

그 후 1987년 9월에 독지 2리 구역인 제1종공동어업면허 제34호만이 1차로 피해보상이 책정·시달됨에 따라 독지 1리 계원들중 몇사람이 정계원이 보상을 못받는데 준계원이 먼저 받을수 있느냐는 무건(?)한 불평으로 전자의 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계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1987년 11월 5일에 독지 어촌계 명단을 작성하여(독지 3리

는 제외) 보상신청을 내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시화지구대책사업소에서는 문제지역으로 보상금을 저회 독지 2리 어민들에게 지급치 않고 있어서 우리 어민들은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철 어촌계장은 계속적으로 행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어촌계장을 경유하여 모든 서류가 제출됨을 기화로 현재와서 독지 2리 입어종사자 명단을 제출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7년 11월 5일에는 독지 2리 어민들이 어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군부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수협에 어민증 재발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어민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보상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촌계장의 직권 남용으로 행폭하고 있어 독지 2리 어민들은 조업마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며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없어 만천하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이들의 주장권은 전부가 무건한 것입니다. 허가 이전으로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연부락단위로 구분되어 관리 조업하여 왔고 1977년 제1종공동어업면허 제34호 허가 당시 조업명단 44명이 독지 2리 계원만이 제출되었고 허가후 보수 및 생산도 각지구별로 하였고 출하도 수협의 창구를 통해 수수료도 납부하고 어촌계에 행사비도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1980년도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으로 출자금을 증자치 못해 정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준계원으로써 입어하면서 수협에서 어민증을 발급받았고 입어제지등 아무런 재제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어촌계원으로 자격을 유지·인정받아 왔고 그동안 면허별 생산실적을 수협으로 보고하였고 또한 피해보상 결정전에 관계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면허지역별로 입어 조업 어민들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보상이 조사 결정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고 그 보상명단 제출시도 어촌계 임원회 의결에 의하여 임원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로 각 관계관서에서는 결재가 완결된 상태입니다. 또한 독지 1리 어촌계원 39명은 독지 2리 구역에 생산·조업한 사실이 전무한 관계로 수산업법상으로 보아도 계원자격 상실이며 이에 주장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관서에서는 무자격자들의 농간에 이를 배척치 못하고 보상금 지불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몇사람의 농간이나, 어촌계장의 직권 남용이나 관계관서의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이 무지한 독지2리 어민들만이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이오니 이 점 참작하시고 조사하시어 억울함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증1호 자연부락 단위 조업구분 도면
- 증2호 경기양식어업 면허 제44호
- 증3호 경기 화성 제1종공동어업면허 제3호
- 증4호 경기 양식어업면허제763호
- 증5호 경기 제1종공동어업면허 제34호
- 증6호 年출하 결산서 및 개별생산표, 출하전표
- 증7호 독지1리 어장출입명단 확인
- 증8호 독지2리 어장출입 어민 명단
- 증9호 독지3리 계원들의 확인서
- 증10호 보수시 결산서
- 증11호 수협출자증
- 증12호 어민증
- 증13호 出力일보
- 증14호 보상대상자 명단
- 증15호 독지2리 어촌계 회의록

1988. 1. 12.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독지2리 167-1 (전화) 0339-57-1656

민원인 대표 김 지 의

## 2. 독지리 어업권 피해보상 관계관 회의록

1) 일 시 : 88. 1. 15 09:30 ~ 16:00

2) 장 소 : 화성 수협장실

3) 참석자 :	도 증식계장	이 승 준
	군 수산과장	유 대 열
	군 지방수산기사보	김 정 상
	수협 조합 장	손 상 운
	수협 지도과장	한 이 동
	수협 담 당	김 익 현
	독지리 어촌계장	이 상 철
	독지2리 어민	김 지 의

### 4) 토의내용

경기제1종 공동어업권(제34호)개인별 분배에 관한 탄원서 처리 방안

### 5) 어민주장

- 어촌계장 : 어촌계원 및 독지2리 어민 38명 포함한 83명에 한하여 1종 공동제34호의 어업권피해보상액 공동분배요망
- 김 지 의 : 지역별 구분 실제 행사하는 자연부락(독지2리) 어민만 1종공동어업권 34호 및 굴양식 제763호 피해보상금 분배조치요망.

### 6) 협의사항

- 자연부락 단위로 구획을 정하여 자연부락단위 어민보상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독지2리 자연부락 어민은 준계원이 많으므로 독지1리 어민(어촌계 정계원)에게 약간의 금액을 지급기로 한다.
- 상기 협의(합의) 내용을 지역별 어민에게 설득기로 함.



○ 어촌계 현황

구 분	계	정 계 원	준 계 원	실제 행사자
계	112	72	40	139
독지 1 리	41	39	2	51
독지 2 리	44	6	38	61
독지 3 리	27	27	-	27

○ 어업권 현황

번호	구 분	지 선	면 적(ha)	보 상 액	비 고
1	1 종	독지 1 리	210.8 ha	657,711,722원	33호
		독지 2 리	206 ha		34호
		독지 3 리	38.4 ha		38호
2	양 식	독지 1 리	6.56 ha	.	713호
		독지 1 리	4.5 ha		764호
		독지 1 리	5 ha		773호
		독지 2 리	8.9 ha		763호
		독지 3 리	11 ha		6호
		독지 3 리	8.95 ha		701호
		독지 3 리	18.837 ha		703호

3. 합의각서

화성군 시화지구 간척사업에 의한 피해 어업권 보상금 수령에 대하여 독지1리 어촌계와 독지2리 어민대표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쌍방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다.

아 래

- 가. 독지1리 지선선업무구역과독지2,3리지선어업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별첨도면과 같이 업무구역을 합의한다.
- 나. 독지2리지선 지34호와 굴양식장 763호 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독지2리는 독지1리어촌계에 144,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1인당3,700,000원×39명)
- 다. 시화지구간척사업에 의한 피해어업권제1종34호(206헥타)와 굴양식장 763호(8.9헥타)에 대한 보상금수령후, 본건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쌍방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라. 독지2리 거주어촌개원 및 어민은 독지1리지선업무구역내에 있는 어업권을 일체 보상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쌍방은 보상관계서류제출 시, 필요한 최대한의 협조를 한다.(독지2리거주어촌계원은 정계원 6명을 말함).
- 마. 독지2리지역거주정계원 6명은 독지1리지역내 어업권 및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2리지역내에서 책임을 진다.
- 바. 본 합의를 후일 증하기 위하여 3통을 작성, 쌍방 및 입회인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합 의 인

독지리 어촌계

독지2리 어민

어촌계장 이 상 철  
 박 회 설  
 황 철  
 김 중 호  
 권 영 오

어민대표 김 지 의  
 김 선 승  
 박 유 식

입회인 화성수협 조합장 손 상 문

#### 4. 회의록

일 시 : 1988년 1월 27일

장 소 : 김익경 자택

참석인원 : 총62명중 58명 참석 / 미참석 4명

부의안건 :

1. 보상금 수령건
2. 독지 1,2리 합의건
3. 보상금 분배건
4. 정계원 6명 대우건
5. 준계원 분배건(신청규件)
6. 보상수령 책임자 및 서명 날인건.
7. 기 타

의장(김지의) : 추우신데도 여러분을 오시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화지구 보상 문제에 있어 오늘 모든 것을 결말을 짓고 보상금을 수령 분배하는데 목적이 있어 어민 총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앞서 총62명중 58명이 참석하여 본회의가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김지의) : 여러분 앞에 있는 회의 안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건을 의제로 하나 하나 해결하여 오늘로 보상문제의 어민총회를 종결하겠끔 좋으신 의견과 합의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김지의) : 그럼 제1안건 보상수령건입니다. 보상수령권이란 독지2리앞, 경기1종 제34호에 657,711,722원 헥타당 3,182,061원(206ha)책정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의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 우리 동리어장 면허 보상과 다른어장 보상금액이 헥타당 차액이 있는지 차액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요.

의장(김지의)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다른 어촌계 면허지를 확인

하여 보니 오히려 저희 34호가 보상금 책정이 헥타당  
높습니다.

최 병 의 : 그럼 보상금 수령 하자는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 진 석 : 최병의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 길 영 : 동의에 재창합니다.(전원찬성)

의 장 : 제1호안건은 통과 하였습니다. 그럼 제3안건 독지 1,2리  
합의건에 말씀 하십시오. 총금액 657,711,722원 중 독지  
1리 예원 39명×370만원 144,300,000원을 주기전 합의  
를 보았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513,415,722원이 저의  
독지2리에 남은 금액입니다.

권 상 주 : 먼저 총회의에서 대표 5명을 선정위임하여 전권을 가지고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박 영 랑 : 권상주 의견에 동의 합니다.

박 유 식 : 동의에 재창 합니다.(반대없음)

의장(김지의) : 예. 그럼 제3안건 정계원 6명에 대한 대우 관계를 먼  
저합의 해결하여주십시오. 그전에 먼저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먼저 명단 제출시는 61명으로 제출 하였는  
데 본동 1반에 거주하고 계신 이경화씨가 누락이 되  
어 을말씀드립니다. 이는 일을 보고 있는 제책임임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하는바 이오니 양지하시고 처리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최 원 규 : 먼저, 저희들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임원회에서 말하여 통  
과시켰으니 61명+1명 계62명으로 명단을 수정·제출 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신 길 영 : 최원규씨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 준 용 : 동의에 찬성합니다.(전원찬성)

의장(김지의) : 먼저 89. 9. 10 임원회에서 정계원6명 6명과 하협.  
합의보기를 수령금액 공통분배 20%을 증하여 주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지금 독지1리에 144,300,000원을  
떼어주고 보니 전자와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 성 열 : 독지1리 정계원 39명에게 개인당 분배액은 얼마나 감니

까?

의장(지의) : 독지1리 정계원 39명에게는 1인당 370만원이 지분 됩니다.

김 성 경 : 독지1리 정계원과 동일한 370만원 더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 병 의 : 독지1리를 주고 남는 것으로 62명이 분배하면 1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의장(지의) : 예. 제가 계산을 하여 보았는데 1인당 8,280,834원이 됩니다

김 지 은 : 정계원 6명이 다 독지2리만을 위하여 손을 잡고 독지1리와 싸웠다면 곱을 주워도 아깝지 않겠지만 5명은 인감을 독지1리 사람과 같이 행동하여 독지2리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였으므로 5명은 대우하여 줄 수 없습니다.

최 원 규 : 보상금 수령은 전액 다 했으면 88. 9. 10일 합의한 20% 증액하면 1290만원이 계원이 분배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면 당초 약속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 유 식 : 김지의씨 말씀과 같이 5명은 독지2리를 배반하였기에 대우할수 없습니다.

의장(지의) : 조용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정계원 6명에게는 대우를 하여주는 것이 경우같습니다. 물론 하는 소행은 불직합니다만

최 원 국 : 우리 조합원 6명은 따로 만나 의논 좀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지의) : 예, 줄 수 있습니다. 조합원 6명은 나가 의논하세요. 그리고 우리 준계원도 전형위원 6명을 선출 위임하여 결말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영 량 :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김 경 은 : 찬성합니다.(어민 전원 찬성)

최 병 의 : 동의합니다.

의장(지의) : 대표를 선출하여 주십시오. 방법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최 병 의 : 의장이 지명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김 영 경 : 동의합니다.

박 유 식 : 동의에 찬성합니다.(좌중 전원 찬성)

의장(지의) : 제가 지명하는 분은 나가서 합의를 보고 오십시오. 김지은 · 박유식 · 권상주 · 김준용 · 신길영, 이장입니다.

의장(지의) : 잠시 휴식을 선언 합니다.

김 지 은 : 합의를 보았습니다. 계원 6명에게는 1인지분의 +370 = 11,900,000원에 합의 했습니다.

최 원 규 : 김지은씨 말이 사실입니다.

의장(지의) : 전형위원이 결정한 사실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 범 준 : 이의 없습니다.(좌중 이의 없음)

의장(지의) : 그럼 조합원 6명은 끝났습니다. 준계원 56명은 차등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김 영 경 : 차등 없이 합시다.

김 지 은 :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의장(지의) : 2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정하여 안건을 받겠습니다 김영경 제의한 균등분배를 원하시는 분 손드세요. 계49명, 반대 6명 기권 4명

의 장 : 김영경 제의건 균등분배를 통과시킵니다.

신 길 영 : 신청균은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까?

의장(지의) : 전에도 말이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도 석연치가 않아 88년 1월 26일 김지의 · 박유식 · 김익명, 3인이 만나 합의를 보았는데 본인은 주민들이 합의 결의 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여러 가지 설명 끝에 500만원에 결정되었습니다.

김 진 관 : 잘 하셨습니다.

김 진 희 : 본 회의가 원만이 잘 진행되어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민이 전부 보상을 타는데 두 분이 빠졌습니다. 두 분에게 섭섭지 않게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박 영 량 : 김진희씨 발언 찬성합니다.

전 장 운 : 찬성합니다.(좌중 찬성 다수)

의장(지의)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동리가 보상을 타다 좋아하는데 두 분만 빠져 섭섭했습니다. 액수를 따지기 전에 동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의 뜻을 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경 : 신청금 1인지분에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만원씩 두 분에게 주고 남은 것은 경비로 충당합니다.

김 진 희 : 신청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분을 두 분에게 분배·지불합니다.

의장(지의) : 2안건이 나왔습니다 김영경 안건을 찬성하는 분 손드세요. 14명 김진희 안건을 찬성하는 분 손드세요. 45명.

의장(지의) : 김진희 안건으로 통과합니다.

의장(지의) : 계 원	6명	11,900,000원
준계원	55명	7,893,066원
신청금	1명	5,000,000원
윤상희	1명	1,446,546원
서병선	1명	1,446,546원
합 계	64명	513,411,722원

계산을 분배·할당하여 보니 이상과 같습니다.

의장(지의) : 지분할당까지 다 되었습니다.

인제 보상수령 책임자 및 서명날인자 선출을 하여 주십시오.

김 지 은 : 먼저 대표 5명 선출한 분을 추천 합니다.

이 범 준 : 동의합니다.

김 진 석 : 찬성합니다.(전원찬성)

의장(지의) : 그럼 먼저 대표 김선경, 김익명, 김진희, 박유식, 김지의를 대표로 결정합니다.

의장(지의) : 대표되시는 분은 회의록을 열람 확인하시고 회의록 본문에 간이 도장을 날인하시고 주민께서는 회의록 낭독을 들으시고 회의 참석 확인자 서명에 날인하여 주십시오.

김 재 영 : 오늘 미참석 4명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지의) :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 분은 제게 위임을 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후 본인에게 공람시켜 확인토록 하여 여러분과  
똑 같이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계  
원 여러분은 보상수령금액난에 설비 인감도장을 날인하  
여 주십시오.

의장(지의) :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좌중 : 없습니다.

의장(지의) :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류를 빨리 꾸며 수  
일내로 보상금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988년 1월 27일

보상대책위원	김 선 경
보상대책위원	김 익 경
보상대책위원	김 진 희
보상대책위원	박 유 식
보상대책위원장	김 지 의

끝.

## 5. 독지2리 어민 임시 총회록

일 시 : 1988. 3. 17

장 소 : 김 익 경 자택

참석인원 : 총 46명중 44명참석 / 불참 2명



회의안건 :

의안 1호 어업권 제763호 보상금 수령여부건

의안 2호 보상금 대상자 결정의건

의안 3호 보상금 대상자 분배의건

의안 4호 보상대상자 분배의건

의장(김지의) :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인원 46명중 44명이 참석하고 2명은 이곳에 거주가 없는 최문식, 임인택 2분입니다. 그러므로 회의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름이 많이오라 금번 독지2리 어촌계 소유 어업권 제763호가 사회지구 간척 사업소로부터 보상금이 결정 통보데였는바 동보상금 관련 독지2리 어민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록에 서명할 서명인 5명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어민(신길영) : 먼저 보상수령시 선출한 5명을 선출합니다.

어민(상주) : 저도 신길영씨 의견에 찬성합니다.

어민(전원) : 찬성합니다.

의장(지의) : 여러분의 찬성으로 서명인 5명은 전위원 김진희, 박유식, 김선경, 김익명, 김지의로 결정합니다.

어민(전원) : 좋습니다.

의장(지의) : 그럼 의안 제1호안으로써 서두에서와 같이 독지리 어촌계 굴양식장 제763조에 대하여 보상금 136,575,159원이 확정 되어 있는바 1988년 1월 19일 화성수협에서 잡의한 바와 같이 독지2리 어민이 동보상금을 수령 여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숏고자 합니다.

어민(준용) : 의장의 말씀대로 먼저번과같이 수령자여 분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민(진석) : 저도 김준용씨 말씀에 찬성합니다.

어민(전원) : 좋습니다.

- 의장(지의) : 그럼 어민여러분이 찬성하여 136,575,195원을 그대로 수령함에 이의 없이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 의장(지의) : 의안 2로 보상금 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어민(상주) : 보상금 대상자는 전자에 수차에 걸쳐 합의한 양식개설자 46명이 분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민(박유식) : 권상주씨 의견에 찬성합니다.
- 어민(전원) : 좋습니다.
- 의장(지의)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어민(전원) : 없습니다.
- 의장(지의) : 그럼 독지2리 어민 46명이 보상금 대상자로 선포합니다.
- 의장(지의) : 다음은 의안 3호로써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 김선경(어민) : 제 생각으로는 양식 개설자 46명이 공동으로 균등분배하고 잔여금 27원은 어촌계통장에 기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어민(진의) : 김선경씨 의견에 찬성합니다.
- 어민(전원) : 좋습니다.
- 김익경(어민) : 공동 균등분배하면 1주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 의장(지의) :  $136,575,159 \div 46 = 2,969,027$ 원입니다.
- 어민(일동) :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지의) : 그럼 보상금 분배는 독지2리 어민 46명이 공동 균등분배하고 잔여금은 어촌계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지의) : 의안 4호 보상금 수령 및 분배 책임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좋은지 선정하여 주십시오.
- 어민(병의) : 먼저 보상금 수령시에도 화성수협장에게 위임하여 수령 하였으니 수협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덕희) : 좋으신 생각입니다. 찬성합니다.

어민(전원) : 동의합니다.

의장(지의) : 그럼 보상금 수령 및 분배의 권한은 여러분에 의견대로 화성수협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지의) : 끝으로 양식장 제763호 보상금 수령 분배 과정에 있어 이의 있으신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민(일동) : 없습니다.

어민(장길) : 인제 독지리 어민은 보상금을 더 탈것이 없습니까?

의장(지의) : 공동 면허 보상은 없다고 보고 개인 면허 건강망, 배, 등 보상이 남았습니다. 관행보상은 말은 들리으나 차후 보아야 알겠습니다.

의장(지의) : 다음 의견 없습니까?

어민(전원) : 없습니다.

의장(지의) : 그럼 이상으로 독지리 어민 임시 총회를 모두 마치고 금일 16시 30분에 폐회를 선언 합니다.

본어촌계 임시총회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본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비롯 서명인은 서명 날인하시고 어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이의가 없음을 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3월 17일

의장	어민대표	김 지 의
	어민(서명인)	김 진 희
	어민(서명인)	박 유 식
	어민(서명인)	김 선 경
	어민(서명인)	김 익 경

## 第2節 附款附漁業權紛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료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의 결

사 전 \* 95 고충 2235, 3153 간척사업 어업피해보상등

- 신 청 인
1. 신정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63)
  2. 권영만 (전북 군산시 해망동 999-127)
  3. 강만용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
  4. 정연균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93-19)
  5. 유명자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09)
  6. 이성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6-19)
  7. 권영진 (전북 군산시 나운동 870-4)

- 피신청인
1. 농림부장관  
    심의수행자 김태곤
  2. 전라북도지사  
    심의수행자 채충석, 이두영

주 문 피신청인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실한 신청인들의 어업권에 대하여 각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1996. 8. 13

위 원 장	최	중	백
위 원	석	순	용
위 원	신	대	균
위 원	이	세	훈
위 원	강	원	일

## 이 유

### 1.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피신청인 전라북도지사는 동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업무를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행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 전라북도지사는 위 사업지구내의 어업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산업 규정, 건설부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보상금액 일부로 48억원(총 보상액의 15%수준)을 신청인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 다.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은 피신청인 전라북도지사가 승인요청한 부관부어업권의 어업보상승인 신청에 대하여 부관부면허처분이 유효하다는 1993. 6. 22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95. 7. 24 부관부어업권에 대하여 승인을 유보하고 피신청인 전라북도지사가 이미 지급한 48억원에 대하여도 회수하도록 지시한 상태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부관부어업권(간척사업시 보상없이 어업권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어업권)에 대하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매립면허 고시 및 어업피해 보상기준일인 1991. 10. 22을 기준으로 어업피해보상대상을 책정후 1993. 12월까지 보상계약금으로 15%를 지급한 바 있어 법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는 간척공사 착수전에 피해보상금을 사전에 지불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 2) 피신청인이 부관부어업면허처분을 한 것은 김제방조제 축조계획

(전북 부안군 계획면 계획도에서 군산시 하제포구 연결)을 수립하면서 부관을 부한 것으로 동 김제방조제 축조계획이 1986년 취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김제방조제 축조계획을 취소할 당시 부관을 철회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로 1991. 10. 22 새만금간척개발사업 고시를 하였던 바,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부관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무관한 부관으로 동 개발사업지구내 460건의 어업면허중 85건에 부과한 부관부면허는 형평에 어긋나므로 부관을 철회하여야 한다.

- 3) 인근의 공공사업으로 시행된 군장국가공단 조성시(1991년)에도 부관부어업권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1993. 6. 22 대법원의 부관면허처분의 유효판결이전에는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부관은 무효였고 무면허 관행어업자에 대하여도 보상을 한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신청인 (농림부장관)

-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내의 면허어업권 460건중 85건에 대한 부관부어업면허 처분은 국가의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에 따라 수산관련 인·허가처분을 억제하도록 관할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며, 신청인들의 동의에 의하여 신청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개발계획지구내에 대하여는 어업권 및 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적법한 것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
- 2) 1993. 6. 22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관부어업면허가 적법한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추가의 보상을 금지하고 이미 보상한 것을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 3. 판 단

- 가. 피신청인은 대법원 판례(1993. 6. 22. 선고. 93다 17010사건)가 부관부어업면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판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 판례의 부관부어업권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주된 판단은 어디까지나 부관부어업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지에 관한 것이고 동 판례가 부관부어업면허를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 이 사건 부관의 효력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은 부관의 효력을 일관되게 부인해 오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주장의 근거로 세우고 있는 위 판례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장래의 공공사업시행시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부관의 효력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 680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 769 판결 참조)와 정부내의 해석(법제처 이국02102-1912, 1985. 12. 7)이 모두 무효로 보아 왔으며 특히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불인 부관은 명백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 시행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부관을 불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므로 당해 부관의 유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일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사후 보상을 조건으로 공사에 착수한 점으로 볼 때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이미 보상한 것을 회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부관부어업권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第3節 漁業權에 관한 立法意見

#### 1. 操業水域의 調整：멸치잡이를 중심으로 - 통영 機船權現網水産業協同組合 · 1998년 -

기선권현망어업은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물을 포획하는 어업”(1996. 12. 31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을 말하는 바, 실제로는 1통당(선단) 5~8척의 어선과 60여명의 종사원이 승선하여 잡은 멸치를 선상에서 즉시 삶아 주로 자연 햇빛에 건조시켜 마른 멸치를 전국에 공급하는 어업이다. 이 어업에 대하여서는 당초의 조업구역설정이 잘못되었고 현행 지역간 조업구역을 세분하여 어로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 또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 (통영)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의 비공개자료(1998)를 재구성하여 관련제도의 변천과 입법의견을 소개한다.

##### 1) 제도의 변천

(1) 1953년 9월과 12월에 수산업법, 동법시행령이 각각제정, 공포됨으로써 최초로 제정된 수산업법에서 권현망어업은 면허어업인 정소인망어업(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3호)과 지방장관 허가어업 가운데 인망어업(수면을 일정하지 아니하고 스크류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하는 어업 : 수산업법 제12조제1호)에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었으며 수산업법이 제정된 당시 거의 대부분의 권현망어업은 허가어업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여 예인선의 동력화등을 통해 대부분의 어업이 이미 지방장관 허가어업인 인망어업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2) 1963년 정부는 우선 수산업법을 개정 지방장관 허가어업인 인망어업 가운데 권현망어업을 따로 떼내어 주무부장관 허가어업으로 하면서 그 명칭을 기선권현망어업으로 개칭하고 “순마력 50마력 이하의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망선을 인예하거나 어망을 직접 인예하여 멸치를 채포하는어업(수산업법 제11조제9호)”으로 규정하였고 권현망어업이 외의 나머지 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지방장관 허가어업으로 하는 한편 그



명칭을 선인망어업이라 개칭하고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선인망을 인예하여 갈치, 조기를 채포하는 어업(수산업법 제12조 제1항)”이라 규정함으로써 멸치 권현망과 선인망어업은 법으로써 완전히 구별지워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산업법의 개정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령도 동년에 개정하면서 시행령부칙 제6조에서 “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을 부산, 경남 일원으로 하여 허가정수는 160건으로 한다”하였고 시행령은 기선권현망어업이 주무부장관 허가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업구역을 부산, 경남일원으로 한정하여 정한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첫째, 종래의 수산업법이 권현망어업을 지방장관 허가어업인 인망어업으로 정하고 있었고

둘째, 동어업이 주로 부산, 경남일원의 해역에서 행해져 온 것이었으며

셋째, 기선권현망 어업으로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한 동어업의 발전이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해서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어업허가를 부여한다거나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동어업이 제도화되던 당초에 조업구역이 부산, 경남일원으로 한정된 사실은 수산자원의 유지, 보전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지역간 어업조정을 위한 조치도 물론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당시의 어업실정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규정이 충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고

기타, 연안어업등과의 마찰을 고려하여 허가의 정한수를 160건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보호령을 통하여 정치망어업등의 어장을 보호하는 조치(기선권현망 어업의 금지구역설정과 금어기설정등)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3) 1967년 2월 2일 정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래 부산, 경남일원에 대해서만 허가되고 있던 기선권현망어업을 전라남, 북도 해역에 대해서도 허가하기로 하고 이 지역의 허가정한수를 40건으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동 지역이 허가되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였다. 즉, 수산업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을 부산, 경남일원으로 하는 것을 제1구로, 전라남, 북도

일원으로 하는 것을 제2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허가의 정수를 제1구 160건, 제2구 40건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 가운데 부산, 경남일원의 제1구 있어서는 “망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어망을 직접 인예하는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없이 160건을 허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 일원의 제2구에 대해서는 “어망을 직접 인예하는 방법”에 의한 것에 허가를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별 허가조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2구에 있어서는 종전부터 권현망어업이 성행하지 못하여 어장이 용면에서 당해지역 연안어민들로부터 관행을 인정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1970년 6월 11일 수산관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의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의 정한수」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 제53조 ①항에 포함되고 보호령 제4조에서 산만하게 규정되고 있던 기선권현망어업 금지구역에 관한 것이 “망선을 이용하는 어업”과 “어망을 직접 인예하는 어업”으로 구분되어 각각 규정되게 되었기 동법 개정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업 관계법령상 중요한 변화는 기선권현망어업과 선인망어업을 제1종 선인망어업과 제2종 선인망어업으로 개칭하고 수산업법 제11조 ①항 7호에서 전자를 “동력선에 의하여 망선을 인예하거나 직접어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또한 동법 제12조 ①항 9호는 후자를 “무동력선으로 선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호령 제4조를 일시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970년 개정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의 금지구역을 “망선을 이용하는 어업”과 “어망을 직접 인예하는 어업”으로 구분하였던 것은 “기선권현망어업 금지구역(제1구)와 [제2구]”로 하였으며 제1구의 금지구역중 일부를 조정 하는 한편 2개소의 금지구역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지구역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 기선권현망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산, 경남 일원에 한정되어 동어업이 행해지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태로 “조업구역은 부산, 경남일원으로 하여 . . .”하고 규정 하였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는 제도적으로 지역별로 어업자체를 완전히 구분하여 고착시키는 결과가 된 셈이다. 이러한 일은 이후 동어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술 및 경영의 대응이 다양한 형태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어업의 관리내지는 경영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5) 1976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1종과 2종 선인망어업으로 구분되고 있던 것 가운데 제2종 선인망어업을 도지사 허가어업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제1종 선인망어업은 단순히 선인망어업으로 개칭하였으며 제14조의 3(수산청장허가어업)의 8호를 개정하여 기선선인망 어업을 “동력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를 규정한 제53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보호령 제17조에서 그대로 규정 하도록 하였다.

(6) 1982년 11월 13일 보호령 제17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것 가운데 제3구(전북)를 추가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동어업의 허가 정한수를 축소조정하였고 제1구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선간의 해역”으로 함과 동시에 160전에서 124전으로 하였고 종전 제2구는 전남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제2구와 전북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제3구의 것으로 구분하고 제2구에 16건, 제3구에 10건의 정한수를 각각설정하여 모두 150건을 정한수로 하였다.

## 2) 현황 및 과제

기선선인망어업(기선권현망)은 초창기에 망선을 해안에 계선시켜 인기망 어법의 무동력의 작은 규모에서 60년대 중반기부터 인회망어법으로 개량되면서 조업수심이 깊은 연안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어선의 규모가 대형화하여 6척의 동력선과 70~80명의 종업원으로 기선권현망 1통이 구성되어 연안어업의 대종을 이루어 현재의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으로 되었다.

(1) 기선권현망 제1구(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타어업의 고도 성장에 의한 공동어장 및 굴수하식 양식어장, 우렁쉥이양식어업, 피조개살포식양식어업, 가두리해수어류양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발달하여 권현망어업 조업장소가 광범위하게 잠식·축소 당하여 주어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근년에는 유조선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과 유조선 제1유일호 기름유출, 유독성 적조발생, 냉수대 등 남해바다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죽음의 바다로 변화하여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민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UR체제의 국제화 시대에 따라 수입수산물도 전면 개방되어 외국산 수산물(마른 멸치)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 안으로는 자원고갈에 따른 어획고 감퇴와 밖으로는 수입수산물 개방압력에 못이겨 적자조업을 감당할 수 없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권현망어업은 주채포물인 멸치는 회유성 어족으로 분포사항이 불규칙하고 적당한 서식수온에 민감하여 불시에 부분적으로 어장이 형성하게 되므로 협조한 어장에서 민감하여 불시에 부분적으로 어장이 형성하게 되므로 협조한 어장에서 많은 통수의(현재 부산, 경남 92건 500여척) 어선이 동시 조업하므로 무차별 경쟁조업을 하게되고 따라서 어선 충돌사건이 빈발하여 귀중한 재산피해와 동업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장관의 허가어업중 연안정착성 어자원을 채포 대상으로 하는 잠수기어업 및 근해형망어업등은 지역어자원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현저하여어로활동에 따르는 지역별 수역을 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주채포물인 멸치는 회유성 부어류로서 수명이 1~1.5년에 불과하므로 채포어획되어졌다 하여도 어자원의 감소요인은 극히 미미한 어업이기에 해상의 불분명한 도경계를 중심으로 조업구역을 정함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3) 또한 남하한 어족이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시기인 성어기(7.8.9월)는 제1구와 제2구간의 경계해역인 경상남도 남해도와 전라남도 여천군 사이, 경상북도 경계해역인 울산방어진과 감포만 해상에서 대어군이 형성되므로 해상의 경계해역이 불분명한 장소에서 제1구와 제2구의 어선이 동시 조업을 하게되어 서로 구역위반이라고 조업분쟁에 영일이 없고 뜻하지 않는 부정어업으로 단속대상이 되어 수산행정적 적지않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일찍이 면허·허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외 각종의 규제를 결합하여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어업허가 제도란 보면, 허가어업의 종류를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과 도지사 허가어업,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도입된 시장·군수 허가어업으로 나누고 있

는데 이와 같이 허가어업을 허가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어업에 따라서 경영의 성격이나 취업형태·어장이용의 형태·수산자원에 미치는 어획압력등이 서로 다르므로 어업권리의 성격이나 방법·범위등이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산업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은 근해어업으로 도지사허가어업은 연안어업으로 그리고 시장, 군수 허가어업은 구획어업이라 칭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업은 우선 어장의 이용범위가 다르다.

(5) 이러한 어장 이용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 자체가 어업에 대한 제도적 구분의 기준으로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어선내지 경영의 규모, 어구 어법상의 특징등에 기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당해 어업의 허가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이에 따라 어업의 관리주체가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기선권현망어업을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동어업의 경에 다액의 자본이 요구되며 따라서 일정한 조업도를 유지함으로써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경영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 전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그리하여 이러한 일은 동어업을 시·군이나 도단위로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한 지역간 이해조정등의 면에서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배려가 더욱 중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은 조업구역을 대통령에 위임하여 하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서 동어업의 조업구역을 도별로 3개소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 허가의 정한수를 정해 두고 있는데 이는 동어업을 수산청장 허가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어장의 이용범위를 도관할 수역내로 한정하고, 도단위로 어업을 관리하는 모순을 자아내는 것이다.

### 3) 개선방향

현행과 같이 조업구역을 세분하여 어로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는 근본적으로 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도경계를 기준으로 전혀 근거없는 조업구역을 설정한 위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중삼중(어로작업을 지휘하는 어로장에 대한 벌금형 등) 과중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산 수입건멸치가 국내시장에서 다량으로 유통되어 멸치잡이 어업인들은 고기를 잡아도 제 값을 못받는 차제에 국내해에서 회유하는 멸치를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 묶여 조업을 하지 못하여 귀중한 어자원을 자연 방류하는 처지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해상도경계(정확히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양수산부에서 1998년도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고 있음)를 기준으로 전혀 근거없는 조업구역을 설정한 규제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권리를 빼앗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 2. 禁漁期間의 調整：꽃게를 중심으로

- 통영 近海통발水産業協同組合 · 1998 -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항제9호(포획, 채취 금지기간 : 꽃게 : 6.16~8.31)에서 정하고 있는 꽃게의 포획 금지 기간을 6.16~8.15로 조정과 단서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타 통발 어업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현 황

지난 1992년 장어통발어업의 어자원 감소와 동중국해에서의 꽃게 신어장 발견으로 43척의 어선이 어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기타 통발 어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온 남해안의 기타 통발 어업은 N28 - N34, E121도5분 - E125도선의 동중국해를 주조업구역으로 통영항을 전진 기지로 경남일원에만 약 170여척의 어선이 출어 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연간 42,000톤의 어획량과 1,150억원의 어획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기타 통발어업은 봄어기 저수온 현상에 의한 어황 부진과 45일에 불가한 정상 조업기간, IMF 경제 여파로 인한 출어 경비 부담의 증가로 어업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출어 포기 사태와 자금 압박으로 인한 도산으로 업계 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꽃게 금어기간의 현실화와 단서 조항 철폐로 기타 통발 어업의 경영수지 개선할 수 있기를 간

꼭히 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문제점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항제9호

꽃게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 6.16~8.31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항제9호 단서 : “다만, 해당 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 기선 저인망 어업, 중형 기선 저인망 어업, 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 어업을 제외한다.”

(1) 기타 통발어업의 주조업구역인 N28-N121도5분-E125도선의 동중국해는 중국에 매우 근접한 공해상의 조업 구역으로서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의 법적용이 현실적으로 미칠 수 없는 구역이다. 한중간 어업 협정의 미체결로 기타통발어업의 금어 기간중 꽃게 어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국 어선에 대한 조업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1월~3월까지 동중국해의 저수온현상에 의한 계절적 휴어기와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5월에서 금어기까지 45일에 불가한 봄어기의 짧은 조업기간으로 인한 적자 운영과 자금 압박으로 인한 금어기간중 도산 사례가 급증한다. 4개월에 불과한 가을 어기 어업 생산에 의존하는 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자금 압박과 경영 수지의 악화가 초래된다.

(2) 특히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항제9호 단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 ① 산란기 및 성숙기의 꽃게 포획으로 치어의 남획과 어자원 관리의 비효율화 ② 어자원 고갈로 인한 기타 통발 어업의 성어기인 가을 어기생산량 감소 ③ 체장 미달의 꽃게를 포획 및 유통 판매토록함으로 인한 엇가 하락 ④ 어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 자원 보호령 적용의 법적 형평성 상실

## 3) 개선의견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항제9호의 꽃게 금어기간을 6.16~8.15로 조정함과 금어기간중 일부 어업에 대한 꽃게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철폐를 통한 꽃게의 어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어업 생

산성 증대로 기타통발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실질 소득 증대로 기타통발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실질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해통발어업인 연서로서 간곡히 진의합니다.

#### 4) 기대효과

- (1) 기타통발어업의 성어기인 가을어기 조업일수증가로 어업생산성 및 실질소득증가
- (2) 봄어기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자금 압박 해소
- (3) 기타통발어업의 어업 경영 수지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
- (4) 선원난 해소와 어선원의 가계 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 (5) 어자원 관리의 효율성 도모

### 3. 그물코의 調整 : 꽃게를 중심으로

- 통영 近海통발水産業協同組合 · 1998 -

#### 1) 현 황

(1) 근해통발어업중 東중국해(N35° 이남, E127° 이서)에서 꽃게류를 주어종으로 포획하는 기타 통발 어업의 발상은 1987년 태풍 셀마이 후 붕장어의 어자원이 급격히 감소되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장어통발어선이 동중국해에서 꽃게 신어장을 개척하여, 1989년부터 70여척의 어선이 꽃게통발어구를 신고 조업에 나서므로서 어선이 분산되어 장어통발어업과 꽃게 통발 어업이 균형있는 어업으로 정착되어 갔으나, 어구 어법상 꽃게 포획은 불법이 되어 1992년 43척의 장어 통발어선이 허가를 반납하고 기타 통발 어업 즉 꽃게 통발 어업으로 전업하여 오늘날 70톤 이상 냉동 꽃게 어선 100여척과 활꽃게어선 50여척이 조업에 임하고 있다.

(2) 근해통발어선중 꽃게류를 포획하는 기타통발어선의 조업지는 공해상인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해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등 수개국의 어선이 공동 조업하는 수역으로서 어획을 제한할 경우 아국 수산물 어획량 격감으로 IMF시대 근해 통발 어업인 생계가 심히 우려된다.



(3) 그물 65밀리 망목은 우리 나라 서해안의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하여 유자망어선 망목을 적용하여 제한하였으나, 꽃게통발업이 시행된 '89년도부터 28밀리미터의 망복 그물 통발을 사용 조업하였으나, 1997년 이후 연안통발어선과 동일한 망목인 35밀리미터로 하였으며, 꽃게 잡는 선장들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통발 35밀리 망목이 1구멍만 터지면 통발 속의 꽃게가 한 마리도 없다고 주장하여 현재 사용중인 망목으로 개선하였다.

(4) 1989년 최초 통발 시험 조업시 통발 모양과 망목이 상이한 여러 종류의 통발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통발이 가장 적격품으로 판정되어, 금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며 망목이 큰(65mm)통발에 꽃게가 포획되지 않는 사유는 꽃게는 양옆으로 달린 10개의 다리가 더듬이 역할을 하여 물체의 상태를 감지 그에 따른 반응을 하는 어종으로 망목이 넓을 경우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꽃게의 가는 다리가 망목 사이로 빠짐에 따라 다리가 물체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먹이가 들어 있는 통발속으로 유인이 어렵게 되며, 또한 망목이 클 경우 통발속으로 유인되는 것이 아니고, 망목을 통과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유영이 빠른 타 어류에 의한 미끼 손실로 꽃게를 유인할 수 없는 난점이 있어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5)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포획금지 체장)제1항제22호에는 꽃게는 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장과 망목을 규제할 경우 이중 규제로 어업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어망목의 제한) 제1항제10호 나목은 꽃게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 통발 어업의 어망목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업시 기타통발어업 허가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포물인 새우, 고동, 기타 잡어등의 어획고도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망목을 동보호령 기준인 65mm이하의 어망목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꽃게를 제외한 타어종의 포획이 전혀 불가능하여 어업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2) 개선안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해상에서 타국 어선과 함께 조업하고 있는 근해 기타 통발 어업의 망목 제한을 삭제하거나 연안통발 망목인 35밀리미터 이하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어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船員賃金債權保障法案에 관한 意見

- 통영 近海통발水産業協同組合 · 1998 -

### 1) 현황 및 문제점

법인 또는 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대규모로 어업을 영위해온 원양어선 및 대형 선사와는 달리 생업을 위해 영위해온 연근해어선 어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어기동안의 생산 총액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공동의 생산 수익을 선원과 선박 소유권자가 일정한 배분율로 소득을 분배받는 공동경영체적 성질을 갖춘 깃가림제로 운영됨으로서 월단위로 일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 근로 소득 개념의 임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연근해어선어업에 대한 임금 채권 보장법의 제정 적용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어업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이촌현상이 심화되면서 연근해어선어업은 심각한 선원난에 봉착하게됨에 따라 선원난 해소를 위하여 어선원의 생활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선원 가족의 생활비를 승선전에 선지급해 오던 것이 1980년대 접어들면 1어기동안의 생산 추정 소득액을 승선계약과 동시에 선지급하고어기가 끝난후 생산 소득액과 상계하는 소득분배 방식을 취함으로써 선원난으로 인한 업계의 도산을 억제하여 오고 있는 실정으로 선원의 임금 체불의 소지가 발생할 수 없는 현실이며 최근 연근해 어선 어업 도산의 주요 요인중 하나가 선원 선급금 사기 피해로 인한 도산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선원 임금 체불 보장한다는 명목화에 법제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안위를 도외시한 채 원양어선어업의 쇠퇴로 인한 수익 재원 감소를 연근 해어업에서 대체코자 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발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IMF 경제 체제하에서 각종 부대 경비 상승으로 연근해 어선 어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어선원의 실직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원임금 채권보장법 제정은 어업경영자인의 세제 부담 증가로 어업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연근해 어선 어업의 도산을 부채질함으로써 연근해 어선원의 실직율만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개선의견

현행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의 경우 어선원의 선급금 사기 피해로 인한 어업 경영 수지의 악화로 선박 소유주의 부도 및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연근해어선의 안정적인 어업 영위와 IMF 경제체제하에서 어선원의 실업을 감소를 위하여 어선원의 선급금 채권회수를 강력한 법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구보고 98-8

漁村社會의 法意識

---

1998년 12월 26일 印刷

1998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亞商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02)579-0090, FAX : (02)579-2381

등록번호 : 1981. 8.11. 제1-a0190호

---

값 7,7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91-6 93360

